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의 일치 여부 검토와 법인세법 개정방향

2012. 6

최기호

서 언

우리나라의 회계 환경은 최근 들어 충격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이하 IFRS)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으로 도입된 것이다. 우리가 IFRS를 도입한 것이 과연 최선의 결정이었는지는 아직은 판단할 수 없지만 IFRS 도입은 우리나라의 회계 환경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여 왔으며 이러한 변화의 충격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IFRS 도입이 우리의 세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수많은 심포지엄, 세미나 등이 개최되었고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문들은 IFRS 도입이 세법에 미친 직접적이고 미시적인 영향에만 주목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직접적이고 미시적인 영향보다도 중요한 것은 IFRS 도입이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즉, IFRS 도입은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유지해왔던 세법과 회계기준의 관계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술계나 실무계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본 보고서는 IFRS 도입 이후 우리나라에서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법과 회계기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세법이나 회계기준의 영향을 받는 기업의 행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가 높아지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은 서로 유사해지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면 과세소득이 높아져서 조세

부담이 커지고, 반대로 과세소득을 낮추는 조세회피를 하게 되면 당기순이익도 함께 낮아져서 자본시장이 평가하는 기업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이러한 상충관계는 경영자의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유인에 대한 억지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런 측면만을 보면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치도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다.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세법은 회계기준의 영향을 받게 되며 회계기준은 세법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세법과 회계의 고유한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다. 특히 재무보고 측면에서 이러한 부작용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게 된다.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은 이렇게 일치도에 따라 효익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나갈 길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반대로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가 매우 낮은 국가였으며 일치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주장 간에 치열한 논쟁을 겪은 후에 몇 가지 대응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대응 방안을 살펴본 후에 우리나라에서도 IFRS 도입에 따라 세법과 회계기준이 분리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만일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추진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본 보고서는 현재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관계당국에 하나의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세무와 회계학계에 대해서도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 설정이 대단히 흥미로운 연구과제가 될 수 있으며 수많은 연구주제들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최기호 교수가 집필하였다. 저자는 원내세미나를 통해 유익한 조언을 주신 원내 안중석 박사와 서울시립

대학교의 양인준 교수, 그리고 마무리단계에서 유익한 논평을 주신 익명의 두 심사자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 집필 과정에서 소중한 자료를 제공해 준 세법연구센터의 구자은 회계사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반영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2년 6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조원동**

요약 및 정책 시사점

우리나라의 회계 환경은 최근 들어 충격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이하 IFRS)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으로 도입된 것이다. 우리가 IFRS를 도입한 것이 과연 최선의 결정이었는지는 아직은 판단할 수 없지만 IFRS 도입은 우리나라의 회계 환경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여 왔으며 이러한 변화의 충격은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IFRS 도입이 우리의 세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수많은 심포지엄, 세미나 등이 개최되었고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문들은 IFRS 도입이 세법에 미칠 직접적이고 미시적인 영향에만 주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이고 미시적인 영향보다 중요한 것은 IFRS 도입이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근본적인 체계에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즉, IFRS 도입은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유지해 왔던 세법과 회계기준의 관계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술계나 실무계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본 보고서는 IFRS 도입 이후 우리나라에서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이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은 개념적으로 경제적 이익이라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다. 그렇지만 경제적 이익은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간접적인 방법으로 측정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법과 회계기준의 차이는 측정 대상이 개념적으로 서로 다른 것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다만 측정 대상을 현실적으로 측정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세법과 회계기준은 목표 면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데 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 간의 공평한 조세채무를 결정하는 것이 목표인 반면에 회계기준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과세소득은 조세채무 결정의 유일한 기준이지만 당기순이익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유일한 정보원천은 아니다. 또한 외부 이해관계자에 있어서도 세법은 오직 과세당국만을 외부 이해관계자로 가정하고 있지만 기업회계기준은 정의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를 가정하며 특히 외부의 주주와 채권자들을 주요 이해관계자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법과 회계기준은 보고단위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세법에서는 과세관할이 명백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회계기준에 비하여 보고단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차이점과 앞선 이익측정 모형을 서로 연결시킨다면 회계기준에서는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가장 중시하며 이에 따라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세법에서는 공정성 및 신뢰성을 중시하게 되며 이에 따라 취득원가 모형이나 현금주의 모형을 따르게 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회계기준과 세법이 갖는 차이점은 결과적으로 이익측정 모형의 적용상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된다.

이를 볼 때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이 현재와 같은 원칙을 계속 고수하기로 한다면 양자는 일치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측정 대상 면에서 나타난 본질적인 차이이기보다 측정 대상인 경제적 이익을 우회적으로 측정하는 데 따른 이차적 차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느 한 쪽에서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있게 된다면 양자의 일치 정도를 상당한 수준

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볼 수 있다. 특히 세법과 회계 기준 간 차이에는 정책적 목표와 같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하고 있음을 볼 때, 이러한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경제적 이익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세법과 회계기준은 지금보다는 일치도가 높아질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세법과 회계기준은 상당 부분 일치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나는 일차적 원인은 바로 세법과 회계기준의 차이이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자들은 보너스 계약이나 부채계약 등과 같이 여러 유인들에 의하여 당기순이익을 가급적 올리고자 한다. 반대로 경영자들은 현금유출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은 얼핏 상충되는 듯이 보이지만 동시에 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당기순이익 조정과 조세회피 목적이 동시에 추구되는 경우에는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는 벌어지게 된다.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의 원인이 단순히 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가 아닌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에 있는 것이라면 양자의 차이는 보다 엄밀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미국 기업들의 경우, 대체로 당기순이익이 과세소득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그 차이는 최근으로 들어올수록 벌어지고 있었다.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과세소득이 당기순이익을 초과하고 있었고 그 차이는 줄어들고 있었다. 이렇게 미국 기업들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의 행태가 다른 것은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에서 기업들이 이익조정과 조세회피를 강하게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세법과 회계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그렇지만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모두 양자의 차이는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유인에 기인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익조정 유인과 조세회피 유인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익조정 유인과 조세회피 유인은 모두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와 양(+)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반대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클수록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가 의심되는 기업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이익조정 유인과 조세회피 유인 중 어느 요인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더 기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지만 일관된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이익조정 유인과 조세회피 유인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실증 증거들도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이러한 추론은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경영자들은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유인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며 조세회피 행위를 통해서 동시에 이익조정을 달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경영자의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행위를 반영한다는 것은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감소시킴으로써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가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자의 차이를 불완전하게나마 감소시키는 것은 세법이나 회계기준의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렇지만 양자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회계기준과 세법이 일치되는 경우, 효익의 핵심 원천은 이익조정과 조세회피 행위 간의 상충관계이다. 상충관계의 본질은 어느 한편의 희생 없이 다른 한편만을 일방적으로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익조정과 조세회피 행위 간 상충관계가 강할수록 경영자는 이익조정 혹은 조세회피 행위를 감소시키지 않고 다른 행위만을 추구할 수 없게 된다. 상충이 존재하는 여러 상황에서 경

영자가 실제로 상충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지를 보여주는 실증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를 보면 후입선출법의 선택, 세법 변경에 따른 소득 이전 등 다양한 상황에서 경영자는 이익조정 혹은 조세회피 행위의 상충관계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충관계를 가장 극대화하는 것은 세법과 회계기준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일치도가 높을수록 상충관계는 강화된다. 이에 따라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가 높아지면 상충관계는 강화되고 경영자의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행위는 감소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일치도가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중국의 사례를 검토할 수 있다. 중국은 일치도가 높았다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시기별로 조사한 결과, 중국 기업들의 조세회피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일치도와 조세회피는 양(+)의 관계를 보였다. 또한 국가별로 서로 다른 일치도하에서 조세회피와 이익조정 행위를 관찰해본 결과에 따르면 일치도가 높은 국가에서 조세회피 혹은 이익조정 행위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당초 기대한 바와 같이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가 높아지면 조세회피나 이익조정 행위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치도를 높이는 것에 대한 비용의 핵심 원천은 일치도가 높아지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이 갖고 있던 정보 가치의 합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당기순이익은 자본시장에서 이용되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하며 가치가 큰 정보이다. 그렇지만 과세소득도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 가치를 갖고 있다는 증거들이 있다. 몇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과세소득은 미래 이익, 미래 추가, 미래 신용등급의 변동 등을 예측함에 있어서 당기순이익에 대해 추가적인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과세소득이 당기순이익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 가치를 갖는 이유는 세법과 회계기준이 달라서 세법에 따라 산출된 과세소득에는 당기순이익에 포함되

지 않은 독특한 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법은 경영자의 재량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측정의 신뢰성만을 보자면 당기순이익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회계기준에서 경영자의 재량권 행사를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취약한 당기순이익의 측정 신뢰성을 과세소득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Hanlon(2005)이 발견한 것처럼 과세소득이 당기순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반대의 경우보다 이익의 지속성이 높게 되는 것이다.

회계기준과 세법의 일치도가 높아지면 당기순이익의 품질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실증 증거를 검토해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 세법상 현금주의를 허용하던 기업들을 강제로 발생주의를 적용하는 것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일치도가 강제로 높아진 상황에서 이들 기업들에서는 이익반응계수가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일치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현재 당기순이익을 통한 미래 당기순이익의 예측가능성 정도 혹은 미래 현금흐름과 현재 당기순이익의 관련성이 낮았다는 증거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에 따른 효익과 비용 모두 많은 실증 증거를 통해서 충분히 그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본다. 문제는 효익과 비용 중 어느 것이 더 큰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아직 없다. 아마도 효익과 비용 중 어느 것이 더 큰가는 정책당국의 판단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효익과 비용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미국은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상반된 상태에 놓여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론에 대한 미국에서의 논쟁을 소개하고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미국에서 논쟁의 출발점은 Desai 교수를 중심으로 제기된 세법과 회계기준

의 일치론이다. Desai 교수는 2000년 이후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회계부정과 조세회피 사건들을 조명하면서 회계부정과 조세회피가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일견 상충적인 것으로 보이는 회계부정과 조세회피가 동시에 추구될 수 있는 것은 미국에서 세무보고와 재무보고를 분리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일반적인 증거로서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회계상 당기순이익의 가치관련성이 하락하고 있으며 과세소득이나 당기순이익의 추정 가능성이 하락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Desai 교수는 특히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 기업의 경영자들이 이중보고의 비용 부담을 이유로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를 주장해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를 반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이중보고라는 명백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분리된 상태가 기업에 이를 상쇄하는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이때의 가치라는 것이 바로 조세회피와 이익조정의 동시 추구 가능성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그는 회계기준과 세법이 일치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말하고 극단적인 방안이지만 회계기준과 세법을 일치시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과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론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많은 회계학자들은 과세소득이 갖는 독특한 정보가 상실될 것이며 세법의 영향으로 당기순이익의 품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세법과 회계기준이 일치됨으로써 조세회피와 이익조정이 감소될 것이라는 주장도 결과적으로는 실증적인 문제일 뿐이며 실제로 양자를 일치시키면 경영자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조세회피와 이익조정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논쟁에 대한 대응은 간단하지 않다. 거시적으로 보면 미

국은 아직까지 회계와 세법이 분리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는 몇 가지 중요한 대응 방안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새로운 세무보고 양식인 M-3의 개발이다. M-3은 당기 순이익과 과세소득이 왜 다른지를 체계적으로 보고하도록 만든 새로운 양식이다. 이는 Enron 사태 이후 학계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에 IRS와 재무부가 빠르게 대응한 결과이다. 또한 주목할 것은 기업 과세자료의 공시에 대한 논쟁이다. 기업 과세자료를 공시하는 것은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련성을 유지하면서도 채택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는 많다. 그렇지만 진보는 계속 진행 중이다. 2007년 FASB는 FIN48을 제정했는데 이는 기업들이 현재의 조세채무와 기대하는 조세채무와의 차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 일부 경영자들의 반대 속에서도 추진되었고 이에 대한 시장 반응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 여부에 대한 미국에서의 논란과 대응 방안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체계적으로 논란을 벌이고 이에 대해 정부나 과세당국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이 문제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학계나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상황이 정반대이므로 미국에서의 논란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막연한 환상을 갖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세법과 회계기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재설정된 관계를 전제로 법인세법의 개정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현재 세법과 회계기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면 우리나라의 세법에서

는 과세소득 계산에서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확고하게 천명하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결산조정 원칙이 세법에 잠재되어 있다. 결산조정 원칙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세법과 회계기준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관계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은 아니다. 시기적으로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왔으며 결과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가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갖기까지 많은 논쟁을 거쳤다. IFRS 도입 이전에는 주로 포지티브 혹은 네거티브 형태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나 결산조정 혹은 신고조정 간의 논쟁이 있었다. 대체로 모든 주장은 현 상태보다는 세법과 회계기준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IFRS 도입 이후에는 모든 상황은 바뀐다. IFRS 도입 결정으로 인하여 이제 회계기준에서의 변화는 우리나라에서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IFRS가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규정으로 적용되는 것이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그 다음 일인데 본 보고서에서의 검토 결과는 IFRS는 법인세법의 준용규정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 정립에 대한 논쟁은 IFRS 도입으로 인하여 세법과 회계기준을 어떻게 분리시켜야 할 것인가로 옮겨가야 한다.

세법과 회계기준을 분리시켜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실무를 지배해 오던 법인세법을 급격하게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분리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이에 단기, 중기·장기로 나누어 각각 분리 방안을 도출하고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차례로 분리가 추진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독자적으로 과세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형태로 개편될 수 있다.

법인세법과 회계기준의 분리에 대한 보완 사항으로는 공시의 문제가 있다.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세무보고와 재무보고 측면에서 공시하는 것은 세법과 회계기준 분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미국의 경우, Enron 사태 이후 세법과 회계기준 분리의 단점을 지적하고 양자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강했지만 이제는 세법과 회계기준을 일치시키는 극단적 방법이 아닌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충분히 공시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미국의 사례를 교훈으로 하여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과세당국에 그리고 자본시장참가자들에게 체계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보고서는 현재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관계당국에 하나의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FRS 도입 이후, 우리나라는 회계기준 제정권이 없어진 상태이다. 따라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정책담당자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은 법인세법이 유일하다. 이러한 점에서 세법을 관장하는 당국자들은 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들에게 큰 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수많은 연구결과들은 실무자뿐만 아니라 세무회계연구자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세무와 회계학계에 대해서도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 설정이 대단히 흥미로운 연구과제가 될 수 있으며 수많은 연구 주제들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목 차

I. 머리말	23
1. 연구의 동기	23
2. 연구목적	28
3. 보고서의 구성	30
II.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	33
1. 경제적 이익(Economic Earnings)	34
2. 장부상 이익(Book Income)	36
가. 현금주의 모형	38
나. 발생주의 모형	39
다. 모형 간의 비교	41
3. 회계기준과 법인세법 차이의 원천	43
가. 목표	43
나. 정보이용자	45
다. 보고단위	47
4. 우리나라에서의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	49
가. 재량적 판단의 허용에 따른 차이	49
나. 정책 목표의 달성	89
다. 보고단위 차이	95
5. 요약	99

III. 이익조정과 조세회피 유인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102
1.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	103
가. 당기순이익 과세소득 차이의 크기	104
나.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의 구성항목	112
2. 이익조정과 조세회피 유인이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에 미치는 영향	118
가. 당기순이익 조정 유인의 영향	118
나. 조세회피 유인의 영향	129
다. 이익조정 유인과 조세회피 유인의 상호작용	141
3. 요약	149
 IV.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 일치에 따른 효익과 비용 ...	152
1. 세법과 회계기준 간 일치도의 국가별 실태	154
2.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 일치에 따른 효익	163
가. 효익의 원천: 이익조정과 조세회피 행위의 상충관계 ..	164
나. 효익에 대한 실증 증거	183
3.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 일치에 따른 비용	192
가. 비용의 원천: 자본시장에 대한 정보로서 과세소득의 유용성	193
나. 비용에 대한 실증 증거	212
4. 요약	219

V. 미국에서의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 여부에 대한 논쟁과 정책적인 대응	222
1.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	223
2. 일치론에 대한 지지	225
가. 개별증거	228
나. 일반적인 증거	237
3. 일치론에 대한 반박	245
가. 보고 시스템의 단일화	245
나. 재무보고 시스템에 대한 투자의 활용	246
다. 조세회피의 감소	247
라. 이익측정 원칙의 변화	249
마. 법인세율의 감소	250
바. 재무보고의 투명성	251
4. 반박론에 대한 대응방안: 공시제도의 개선	252
가. 세무보고에서의 공시 방법의 개선	254
나. 재무보고에서의 공시 방법의 개선	256
5. 요약	268

VI. 우리나라에서의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 여부 검토 및 법인세법 개정방향	271
1. 세법과 회계기준의 관계	273
가. 세법에서의 기업회계 존중원칙	273
나. 결산조정 원칙	274
다. 포지티브 시스템	277

2. 세법과 회계기준의 관계 정립 논의: IFRS 도입 이전	278
가.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 논쟁	279
나. 포지티브 시스템과 네거티브 시스템 간의 논쟁	281
다.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에 대한 논쟁	284
3. 세법과 회계기준의 관계 정립 논의: IFRS 도입 이후	289
가. IFRS의 법인세법 준용규정으로서의 부적절성	289
나. 세법과 회계기준의 새로운 관계 정립	302
4. 새로운 관계 정립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 방향	305
가. 단기 방안	306
나. 중·장기 방안	309
다. 장기 방안: 세법과 회계기준의 완전 분리	317
5. 요약	336
VII. 맺음말	338
1. 연구 결과의 요약	338
2. 연구의 공헌	341
참고문헌	342

표 차례

〈표 III-1〉 1985~2003년 동안 미국의 세전 당기순이익과 추정 과세소득 간 차이	107
〈표 III-2〉 세전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의 기술통계량 ...	110
〈표 III-3〉 당기순이익과 사업연도소득의 차이	115
〈표 III-4〉 일시적 차이의 항목별 구성	116
〈표 III-5〉 당기순이익 조정 유인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	123
〈표 III-6〉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와 보수주의	138
〈표 IV-1〉 국가별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독립 정도(RMSE) ·	160
〈표 IV-2〉 국가별 일치 정도에 대한 결과 비교	161
〈표 IV-3〉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가 이익조정유인에 미치는 영향	189
〈표 IV-4〉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190
〈표 V-1〉 엔론의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1996~2000년)	231

그림 차례

[그림 I-1] 연구 모형	29
[그림 III-1] 1985~2003년 동안 미국의 세전 당기순이익과 추정 과세소득	108
[그림 III-2] 1985~2003년 동안 미국의 세전 당기순이익과 추정 과세소득 간 차이	108
[그림 III-3] 절세수단 이용기업과 통제기업 간의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	134
[그림 III-4] 신탁우선주의 발행 구조	145
[그림 IV-1] 과세소득과 현금흐름으로 순위화한 기업집단의 5년간의 이익성장률	197
[그림 V-1] 1987~2000년간 과세소득, 당기순이익 그리고 추정당기순이익의 변화	238
[그림 V-2] 1968~2001년간 기업 당기순이익에 대한 최초 추정의 정확성	239
[그림 V-3] 1950~2002년간 주당 순이익과 장부가치의 가치관련성 변동	240
[그림 VI-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276
[그림 VI-2] 소득금액조정합계표	330
[그림 VI-3] 감사보고서 주식사항의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 간의 차이 공시 내역	334

I. 머리말

1. 연구의 동기

세법과 회계기준은 서로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다. 세법이 만들어내는 과세소득과 회계기준이 만들어내는 당기순이익은 경제적 이익이란 동일한 측정 대상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세법과 회계기준은 유사하다. 세법은 국가의 재정수입을 보장하면서도 공평성과 소득재분배라는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세소득을 납세자의 조세채무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반면에 회계기준은 자본시장의 이해관계자들(주주, 채권자, 분석가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기순이익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세법과 회계기준은 결코 일치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

세법과 회계기준은 이와 같이 유사하면서도 좁힐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세법과 회계기준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며 반대로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연속선상에서 세법과 회계기준을 서로 간에 얼마나 일치시킬 것인가를 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세법과 회계기준을 얼마나 일치하도록 만드는 것이 최선일까? 이러한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에 대한 생각은 학자마다, 실무자마다 다르다. 일부는 일치도가 높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일부는 일치도는 낮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는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처럼 일치도가 높은 국가도 있으며 미국처럼 일치도가 낮은 국가도 있다. 또

한 일치도는 동태적이다. 한 국가 내에서도 일치도는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는 1990년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일치도는 낮아지고 있으며 반대로 우리나라는 약간씩 높아지고 있다(구자은, 2011). 이를 보면 세법과 회계기준의 최적 관계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 시기에는 최선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것도 환경이 변화하면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회계 환경은 최근 들어 충격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이하 IFRS)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으로 도입된 것이다. 우리가 IFRS를 도입한 것이 과연 최선의 결정이었는지는 아직은 판단할 수 없지만 IFRS 도입은 우리나라의 회계환경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여왔으며 이러한 변화의 충격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IFRS 도입이 우리의 세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수많은 심포지엄, 세미나 등이 개최되었고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문들은 IFRS 도입이 세법에 미치는 직접적이고 미시적인 영향에만 주목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직접적인 미시적인 영향보다도 중요한 것은 IFRS 도입이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근본적인 체계에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즉, IFRS 도입은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유지해 왔던 세법과 회계기준의 관계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술계나 실무계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IFRS 도입 이후 우리나라에서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법과 회계기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세법이나 회계기준의 영향을 받는 기업의 행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세법과 회

계기준의 일치도는 경영자의 이익조정 혹은 조세회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가 높아지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은 서로 유사해지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면 과세소득이 높아져서 조세부담이 커지고, 반대로 과세소득을 낮추는 조세회피를 하게 되면 당기순이익도 함께 낮아져서 자본시장이 평가하는 기업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이러한 상충관계는 경영자의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유인에 대한 억지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런 측면만을 보면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가 높아지면 재무보고와 세무보고가 단순해지며 이에 따라 기장비용이나 보고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일치도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다.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세법은 회계기준의 영향을 받게 되며 회계기준은 세법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세법과 회계의 고유한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다. 특히 재무보고 측면에서 이러한 부작용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게 된다. 시기별 혹은 국가별로 일치도를 측정하고 이에 따른 당기순이익의 품질을 조사했던 일부 연구들(Hanlon et al., 2008; Atwood et al., 2010; 구자은, 2011)에서도 일치도가 높은 시기 혹은 국가일수록 당기순이익의 품질이 낮다는 보고를 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일치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순기능도 있는데 이는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이 각기 다른 기준에 의하여 만들어지면서 서로가 갖지 못한 독특한 정보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Hanlon and Shevlin, 2005). 이런 관점에서 세법과 회계기준이 일치하게 되면 과세소득이나 당기순이익이 갖는 고유한 정보 가치가 손상될 것이다.

이렇게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설정에 따른 효익과 비용이 극명하게 엇갈림으로써 의사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때, 우리보다 먼저 이러한 문제를 고민해 왔던 외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세법과 회계기준의 관계에 대해서 최근 가

장 심각하게 고민했던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의 사례가 우리에게 특히 유용한 것은 미국은 우리와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전통적으로 세법과 회계기준이 거의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속선상에서 보면 우리나라와는 대척점에 놓여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일치도가 너무 높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 동안 미국은 반대로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일치도가 너무 낮아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서로 다른 영역에서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고 있었던 것이다.¹⁾

미국의 고민은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낮은 일치도가 심각한 조세회피와 이익조정을 불러오고 있다는 의구심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의구심을 촉발시킨 것은 유명한 Enron 사태이다. Enron이 회계부정으로 인하여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또한 조세회피에도 매우 적극적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Outslay and McGill(2002)은 Enron의 파산 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유효법인세율이 직전 3년간 17.5%, 8.2%, 15.2%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당시 미국의 법정 법인세율이 35%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낮은 수치였다. 파산 직전에도 Enron은 20억달러를 초과하는 당기순이익을 보고하였지만 과세소득은 결손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이 전혀 다른 정보를 전달하고 있었지만 자본시장의 그 누구도 이에 주목하지 않았고 이는 과세당국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이익조작을 하면서 동시에 조세회피를 추진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Desai 교수는 이러한 일은 미국에서 세법과 회계기준을 서로 분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하였다(Desai, 2003,

1) 이는 유럽과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가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유럽은 미국과 반대로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를 낮추는 것에 대한 주장이 있어 왔다. 이에 Shaviro(2009)는 이에 대해 미국과 유럽이 마치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그리워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2005, 2006). 그리고 그는 세법과 회계기준을 일치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물론 그의 제안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기에는 일치도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의 심각성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대신에 미국은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올바르게 공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예를 들자면 Enron의 문제점이 의회에서 제기된 후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과 재무부는 재빨리 대응 팀을 구성하고 2004년 종전의 M-1 양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M-3 양식을 개발하는 데 마침내 성공한다. 새로운 M-3 양식은 기업으로 하여금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체계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 양식을 상당히 표준화시킨 것이다. 또한 미국의 회계기준 제정기구인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는 FIN48을 제정한다. 이는 기업의 조세채무와 기대조세채무 간의 차이를 우발채무로 재무제표에 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일련의 노력은 모두 세법과 회계기준의 관련성을 유지하면서도 Enron 사태 이후 불거진 이익조정과 조세회피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법과 회계기준의 관계 설정에 대한 미국에서의 치열한 논의과정과 정책당국이나 과세당국의 신속한 대응 과정은 우리에게도 교훈을 준다. 우리나라를 들끓게 했던 한보철강, 대우 사건은 Enron 사건보다 먼저 일어난 회계부정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로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은 별로 엿보이지 않았다. 한보, 대우 사태가 우리나라 회계기준이나 세법을 얼마나 변화시켰는가? 추측컨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꾸준하게 있었다. 그렇지만 IFRS 도입은 그 이전의 논의를 다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일대 사건이다. IFRS 도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회계기준 제정권을 잃어버렸으며 이제 남은 것은 법인세법을 제정하는 권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많은 선행 연구들과 미국

에서의 교훈을 바탕으로 IFRS 도입 이후 우리나라의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이렇게 재설정된 관계 속에서 법인세법을 어떻게 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현재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관계당국에 하나의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세무와 회계학계에 대해서도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 설정이 대단히 흥미로운 연구 과제가 될 수 있으며 수많은 연구 주제들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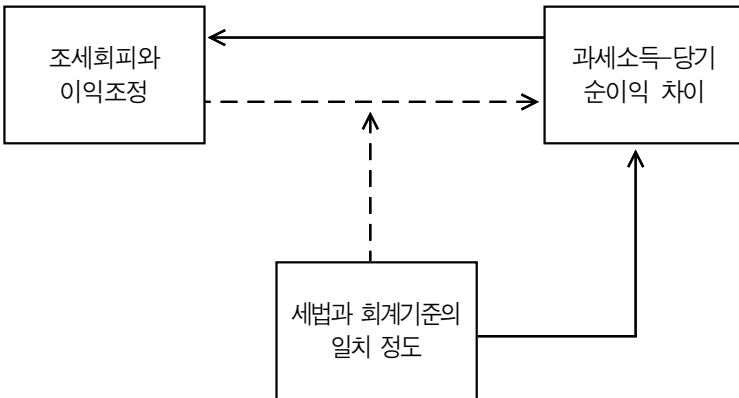
본 보고서에서의 핵심 주제어는 이익조정과 조세회피 행위,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일치 정도(Book-tax conformity),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 간의 차이(Book-tax differences)이다. 아래의 [그림 I-1]에서는 이들 세 변수 간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그림 I-1]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관계는 경영자의 이익조정과 조세회피 행위가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 간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며 이러한 영향의 크기에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일치 정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익조정을 하거나 조세회피를 한 기업은 과세소득에 비하여 당기순이익이 커지거나 반대로 당기순이익에 비하여 과세소득이 작아지게 되므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예상하는 이유는 모든 기업의 경영자들은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면서도 과세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반대로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조세회피를 하면서도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세법과 회계기준이 서로 완전하게 동일하지 않기 때문인데 세법과 회

계기준 간의 차이가 클수록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행위가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 간 차이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게 된다. 반면에 극단적으로 세법과 회계기준이 완전하게 동일하다면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행위가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 간 차이에 미치는 영향도 없어진다.

둘째, 앞서 [그림 I-1]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관계를 통하여 반대로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일치 정도를 통해서 경영자의 이익조정과 조세회피 행위를 통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그림 I-1]에서 실선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일치 정도가 높을수록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 간 차이는 작아지고 경영자의 조세회피 혹은 이익조정 유인은 억제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이익을 과대계상하려면 과세소득 증가로 인한 조세부담을 지게 되고 반대로 조세를 최소화하려면 당기순이익 감소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 I-1] 연구 모형



위와 같은 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본 보고서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IFRS 도입 이후 우리나라의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를 어

면 방식으로 재설정할 것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사실상 양자를 얼마나 일치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것과 같다. 이를 위해서 앞서 수행된 수많은 선행연구들의 연구 결과를 요약해보고 미국의 사례를 검토하며 이로부터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3. 보고서의 구성

보고서는 모두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머리말이며 제7장은 맺음말이다. 이를 제외한 5개 장이 핵심적인 연구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장에서는 세법과 회계기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본다. 세법과 회계기준은 경제적 이익이라는 가상의 개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치하면서도 구체적인 목적이나 보고단위 면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차이는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 간의 차이에 대한 일차적 원인이다.

제3장에서는 세법과 회계기준이 각각 만들어 내는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의 차이에 대해서 고찰한다. 경영자가 의도적으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양자의 차이는 세법과 회계기준의 차이가 100%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실제로 양자의 차이에는 경영자의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의도가 개입한다. 경영자가 조세회피나 이익조정을 하는 경우에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더욱 커지게 된다. 제3장에서 경영자의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유인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위와 같이 제2장과 제3장을 통해서 앞선 [그림 I-1]에서의 점선에서 볼 수 있는 관련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세법과 회계기준 일치에 대한 효익과 비용

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한다. 일치도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효익의 원천은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상충관계이다. 즉, 경영자는 당기순이익을 조정하면서 과세소득 증가로 인한 조세비용을 우려하며 반대로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면서 당기순이익 감소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을 우려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요인은 서로 상쇄하는 효과를 보이게 되는데 이것을 조세비용과 재무보고비용 간의 상충관계라고 부른다. 우선은 여러 특수한 상황에서 경영자가 이러한 상충관계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내리는지를 확인해볼 것이며 다음으로는 일치도가 경영자의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실증 증거를 찾아볼 것이다. 반대로 일치도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정보가치의 손실이다. 과세소득은 당기순이익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가치를 갖는데 이는 세법이 회계기준과는 다른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측정하고자 하면서 생긴 부산물이다. 따라서 일치도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정보가치는 줄어들게 된다. 또한 일치도가 높아지면 세법과 회계기준은 서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에 따라 각자 갖고 있는 고유의 목적을 실천하는 데 장애를 받게 된다. 어찌 보면 이러한 영향의 부작용은 회계기준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일치도가 높아지면 당기순이익의 품질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는 이런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제4장에서는 앞선 [그림 I-1]에서의 실선에서 보여주는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제5장에서는 세법과 회계기준의 관계 설정에 대한 미국에서의 논란을 소개하고 미국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본다. 우선 Desai 교수가 말하는 세법과 회계기준 일치의 주장에 대해서 논의한다. 그는 1990년대부터 만연되기 시작한 이익조정과 조세회피를 보고 이는 세법과 회계기준 분리의 폐해임을 절감하면서 양자의 일치를 주장한 대표적 인물이다. 다음으로는 일치론 주장에 대한 반론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란 속에서 미국은 어떤 대응 방안을 강구했는지를 살펴본다. 대응 방안의 핵심은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대

한 설명을 강화하고 이를 과세당국과 자본시장 참가자들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은 세법과 회계기준이 서로 독립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전 세계적으로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가 가장 낮은 국가로 분류된다. 이러한 국가에서 벌어진 일치도 논쟁은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의 효익과 비용을 다시 한 번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대응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6장은 본 보고서의 결론적인 성격을 갖는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한 논의를 IFRS 도입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명백하게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회계와 세법을 분리하는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회계와 세법이 분리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앞으로 법인세법을 어떤 방식으로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장을 담는다. 일시적인 개정보다는 단기, 중·장기, 장기로 구분한 단계적 추진 전략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리고 회계와 세법이 분리되었을 경우의 가장 바람직한 법인세법의 모습에 대해서 토의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완전하게 공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 주장으로 담게 된다.

제7장은 이번 보고서의 결론 부분인데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전반적인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II.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은 기업실체의 일정기간 동안의 이익을 측정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회계기준에서 산출하는 당기순이익과 세법에서 산출하는 과세소득이 지향하고 있는 이익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이다. 회계기준과 세법이 공통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진실한 이익은 경제적 이익이다. 그러나 경제적 이익을 측정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회계기준과 세법은 부분적으로 서로 다른 목표를 갖고 있다. 회계기준에서는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당기순이익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수단 중의 하나일 뿐이다. 이에 비하여 세법에서는 납세자의 조세채무를 산출하기 위한 근거로 과세소득을 이용하는데 과세소득은 다른 기준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본장에서는 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차후에 있게 될 회계기준과 세법을 과연 일치시켜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본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절에서는 세법과 회계기준에서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본다. 경제적 이익은 개념적인 것이며 현실적으로 완전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제2절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원칙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주로 발생주의 모형과 현금주의 모형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수정된 모형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제3절에서는 세법과 회계기준의 차이점의 원천에 대해서 알아보 고자 한다. 경제적 이익을 측정하고자 한다는 공통의 목표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왜 두 기준이 서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검토 한다.

제4절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법과 우리나라가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K-IFRS)을 비교하여 서로간의 차이점을 알아보 고자 한다. 이러 한 검토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법인세법과 K-IFRS가 어느 정도 일치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더 이상 양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인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이번 장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내린다.

1. 경제적 이익(Economic Earnings)

특정기간 동안 기업실체의 경제적 이익은 그 기간 동안의 현금흐름 에 기업가치의 변동을 더한 값으로 정의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표 현된다.²⁾

$$E_t = CF_t + (V_t - V_{t-1})$$

E_t : t 기의 경제적 이익

CF_t : t 기의 현금흐름(현금유입 - 현금유출)

V_t : t 기 말의 기업가치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의 개념을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 서는 경제적 이익을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의하는 단일한 숫자로 측정 할 수 있어야 한다. 위 식에서 t 기의 현금흐름은 객관적으로 측정가능

2) 이는 Beaver(1998)에서의 정의에 따른 것이다.

하다. 문제는 기말의 기업가치 V 인데 기업가치의 측정이 경제적 이익의 이용 가능성을 결정하는 데 핵심이 된다.

t 기 말의 기업가치는 현재가치 관점에서 향후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정의할 수도 있으며 공정가치 관점에서 기말 현재 기업의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볼 수도 있다. 만일 기업을 둘러싼 시장이 완전하다면(perfect and complete)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측정한 기업가치는 서로 동일하며 어떤 관점을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객관적인 숫자로 측정될 수 있다.³⁾ 그러나 완전한 시장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가치 관점에서 측정된 기업가치와 시장가격 관점에서 측정한 기업가치는 서로 같지 않다. 따라서 기업가치를 단일한 숫자로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기대가 이해관계자마다 같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재가치도 이해관계자마다 달라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객관적인 단일한 숫자로 현재가치를 측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셋째, 불완전한 시장에서는 모든 재화나 용역이 시장이 거래되지 않으며 거래비용으로 인하여 구입가격과 처분가격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단일한 시장가격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경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회계기준이나 세법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측정하는 것을 포기하기보다는 우회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다음 절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불완전하게라도 측정하기 위한 여러 이익측정 모형들에 대해서 소개한다.

3) Beaver(1998)를 참조하십시오.

2. 장부상 이익(Book Income)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적 이익을 완전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회계기준이나 세법에서는 여러 가지 대체적인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측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대상으로 불완전하게 측정된 이익을 장부상 이익(book income)이라고 부른다.

경제적 이익은 현금흐름과 기업가치의 변동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 중 현금흐름은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장부상 이익이 경제적 이익을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는가는 기업가치 변동을 얼마나 잘 측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를 위하여 장부상 이익은 기업의 가치를 일괄적으로 측정하기보다는 개별자산(부채)으로 분해하여 각각의 자산과 부채의 가치를 측정한 후 이의 합계를 기업가치로 보고자 한다. 자산이나 부채는 현금의 유입이나 유출의 원인이 되는 기본적인 단위라고 말할 수 있으며 기업 외부와 거래의 기본적 단위가 된다. 이는 기업가치 전체에 대한 시장가격이나 현금흐름을 측정하는 것보다는 개별자산이나 부채 단위로 시장가격이나 현금흐름을 측정하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장부상 이익을 측정함에 있어서 기업가치 변동의 측정 문제는 다시 특정 시점에서의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측정하는가의 문제가 된다. 이 때 자산과 부채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측정된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 통화나 자기앞수표와 같은 현금과 보통예금과 같이 제약 없이 현금으로 교환 가능한 자산

명목가치 평가자산(부채):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을 미래 수입(지출)될 현금의 가액으로 하는 자산이다. 미래 수입(지출)될 현금이 확

II.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 37

정되어 있으며 현금수입(지출) 기간이 짧아서 수입(지출)될 현금의 명목가치와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자산(부채)이다.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 등과 같은 자산과 부채가 여기에 해당한다.

취득원가 평가자산(부채):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이란 자산의 취득시점에서의 거래가액이다. 취득원가 평가자산은 감가상각자산과 비감가상각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감가상각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며 비감가상각자산은 취득원가를 그대로 장부가액으로 한다. 재고자산이나 토지 등은 비감가성 자산에 속하며 기계장치, 건물 등은 감가성 자산에 속한다. 또한 취득원가 평가부채는 취득원가를 부채의 조달가액으로 평가하며 조달가액과 만기상환가액 간의 차액을 상각한 후 잔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취득원가 평가자산은 자산으로부터 미래 현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자산이 기업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경우이며 취득원가 평가부채는 미래 현금유출이 계약상 고정되어 있는 경우이다. 장기차입금이나 사채 등이 여기에 속한다.

현재가치 평가자산(부채):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을 미래 현금유입(유출)의 현재가치로 계상하는 자산(부채)이다. 미래 현금유입(유출)이 계약상 고정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될 수 있으며 명목가치와 현재가치의 차이가 큰 경우이다. 채권과 같은 자산이나 사채, 차입금과 같은 부채가 여기에 속한다. 또한 충당부채와 같이 미래 현금유출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도 여기에 속한다.

공정가치 평가자산(부채): 자산(부채)의 시장가격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해당 자산과 부채가 거래되는 활성화된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투자주식과 같은 자산이 여기에 속한다.

자산과 부채를 위와 같이 구분한다면 이러한 구분에 따라 장부상 이익을 측정하기 위한 모형들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현금주의 모형

현금주의 모형에서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특정기간 동안의 이익은 그 기간 동안의 순현금흐름과 일치하며 기업가치 변동은 인식되지 않는다. 현금주의 모형에 따른 장부상 이익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text{장부상 이익(1)} = \text{현금유입} - \text{현금유출}$$

현금주의 모형을 다소 확장하면 현금 및 현금성자산 외에 명목가치 평가자산과 부채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이는 명목가치 평가자산과 부채도 대부분 현금화하는 데 따른 제약이 상당히 작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현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장된 현금주의 모형에 따르면 장부상 이익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text{장부상 이익(2)} = \text{현금주의 이익} + (\text{명목가치 평가자산} \cdot \text{부채의 증감})$$

즉, 장부상 이익(2)에서는 신용매출과 같이 현금유입이 없어도 매출채권과 같은 명목가치 평가자산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익이 증가하며 반대로 급여가 미지급되는 경우와 같이 현금유출은 없지만 미지급 급여와 같은 명목가치 평가부채가 증가한 경우에는 이익이 감소한다.

나. 발생주의 모형

발생주의란 수익과 비용의 인식 시점에 관련된 원칙을 말하는 것인데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을 현금유입이나 유출에 의하여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흐름의 원인이 되는 경제적 사건의 발생에 기초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생주의에 의하면 자산과 부채는 수익과 비용의 인식 시점과 현금의 유출입 시점 간의 차이에 의하여 인식된다. 발생주의에 의하면 이익은 당기 중 인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결정되며 이러한 이익과 현금흐름 간의 차이는 자산이나 부채로 기록된다. 그러나 발생주의에 의한 이익을 재무상태표 중심으로 다시 정의한다면 이익은 당기의 현금흐름(현금자산의 증가 혹은 감소)에 자산, 부채의 증감을 가감한 것으로 다시 정의되며 이는 개념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산출하는 과정과 동일하다. 여기에서 자산, 부채의 증감을 발생액이라고 부른다.

1) 엄격한 발생주의: 취득원가 모형

발생주의에 의하여 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핵심적인 원칙은 수익실현과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다. 수익실현의 원칙은 수익의 인식 시점을 정하기 위한 원칙이며 수익비용대응 원칙은 비용의 인식 시점을 정하기 위한 원칙이다.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이므로 결국 수익실현과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은 발생주의에서 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원칙이다.

수익실현의 원칙이라고 함은 수익은 현금유입 시점이 아닌 현금유입의 결정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 한다는 원칙이다. 이때 결정적 사건은 대가의 확정과 의무의 종료이다. 이 때 대가의 확정이란 실제로 현금수입이 있었거나 아니면 미래 수취할 현금이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은 비용은 현금지출 시점이 아닌 현금지

출의 대가인 수익이 실현된 시점에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모든 비용은 일단 현금지출 시점에서 그 금액은 확정되지만 그 인식 시점은 현금지출에 상응하는 수익이 실현될 때라는 것이다. 따라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하에서 모든 비용은 의도한 수익의 실현 시점까지 자산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자산은 미실현비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발생주의 모형을 엄격하게 고수한다면 모든 수익이나 비용은 수익의 실현 시점까지는 인식할 수 없다. 따라서 미실현이익이나 손실도 인식되지 않는다. 이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취득원가로만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발생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는 취득원가 모형이 된다. 따라서 취득원가 모형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현금과 현금성 자산 및 명목가치 평가자산(부채)과 취득원가 평가자산(부채)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취득원가 모형에서 장부상 이익은 다음과 같이 측정할 수 있다.

$$\text{장부상 이익(3)} = \text{장부상 이익(2)} + (\text{취득원가 평가자산} \cdot \text{부채의 증감})$$

토지와 같이 현금유출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상 이익(2)은 감소한다. 그러나 취득원가 모형에서는 토지는 기업실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미래현금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자산의 증가로 구분한다. 따라서 장부상 이익(3)은 변동하지 않는다.

2) 확장된 발생주의: 공정가치 모형

위에서 살펴본 취득원가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미실현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엄격한 발생주의는 현금의 불확실성과 시장의 불완전성하에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최선의 대안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자산과 부채의 경우에는 비교적 완전한 시

II.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 41

장이 존재할 수 있으며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게 된다. 이러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는 발생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장부상 이익과 경제적 이익 간의 회피 가능한 측정오차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활성화된(active) 시장이 존재하고 미래 현금흐름이 예측 가능한 자산, 부채에 대해서는 수익실현과 수익비용대응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 경제적 이익에 가깝게 자산과 부채를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하에서는 적용되는 발생주의는 전통적인 발생주의의 개념을 확장한 것이므로 확장된 발생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확장된 발생주의하에서는 취득원가 모형에서와는 달리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인식하고 이에 따라 미실현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가치 모형에서는 장부상 이익이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

$$\text{장부상 이익(4)} = \text{장부상 이익(3)} + \text{공정가치 평가 자산} \cdot \text{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다. 모형 간의 비교

앞서 장부상 이익결정을 위한 세 가지의 모형을 살펴보았다. 이번 절에서는 이들 모형의 장·단점을 비교해보도록 한다.

1) 경제적 사건이 이익에 반영되기까지의 시차

현금주의 모형과 발생주의 모형 중 취득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을 상호 비교한다. 우선 세 가지 모형은 경제적 사건이 이익에 반영되는 시차 면에서 각각 차이가 있다. 우선 취득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을 비교한다면 가장 큰 차이는 미실현보유손익의 반영 여부이다. 미실현보유손익은 자산의 기대현금흐름의 변동으로 인한 자산가격의 변동으로 발생한 손익이다. 공정가치 모형에서는 미실현보유손익이

이익에 반영되지만 취득원가 모형에서는 미실현보유손익은 실현 시점까지 이익에 반영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공정가치로 평가되는 자산과 부채의 미래 기대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공정가치 모형에서는 이로부터 생긴 자산과 부채의 가치변동을 손익에 반영하는데 이것은 취득원가 모형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보유손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취득원가 모형에서는 이러한 미실현보유손익은 실현 시점까지 인식되지 않는다. 미실현보유손익이 취득원가 모형에서 손익에 반영되는 시기는 이러한 자산을 취득원가 모형에서 어떤 자산으로 구분하고 있었는가에 달려있다. 만일 공정가치 모형하에서의 공정가치 평가자산을 취득원가 모형하에서는 취득원가 평가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다면 미실현보유손익은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서 손익에 반영되거나 수익의 실현 시점에서 일시에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취득원가 모형에서는 공정가치 모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손익의 인식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된다. 마찬가지로 현금주의 모형에서는 취득원가 모형에서 실현된 이익이 최종적으로 현금화될 때까지 이익으로 보지 않게 되므로 가장 늦게 이익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 사건이 이익에 반영되는 시차를 보면 공정가치 모형 > 취득원가 모형 > 현금주의 모형 순이 될 것이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이익을 측정하든지 전체 기간을 통해서 본다면 이익의 총량이 아닌 기간별 이익에 따른 차이만이 생기는 것이다.

2) 측정의 객관성

측정의 객관성이란 장부상 이익을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단일한 숫자로 측정 가능한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 현금주의 모형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명목가치 평가자산(부채) 등으로 자산과 부채를 한정하고 있어서 가치평가가 가장 용이하다. 반면에 취득원가 모형이나 공정가치 모형에서는 취득원가 평가자산(부채)이

나 공정가치 평가자산을 구분하거나 이들의 크기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자별로 다른 숫자를 산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취득원가 모형이나 공정가치 모형에서는 장부상 이익의 객관성이 현금주의 모형에서 산출된 장부상 이익의 객관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정의 객관성 정도를 비교하면 현금주의 모형 > 취득원가 모형 > 공정가치 모형의 순서가 될 것이다.

이번 절에서는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경제적 이익을 정의하고 현실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우회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이익측정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이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측정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서 회계기준과 세법에서의 이익측정 모형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보게 될 것이다.

3. 회계기준과 법인세법 차이의 원천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은 모두 경제적 이익을 측정하기 위한 우회적 방법으로 장부상 이익을 측정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장부상 이익을 구하는 방법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번 절에서는 회계기준에서 산출한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에서 산출한 과세소득 간의 차이가 있게 되는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서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서는 어떠한 이익측정 모형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도 토의하고자 한다.

가. 목표

회계기준에서 당기순이익을 산출하는 목적은 특정 실체의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반면에 세법에서 산출하는 과세소득의 목적은 과세당국에서 납세자의 조

세채무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비록 이익이라는 동일한 대상을 측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측정에 숨어 있는 동기는 회계기준과 세법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당기순이익은 기업이라는 경제적 실체의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되어야 한다.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주로 현재와 미래의 투자자들이다. 이들은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이나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들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투자하고 있는 혹은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미래 성과를 알아보려고 한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기업의 미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일차적 정보로서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과세소득은 과세당국이 납세자인 기업실체의 조세채무를 결정하는 산출기초이다. 즉, 과세소득은 납세자의 상대적인 부담 능력에 따라 조세채무를 배분하는 기준이다(Shackelford et al. 2007). 그리고 궁극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법인납세자가 아닌 개인납세자라는 점에서 볼 때 법인이 부담하는 조세는 개인에 대한 조세부과를 대체하는 원천징수 개념에 가깝다(Shaviro, 2009). 따라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조세채무는 미래 성과가 아닌 과거 성과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에서는 기업의 미래보다는 과거의 성과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과세소득은 기업의 과거 기간 동안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은 일정기간 동안의 이익을 측정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당기순이익은 기업의 미래 성과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 반면에 과세소득은 기업의 과거 성과를 보여주려고 한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목표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과거의 성과를 통해서 미래의 성과를 추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 목표가 완전하게 다른 것은 아니다.

경제적 이익은 과거의 성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과세소득으로 적

II.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 45

합하지만 기업의 미래 경제적 이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당기 순이익으로도 적합하다. 당기의 경제적 이익이 기업의 미래 경제적 이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모든 기업마다 기업 특유의 기간이익률이 존재하는데 이는 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하며 외부에서는 관찰할 수 없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가 성립한다면 외부의 투자자들은 현재 기간의 경제적 이익을 관찰함으로써 기업 특유의 이익률을 알 수 있으며 기업 특유의 이익률을 통해서 미래 경제적 이익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이익은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의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적 이익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우회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장부상 이익을 측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법과 회계기준의 목표가 다른 것은 결과적으로 장부상 이익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법인세법은 조세정책의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세법은 단지 세수 확보만이 아니라 소득재분배나 특정한 경제활동을 촉진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점에서 과세소득에는 경제적 이익과는 무관한 소득이 포함되거나 반대로 경제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과세소득에서 제외되기도 한다.⁴⁾

나. 정보이용자

당기순이익은 주주와 채권자들과 같이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4) Shaviro(2008)에 의하면 회계에서도 정책적 목표가 개입할 수 있다고 한다. Enron 사태 이후 스톡옵션의 비용화와 관련된 일련의 논란들이 그 예이다. 즉, 미국의 경우 경영자에 대한 스톡옵션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보고하지 않아 왔는데 Enron 사태 이후 의회가 개입하여 스톡옵션을 비용처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그 외에도 후입선출법이나 합병에 대한 지분풀링법 사용 여부에 논란을 들 수 있다. Shaviro(2008)는 이를 도구회계(Instrumental accounting)라고 부른다. 그렇지만 정책적 목표가 개입하는 정도는 당연히 세법에서 훨씬 크다.

외부의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이다. 반면에 과세소득은 오직 과세당국에만 보고된다. 외부의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자본시장은 기업의 정보에 대해서 효율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자본시장의 효율성은 정보의 효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에 관한 모든 정보는 즉각적으로 모든 투자자들에게 알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자본시장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만의 정보를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초과이익률을 올릴 수 없다. 물론 자본시장이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것은 재무관리나 회계학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본시장이 완벽한 의미에서 효율적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효율적이라는 것이다.⁵⁾

반대로 납세자인 기업과 과세당국 사이에서는 정보의 효율성을 가정할 수 없다. 비록 과세당국은 세무조사와 같은 권한을 활용하여 상당부분 기업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기업 내부의 정보에 대해서 거의 알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서 잠재적으로 전제하는 정보불균형 정도의 차이를 가져온다. 회계기준에서 산출하는 당기순이익은 경영자와 외부투자자들 간에 정보불균형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수단으로 간주된다. 즉, 이는 경영자가 알고 있는 내부정보를 외부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방편의 하나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을 외부투자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장효율성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세법에서는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의 정보효율성을 가정하지 않는다. 오직 과세당국에만 제공되는 과세소득은 과세당국이 납세자로부터 제공받는 유일한 정보이며 경영자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5) 시장효율성에 대한 실증적 증거에 대한 검토는 Beaver(1998)를 참조하십시오.

다. 보고단위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은 모두 기업실체의 특정기간 동안의 이익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기업실체와 특정기간의 범위는 서로 간에 달라질 수 있다. 이익의 보고단위인 기업실체는 경제적 실체를 말한다. 즉, 법적 단위는 서로 다를지라도 경제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실체로 구분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은 개념적으로 동일하다. 즉, 많은 국가에서는 회계기준에서의 연결납세와 동일한 개념하에 법인세법에서 연결납세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결납세를 실제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적용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비록 연결납세를 시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선택할 수 있는 법인의 자격에 제한이 있으며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어서 제한 없이 강제적으로 모든 법인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회계기준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회계기준에서는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결범위에 포함이 되는 반면에 법인세법에서는 100%를 소유하는 경우에만 연결납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⁶⁾

또한 법인세법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 과세관할의 문제가 있다. 즉, 과세당국은 자신의 관할지역 내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은 단지 과세관할 내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만 적용된다.⁷⁾ 이에 반하여 회계기준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범위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번 절에서는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이 궁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6) 우리나라 「법인세법」 제76조8 참조

7) 과세관할은 통상적으로 국가의 영역과 일치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간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소득을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으로 구분하고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 송금되기까지 과세를 이연한다.

측정하는 것을 지향하면서도 서로 동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그 이유는 경제적 이익을 산출하고자 하는 목표와 외부이해관계자 그리고 보고단위에서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차이를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법인세법과 회계기준은 이익을 결정하기 위한 모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목표 면에서 회계기준에서는 실체의 미래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실체의 정확한 과거 성과를 측정해서 이를 과세 기초로 삼는다는 것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는 미래 성과에 영향을 주는 현재의 경제적 사건을 가급적 빨리 성과에 반영하기보다는 과거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에 비중을 두게 된다. 반대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경제적 사건의 영향을 빨리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공정가치 모형에 따라 이익을 결정하도록 만들며 반대로 법인세법에서는 취득원가 모형이나 현금주의 모형을 이용하게 된다. 이는 외부이해관계자 면에서의 차이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어느 정도의 측정 오차가 있더라도 시장효율성에 의해서 이러한 오차가 수정될 수 있지만 법인세법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공정가치 모형의 단점인 측정의 신뢰성은 기업회계기준보다 법인세법에서 훨씬 심각한 문제점이 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공정가치 모형을 채택할 수 있지만 법인세법에서 이를 선택하기 어렵다. 보고단위 면에서의 차이는 이익측정 모형의 적용상 차이를 가져오기보다는 이익의 측정 범위가 달라지는 영향을 미친다.

다음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K-IFRS)을 서로 비교하여 이러한 원천적인 차이점으로부터 어떠한 구체적인 차이가 유발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4. 우리나라에서의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

앞선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은 경제적 이익을 측정 대상으로 한다는 근본적인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추구하는 목표와 이해관계자 그리고 보고단위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세부적으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 간에 여러 형태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개입하는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 허용 범위에 대하여 세법은 회계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외에도 정책적 목표가 개입하는 정도, 이중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 등에서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고 실제 우리나라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재량적 판단의 허용에 따른 차이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는 대부분 당기순이익이나 과세소득을 보고함에 있어서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을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다. 회계기준에서는 세법에 비해서 당기순이익을 보고하는 데 따른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기순이익은 기업의 미래 성과를 보여주는 정보 중 하나이다. 외부투자자들은 기업의 미래 성과를 다양한 재무적 혹은 비재무적 정보를 통해서 판단하는데 당기순이익은 그런 정보 중 하나이다. 반면에 과세소득은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조세채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정보이다. 따라서 회계기준은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 영역이 넓어지는 것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하지만 세법에서는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을 가급적 억제하고자 한다.

둘째, 당기순이익은 자본시장의 외부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이다. 자본시장은 정보에 대하여 효율적인 것으로 보인다. 정보에 대해 효율적이라는 것은 경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영자가 임의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적용하여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것처럼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은 당기순이익 증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경영자에게 내부정보를 이용한 기회주의적 행동을 허용하기보다는 내부정보를 투자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을 허용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회계기준에서는 당기순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하는 것을 폭넓게 허용한다.

셋째, 회계기준은 자본시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반면에 세법은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자본시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기장 능력과 회계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본시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 기업들은 스스로의 기장 능력이나 회계 인력이 부족하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세당국에서는 납세자인 기업들이 과세소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재량적 판단을 개입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가는 이익측정 모형의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재량적 판단을 폭넓게 허용한다는 것은 측정의 신뢰성보다는 경제적 사건의 영향을 신속하게 보고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현금주의나 취득원가 모형보다는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하게 된다. 반대로 재량적 판단을 엄격하게 제한하게 되면 공정가치 모형보다는 취득원가 모형이나 현금주의 모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 허용 정도의 차이는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IFRS)에서 재량적 판단의 허

용 정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차이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산·부채의 평가

자산·부채의 평가에 대해서 회계기준과 세법은 확연한 입장의 차이를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K-IFRS에서는 공정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산과 부채의 경우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기타의 자산은 취득원가를 장부가액으로 하지만 장부가액은 자산의 회수가능액 이상으로 나타낼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이에 반하여 법인세법에서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자산과 부채를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원칙을 지킨다. 이러한 양자의 차이는 경영자의 재량권을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회계기준과 세법의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를 가장 뚜렷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즉, 회계기준에서는 공정가치와 회수가능액에 대하여 경영자가 판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평가손익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세법에서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대해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 따라서 자산과 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타난 양자의 차이는 일시적 차이가 되는데 손익 자체의 크기가 아닌 기간귀속의 차이를 보여주게 된다.

가)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이슈가 있다. 하나는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K-IFRS 제1002호에서는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한다(문단 9).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재고자산으로부터 실현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추정일 현재 사용 가능한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야 하는

데 보고기간 후 사건이 보고기간 말 존재하는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여주는 경우에는, 그 사건과 직접 관련된 가격이나 원가의 변동을 고려하여 추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문단 30). 그리고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 재고자산의 보유 목적도 고려하여야 한다(문단 31).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순실현가치의 하락을 예상할 수 있다.

- ①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
- ②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진부화된 경우
- ③ 판매가격이 하락한 경우
- ④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에 대해서는 K-IFRS 제1002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개별법, 평균법, 선입선출법이 있다. 우선 개별법은 식별되는 재고자산별로 특정한 원가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외부 매입이나 자가제조를 불문하고,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분리된 항목에 적절한 방법이며 통상적으로 상호교환 가능한 대량의 재고자산 항목에 개별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문단 24). 개별법을 적용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문단 25).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에서는 위와 같은 회계기준에 따른 저가법을 신고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수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만일 기업에서 K-IFRS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에 법인세법과의 충돌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단위원가 결정방법으로 법인세법에서는 K-IFRS에서 언급하고 있는 개별법, 평균법, 선입선출법 외에 후입선출법도 사용 가능하다.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사전에 과세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입선출법, 신고하지 않은 방법을 이용한 경우에는 기업이 이용한 결정방법과 선입선출법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을 보면 기업이 K-IFRS를 준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 법인세법과 충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금융자산

(1) 정의와 구분

K-IFRS 제1032호에서는 금융상품을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으로 정의한다(문단 11). 여기에서 금융자산은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문단 11).

- ① 현금
- ②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 ③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
 - (ㄱ)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 (ㄴ)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
- ④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이하 '자가지분상품'이라 한다)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 (ㄱ) 수취할 자가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상품
 - (ㄴ) 확정 수량의 자가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자가지분상품에는 다음의 금융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⑤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
- ⑥ 발행자가 청산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

- ⑦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계약인 금융상품

K-IFRS 제1039호를 보면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이 4가지 범주로 구분한다(문단 9).

- 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 (ㄱ)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다.
 - (ㄴ) 최초인식 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다.
- ②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의 금융자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ㄱ) 금융자산의 최초인식 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경우
 - (ㄴ) 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경우
 - (ㄷ) 금융자산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 ③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 다만, 다음의 비파생금융자산은 제외한다.
- (ㄱ)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매각할 의도가 있는 금융자산(이 경우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한다)과 최초인식 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 (ㄴ) 최초인식 시점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ㄷ) 채무자의 신용악화를 제외한 다른 이유 때문에 최초 투자액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금융자산. 이 경우에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④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다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

(ㄱ) 대여금 및 수취채권

(ㄴ) 만기보유금융자산

(ㄷ)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 장부금액의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문단 43). 최초인식 후 파생상품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문단 46). 여기에서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인데 매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원가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문단 9). 다만, 다음의 금융자산은 제외한다(문단 46).

- ① 대여금 및 수취채권. 이러한 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 ② 만기보유금융자산. 이러한 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 ③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과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 이러한 자산은 원가로 측정한다.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금융자산을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는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은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42조에서는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융자산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를 보면 법인이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법인세법에서도 K-IFRS에 따라서 장기할부매출채권을 상각후원가로 평가한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K-IFRS와 법인세법 간의 차이에 따라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장기할부매출채권을 제외한 장기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경우, K-IFRS는 상각후원가로 평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취득원가로 평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각후원가와 취득원가 간의 차이만큼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 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둘째, 장기채권과 같은 만기보유금융자산에 있어서도 K-IFRS에서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것을 규정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원가로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양자의 차이만큼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 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3) 손상차손

K-IFRS 제1036호에서는 손상차손을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문단6).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한다. 손상차손의 정의를 볼 때,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대손상각과 평가손실의 개념을 모두 의미한다. 대손상각은 대여금이나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다. 이에 비해 평가손실은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하락함으로써 발생한다. K-IFRS에서는 대손상각과 평가손실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대손상각과 평가손실을 구분한다. 즉,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엄격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대손상각을 인정하고 있으며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부인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세법에 따라 대손상각과 평가손실을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대손충당금은 채권에 대해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금액이다.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이나 대여금과 같은 화폐성 자산에 대한 평가계정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수익비용대응 원칙에 따라서 현재 실현된 수익에 대해 미래 예상 가능한 비용을 대응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충당부채는 미래 경제적 자원의 유출 예상액인 반면에 대손충당금은 미래 경제적 자원의 유입 감소액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손충당금은 넓은 의미에서 충당부채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다. 충당부채와 마찬가지로 회계기준에서는 대손충당금을 폭넓게 인식하도록 하는 반면에 법인세법에서는 대손충당금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양자 간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대손충당금에 대한 회계기준을 보면 K-IFRS 제1039호에서는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상각후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및 매도가능 금융자산은 손상차손을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문단 58). 여기에서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이란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채권 등을 의미하며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및 매도가능금융자산이란 활성화된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주식 등을 의미한다. 이를 보면 비록 손상차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매출채권이나 대여금 등과 같은 계정과목에 대해서 대손상각과 유사한 비용을 인식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K-IFRS 제1039호에서는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조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손상차손이 발생한 것이라고 규정한다(문단 59). 그리고 이러한 객관적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 ①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② 이차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 ③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④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됨
- ⑤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화시장의 소멸
- ⑥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는 없지만, 최초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 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 가능한 자료

II.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 59

위와 같은 조건을 보면 비록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말하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손상차손의 인식은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회계기준에 비하여 법인세법에서는 보다 엄격한 대손충당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법인세법」 제19조2에서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과 같은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손금산입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2).

- ①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②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③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 ④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금금
-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⑥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⑦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 ⑧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⑨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⑩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

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 ⑪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 ⑫ 금융회사 등의 채권 중 다음 각목의 채권
 - (ㄱ)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ㄴ) 금융감독원장이 각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 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위의 규정을 K-IFRS에서 제시하고 있는 손상차손 인식조건과 비교하면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인세법에서는 비록 위와 같은 대손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다(「법인세법」 제34조).

또한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평가손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2조에서는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다만 「법인세법」 제42조에서는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에 대해서는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대상주식에 대하여서는 엄격한 조건을 적용하는데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주식은 다음을 의미한다.

- ①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 ②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 ③ 비상장법인 중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이에 따라 경영자가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상 대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유발하게 된다.

다) 유형자산

(1) 감가상각비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시간의 흐름이나 사용에 따라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익의 감소분을 측정하여 비용으로 보고하는 것을 감가상각비라고 한다. 감가상각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간별로 배분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이러한 개념은 회계기준과 세법에서 모두 동일하게 채택된다. 다만 취득원가를 기간별로 배분함에 있어서 얼마의 기간 동안 배분할 것인가(내용연수), 어떤 방법으로 배분할 것인가(감가상각방법)를 정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을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계기준과 세법은 다른 입장을 취한다. 즉, 회계기준에서는 내용연수와 감가

상각 방법에 대해서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을 비교적 폭넓게 허용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가급적 경영자의 재량권을 제한하고자 한다.

K-IFRS 제1016호에서는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한다(문단 59). 또한 동 규정에서는 유형자산은 기업의 자산관리 정책에 따라 특정 기간이 경과되거나 자산에 내재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특정 부분이 소비되면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내용연수는 일반적 상황에서의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을 수 있으므로 유사한 자산에 대한 기업의 경험에 비추어 해당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추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에서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 및 생산량비례법이 있다고 규정한다(문단62).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은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 선택하고, 예상 소비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 회계기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회계기준을 보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위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에 대해서 K-IFRS에서는 특정한 방법이나 유형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방법은 근본적으로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로 하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

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 정액법
- ②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 정률법 또는 정액법
- ③ 광업권: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 ④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생산량비례법 · 정률법 또는 정액법

이러한 법인세법 규정을 보면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하는 것을 거의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법인세법」 제23조에서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결산조정의 원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K-IFRS와 법인세법의 규정을 비교하여 보면 K-IFRS에 따라서 경영자가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손상차손

K-IFRS 제1036호에서는 자산의 손상차손에 대해 규정한다. 동 규정에서는 자산의 장부금액이 자산의 매각 또는 사용으로 회수될 금액을 초과한다면, 자산은 그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하며,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문단 1). 매 보고기간 말에 자

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만일 그러한 징후가 나타난다면 정식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한다(문단 8). 자산손상을 나타내는 징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문단 12).

- ① 회계기간 중에 자산의 시장가치가 시간의 경과나 정상적인 사용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준보다 유의적으로 더 하락하였다.
- ② 기업 경영상의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③ 시장이자율(시장에서 형성되는 그 밖의 투자수익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회계기간 중에 상승하여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중요하게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 ④ 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당해 시가총액보다 크다.
- ⑤ 자산이 진부화되거나 물리적으로 손상된 증거가 있다.
- ⑥ 회계기간 중에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자산의 사용범위 및 사용방법에서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는 자산의 유희화, 당해 자산을 사용하는 영업부문을 중단하거나 구조조정하는 계획, 예상 시점보다 앞서 자산을 처분하는 계획 그리고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 ⑦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내부보고를 통해 얻을 수 있다.
- ⑧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투자자는 그 투자로부터의 배당금을 인식하고 다음 중 하나의 증거가 이용가능하다.

II.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 65

- (ㄱ) 별도재무제표에 있는 투자의 장부금액이 연결재무제표에 있는 관련 영업권을 포함한 피투자자의 순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한다.
- (ㄴ) 배당이 선언된 기간에 배당금이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총포괄이익을 초과한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없으면 정식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이나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경우에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한다(문단 10).

회수가능액에 대해서는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정의한다(문단 18). 그렇지만 회수가능액을 측정할 때에 항상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모두를 추정할 필요는 없으며 순공정가치나 사용가치 중 하나의 금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면 자산이 손상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금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다(문단 19).

순공정가치에 대해서 K-IFRS에서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구속력 있는 매매계약을 통해 합의된 가격에서 자산의 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를 조정한 금액으로 정의한다(문단 25). 그러나 구속력 있는 매매계약이 없더라도 자산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된다면 순공정가치는 시장가격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이 되며 이 때 적절한 시장가격은 일반적으로 현행 매입호가라고 정한다(문단 26). 그리고 만약 현행 매입호가를 이용할 수 없다면 최근의 거래가격을 근거로 순공정가치를 추정할 수 있지만 최근 거래일과 추정일 사이에 경제적 상황이 유의적으로 변동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문단 26). 또한 자산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매매계약이나 활성시장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에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근거하여 순공정가치를 결정한다(문단 27).

사용가치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자산의 계속적인 사용과 최종 처분에서 기대되는 미래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을 추정하고 이러한 미래현금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는 단계를 거치는데(문단 31)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는 미래 현금유입과 유출의 추정이 되며 이는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문단 33).

- ① 현금흐름은 자산의 잔여내용연수 동안의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을 기초로 추정한다. 이 때 내부증거보다 외부증거에 더 큰 비중을 둔다.
- ② 현금흐름은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의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추정한다. 그러나 미래의 구조조정 또는 자산 성능의 향상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은 제외한다. 이러한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한 추정 대상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장 5년으로 한다.
- ③ 최근 재무예산/예측 대상 기간 후의 성장률은 고정되거나 계속 감소한다고 가정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하며, 이러한 성장률은 기업의 제품, 기업이 속한 산업, 기업이 영업을 하는 국가 및 자산이 사용되는 시장의 장기평균성장률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가하는 성장률을 사용하거나 장기평균성장률을 초과하는 성장률을 사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K-IFRS에서의 손상차손의 규정을 보면 인식과 측정에 대해서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이 크게 개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II.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 67

에 반하여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손상차손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다만 「법인세법」 제22조에서는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손상차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법인세법」 제42조에서는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평가손실 즉, 손상차손을 허용한다.

- ①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 ②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 등
- ③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 등

위와 같이 손상차손을 허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판단이 경영자에게 의존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명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회계상 손상차손을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인세법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손익의 귀속시기가 달라지는 일시적 차이이다.

라) 무형자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는 지출은 자산으로 구분해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자산이 반드시 물리적 형체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K-IFRS 제1038호에서는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문단 8). 또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개념체계에서는 자산의 존재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 형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무형자산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된다.

K-IFRS 제1038호에서는 무형자산을 개별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그리고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개별 취득한 무형자산은 직접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무형자산을 의미한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이란 합병이나 분할로 취득한 개별자산의 공정가치 합계액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대가인 영업권을 의미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으로 인한 지출 중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온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인식된 자산을 의미한다. 연구개발활동으로 인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 지출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한 후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의 비용으로 인식하고(문단 55) 개발단계에서의 지출은 다음의 6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문단 57).

- ①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 ②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③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④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 ⑤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 ⑥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K-IFRS 제1038호에서는 무형자산의 상각에 대해서도 규정한다. 동 규정에서는 무형자산을 한정내용연수와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것으로 각각 구분한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문단 89). 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한다(문단 90).

- ① 기업이 예상하는 자산의 사용방식과 자산이 다른 경영진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지 여부
- ② 자산의 일반적인 제품수명주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유사한 자산들의 내용연수 추정치에 관한 공개된 정보
- ③ 기술적, 공학적, 상업적 또는 기타 유형의 진부화
- ④ 자산이 운용되는 산업의 안정성과 자산으로부터 산출되는 제품이나 용역의 시장수요 변화
- ⑤ 기존 또는 잠재적인 경쟁자의 예상 전략
- ⑥ 예상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획득에 필요한 자산 유지비용의 수준과 그 수준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과 의도
- ⑦ 자산의 통제가능 기간과 자산사용에 대한 법적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예: 관련된 리스의 만기일)
- ⑧ 자산의 내용연수가 다른 자산의 내용연수에 의해 결정되는지의 여부

만일 무형자산이 내용연수가 유한한 것으로 구분되었다면 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야 한다(문단 97). 이 때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하는데 다만,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문단 97).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과 생산량비례법

이 있다(문단 98).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에 내재된 기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되는 소비 형태를 반영하여 선택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되는 소비 형태가 변동하지 않는다면 매 회계기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문단 98).

이러한 K-IFRS의 규정에 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감가상각이 가능한 무형자산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①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②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③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 ④ 댐사용권
- ⑤ 개발비
- ⑥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⑦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또한 위와 같이 규정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① 개발비: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 ②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

II.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 71

- ③ 「전과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과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 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주무관청에서 고시 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 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 액을 상각하는 방법
- ④ 기타의 무형고정자산: 정액법

이상을 보면 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의 인식 및 상각에 있어서 경영자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세법에서는 무형자산의 유형 및 내용연수, 상각방법에 대해서 경영자의 재량권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결과적으로 과세소득과 당기 순이익 간의 일시적 차이를 불러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금융부채

K-IFRS 제1032호를 보면 금융부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문단 11).

- 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
 - (ㄱ)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 (ㄴ)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 ②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 (ㄱ)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상품
 - (ㄴ)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기업이 동

일 종류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소유주 모두에게 주식인수권, 옵션 또는 주식매입권을 지분비율대로 비례하여 부여하는 경우, 어떤 통화로든 확정금액으로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취득하는 주식인수권, 옵션, 또는 주식매입권은 지분상품이다.

K-IFRS 제1032호에서는 금융자산과 마찬가지로 금융부채도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문단 43). 또한 최초 인식 후 모든 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문단 47). 여기에서 상각후원가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최초인식 시점의 측정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을 말하며 이때 손상차손이나 대손상각을 인식(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문단 9). 다만, 다음의 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 평가에서 제외한다(문단 47).

-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한 이러한 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공시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부채는 원가로 측정한다.
- ②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
- ③ 금융보증계약
- ④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

이러한 회계기준에 비하여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법」 제42조에서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

II.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 73

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최초 인식 이후 부채의 평가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서는 자산을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보면 장기할부매입에서 계상되는 장기매입채무의 경우에는 K-IFRS에서 정하는 상각후원가에 따른 장부계상을 허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에서는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채 발행 시 할인차금이 있는 경우에는 K-IFRS에 의한 상각후원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차이를 보면 장기할부매입채무나 할인 발행된 회사채의 경우를 제외하면 회계기준에서는 상각후원가를 장부가액을 정하고 있는 반면에 법인세법에서는 취득 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자의 차이가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 간의 일시적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바) 충당부채

K-IFRS 개념체계에서는 부채는 과거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

로 기대되는 현재의무로 정의한다(문단 49). 부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미래 유출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경제적 자원의 유출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이를 충당부채로 본다. 경제적 자원의 유출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 영역에 속한다. K-IFRS 제1037호에서는 충당부채의 인식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문단 14).

- ①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 ②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 ③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위의 인식 조건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충당부채를 인식하는가는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충당부채에는 판매보증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회계기준과는 달리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충당부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충당부채의 인식 여부에 대한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충당부채와 유사한 것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허용하고 있지만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점차 사라질 것이므로 향후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충당부채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K-IFRS에 의한 충당부채의 인식은 그대로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 간의 차이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

회계기준에서는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을 존중한다. 특히 외부의 제3자와 거래에서 결정된 가격은 공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외부의 제3자라고 하더라도 기업과 특수한 관계에 있으며 그 거래의 결과로 조세가 감소하였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 거래를 부인한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이를 부인하는지에 대한 회계기준과 세법의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회계기준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반면에 우리나라 「법인세법」 제52조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보면 우선 부당행위를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즉, 부당행위의 전제조건은 거래당사자와의 특수관계와 조세부담의 감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에서는 이러한 부당행위의 예를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 ①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 ②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 ③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 ④ 특수관계자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 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 ⑤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 ⑥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 ⑦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 ⑧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 ⑨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 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 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 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 ⑪ 위 조항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II.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 77

위 항목은 예시규정이기 때문에 법조문에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위의 예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법인세법」 제15조에서는 익금에 산입하는 별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한다.

- ①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 ②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 ③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 (ㄱ)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
 - (ㄴ)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위와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회계기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만일 법인세법에 의하여 부당행위로 지목받아서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라면 과세소득은 당기순이익과 달라진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차이의 성격에 따라 일시적 차이나 영구적 차이로 구분될 수 있다. 즉, 주주나 종업원에 대한 이익분여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영구적 차이가 되며 가지급금으로 구분된 차이는 차후에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 차이가 된다.

3) 업무무관경비와 과다경비

K-IFRS 재무제표 개념체계에서는 비용은 자산의 유출이나 소멸 또는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감소로서, 지분참여자에 대한 분배와 관

련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한다(문단 70). 또한 광의의 비용의 정의에는 기업의 정상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차손도 포함되는데 기업의 정상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예를 들어, 매출원가, 급여 및 감가상각비 등이다(문단 78). 이와 같은 회계기준에서 비용을 인식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제 조건은 정상영업 활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법인세법」 제19조에서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인세법의 규정은 사실상 회계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세법에서 말하고 있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관련된 것은 K-IFRS에서 말하고 있는 정상영업활동과의 관련성과 개념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인세법과 K-IFRS에서 사실상 동일하게 비용의 인식조건으로 업무관련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회계기준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단지 선언적인 것에 불과한 데 비하여 법인세법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손금의 유형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회계기준에서는 업무관련성에 대한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을 존중하고 있는 반면에 법인세법에서는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을 최대한 제약하기 위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법에서는 업무관련성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는 대신에 개별적으로 업무관련성을 언급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9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업무와 관련된 손금을 정의하고 있다.

II.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 79

- ①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백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 ② 광고 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5천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 ③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위 규정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손금을 보여준다. 반면에 「법인세법」 제27조에서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손금불산입한다고 명시하면서 구체적으로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과 위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①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
 - (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 (ㄴ)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 ② 다음에 해당하는 동산
 - (ㄱ)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 (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ㄷ) 기타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에서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로 다음과 같은 비용을 제시하고 있다.

- ①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 ②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 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 ③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 ④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 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의 개념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도 적용된다. 즉, 법인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이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생긴 추가적인 자금소요에 대한 이자를 추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법인세법」 제

2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①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②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ㄱ) 업무무관 자산
 - (ㄴ)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자금금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과다경비에 대해서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6조에서는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다경비는 사실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과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법에서 제시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① 인건비
- ② 복리후생비
- ③ 여비 및 교육·훈련비
- ④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 ⑤ 이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

과다경비 중 대표적인 것은 임원에 대한 여러 지출들이다. 법인의 임원은 회사의 지출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이들이 자신들에게 지급되는 경비를 임의로 결정하는 것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임원에 대한 보수가 임의로 지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과다경비로 취급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정관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보수의 경우와 유사하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리후생비가 법인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수혜자인 종업원들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은 복리후생비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의 대체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 제시한 것 외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를 열거하고 있다.

- ① 직장체육비
- ② 직장연예비

- ③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 ④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 ⑥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 ⑦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요약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와 과다경비는 개념적으로 회계기준이나 법인세법에서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을 존중하는 회계기준에서는 이러한 비용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비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만일 경영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경비나 과다경비에 해당된다면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 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상 실제 지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이러한 차이는 영구적 차이를 구성한다.

4) 접대비

회계기준에서는 접대비에 대한 언급은 없다. 반면에 법인세법에서 접대비는 직접적인 반대급부는 없지만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제공한 금품 등을 의미한다.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회계기준상 비용이나 법인세법상 손금의 기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이 거래처에 제공된다는 점은 판매부대비용과 차이점이며 특정한 거래처에 제공된다는 점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광고선전비와 구분된다.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접대비로 인정받아 손금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와 같은 법정 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법인의 규모와 매출액에 따른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법인세법」 제25조). 만일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상에서 볼 때, 회계기준에서는 일단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모든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렇지만 법인세법에서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는 접대비는 개인적 지출과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즉, 회계기준에서는 비록 개인적 지출과 구분이 어렵기는 하지만 경영자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여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데 비하여 세법에서는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접대비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은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러한 차이는 영구적 차이를 구성한다.

또한 접대비 인식 시점에서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회계기준에서는 접대비의 인식 시점에 대해서 별다른 규정은 없다. 다만 일반적인 원칙에 비추어보면 접대비의 인식도 발생주의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접대비의 경우 이연계상을 허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5-0-1을 보면 법인이 접대비 또는 이에 유사한 비용을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연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서 시부인 계산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접대비의 경우에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물론 접대비의 개념상 선급접대비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통념을 반영한 규정이기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선급접대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완전하게 배제하기는 어렵다.⁸⁾ 따라서 만일 기업에서 회계상 선급접대비를 계상

8) 예를 들어 거래처에 대한 선물 등을 구입했으나 아직 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회계상 선급접대비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였다면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손금에 산입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 간에는 차이가 나게 된다. 접대비는 이미 실제로 지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영구적 차이로 분류된다.

5) 기부금

기부금도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다는 점에서 접대비와 유사하다. 그렇지만 기부금은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점에서 접대비와는 다르다. 회계기준이나 세법에서 업무관련성이 비용이나 손금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보자면 기부금은 비용이나 손금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그렇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분위기하에서 어느 정도의 공익목적의 기부금은 회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부금을 비용이나 손금에서 완전하게 배제할 수는 없다.

K-IFRS에서는 기부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 이는 기부금은 다른 비용과 마찬가지로 경영자가 판단하여 지출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기부금을 손금을 인정하기 위한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 요구하는 기부금의 요건은 공익성이다. 그렇지만 공익성의 판단 또한 경영자의 재량권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익목적의 기부금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우선 『법인세법』 제24조에서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의 유형을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정기부금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한 기부금이며 법정기부금은 다음과 같은 기부금으로 한다.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

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 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③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④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ㄱ)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 (ㄴ) 비영리 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 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만 해당한다)
 - (ㄷ)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 (ㄹ)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ㄹ)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 (ㅂ)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ㅅ)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ㅇ)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 (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 ⑤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ㄱ)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 (ㄴ)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 (ㄷ)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 (ㄹ)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ㄹ)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II.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 87

- (ㄴ)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 (ㄷ)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ㄹ)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 (ㄺ)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 (ㄻ)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ㄼ)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 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 (ㄽ)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ㄾ)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 ⑥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⑦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 (ㄴ)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이상과 같이 기부금을 구분한 후에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지정기부금은 일정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손금에 산입한다. 법정기부금은 한도를 두지 않고 전

액 손금에 산입한다. 여기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정기부금이다. 「법인세법」 제24조에서는 지정기부금을 공익목적의 기부금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공익목적의 기부금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는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지정기부금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지정기부금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에서는 기부금의 손금산입시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법인이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결과적으로 기부금에 관해서는 현금주의를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회계상 기부금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비지정기부금이거나 지정기부금의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 간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는 영구적 차이가 된다. 또한 회계상 미지급기부금이나 선급기부금을 계상한 경우에도 세법상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로부터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차이는 일시적 차이를 구성한다.

6) 포괄손익

포괄손익이란 순자산을 증가 혹은 감소시켰지만 당기순이익에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회계상 용어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① 유·무형 자산의 재평가 시 인식하는 재평가잉여금

- ②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치를 인식하는 평가손익
- ③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인식하는 보험수리적 손익
- ④ 기능통화와 표시통화가 다를 경우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기업회계에서는 위와 같은 항목을 당기순이익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 이유는 위 항목들이 비록 공정가치가 변동했지만 그것이 당기성과와는 무관한 계산방법의 차이나 다른 이유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포괄손익은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지 않으며 동시에 과세소득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포괄손익은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를 유발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자기주식처분손익은 회계기준에서는 자본의 증감으로 처리하나 법인세법에서는 과세소득으로 본다(「법인세」 제11조). 따라서 자기주식처분손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 간의 영구적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⁹⁾

나. 정책 목표의 달성

조세의 일차적인 목표는 재정수입의 확보이지만 부차적으로 다양한 목표를 가질 수 있다. 과세당국에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경제 활동을 유인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활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세법을 제정할 수 있다. 물론 회계기준¹⁰⁾ 역시 정치적인 의도에서 완전하게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세법보다는 정도가 약한 것

9) 포괄손익을 재량적 판단의 허용 정도에 따른 차이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포괄손익들이 기업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적 판단의 허용정도와 일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어 여기에 분류한 것이다.

10)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 기업회계기준과 IFRS 등 모든 회계기준을 의미한다.

은 틀림없다. 따라서 정책목표가 반영된 세법은 당연히 회계기준과 차이를 가져온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이익 측정 모형의 차이라기보다는 무작위한 차이에 해당하게 된다.

1)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은 조세정책 목표에 따라서 소득에서 제외하는 소득이다. 따라서 회계기준에서는 이와 같은 소득에 대한 규정이 없다.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공익신탁재산의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또한 「법인세법」 제18조에서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비과세소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법인세비과세소득을 정의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8조2), 중소기업의 공장이전 시 양도차익에 대한 익금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8) 등이 있다.

비과세소득은 회계기준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 간의 차이를 구성하게 되는데 영구적 차이에 해당한다.

2) 벌금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벌금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는 벌금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벌금의 사회적 제재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법인세법」 제21조에서는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는 벌금 등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II.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 91

- ①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 ②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K-IFRS에서는 벌금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 회계기준상으로는 벌금도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벌금을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한 경우, 법인세법에서 이를 부인함으로써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 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영구적 차이에 해당한다.

3) 준비금

준비금은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시행하는 조세혜택 중의 하나이다. 준비금은 해당 기업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의 손금산입을 허용한 후에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일종의 조세이연혜택이다. 현재 우리나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서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보면 우선 기업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이런 경우에는 적립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립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향후 3년간 분할하여 다시 익금에 산입하게 된다.

회계기준의 입장에서 보자면 준비금은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이므로 이익잉여금 중 적립금을 구성하는 항목이다. 또한 준비금은 법인세법상의 손금의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 그렇지만 준비금은 연구개발이나 인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여하는 조세혜택이다. 따라서 기업이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당기순이

익과 과세소득 간에는 서로 일시적인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4) 미수이자와 미지급이자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은 발생주의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제 이자의 수입이나 지출시기와는 무관하게 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한 이자 상당액을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 K-IFRS 제1018호에서는 이자수익의 경우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며(문단 30) K-IFRS 제1039호에서는 유효이자율법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또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집합)의 상각 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문단 9).

이렇게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이 현금수입시기가 아닌 발생시점에서 인식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회계기준과 세법에서 서로 차이가 없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의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의무가 존재한다. 그런데 원천징수 시기는 실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가 되어야 하므로 이자비용이나 이자수익의 인식 시기와 달라진다. 우리나라 「소득세법」 제130조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를 실제 소득의 지급 시기로 정하고 있어서 발생주의를 따르지 않고 있다.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의 이자비용이나 이자수익의 인식시기와 원천징수 시기가 다르면 실무상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의 인식 시기와 원천징수 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의 인식 시점을 원천징수 시점과 일치시킨 것이다. 우리나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고 있다.

- ① 일반적인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 ②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 ③ 채권 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 ④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ㄱ)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 (ㄴ)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 (ㄷ)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 (ㄹ)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 (ㄹ)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 ⑤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 ⑥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 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 ⑦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 ⑧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 ⑨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 ⑩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위와 같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보면 대부분 발생주의에 의하기보다는 실제 지급된 날로 정하고 있어서 발생주의 개념과 달리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에는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의 인식 시점을 다음과 같이 정

하고 있다.

- ①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 ②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위의 법인세법상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의 귀속시기를 보면 모두 소득세법상 귀속시기를 준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이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를 적용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형식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이자수익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을 제외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이는 사실상 이자수익에 있어서 발생주의를 배제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자수익의 경우에는 발생시점과 현금수입 시점이 다를 경우에는 과세소득과 당기 순이익 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일시적 차이를 구성한다.

5)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등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동 보증금 등에 대한 정기예금이자 상당액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는 규정이다. 동 규정은 임대보증금을 이용하여 세부담 없이 부동산투자를 계속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사업자와의 세부담 형평을 위하여 임대보증금에 정기에금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당액은 임대수입으로 보아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를 보면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는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실제 수입과 무관하게 이자수익을 추정하는 것이므로 회계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만큼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은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차이는 영구적 차이에 해당한다.

다. 보고단위 차이

회계기준에서는 당기순이익을 미래성과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활용하고자 하지만 세법에서의 과세소득은 실체의 조세채무가 된다. 따라서 회계기준에서는 실체의 미래성과를 잘 보여준다면 실체 간 중복되는 이익도 당기순이익에 포함한다. 즉, A기업이 B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A기업의 당기순이익에는 B기업의 이익이 포함되면서 동시에 B기업의 당기순이익도 개별적으로 보고된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이미 다른 실체에게 과세되었거나 과거에 과세되었던 소득에 대해서 또 다시 과세할 경우, 이는 이중과세가 된다. 즉, B기업의 과세소득에 대해 이미 과세되었다면 A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된 B기업의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중과세방지를 위한 규정들은 회계기준에는 없는 세법만의 과세소득 산출원칙이 된다.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와 반대로 회계상으로는 보고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법에서는 과세하거나 공제하는 경우도 생긴다. 대표적인 것은 전기오류수정손익인데 이는 당기에 결정된 당기 이전의 손익이므로 회계기준상 당기순이익에서는 제외되어야 하지만 적정한 조세채무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법인세법에서는 과세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분법손익

K-IFRS 제1028호에서는 투자회사가 직접으로 또는 간접으로 피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소유하고 있는 피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사용한다(문단 6). 지분법이란 관계기업 투자를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며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지분은 투자자의 당기순손익으로 인식하고 피투자자에게서 받은 분배액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이다(문단 11). 이러한 지분법은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지분법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입장에서 지분법 평가로 인한 손익은 이미 과세된 손익이 되기 때문에 만일 또 다시 지분법손익에 대해서 과세하면 이는 이중과세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회계상 계상된 지분법손익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곧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로 나타나는데 일시적 차이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2) 수입배당금

세법상 이중과세 배제의 원칙은 수입배당금에도 적용된다. 수입배당금의 원천은 이미 과세되었던 소득이므로 수입배당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수입배당금의 일정비율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8조2를 보면 내국법인 중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이나 잉여금의 분배액 중 전부 혹은 일부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18조3에서는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회계기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조항을 적용받으면 그만큼 과세소득과 회계상 당기순이익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게 되며 이 차이는 영구적 차이를 구성한다.

3) 해외현지법인의 국외원천소득

해외현지법인의 소득은 회계기준상으로는 모기업의 연결당기순이익에 포함되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배당을 통해서 국내로 유입되기 전까지는 과세소득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해외현지법인의 소득은 과세관할이 달라서 국내세법에 따라서 과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해외현지법인의 소득은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간 차이를 구성하게 된다.¹¹⁾

11)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을 산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현지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유발하는 차이가 일시적 차이인지 영구적 차이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렇지만 일찍부터 연결재

4) 전기오류수정손익

감가상각 방법이나 재고자산 평가방법 등이 변경되는 것과 같은 회계정책의 변경 혹은 미래에 대한 추정이 변경되거나 오류가 수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회계에서는 각각 달리 대응한다. 회계정책이 변경되거나 오류가 수정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그 영향을 재무제표에 표시하는데 이는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나타내어진다. 반면에 미래에 대한 추정의 변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는 전진적으로 반영한다. 즉, 과거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며 미래에 미치는 영향만을 반영한다.

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오류의 수정에 대해서 과거 재무제표에 대한 영향을 소급적으로 추적하여 현재의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에 비하여 세법에서는 이러한 소급적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에서는 모든 오류나 회계정책의 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할 뿐이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만일 회계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이나 회계정책변경의 효과가 이익잉여금 변동을 나타냈다면 이는 세법상 과세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이 금액만큼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 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차이는 영구적 차이에 해당한다.

이번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인 K-IFRS를 서로 비교하고 이들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이를 보고자 한 이유는 앞선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법과 회계기준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차이가 실제로 어떤 차이를 유발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우리나라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은 구체적으로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을 허용하는 범위, 정책적 목표의 개입 정도, 보고단위 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무제표를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을 산출해왔던 미국의 경우를 본다면 APB No.23에 의하여 해외투자자로 생긴 이익을 영구적으로 재투자할 것으로 경영자가 지정한다면 이는 영구적 차이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 차이로 구분한다(Hanlon and Heitzman, 2010).

5. 요약

이번 장에서는 당기순이익을 산출하는 회계기준과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세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이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는데 그 대상은 개념적으로 경제적 이익이라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경제적 이익은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간접적인 방법으로 측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법과 회계기준이 차이가 있는 것은 측정 대상이 개념적으로 서로 다른 것은 아니며 다만 측정 대상을 현실적으로 측정하면서 발생하는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서 직접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우회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이익측정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익측정 모형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현금주의 모형, 취득원가 모형 그리고 공정가치 모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들 모형은 경제적 사건이 이익에 반영되기까지의 시차를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지와 측정의 오차를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음으로는 회계기준과 세법이 차이가 있는 원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였다. 세법과 회계기준은 목표 면에서 서로 차이가 있었는데 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 간의 공평한 조세채무를 결정하는 것이 목표인 반면에 회계기준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과세소득은 조세채무 결정의 유일한 기준이지만 당기순이익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유일한 정보원천은 아니다. 또한 외부이해관계자에 있어서도 세법은 오직 과세당국만을 외부이해관계자로 가정하고 있지만 기업회계기준은 정의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외부이해관계자를 가정하며 특히 외부의 주주와 채권자들을 주요 이해관계자로 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으로 세법과 회계기준은 보고단위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세법에서는 과세관할이라는 점에서 회계기준에 비하여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차이점과 앞선 이익측정 모형을 서로 연결시킨다면 회계기준에서는 외부이해관계자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가장 중시하며 이에 따라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세법에서는 공정성 및 신뢰성을 중시하게 되며 이에 따라 취득원가 모형이나 현금주의 모형을 따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회계기준과 세법이 갖는 차이점은 결과적으로 이익측정 모형의 적용상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인 K-IFRS와 법인세법을 서로 비교하여 실제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세법이 주로 현금주의 모형이나 취득원가 모형을 따르지만 K-IFRS는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면서 나타나는 양자의 차이는 결국 경영자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적 판단을 허용하는가였다. 즉, K-IFRS에서는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지만 법인세법은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재량적 판단의 허용 정도는 양자의 차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외에도 법인세법에는 다양한 조세정책 목표가 영향을 주게 되지만 K-IFRS는 그렇지 않다는 점과 보고단위의 차이로 인하여 이중과세 조정이나 누락항목에 대한 추가과세 등이 있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차이 등이 있었다.

이번 장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이 현재와 같은 원칙을 계속 고수한다면 양자는 일치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측정 대상 면에서 나타난 본질적인 차이라기보다 측정 대상인 경제적 이익을 우회적으로 측정하는 데 따른 이차적 차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느 한 쪽에서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있게 되면 양자의 일치 정도를 상당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 볼 수 있다. 특히 세법과 회계기준 간 차이에는 정책적 목표와 같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하고 있음을 볼 때, 이

II.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 101

러한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경제적 이익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세법과 회계기준은 지금보다는 일치도가 높아질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Ⅲ. 이익조정과 조세회피 유인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앞선 장에서는 세법과 기업회계기준 간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세법과 회계기준은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서 양자의 차이를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¹²⁾에는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이나 조세회피 유인이 작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¹³⁾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차이에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유인이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번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제1절에서는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세법과 회계기준 간 차이는 분명하지만 실제로 이를 적용한 결과인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이 서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실증적으로 규명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이 차이가 클수록 양자 간 차이에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유인이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1절에서 횡단면적으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실증적으로 얼마나 큰지 그리고 시계열적

12) 엄밀하게 말하면 세전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말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로 사용하기로 한다.

13) 이에 대해서는 Hanlon and Heitzman(2010), Graham et al.(2011)을 참조하시오.

으로 이러한 차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를 분해하여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본다. 이러한 세부 분석으로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에 세법과 회계기준 차이 외에 어떤 유인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절에서는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양자의 차이는 이미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법과 회계기준의 차이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이나 조세회피 유인은 양자의 차이를 비정상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2절에서는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이익조정 유인이나 조세회피 유인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찾아보도록 한다. 여기에서는 이익조정 유인이나 조세회피 유인을 대리하는 여러 변수들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들과 반대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클수록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가 의심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들을 보도록 한다. 그리고 이익조정 유인이나 조세회피 유인이 서로 독립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서로 상충되는지 아니면 상승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제3절에서는 이번 장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도록 한다.

1.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

이번 절에서는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경영자의 의도가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가. 당기순이익 과세소득 차이의 크기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양자의 차이가 단순히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기계적인 차이에 의해서 발생할 뿐 아니라 당기순이익이나 과세소득에 대한 경영자의 의도적인 왜곡에 의해서도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절에서는 전체적으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기술적인 통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의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들을 탐색해보도록 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도 있기는 하다. 이들 연구들에서는 횡단면적으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보기도 하며 이러한 차이가 시계열상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를 관찰하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실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얼마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지 그 중요성을 알아보고 이들 차이에 이익조정 유인이나 조세회피 유인이 개입하고 있다는 추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1) 미국의 경우

미국 기업들의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대상으로 수행된 초기 연구 중 하나는 미국 재무부에서 실시한 것이다(U. S. Treasury, 1999). 미국 재무부에서는 미국 세무보고서 양식 M-114)에서 보고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분석하고 양자의 차이가 급증하고

14) 우리나라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와 유사한 미국의 세무보고서 양식이다. 2004년부터는 대규모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정교해진 M-3 양식이 새로 도입되었다.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 보고서에 따르면 과세소득 대비 세전당기순이익의 비율은 1995년에 1.82였고 1996년에는 1.86이었던 것에 비하여 1990년과 1994년간 평균은 1.25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재무부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에 Manzon and Plesko(2002), Mills et al.(2002) 등도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Manzon and Plesko(2002)는 17,692개 기업-연도 표본을 이용하여 1988~1999년간의 세전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과세소득은 미국 내 당기법인세비용을 법정최고법인세율로 나누어서 추정하였으며 세전 당기순이익도 해외소득을 제외한 국내 당기순이익만을 측정하였다. 그의 실증 결과를 보면 1993년까지는 과세소득이 당기순이익보다 컸는데 1994년부터 급격하게 세전 당기순이익이 과세소득을 초과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차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었다.

Mills et al.(2002)은 과세소득을 재무제표를 통해서 추정하지 않고 실제 세무신고 자료를 통해서 입수하여 세전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단순히 세전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만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세무상 자산·부채와 회계상 자산·부채의 차이까지도 함께 분석하였다. 우선 세전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에 있어서는 앞선 Manzon and Plesko(2002)의 연구 결과를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또한 세전 당기순이익이 손실인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작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다국적기업들이 국내 기업들보다 차이가 크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전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가 이익조정 유인이나 조세회피 유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평균적으로 기업들의 세무상 자산·부채가 회계상 자산·부채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회계상 세전 당기순이익이 과세소득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결과이다. 이에 대해 그들은 우선 M-1 보고서상의 세무상 자산·부채

가 내부거래가 상계되지 않은 상태로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그 외에도 특수목적법인(SPE)을 이용한 회계상 부외 자산이나 부외 부채가 세무신고 자료에는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았다.

Yin(2003)은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직접 보지 않고 유효세율을 통해 간접적으로 양자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는 1995~2000년간 S&P 500대 기업들의 유효세율은 28.85%였지만 2000년에는 24.2%로 감소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비적격(non qualifying) 스톡옵션 행사의 영향¹⁵⁾을 제거하고 난 후에는 유효세율이 1995년 30.11%에서 27.98%로 하락하였다.

미국의 일반회계국(General Accounting Office: GAO)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94%와 미국 내 외국 기업 89%가 부담하는 조세채무가 소득의 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GAO의 조사에서는 총자산 2억 5천만달러 이상이며 총매출 5천만달러 이상인 대기업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¹⁶⁾

Hanlon and Shevlin(2005)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기간을 확장하기 위하여 2003년까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세진 순이익과 추정과세소득을 구해 보았다. 그들은 금융업과 공공서비스업종은 제외하였는데 이것은 이들 산업이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별도의 회계기준 및 세법을 적용받아서 다른 산업과 비교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과세소득을 재무제표에 나타나 있는 당

15) 스톡옵션은 비적격 옵션과 적격옵션(Incentive Stock Option:ISO)으로 구분한다. 미국 세법에 따르면 비적격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이는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당시 미국의 회계기준에 따르면 스톡옵션의 행사는 비용으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비적격 스톡옵션의 행사는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유발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적격옵션의 행사는 세무상으로도 비용으로 보지 않으므로 양자의 차이를 유발하지는 않는다.

16) 이는 미국 국세청의 통계자료(Statistics of Income: SOI)로부터 얻은 것으로서 Hanlon and Shevlin(2005)에서 재인용한 것임.

III. 이익조정과 조세회피 유인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107

기법인세비용을 법정최고법인세율로 나누어서 구하였다.

아래의 <표 III-1>은 Hanlon and Shevlin(2005)에서 이용한 표본 기업들의 세전 당기순이익과 추정 과세소득의 연도별 총액과 그 차이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비적격옵션의 실행으로 인한 차이는 제외되었다. 마지막 열은 추정 과세소득 대비 세전 당기순이익의 비율이다. 이 비율은 연도별 편차가 크기는 하지만 대체로 90년대 초반에 비하여 90년대 후반에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2001년과 2002년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가 2003년에 다시 큰 폭으로 커졌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III-1]과 [그림 III-2]이다.

<표 III-1> 1985~2003년 동안 미국의 세전 당기순이익과 추정 과세소득 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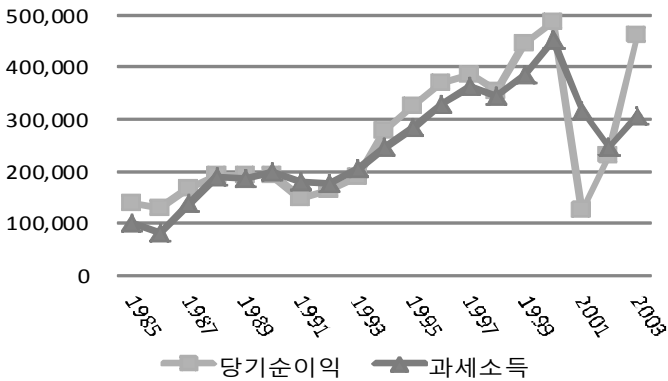
(단위: 백만달러, %)

연도	(A)당기순이익	(B)과세소득	차이(A-B)	비율(A/B)
1985	138,904	99,868	39,036	1.39
1986	130,162	80,622	49,540	1.61
1987	167,736	137,019	30,717	1.22
1988	191,108	188,720	2,388	1.01
1989	191,130	184,844	6,286	1.03
1990	192,730	198,181	(5,451)	0.97
1991	147,180	180,259	(33,079)	0.82
1992	162,516	175,495	(12,979)	0.93
1993	187,691	204,951	(17,260)	0.92
1994	279,280	244,924	34,356	1.14
1995	325,822	285,528	40,294	1.14
1996	370,463	327,303	43,160	1.13
1997	383,911	361,882	22,029	1.06
1998	355,245	345,330	9,915	1.03
1999	444,745	386,256	58,489	1.15
2000	486,431	450,564	35,867	1.08

〈표 Ⅲ-1〉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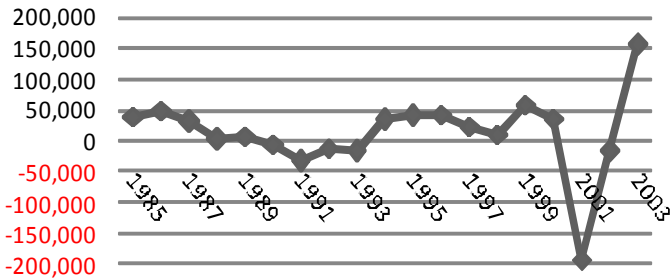
연도	(A)당기순이익	(B)과세소득	차이(A-B)	비율(A/B)
2001	125,049	316,144	(191,095)	0.40
2002	229,551	246,048	(16,497)	0.93
2003	462,055	305,708	156,347	1.51

[그림 Ⅲ-1] 1985~2003년 동안 미국의 세전 당기순이익과 추정 과세소득



자료: Hanlon and Shevlin(2005) FIGURE3을 옮김

[그림 Ⅲ-2] 1985~2003년 동안 미국의 세전 당기순이익과 추정 과세소득 간 차이



자료: Hanlon and Shevlin(2005) FIGURE4를 옮김

Hanlon and Shevlin(2005)의 자료를 통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이 과세소득보다 많다. 그리고 1999년에 이는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그렇지만 2001년과 2002년에는 오히려 과세소득이 당기순이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Hanlon et al.(2005)의 연구나 Plesko(200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Hanlon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과세소득이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것은 대부분 대규모의 특별손실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Plesko(2004)는 과세소득이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당기순손실이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렇지만 2003년에는 오히려 당기순이익이 과세소득을 초과하게 되어 1986년 이후 그 차이가 가장 크게 되었다. Hanlon and Shevlin(2005)은 이러한 현상을 볼 때 2001년과 2002년은 비정상적인 해였으며 일상적으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증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Hanlon and Shevlin(2005)의 연구가 2003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Boynton et al.(2008)은 미국에서 새로 도입된 M-3 세무신고서를 바탕으로 2004년과 2005년의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대체로 이전의 연구 결과들이 2004년과 2005년의 M-3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서 세전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대해서 비교적 활발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던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많지 않다. 비록 세전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이용한 연구들은 많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적인 실태를 보여주는 논문들은 매우 드문 실정이다.

정운오 등(2006)은 1993~2002년까지 4,441개 기업-연도 표본을 이

용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전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가장 큰 특징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체로 과세소득이 세전 당기순이익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미국 기업들의 경우와는 반대 현상이다.¹⁷⁾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이들은 미국의 자본시장이 우리나라보다 발달되어 이익조정 압력이 우리나라보다 강하며 동시에 미국 기업들의 조세회피 기법이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훨씬 정교하여 조세회피 수준이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아래의 <표 III-2>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 III-2> 세전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의 기술통계량

(단위: 백만원)

연도	표본수	평균	중간값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1993	349	-1,638	-265	21,909	67,079	-391,097
1994	388	1,105	-137	26,110	433,295	-151,631
1995	398	-747	-123	19,212	215,286	-254,226
1996	450	-2,559	-395	13,626	67,047	-140,451
1997	434	-4,533	-894	20,877	192,120	-222,224
1998	462	-22,433	-1,042	237,221	564,463	-4,926,557
1999	491	-14,769	-699	188,497	787,119	-3,167,680
2000	496	-10,241	-1,532	255,831	2,850,992	-3,350,491
2001	480	-7,580	-1,002	82,153	848,589	-511,548
2002	493	-6,419	-1,313	97,417	1,151,484	-710,624
전체	4,441	-7,444	-591	138,125	2,850,992	-4,926,557

자료: 정운오 등(2006)의 <표 5>를 옮김

17) 그렇지만 한국조세연구원(2004), 이우택(1997) 등의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은 결과들도 보여준다. 다만 이들 연구들은 대체로 정운오 등(2006)의 연구보다 오래되었으며 표본도 작다는 점에서 신뢰성은 떨어진다.

정운오 등(2006)의 연구에서 또 하나 관찰되는 현상은 1997년 이후 과세소득이 세전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현상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위의 <표 III-2>를 보면 1998년부터 과세소득의 초과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역시 미국에서는 '90년 후반부터 세전 당기순이익이 과세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이 커졌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인 것이다. 정운오 등(2006)은 이에 대해서 외환위기 이후에 공정가치 회계를 지향하는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됨으로써 법인세법과의 괴리가 커졌으며 법인세법에서 기업회계 우위의 정책을 포기하고 세법 우위의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괴리의 영향이 더욱 커졌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운오 등(2006)은 미국에서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익과 손실기업으로 구분하여 세전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보았는데 여기에서는 미국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손실기업들이 이익기업보다는 과세소득이 세전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현상이 뚜렷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현상을 이익조정 동기와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세전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본 결과는 유의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세전 당기순이익이 과세소득보다 큰 정도가 다국적기업이 내국기업보다 크다는 Plesko(2004)의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수행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의 실태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시기별로, 그리고 표본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미국의 경우, 대체로 90년대 중반부터 세전 당기순이익이 과세소득을 초과하는 현상이 점차로 뚜렷해진다는 점에서는 연구 결과들이 일치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이익기업이나 손실기업 혹은 다국적기업이나 내국기업들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이러한 차이가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유인에 의한 영향에 따른 것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정운오 등(2006)의 연구가 유일하다. 정운오 등

(2006)의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과는 반대로 과세소득이 당기순이익을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과의 차이는 점차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유인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작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무조정에 있어서 결산조정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비하여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 간의 일치 정도가 훨씬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미국과는 다른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러한 여러 원인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음 절에서는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분해해서 이들 차이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의 구성항목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회계기준과 세법 간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미 앞선 장에서 회계기준과 세법이 경제적 이익을 측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목표, 이해관계자 그리고 보고단위 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회계기준과 세법은 많은 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또한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유인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외관상으로는 이러한 차이는 회계기준과 세법 간 차이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절에서는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 간의 차이를 분해하고 양자의 차이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었는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순히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를 보는 것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양자의 차이를 분해함으로써

차이의 본질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1) 미국의 경우

Poterba et al.(2011)은 미국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1993~2004년 동안의 이연법인세를 구성하는 항목들을 조사하였다. 이연법인세 자산을 구성하는 항목으로 매 연도마다 가장 금액이 큰 것은 종업원에 대한 연금자산(Employee benefit)이며 그 다음으로는 평가충당금(Value allowance)이었다. 이연법인세 부채에서는 유형자산(Plant and equipment)이 가장 금액이 컸다. 종업원 연금자산·부채는 미국의 회계기준에서는 이를 자산과 부채로 보지만 세무상 대부분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¹⁸⁾ 그리고 평가충당금은 성격상 회계기준에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인정되지 않은 재량적 부채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연법인세 부채 부분에서 유형자산이 가장 금액이 컸던 것은 감가상각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회계상으로는 정액법으로 선택하면서 세법상으로는 가속상각법을 채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이 회계상으로는 당기순이익 산출에 가장 유리한 정액법을 사용하면서 세무보고 목적으로는 과세소득을 작게 만드는 가속상각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Raedy et al.(2011)은 재무제표의 세금 관련 주식사항들에 대한 주가반응을 보기 위하여 세금 관련 주식사항들 중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영향을 주는 항목들을 분류하였다. 그들은 Fortune 250 기업을 대상으로 1995~2004년 동안의 세금 관련 재무제표 주석을 살펴보고 이들을 이연법인세 관련 22개 항목과 비율조정 관련 19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이연법인세 관련 항목들은 일시적 차이를 유발하

18) 이는 확정급부형(Defined benefit) 연금자산에 해당한다.

는 항목들이며 비율조정 관련 항목이란 법정세율과 유효법인세율 간 차이를 유발하는 항목으로서 국외소득에 대한 세율 차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구적 차이와 관련된 항목들이다. 이들의 연구 결과도 Poterba et al.(2011)과 유사하였다. 즉, 이연법인세 관련 22개 항목 중에서 표본의 86%가 유형자산 관련 항목이었고 평가충당금 관련 항목은 53%, 그리고 중업원연금 관련 항목은 52%가 존재하고 있었다. 시기적인 변동 폭을 볼 때, 2007년에는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아서 대손충당금 관련 주식이 급증하였으며 이월결손금으로 인한 항목들도 증가하였다. 그리고 비율조정 항목 중에서는 영업권과 세액공제와 관련된 항목들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우리나라의 경우

신현결(2002)은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1999년도 재무제표 주식 자료를 통해서 351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정 구성항목을 살펴보았다. 그는 세무조정사항을 일시적 차이 항목과 영구적 차이 항목으로 구분한 후에 다시 가산항목과 차감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¹⁹⁾ 우선 일시적 차이 가산항목 중에는 전기미수수익, 대손충당금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 손익귀속시기 차이 등의 순서로 빈도수가 높았다. 일시적 차이 차감항목으로는 당기미수수익, 대손충당금환입, 유가증권평가익, 손익귀속시기차이 순서로 빈도수가 높았다. 영구적 차이는 일시적 차이에 비하여 빈도수가 낮았는데 가산항목 중에서는 접대비 한도초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순서로 빈도수가 높았고 차감항목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법인세 환급과 이익잉여금 관련한 차감 항목들이 빈도가 높았다.

신현결(2002)의 연구에 이어서 한국조세연구원의 보고서(2004)에

19) 가산항목이란 세전 당기순이익에 가산되어 과세소득을 구성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차감항목은 이와 반대 방향을 의미한다.

III. 이익조정과 조세회피 유인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115

서는 311개의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2001년도 재무제표 주식사항에서 추출한 자료를 통해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아래의 <표 III-3>과 <표 III-4>는 결과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표 III-3> 당기순이익과 사업연도소득의 차이

	평균	최솟값	최댓값	하위 25%	하위 50%	하위 75%
<i>FIN</i>	0.034	-1.130	0.814	-0.004	0.035	0.086
<i>TIN</i>	0.038	-0.950	0.957	0.007	0.036	0.089
<i>DIF</i>	-0.004	-0.663	0.904	-0.026	-0.006	0.010
<i>TEMP</i>	-0.042	-2.860	0.507	-0.040	-0.004	0.050
<i>PERM</i>	0.039	-0.960	3.675	-0.040	-0.002	0.050

주: *FIN*: 회계상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 / 총자산

TIN: 세법상 사업연도소득 / 총자산

DIF: *FIN* - *TIN*

TEMP: 일시적 차이 합계 / 총자산

PERM: 영구적 차이 합계 / 총자산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세계개혁보고서』(미발간), 연구보고서, 2004.

위의 <표 III-3>을 보면 총자산에 대한 비중으로 보았을 때 세전 당기순이익은 평균 총자산의 3.4%이지만 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 각 사업연도는 3.8%를 차지하고 있어서 오히려 과세소득이 세전 당기순이익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정운오 등(2006)의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것으로 미국에서의 연구 결과와는 오히려 유사하다.²⁰⁾ 그리고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를 볼 때, 일시적 차이는 평균적으로 음(-)의 방향으로 발생하여 세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차감되고 있었지만 영구적 차이는 반대로 양(+)의 방향으로 발생하여 세전 당기순이익보다는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20) 그렇지만 이 결과는 총자산 비중으로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정운오 등(2006)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표 III-4〉 일시적 차이의 항목별 구성

구분	유효 표본 ¹⁾	비율 ²⁾	평균	최솟값	최댓값	하위 25%	하위 50%	하위 75%
대손상각	285	0.916	0.042	-0.583	1.615	0.002	0.008	0.022
미수금	276	0.887	-0.003	-0.043	0.014	-0.005	-0.002	-0.001
퇴직금	266	0.855	0.013	-0.088	0.128	0.000	0.005	0.018
감가상각	229	0.736	0.005	-0.047	0.060	0.000	0.001	0.008
준비금	216	0.695	-0.026	-0.179	0.057	-0.041	-0.015	-0.005
유가증권	215	0.691	0.010	-0.139	0.570	0.000	0.002	0.012
지분법	148	0.476	0.000	-0.168	0.491	-0.014	0.000	0.007
환율조정	135	0.434	0.005	-0.007	0.057	0.001	0.002	0.007
고정자산	134	0.431	-0.003	-0.309	0.267	-0.002	0.000	0.002
재고자산	118	0.379	0.010	-0.022	0.184	0.000	0.001	0.006
기타상각	103	0.331	-0.014	-0.184	0.088	-0.011	-0.001	0.000
투자자산	102	0.328	0.009	-0.025	0.157	0.000	0.001	0.005
현재가치	73	0.235	-0.029	-0.721	0.211	-0.018	0.001	0.003
외화자산	63	0.203	0.001	-0.053	0.133	-0.001	0.000	0.001
배당금	49	0.158	0.002	-0.003	0.019	0.000	0.001	0.002
매출채권	47	0.151	0.003	0.000	0.077	0.000	0.000	0.001
관계회사	15	0.048	0.023	-0.116	0.403	0.000	0.004	0.016
기부금	14	0.045	0.001	0.000	0.002	0.000	0.000	0.001
전환사채	12	0.039	0.003	-0.003	0.012	0.000	0.003	0.007
회계변경	9	0.029	-0.008	-0.025	0.000	-0.016	-0.003	0.000
영업권	5	0.016	-0.015	-0.070	0.001	-0.037	-0.002	0.001

주: 1) 311개 표본기업 중 해당항목이 존재하는 기업의 수

2) 유효표본을 총표본 311개로 나눈 값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세계개혁보고서』(미발간), 연구보고서, 2004.

위의 〈표 III-4〉는 세전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 중 일시적 차이의 구성 항목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보면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세무조정이 빈도수와 금액 면에서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비율을 보면 0.916으로서 이는 표본기업의 91.6%에서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세무 조정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거의 모든 기업에서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세무 조정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 번째로 빈도수가 높은 미수금도 성격상 대손충당금과 유사한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여서 실제로 우리나라 세전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차이에서 대손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구성하는 항목들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연구들을 살펴 보았다.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공통적으로 대손충당금은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차이에 큰 영향을 주는 항목이었다.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대손충당금을 인정하지만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있으며 미국 법인세법은 대손충당금을 허용하지 않는다.²¹⁾ 이러한 세법과 회계기준의 차이로 인하여 대손충당금은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유발하는 중요한 항목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손충당금은 경영자의 재량권이 가장 크게 개입할 수 있는 항목이므로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을 허용하는지 여부가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 밖에 미국의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못지않게 종업원에 대한 연금자산·부채 등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유발하는 중요한 항목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연금회계 등의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긴 미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경영자의 재량권 행사가 양자 간의 차이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임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의 원인이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와 같은 행위로 인한 것일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21) 각국의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법규정에 대해서는 최기호 등(2007)을 참고하시오.

이번 절에서는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여기에 경영자의 의도가 개입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음 절에서는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의 원인을 살펴 보는데 주로 이익조정 유인이나 조세회피 유인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대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한다.

2. 이익조정과 조세회피 유인이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에 미치는 영향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세법과 회계기준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경영자의 의도에 따라서 양자의 차이는 비정상적으로 커질 수 있다. 그것은 경영자가 이익을 조정하거나 조세회피를 하려는 유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자가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면서 조세회피를 위해서 과세소득을 줄인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는 커질 수밖에 없다. 많은 연구자들이나 정책담당자들이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절에서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유인이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가. 당기순이익 조정 유인의 영향

경영자들은 부채계약이나 보너스계약 등 여러 목적을 가지고 당기순이익을 조정하고자 한다. 이번 절에서는 당기순이익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영자의 유인으로 인하여 세전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얼마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개념적으로 경영자들이 이익을 과대계상하면서 과세소득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당

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는 커지게 된다.²²⁾

이렇게 당기순이익을 조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악명 높은 Enron을 대상으로 하여 Outslay and McGill(2002)은 파산 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유효법인세율이 직전 3년간 17.5%, 8.2%, 15.2%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발견에 기초하여 그 원인을 찾아본 결과, 대규모의 스톡옵션 비용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는데 Enron은 재무보고상 파산 직전에도 20억달러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보고하고 있었지만 세무상 거의 결손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과세소득이 적절하게 외부에 공시되었더라면 Enron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좀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큰 경우에는 이익조정을 의심해볼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Enron의 사례는 당기순이익 조정 유인의 영향이 클 것을 암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결과를 일반적인 기업까지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실제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이러한 경영자들의 당기순이익조정 유인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는 실증적인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여기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검토해서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22) 그렇지만 경영자가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유인 중 하나만을 선택하고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이 일치하는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이나 과세소득을 조정한다면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유인은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Erickson et al.(2004)은 이익을 과대계상하여 SEC에 적발된 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이 과대계상된 이익에 상응하는 조세를 납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기업들이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이 일치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Badertscher et al.(2009)을 이익을 제공시킨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이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조정을 한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1) 당기순이익 조정 유인이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에 미치는 영향

Mills and Newberry(2001)는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소유구조(ownership type), 부채계약(debt covenants)이나 보너스 계약(bonuses contract)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경영자의 당기순이익 조정 유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그들이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소유구조이다. 경영자들이 당기순이익을 조정하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당기순이익과 기업의 시장가치(주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소유가 분산되어 있을수록 경영자와 주주 간의 정보 비대칭이 커지면서 경영자는 당기순이익을 조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커진다(Klassen, 1997).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선행 연구들에서는 소유구조를 상장기업 여부로 측정할 경우가 많다.²³⁾ Cloyd et al.(1996)은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에 비하여 경영자들이 공격적인 세무 계획에 맞추기 위하여 당기순이익을 덜 감소시키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Penno and Simon(1986)은 설문 조사를 통해서 상장기업들이 비상장기업보다 채고자산, 감가상각 등에 있어서 보다 공격적인 회계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상장기업일수록 보다 공격적으로 당기순이익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과세소득이 이에 따라 증가하지 않는다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는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Mills and Newberry(2001)는 이익기업의 경우에는 상장기업일수록 당기순이익이 과세소득을 초과할 것이고(가설 1), 손실기업의 경우에는 Big bath 현상²⁴⁾으로 인하여 상장기업일수록 당기순손실이 과세상 손실

23) 이외에도 Klassen(1997), Mikhail(1999) 등은 소유구조를 소유집중도(ownership concentration)로 측정하기도 하는데 소유집중도란 대주주들이 소유한 지분합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Mikhail(1999)은 소유집중도는 개념정의가 다양하여 소유구조를 대리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24) Big bath 현상은 재무보고상 기업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 손실을 더

보다 클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가설 2).

Mills and Newberry(2001)가 다음으로 관심을 가진 이익조정 유인 변수는 부채계약이다. 회계이론에서는 채권자들의 감시가 강한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회계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한다(Watts and Zimmerman, 1986). 이러한 예상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들에서는 부채비율과 회계정책 선택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는데 예를 들자면 부채비율과 감가상각 방법(Dhaliwal et al., 1982), 영업권 상각기간(Skinner, 1993), 연금원가의 상각기간(Sweeny, 1994) 등의 연구들이 있다. 따라서 이에 따라 Mills and Newberry(2001)도 부채비율이 당기순이익 조정 유인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와 상장기업 여부와 상호작용 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즉, 비상장기업일수록 신용도가 낮아서 개인 부채(private debt)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 부채계약의 위반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²⁵⁾ 이에 따라 Mills and Newberry(2001)는 이익기업의 경우에는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부채비율과 갖는 관련성은 상장기업일수록 약해질 것으로 보았다(가설 3).²⁶⁾

마지막으로 Mills and Newberry(2001)는 경영자 보상 계약을 이익조정 유인 변수 중 하나로 보았다. 통상적으로 경영자 보상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이 증가함에 따라서 경영자에 대한 보상은 증가한다. 따라서 경영자들은 자신의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유인을 갖는다. 그러나 Healy(1985), Holthausen et al.(1995), Gaver et al.(1995) 등은 경영자들이 보상 계획의 상한을 초과하거나 하한에 밀도는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Mills and Newberry(2001)는 이익

욱 크게 계상함으로써 차후에 이익을 크게 보고하고자 하는 현상을 말한다.

25) DeAngelo et al.(1994), Sweeny(1994) 등은 대부분 부채계약 위반은 개인 부채계약에서 일어난다고 보고하였다.

26) 손실기업에 대해서는 결과를 예상할 수 없다.

을 계상한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세전 당기순이익이 경영자보상계약 범위 내에 있으면 경영자 보상 계약은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와 정의 관련성을 갖지만(가설 4), 경영자 보상 계약 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되면 음(-)의 관련성을 갖는다는 가설 5를 수립하였다.

위와 같은 가설을 입증하기 위하여 Mills and Newberry(2001)는 1981~1996년간 5,776개 기업-연도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그들의 실증분석 모형은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begin{aligned}
 BTDIFF_{it} = & a_0 + a_1PUBLIC_{it} + a_2DEBT_{it} + a_3DEBT_{it} \times PUBLIC_{it} \\
 & + a_4DEBT_{it} \times DISTRESS_{it} + a_5FTC_{it} + a_6CAPINT_{it} + a_7SIZE_{it} \\
 & + a_8DISTRESS_{it} + a_{9-24}YEAR_{it} + a_{25-44}SUB-INDUSTRY_{it} + e_{it}
 \end{aligned}$$

BTDIFF: M-1양식에서의 세전 당기순이익에서 과세소득을 차감한 후 기초 총자산으로 나눈 값

PUBLIC: 상장기업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서 상장기업이면 1, 아니면 0

DEBT: 기초 장기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

DISTRESS: Ohlson(1980)의 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한 파산확률

FTC: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기초 총자산으로 나눈 값

CAPINT: 기초 건물, 설비자산의 순액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

SIZE: 기초 총자산의 자연로그

SUB-INDUSTRY: 제조업을 대상으로 20개의 하위 산업으로 분류한 후 각 산업소속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다음 연구 모형은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BTDIFF_{it} = a_0 + a_1DEBT_{it} + a_2DEBT_{it} \times DISTRESS_{it} + a_3BONUSU_{it}$$

III. 이익조정과 조세회피 유인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123

$$\begin{aligned}
 &+ a_4BONUS_{it} + a_5BICHGPOS_{it} + a_6FTC_{it} + a_7CAPINT_{it} \\
 &+ a_8SIZE_{it} + a_9DISTRESS_{it} + a_{10-25}YEAR_{it} \\
 &+ a_{26-45}SUB-INDUSTRY_{it} + e_{it}
 \end{aligned}$$

BONUS: 보상계약의 하한선을 충족했을 때 상한선(시장가치의 10%)와의 차이

BONUSL: 보상계약의 하한선(시장가치의 5%)에 미달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서 미달하는 경우는 1 아니면 0

BICHGPOS: 전기에 비하여 당기순이익이 증가했으면 1, 아니면 0

위와 같은 연구 모형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 III-5>에 나타나 있다.

<표 III-5> 당기순이익 조정 유인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패널 A: 소유 유형과 부채계약

변수	이익기업		손실기업	
	예측부호	계수	예측부호	계수
소유유형				
<i>PUBLIC</i>	+	0.008**	-	-0.025**
부채계약				
<i>DEBT</i>	+	0.020**	?	0.036
<i>DEBT</i> × <i>PUBLIC</i>	-	-0.023**	?	0.040*
<i>DEBT</i> × <i>DISTRESS</i>	+	0.185**	?	-0.007
통제변수				
<i>FTC</i>	-	-1.332**		NA
<i>CAPINT</i>	?	0.010*	?	0.002
<i>SIZE</i>	?	0.001*	?	-0.009**
<i>DISTRESS</i>	?	-0.254**	?	-0.134**
<i>YEAR</i>				

〈표 III-5〉의 계속

변수	이익기업		손실기업	
	예측부호	계수	예측부호	계수
<i>SUB-INDUSTRY</i>				
Observations		4956		820
Adj. R Squared		0,26		0,23

패널 B: 보상계약

변수	이익기업		손실기업	
	예측부호	계수	예측부호	계수
부채계약				
<i>DEBT</i>	+	-0,006	?	0,070**
<i>DEBT</i> × <i>DISTRESS</i>	+	0,224**	?	-0,033
보상계약				
<i>BONUSU</i>	+	0,022*	?	0,045
<i>BONUSL</i>	-	-0,009**	?	-0,009
당기순이익 패턴				
<i>BICHGPOS</i>	+	0,016**	?	0,048**
통제변수				
<i>FTC</i>	-	-1,348**		NA
<i>CAPINT</i>	?	0,010	?	0,003
<i>SIZE</i>	?	0,001*	?	-0,006**
<i>DISTRESS</i>	?	-0,255**	?	-0,091**
<i>YEAR</i>				
<i>SUB-INDUSTRY</i>				
Observations		3879		576
Adj. R Squared		0,27		0,23

주: 변수 설명은 본문을 참조 ** $p < 0,01$, * $p < 0,1$

자료: Mills and Newberry(2001)의 TABLE 3, 4를 옮김.

〈표 III-5〉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주요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널 A를 보면 이익기업에서 PUBLIC 변수는 양(+)의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으며 손실기업에서는 음(-)의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익기업에서는 상장기업일수록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커지지만 손실기업에서는 Big bath 현상으로 인하여 오히려 당기순이익이 과세소득보다 작아진다는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패널 A를 보면 부채계약과 관련해서 *DEBT* 변수는 이익기업에 있어서 양(+)¹의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으며 *DEBT*×*PUBLIC* 변수는 음(-)²의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이익조정유인이 커지고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장기업의 경우보다는 비상장기업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뚜렷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패널 B를 보면 경영자보상계약과 관련해서 이익기업의 *BONUSU*는 양(+)³의 유의한 값을 보이지만 *BONUSL*은 음(-)⁴의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보상계약의 상한과 하한 사이에서는 경영자보상계약은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양(+)⁵의 영향을 미치지만 하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음(-)⁶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Mills and Newberry(2001)의 가설은 대체로 입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의 원인 중 하나는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임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2) 당기순이익 과세소득 차이를 통한 이익조정 탐지

앞에서 살펴본 Mills and Newberry(2001)의 연구는 당기순이익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영자의 유인을 대리하는 변수들을 선정한 뒤 이러한 변수들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이익조정 유인이 개입한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반대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를 찾아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도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의

원인 중 하나가 이익조정 유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행된 대표적 연구가 Phillips et al.(2003)이다.

당기순이익은 현금흐름 부분과 발생 부분으로 구분된다. 경영자는 이익조정을 위하여 주로 발생 부분에 대해 재량권을 개입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발생액에 대한 재량권 행사가 회계 방법이나 현금흐름을 재량적으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외부에 관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발생액과 관련된 변수들을 이용하여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를 탐지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수행된다. Healy(1985)는 총발생액을 이용하였고 Jones(1991)는 총발생액에 대해서 기업의 특성변수를 회귀시켜 그 잔차를 구하고 이를 비정상발생액으로 보았다. Dechow et al.(1995)은 Jones 모형의 요인 중에서 매출채권 부분에 대해서 경영자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단점을 극복한 수정된 Jones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Phillips et al.(2003)은 기업의 이연법인세를 이용하여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를 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연법인세는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 중에서 일시적 차이 부분에 해당한다. Phillips et al.(2003)은 이러한 일시적 차이를 이용하면 경영자의 재량적 행위와 비재량적 행위를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일시적 차이는 세법과 회계기준의 보고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회계기준에서는 경영자에게 보다 많은 재량적 판단을 허용하지만 세법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영자가 재무보고 목적상 공격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여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더라도 세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허용하지 않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벌어지게 되며 이는 일시적 차이로서 재무제표의 이연법인세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Phillips et al.(2003)은 이연법인세가 경영자의 공격적인 재무 보고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Phillips et al.(2003)은 우선 경영자의 이익조정이 의심되는 기업들

III. 이익조정과 조세회피 유인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127

을 선정하기 위하여 Burgstahler and Dichev(1997)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본기업들을 이익변화율의 크기에 따라 분포를 구한 후 비정상적으로 빈도수가 높은 구간의 기업들을 이익조정 의심 기업으로 정하였다.²⁷⁾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Phillips et al.(2003)은 적자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익조정을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과 분석가의 이익예측치를 맞추기 위하여 이익조정을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군을 차례로 정하였다. 그들의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EM_{it} = \alpha + \beta_1 DTE_{it} + \beta_2 AC_{it} + \beta_3 \Delta CFO_{it} + \beta_j \sum IND_{it} + \varepsilon_{it}$$

EM: 당기순이익을 조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이면 1, 아니면 0

DTE: 연간 이연법인세금액을 기말의 총자산으로 나눈 값

AC: 발생액(총발생액 혹은 비정상발생액)

ΔCFO: 계속사업으로 인한 현금흐름 변동액

IND: 산업분류코드의 처음 두 자리 수로 구분한 산업별 더미변수

Phillips et al.(2003)은 위 모형을 이용하여 probit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생액을 총발생액으로 정한 경우에 *DTE* 변수는 이익 변동이나 적자 회피를 위한 이익조정 의심기업 표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²⁸⁾의 값을 보였다. 이는 *DTE* 변수가 이익조정을 탐지함에 있어서 총발생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탐지 능력을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가의 이익예측치에 맞추기 위한 이익조정을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을 찾아냄에 있어 *DTE*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이지 못하였는데 이는 총발생액도 마찬가지로이다. 이로부터 경영자가 분석가의 이익 예측치에 맞추기 위한 이익조정을 한

27) 이들 기업은 이익변동률이 0~1% 사이에 있는 기업들로서 Burgstahler and Dichev(1997)는 이러한 기업들이 이익 감소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익을 조정한 것으로 의심하였다.

경우에는 *DTE*는 이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는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는 총발생액도 유의한 탐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DTE*는 총발생액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익조정 탐지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발생액을 비정상발생액으로 정한 경우에도 총발생액으로 정한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즉, 이익의 감소나 적자 회피를 위한 이익조정을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표본의 경우에는 모두 *DTE*가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으며 분석가의 이익 예측치에 맞추기 위한 이익조정을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표본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비정상발생액도 총발생액과 유사한 계수의 부호 값과 유의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두고 *DTE*는 비정상발생액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이익조정 탐지능력을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위와 같은 Phillips et al.(2003)의 연구 결과를 보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일시적 차이가 클수록 적자나 이익 감소를 회피하기 위한 당기순이익 조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선 Mills and Newberry(2001)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한 실증적 증거들을 검토하였다. 여기에서 검토한 실증적 증거들은 대체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의 원인 중 하나는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음에는 조세회피 유인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한다.

나. 조세회피 유인의 영향

앞서 경영자의 당기순이익 조정 유인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는 경영자의 조세회피에 대한 유인이 있을 수 있다. 이번 절에서는 경영자의 조세회피 유인이 실제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조세회피는 기업의 현금흐름을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경영자들은 조세회피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조세회피는 대체로 과세소득을 감소시킴으로써 달성되는데 만일 당기순이익을 상대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서 과세소득을 감소시킨다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는 커지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경영자의 조세회피 유인은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기에서는 경영자의 조세회피 유인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 증거들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러한 관련성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찾기 위한 연구들은 앞선 이익조정 유인 연구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향을 갖는다. 하나는 조세회피 유인을 보여준다고 생각되는 대리변수들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반대 방향으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조세회피 유인과 관련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1) 조세회피 유인이 당기순이익 과세소득 차이에 미치는 영향

Manzon and Plesko(2002)는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들은 요인들을 세무 계획에

유리한 투자와 자금조달 행위(tax favored investment and financing actions), 재무보고기준과 세법 간 차이, 기타 잡음들(Noise)로 분류하고 세부적인 요인들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세무계획에 유리한 투자와 자금조달 행위로서 수익성(profitability), 이월결손금 존재(presence of NOL), 순매출 변동(change in net sales) 등의 요인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세금공제나 세액공제 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커질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이익기업인가 손실기업인가를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이용하였다. 또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기업은 세무 계획에 적극적이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과세소득 감소에 소극적일 것이며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는 작아질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세무 계획에 유리한 비용을 유발하는 자산들에 대한 투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커질 것으로 보았다. 이들의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SPREAD = & \beta_0 + \beta_1(\text{change in net sale}) + \beta_2(\text{gross PP\&E}) \\
 & + \beta_3(\text{net PP\&E/gross PP\&E}) + \beta_4(\text{change in goodwill after 1993}) \\
 & + \beta_5(\text{other intangible assets}) + \beta_6(\text{change in post-retirement benefits}) \\
 & + \beta_7(\text{pre-1993 goodwill assets}) + \beta_8(\text{change in unused NOL}) \\
 & + \beta_9(\text{lagged SPREAD}) + \beta_{10}(\text{positive pretax income}) \\
 & + \beta_{11}(\text{positive NOL carryforward}) + \beta_{12}(\text{foreign pretax income})
 \end{aligned}$$

위 모형에서 *SPREAD*는 세전 당기순이익에서 당기법인세비용을 법정최고법인세율로 나눈 값을 차감한 값이다. 위와 같은 연구 모형을 이용하여 Manzon and Plesko(2002)는 1988~1999년까지 총 17,692 기업-연도 표본을 선정하고 자신들의 예측에 대한 실증적 증

거를 찾아보고자 하였는데 positive pretax income 변수와 change in net sale 변수들이 모두 유의적인 양(+)의 계수 값을 보였다. 이는 당초 예상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조세회피 유인들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당기순이익 과세소득 차이를 통한 조세회피 기업의 탐지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조세회피 유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은 실제로 조세회피를 한 것으로 밝혀진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비교하여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서로 다른지를 보는 것이다. 그러나 조세회피의 정의 자체는 모호하며 분명하지 않다(Hanlon and Heitzman, 2010). 다만 가장 극단적인 조세회피는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어 가산세 등을 납부한 기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선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들이 있다.

Mills(1998)는 개별기업의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클수록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조정금액이 커질 것으로 보았다. 세무조사에서 조정금액이 크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세회피 행위를 한 기업으로 볼 수 있다.

경영자들은 기업의 조세채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세소득을 줄이고자 하는데 만일 세무조사와 같은 규제 장치가 없다면 거의 모든 기업은 과세소득을 0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Cloyd(1995), Cloyd et al.(1996)에서는 개인납세자와 법인납세자들이 합리적이라기보다는 주먹구구식으로 세무계획을 추진한다고 말한다. 이는 경영자들이 세무당국의 반응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과세소득을 줄이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통상적으로 경영자들은 과세소득을 줄이는 만큼 당기순이익을 줄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당기순이익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가시키고자 하는 유인을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증대하면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어 조정되는 금액도 커질 것이다. 따라서 이는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조세회피 유인이라는 실증적 증거가 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Mills(1998)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을 수립하였다.

$$ADTR = b_0 + b_1BT + b_2PUB + b_3BT \times PUB + b_4NPPE + b_5BT \times NPPE + b_6PTS + b_7ITC + b_8FORINC + b_9\lambda_1 + b_{10}\lambda_2 + b_kIND$$

ADTR: 세무조사에서 제시된 수정금액

BT: 세무보고서상 세전 순이익에서 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

PUB: 상장기업이면 1이고 아니면 0

NPPE: 기초의 감가성 자산의 순액

PTS: 과세당국에서 부여하고 있는 세무조사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

ITC: 세무보고 자료에서의 투자세액공제

FORINC: 국외원천소득

A: 자기선택편의를 통제하기 위한 inverse mills ratio²⁸⁾

IND: 제조업의 산업분류

Mills(1998)는 연구 결과의 강건성을 높이기 위하여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세무보고 자료에서의 세전 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국내원천소득과 이에 대한 과세소득 간 차이, 그리고 이연법인세 등으로 보았다. 3가지 경우 모두에서 *BT*변수는 세

28) 자기선택편의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 중 Heckman의 2단계법을 사용하는 경우 나타나는 변수이다. Mills(1998)는 세무조사에서 선택가능성과 세무조사연도가 가져오는 자기선택편의를 통제하기 위하여 2개의 inverse mills ratio를 투입하였다.

무조정금액에 대해서 유의한 양(+)²⁹⁾의 값을 보였다. 이는 결국, 세전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클수록 세무조사에서 조정금액이 크다는 것으로서 조세회피유인이 세전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Mills(1998)와 유사하게 Chan et al.(2010)도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수정 금액과 관련이 있는지를 보았는데 Mills(1998)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들은 지나치게 극단적인 조세회피 정의를 채택한 것이다. 즉, 기업들은 세무조사에서 반드시 적발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조세회피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연구들에서는 미국에서 각종 절세수단(tax shelter)²⁹⁾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기업들을 파악하고 이들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³⁰⁾

Wilson(2009)은 절세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59개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그는 Graham and Tucker(2006)가 수집한 절세수단이용기업³¹⁾과 함께 별도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절세수단 이

29) 미국 의회에서는 절세수단 이용을 경제적 위협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으며(U.S. Congress Joint Committee on Taxation 1999), Bankman(2003)은 세법의 제정 취지를 무시하고 이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여 세금을 절감하고자 하는 수단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절세수단 이용기업은 사실상 조세회피 기업과 동의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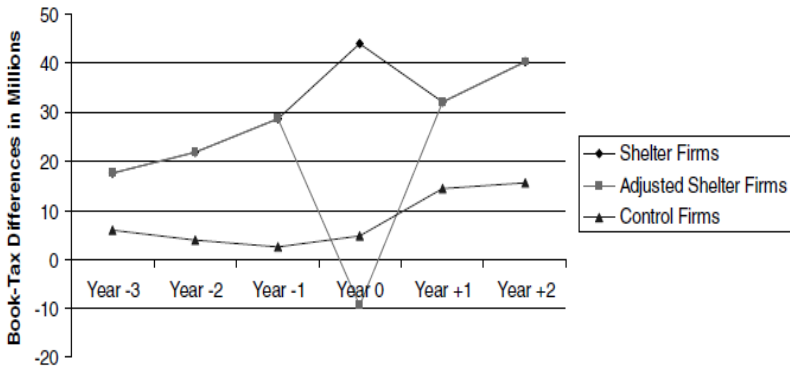
30) 실제로 미국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절세수단(tax shelter)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ankman(1999)은 미국 기업들이 연간 10억달러가 넘는 세금을 각종 절세수단을 이용하여 절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1) Graham and Tucker(2006)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절세수단 이용기업을 추출하였는데 하나는 상장기업과 관련된 소송 사건을 검색하여 절세수단 이용과 관련되었는지를 파악하여 추출하였고 다른 하나의 경로는 대중매체에서 과세당국으로부터 절세수단 이용으로 경고를 받은 것으로 보도된 기업들이다. 이렇게 수집된 절세수단 이용기업은 모두 44개 기업이다.

용기업을 추출하여 표본으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이들 기업과 산업분류코드 첫 두 자리가 일치하고 회계연도가 동일하며 총자산규모가 가장 유사한 기업을 비교대상인 통제기업으로 선정하였다.

아래의 [그림 III-3]은 절세수단 이용기업과 통제기업의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절세수단 이용행위가 일어난 시점을 중심으로 비교한 것이다.

[그림 III-3] 절세수단 이용기업과 통제기업 간의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



자료: Wilson(2009) FIGURE1을 옮김

위 [그림 III-3]을 보면 절세수단 이용기업과 통제기업 간의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차이는 절세수단 이용행위가 있었던 해의 3년 전부터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절세수단 이용기업의 차이가 훨씬 크다. 이 차이는 절세행위가 있었던 연도에서 가장 커진다. 그러나 절세한 금액을 조정后的 차이는 오히려 통제기업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그림을 보면 절세수단 이용은 명백하게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Wilson(2009)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절세수단 이용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III. 이익조정과 조세회피 유인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135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독립변수로 하는 logistic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의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ln[P_{shelter}/(1-P_{shelter})] = & \beta_0 + \beta_1BTD + \beta_2DAP + \beta_3LEV + \beta_4SIZE \\ & + \beta_5ROA + \beta_6FOREIGN_INCOME + \beta_7R\&D \end{aligned}$$

$P_{shelter}$: 당기에 절세수단을 이용했을 확률

BTD : 세전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

DAP : 재량적 발생액

LEV : 장기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

$SIZE$: 총자산의 로그값

ROA : 세전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

$FOREIGN_INCOME$: 국외원천소득이 존재 여부, 존재하는 경우는 1, 아니면 0

$R\&D$: 연구개발비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

연구 결과,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BTD)는 유의한 양(+)의 계수 값을 보임으로써 절세수단을 이용한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하여 명백하게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시적 차이만이 유의한 양(+)의 값을 보여서 절세수단 이용과 관련된 것은 일시적 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밖에 LEV , $SIZE$, $FOREIGN_INCOME$ 등이 절세수단 이용확률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나타나 있다.

Lisowsky(2010)는 Wilson(2009)과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그는 표본수를 9,223개 기업-연도로 크게 확대하였고 Wilson이 투입했던 설명변수 외에 추가적인 변수들을 투입하여 모형을 확대하였다. 그의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LN[P_{shelter}/(1-P_{shelter})] = & \beta_0 + \beta_1BTD + \beta_2DAP + \beta_3LEV \\
 & + \beta_4SIZE + \beta_5ROA + \beta_6FOREIGN INCOME \\
 & + \beta_7R\&D + \beta_8TaxHaven + \beta_9LagETR + \beta_{10}EqEarn \\
 & + \beta_{11}MezzFin + \beta_{12}Big5 + \beta_{13}Litigation + \beta_{14}NOL
 \end{aligned}$$

TaxHaven: 자회사 중 하나가 OECD에서 공표한 조세피난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 아니면 0

LagETR: 직전연도 유효법인세율

EqEarn: 손익계산서에 자본법손익이 있고 0이 아니라면 1, 나머지는 0

MezzFin: 전환사채와 우선주 합계액 / 총자산

Big5: 감사인이 Big5인 경우는 1, 아니면 0

Litigation: 소송관련 지출이 있으면 1, 아니면 0

NOL: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1, 아니면 0

나머지 변수는 Wilson(2009)과 동일함

연구 결과,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는 절세수단 이용기업과 통제기업을 구분하는 데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앞선 Wilson(2009)의 연구 결과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추가로 투입한 변수들 중에서도 *TaxHaven*, *LagETR*, *EqEarn*, *Big5*, *Litigation* 등의 변수들도 모두 유의한 양(+)의 값을 보여서 절세수단 이용 여부를 판별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Mills(1998), Wilson(2009), Lisowsky(2010)의 연구는 모두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절세수단 이용기업 여부를 탐지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는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는 결과적으로 조세회피 유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익조정과 조세회피 유인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 증거들을 찾아보았다. 대체로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유인을 대리하는 변수들과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유인이 클수록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익조정을 했거나 조세회피 기업으로 알려진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에도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에 유의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추론은 더욱 강하게 뒷받침된다.

3) 이익조정과 조세회피 유인의 상대적 중요성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유인이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선행 연구들에서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양 유인 중 어느 것이 더욱 중요한 영향을 주었는지는 파악해보고자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Shevlin(2007)도 세무회계 연구방향을 제시하면서 단순히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유인의 영향이 있음을 보이기보다 앞으로는 양 유인 중 어느 것의 영향이 더욱 큰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유인 중 어느 유인이 더욱 중요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판단해 보고자 시도한 연구들이 있다.

Heltzer(2006)는 재무보고와 세무보고의 보수적 성향을 서로 비교하였다. 그녀는 Basu(1997)의 보수주의 모형에서 종속변수인 당기순이익을 재무보고 목적의 당기순이익과 세무보고 목적의 과세소득으로 각각 대체하여 서로 비교하여 보았는데 그 결과는 아래의 <표 III-6>에 나타나 있다.

〈표 III-6〉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와 보수주의

패널 A

$$NI_t = a_0 + a_1DRET_t + a_2RET_t + a_3DRET_t \times RET_t$$

	NI=BI	NI=TI	NI=BTD
상수항	0.0570 ^{***}	0.0156	0.0413 ^{***}
DRET	0.0468 ^{***}	0.0056	0.0412 ^{***}
RET	-0.0006	0.0316 [*]	-0.0322
DRET×RET	0.3723 ^{***}	0.0802 [*]	0.2920 ^{***}

패널 B

$$NI = a_0 + a_1DRET + a_2RET + a_3DRET \times RET + a_4LPBTD + a_5LNBTD \\ + a_6LPBTD \times DRET + a_7LNBTD \times DRET + a_8LPBTD \times RET \\ + a_9LNBTD \times RET + a_{10}LPBTD \times DRET \times RET + a_{11}LNBTD \times DRET \times RET$$

	NI=BI	NI=TI
상수항	0.0993 ^{***}	0.0426 ^{***}
DRET	0.0261 ^{***}	0.0096
RET	0.0209 ^{**}	0.0247 ^{**}
DRET×RET	0.2353 ^{***}	0.1405 ^{***}
LPBTD	-0.0069	-0.1962 ^{***}
LNBTD	-0.3354 ^{***}	0.1150 ^{***}
LPBTD×DRET	0.0040	0.0925
LNBTD×DRET	0.0496	-0.0703 [*]
LPBTD×RET	0.0019	-0.0569
LNBTD×RET	-0.0123	0.0841
LPBTD×DRET×RET	-0.0053	0.3745 ^{***}
LNBTD×DRET×RET	0.0339	-0.2589 [*]

주: NI_t: t기간 당기순이익BI_t: t기간 회계상 당기순이익TI_t: t기간 과세소득DRET_t: t기간 추가수익률이 음인 경우 1, 아니면 0RET_t: t기간 평균 추가수익률

*** p<0.01, ** p<0.05, * p<0.1

자료: Heltzer(2006) p. 87 Table 6.

위 <표 III-6> 패널 A에서 보면 당기순이익(NI)에 대해서 a_3 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재무회계에서의 보수주의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에 비하여 과세소득(TI)에 있어서는 a_3 계수가 별로 유의하지 않으며 그 값도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과세소득에 있어서 보수주의가 그다지 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BTD)를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a_3 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보여주는데 이는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생기는 원인이 재무회계와 세법 간 보수주의의 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보수적 회계처리에 대해서 많은 재량권을 허용하지만 세법에서는 오히려 보수적 처리를 공격적 세무보고로 규정하고 이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 <표 III-6>의 결과는 통상적인 기업회계기준과 세법 간 성격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 <표 III-6>의 분석을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매우 큰 경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석해 보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의 발생 원인을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Heltzer(2006)는 총표본을 BTD 의 크기에 따라서 5등분하여 최상위를 $LPBTD$ 라고 하고 최하위를 $LNBTD$ 로 구분하였다. 결과적으로 $LPBTD$ ($LNBTD$)는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매우 큰 양(음)의 값을 갖는 집단이 된다. <표 III-6> 패널 B는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위 <표 III-6> 패널 B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계수는 a_{10} , a_{11} 이다. 즉, $LPBTD$, $LNBTD$ 가 생기는 원인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보면 우선 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a_{10} , a_{11} 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는 결과적으로 $LPBTD$, $LNBTD$ 상황에서 당기순이익은 별다른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며 $LPBTD$, $LNBTD$ 의 발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과세소득 모형에서는 a_{10} 계수가 상당히 큰 양(+)의

유의한 값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LPBTD*의 발생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과세소득의 보수주의 때문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즉, 회계상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이 큰 양(+)¹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과세소득을 보수적으로 계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LNBTD*의 경우는 과세소득의 경우에 양(+)²의 값이 아니라 오히려 음(-)³의 값을 보여주는데 이는 보수적인 회계 처리에 반대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재무보고에서 보수적 성향은 과세소득을 오히려 증가시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LPBTD*, *LNBTD* 모두에서 회계상 당기순이익보다는 과세소득에서 보수주의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의 원인이 공격적인 세무 계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eidman(2010)은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이익조정 유인과 조세회피 유인 중 어느 유인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직접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을 수립하였다.

$$\text{var}(\text{Book} - \text{Tax Gap}) = f\{\Delta \text{GAAP}, \text{var}(\text{EM}), \text{var}(\text{GBC})\} + \gamma$$

위 모형에서는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GAAP*), 이익조정 유인(*EM*), 일반적인 영업환경(*GBC*)으로 설명하고 나머지 잔차는 세법과 조세회피 유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는 회계기준의 변동이 1993년과 2004년 사이의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의 50.45%를 설명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거시경제 변수와 이익조정 유인변수들도 추가적인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시경제 변수들이 이익조정 유인 변수보다는 설명력이 보다 컸다. 이들 세 변수를 합쳐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의 55% 정도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설명되지 않는 45% 정도는 세법의 변동이나 조세회피 유인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보면 대체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는 세법과 조세회피 유인보다는 회계기준 변동이나 이익조정 유인의 영향이 더욱 큰 것을 알 수 있다.

Heltzer(2006)와 Seidman(2010)의 연구 결과는 서로 상반된 것으로 보인다. 즉, Heltzer(2006)는 공격적인 세무계획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유발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에 Seidman(2010)은 오히려 회계기준 변동이나 이익조정 유인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들의 연구를 보면 이익조정 유인이나 조세회피 유인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이들 유인들은 서로 상호 관련성을 갖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져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 절에서 이익조정과 조세회피 유인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다. 이익조정 유인과 조세회피 유인의 상호작용

지금까지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이익조정 유인이나 조세회피 유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연구들은 이익조정 유인이나 조세회피 유인은 독립적으로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유인은 서로 상호 관련성을 갖는다고 전제하고 이들 간의 관련성을 보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단순히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이익조정 유인이나 조세회피 유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증거 이외에 두 가지 유인 중 어느 요인이 좀 더 관련성이 높은지를 살펴보고자 했던 연구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1) 이익조정 유인과 조세회피 유인 간의 관련성

통상적으로 이익조정과 조세회피는 서로 독립적이거나 상충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Desai(2005)는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과 조세회피 유인은 상호 독립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조세회피를 하기 위한 복잡한 거래를 통해서 경영자들은 상대적으로 이익을 왜곡하기가 더욱 쉬워진다는 것이다.³²⁾ 이러한 논리는 Desai et al.(2007)에서 더욱 발전하는데, 이기적인 경영자들이 기업 조세를 감소시키고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거래를 촉진시키고자 복잡한 방법으로 기업을 구조화한다고 말한다(이는 사적으로 세후 이익을 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경영자들은 조세회피와 동시에 이익조정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쉬워지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 기업들의 예를 보면 2000년 푸틴의 당선 이후 조세 입법이 강화된 상황에서의 세금 납부가 증가하고 특수관계자 거래가 줄었고 조세피난처 설립을 포기하는 현상을 보였다.³³⁾ 과세당국이 대리인 문제를 감소시킨다는 해석에서 보자면 조세회피기업의 주가가 정부의 제재행위 주변에서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오일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주주들이 강화된 제재조치를 반긴 것으로 보인다.³⁴⁾ 즉, 기업의 조세회피로 인하여 이익을 볼 수도 있는 주주들이

32)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한다.

33) 과세당국은 대리인 문제 그 자체를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주주들에 미치는 영향은 과세당국과 외부주주 모두에게 악영향을 주는 경영자의 유용 행위를 통제하는 데 과세당국이 관심을 가짐으로써 얻어지는 부산물이다. 추가적으로 그들은 하나의 특정 기업을 추적해서 보고이익이 증가하였고 처음으로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었음을 보여주었다. 저자들은 Financial Times에서 새로운 법을 지키기 위해서 기업들은 그들의 재무 활동에서 진실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를 외부주주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했는데 외부주주들은 조세감시당국에서 그 돈에 대한 지분을 갖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다(A. Jack, Financial Times, September 17, 2001).

34) Desai et al. (2007)의 연구에서의 이론은 과세당국이 경영자의 유용 행

오히려 정부가 조세회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자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조세회피가 곧 경영자의 이익 유용이나 이익조정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직접적으로 Frank et al.(2009)은 세무보고에서 공격적이면 동시에 재무보고에서도 공격적일 수 있다는 논리를 제기하였다. 즉, 공격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특성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들은 세무보고에서 공격적 정도를 재량적 영구적 차이(DTAX)로 정의하였다.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일시적 차이를 조세회피의 척도로 보고자 하였던 것에 비하여 영구적 차이를 조세회피 성향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채택한 이유는 일시적 차이는 조세회피 성향을 나타내는 동시에 이익조정을 나타내는 변수이기도 하기 때문이었다. 재량적·영구적 차이는 다음과 같은 회귀분석 모형에서의 잔차를 통해서 산출된다.

위를 감소시키는 감시활동을 한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지만 이에 대한 사례 및 실증 결과는 설득력이 다소 떨어지는데 러시아의 한 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는 일반성을 얻기가 어렵다. 이론에 대한 또 다른 검증은 Guedhami and Pittman(2008) 연구에서 수행되었는데 IRS 감시 활동의 측정치로서 TRAC(Transaction Records Access Clearinghouse)의 IRS 세무조사 확률을 이용하여 미국에서 비상장기업들이 144A 사채를 발행하는 비용을 조사하였다. 그들은 Desai et al.의 예측과 일치되는 결과를 얻었는데 즉, IRS 세무조사 확률이 증가하면 수익률 차이가 줄어들었다(부채 비용의 감소를 의미). 저자들은 IRS는 매우 적극적인 제3의 감시자이고 주주와 외부투자자들의 정보 불균형을 완화 시킴으로써 기업에게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계통의 연구들은 이제 시작이다. 상장기업에서 대부분은 보다 강한 재무보고와 증권법 적용을 수긍하며 강한 IRS를 선호할 것이다. 자본시장이 IRS가 기업 세무부서에 비해서 얼마나 자원이 빈약하고 재능이 떨어지는지에 대한 넘치는 이야기가 많은 상황에서 IRS를 유능한 감시자로 본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자원 배분이나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TRAC 자료는 한계가 있다(예를 들어서 규모나 연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그 자료는 미래 연구에서 IRS 감시 활동의 유용한 대용치로서 가치를 갖는다.

$$PERMDIFF = \alpha_0 + \alpha_1 INTANG + \alpha_2 UNCON + \alpha_3 MI + \alpha_4 CSTE + \alpha_5 \Delta NOL + \alpha_6 LAGPERM$$

PERMDIFF: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영구적 차이

INTANG: 영업권 및 기타 무형자산

UNCON: 지분법하에서 보고된 이익

MI: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이익

CSTE: 주 소득세

ΔNOL: 이월결손금 변동

LAGPERM: 직전연도 영구적 차이

이들은 세무보고에서의 공격성을 측정han 것과 동일하게 재무보고에서 공격성은 재량적 발생액(*DFIN*)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재량적 영구적 차이와 재량적 발생액 간의 상관관계를 구해보았는데 이들 간에는 대략 0.1 정도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회귀모형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도 양 변수는 서로에게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업의 조세회피 유인과 이익조정 유인 간에는 서로 정(+)*의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조세회피 유인이 클수록 이익조정 유인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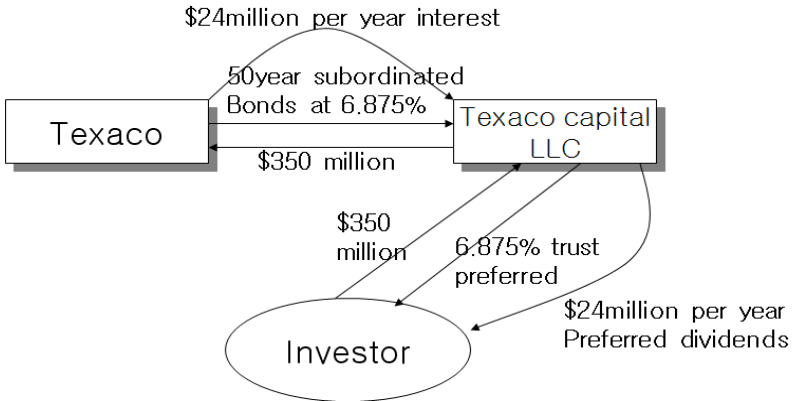
2) 부외부채 이용에 대한 유인

미국 기업들은 재무보고 목적으로는 부채로 계상되지 않으면서 세무보고 목적으로 부채가 되는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부채를 조달하게 되면 기업들은 재무보고 목적으로는 이자비용을 보고하지 않거나 부채비율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으면서도 세무보고 목적으로는 이자비용을 과세소득에서 공제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외부채를 이용하는 이익조정이나 조세

회피 목적을 동시에 충족하게 된다.

이런 부외부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신탁우선주(Trust Preferred Stock)이다. 아래 [그림 III-4]는 이러한 신탁우선주의 구조를 보여준다.³⁵⁾

[그림 III-4] 신탁우선주의 발행 구조



자료: Scholes et al.(2008), p. 388

위 그림을 보면 Texaco는 파트너십인 Texaco Capital LLC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서 투자자를 모집한 후 투자자들에게 신탁우선주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Texaco Capital이 조달한 자금은 모기업인 Texaco에 지급되며 Texaco는 이에 대해서 50년 만기를 가진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게 된다. Texaco가 Texaco Capital에 지급하는 이자는 Texaco Capital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우선주배당금의 자금 원천이며 금액은 서로 동일하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재무보고 목적상 Texaco와 Texaco Capital은 경제적으로 동일한 실체이므로 연결대상

35) 신탁우선주는 다른 말로 월간이익지급우선주(Monthly Income Preferred Stock: MIPS)라고도 불린다. 이는 매달 이익에 대한 배당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Engel et al.(1999)을 참조하시오.

이며 따라서 후순위채권의 발행은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으며, 다만 신탁우선주만이 재무제표에 표시되는데 이는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표시된다.³⁶⁾ 그러나 세무보고 목적으로는 주식회사(Corporation)인 Texaco와 LLC인 Texaco Capital은 연결 대상이 아니며 Texaco Capital은 세무목적상 도관체이므로 사실상 납세 의무가 없고 Texaco가 투자자들에게 직접 후순위채권을 발행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따라서 이는 세무보고 목적상 부채로 취급된다. 따라서 Texaco가 Texaco Capital에게 지급한 후순위채권 이자는 세무보고 목적상 이자비용으로 과세소득에서 공제받는다. 이러한 신탁우선주는 세금효과를 가져다 주면서도 동시에 재무제표 개선 효과가 있어 미국의 경우, 1995년까지 많은 기업들이 신탁우선주를 발행하였다.³⁷⁾

위와 같은 신탁우선주 외에도 위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다양한 부외부채 조달기법들이 존재한다. 우선 1986년 미국의 세법 개혁 이전에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보다는 외부에 파트너십을 수립하여 이를 통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함으로써 연구개발비의 세금공제 효과를 파트너십의 개인투자자들에게 이전시켜주고 대신 그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는 한계세율이 낮은 기업에서 연구개발비의 세금공제 효과를 한계세율이 높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이전시켜 공제 효과를 높이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었다. Shevlin(1987)과 Beatty et al.(1995) 등이 실증적으로 기업들의 세금 동기가 이러한 파트너십 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또한 리스거래를 이용한 자금조달 방법도 사용된다. 통상적으로 리스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구분되는데 운용리스로 구분되면 리스

36) 정확하게는 부채와 자본의 중간에 위치한다.

37) 1995년 미국 국세청은 20년 이상의 만기를 가진 채권의 이자비용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신탁우선주의 세금효과는 상당 부분 감소되었다(Engel et al., 1999).

부채는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으면서 지급리스료는 비용이 된다. 반면에 금융리스로 구분되면 리스부채가 재무제표에 표시되며 지급리스료 중 이자비용과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비용으로 계상된다. 따라서 운용리스로 구분되면 재무보고 목적상은 유리하지만 세무보고 목적으로는 불리하며 금융리스로 구분되면 반대로 재무보고 목적상으로 불리하지만 세무보고 목적으로 유리하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합성리스(synthetic lease)는 재무보고 목적으로는 운용리스로 구분되면서도 세무보고 목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합성리스는 1990년대 중반에 무려 천억달러 이상이 이용된 바 있다 (Pollet and Glickman, 2002).

Mills and Newberry(2005)는 이러한 부외부채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결과적으로 재무보고 목적상으로는 이자비용이 표시되지 않지만 세무보고 목적상으로는 이자비용이 계상될 것이며 이에 따라 재무보고와 세무보고 목적상 이자비용의 차이가 커질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들은 부외부채 이용에 대한 유인이 클 것이라고 생각되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재무보고와 세무보고 목적의 이자비용 간 차이가 커지는가를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을 통해서 입증해 보고자 하였다.

$$\begin{aligned}
 Interest_Diff = & a_0 + \beta_1 S\&P\ Rating + \beta_2 Debt\ Rating\ Covenant \\
 & + \beta_3 Industry\text{-adjusted}\ Leverage + \beta_4 Renegotiate \\
 & + \beta_5 FreeCash + \beta_6 Size + \beta_7 MatlForeignInc + \beta_8 ROA \\
 & + \beta_9 -17Industry + \beta_{18} -30Year + \varepsilon
 \end{aligned}$$

Interest_Diff: 세무보고 자료의 이자비용과 재무제표의 이자비용의 차이를 재무제표상 총매출액으로 나눈 값.

S&P Rating: S&P 채권 신용도

Debt Rating Covenant: 기존 부채가 특정한 비율로 떨어지면 성과에 기초해서 부채계약을 다시 맺는 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

Industry-adjusted leverage: 장기부채/총자산 비율에서 개별기업과 동일 산

업에 속한 기업들의 중위수와의 차이

Renegotiate: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의 비중

FreeCash: 자본지출을 제외한 영업현금흐름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

Size: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MatlForeignInc: 국외원천소득이 총세전이익의 10%를 초과하면 1, 아니면 0

위의 변수들 중 *S&P Rating*, *Debt Rating Covenant*, *Industry-adjusted leverage*, *Renegotiate* 등은 모두 부외부채를 이용하고자 하는 유인을 대리하는 변수들이다. 그리고 나머지 변수들은 통제변수이다. Mills and Newberry(2005)는 모두 3,579개 기업-연도 표본을 이용하여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S&P Rating*, *Industry adjusted leverage* 변수는 예측과 동일한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외부채를 이용하고자 하는 유인이 큰 기업들일수록 세무보고와 재무보고 목적상 이자비용의 차이가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이익조정 유인과 조세회피 유인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익조정 유인과 조세회피 유인 중 어느 유인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어느 요인이 더 많이 기여하는지가 기업 특성이나 시기별로 민감하게 달라지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익조정 유인과 조세회피 유인이 서로 독립적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두 요인 간의 상대적 기여도를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이익조정 유인과 조세회피 유인은 서로 간에 독립적이거나 상충되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즉, 조세회피 유인이 클수록 이익조정 유인도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크다는 것은 이익조정 유인 혹은 조세회피 유인의 존재를 보여주기보다는 두 유

인이 동시에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는 더욱 중요하게 관찰되어야 한다.

3. 요약

이번 장에서는 이익조정 유인과 조세회피 유인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앞선 장에서 언급했듯이 세법과 회계기준은 상당 부분 일치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나는 일차적 원인은 바로 세법과 회계기준의 차이이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자들은 보너스계약이나 부채계약 등과 같이 여러 유인들에 의하여 당기순이익을 가급적 올리고자 한다. 반대로 경영자들은 현금유출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은 얼핏 상충되는 듯이 보이지만 동시에 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당기순이익 조정과 조세회피 목적이 동시에 추구되는 경우에는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는 벌어지게 된다.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의 원인이 단순히 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가 아닌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에 있는 것이라면 양자의 차이는 보다 엄밀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1절에서는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횡단면적으로 혹은 시계열적으로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를 파악하였다. 미국 기업들의 경우, 대체로 당기순이익이 과세소득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그 차이는 최근에 들어올수록 벌어지고 있었다.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과세소득이 당기순이익을 초과하고 있었고 차이는 줄어들고 있었다. 이렇게 미국 기업들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의 행태가 다른 것은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에서 기업들이 이익조정과 조세회피를 강하게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세법과 회계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그렇지만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모두 양자의 차이는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유인에 기인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1절에서는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를 분해하고 이들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양자 차이의 본질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와 미국 기업은 공통적으로 대손충당금과 같이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는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유인과 같은 경영자의 재량적 행위가 중요하게 개입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2절에서는 이익조정 유인과 조세회피 유인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거의 모든 선행연구들에서는 이익조정 유인과 조세회피 유인은 모두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와 양(+)의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반대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클수록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가 의심되는 기업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제2절에서는 이익조정 유인과 조세회피 유인 중 어느 요인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더 기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일관된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이익조정 유인과 조세회피 유인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상호 작용하여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실증 증거들도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이러한 추론은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경영자들은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유인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며 조세회피 행위를 통해서 동시에 이익조정을 달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영자가 부외부채 조달기법을 통해서 조세를 감소시키면서 재무 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Engel et al.(1998), Mills and

Newberry(2005)의 연구 결과는 이런 면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경영자의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행위를 반영한다는 것은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감소시킴으로써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양자의 차이를 불완전하게나마 감소시키는 것은 세법이나 회계기준의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렇지만 양자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 장에서는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 여부에 대한 논란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IV.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 일치에 따른 효익과 비용

앞선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계기준과 세법은 대체로 일치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시기적으로 다르고 국가별로도 다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이 결산조정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회계기준과 세법의 일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구분되며 미국과 영국은 상대적으로 회계기준과 세법의 일치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⁸⁾

그렇다면 회계기준과 세법의 일치도가 어느 정도 높은 것이 최선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들이 있다. 이렇게 회계기준과 세법의 일치도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양자를 어느 정도 일치시키는데에 따라서 개별기업들의 조세회피나 이익조정 등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회계기준과 세법의 일치도가 낮은 국가로 알려져 있는 미국에서는 일치도를 높이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은 공격적 조세회피로 인한 세수결손이 심각하며 2000년 이후 Enron 사태와 같이 이익조정으로 인한 폐해가 밝혀졌기 때문이다. 양자의 일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이 일치됨으로써 경영자들의 지나친 조세회피나 이익조정을 모두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한다.

38) 국가별 일치도 실태에 대해서 이번 장의 제1절에서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결산조정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세계적으로도 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회계기준과 세법의 일치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IFRS의 도입으로 인하여 더 이상 결산조정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점이 있다.³⁹⁾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서로의 주장은 약간씩 다르다. 미국과 같이 회계기준과 세법 간 일치도가 낮은 나라에서는 일치도를 지금보다 높이지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와 같이 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일치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오히려 일치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회계기준과 세법을 어느 정도 일치시키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해서 정해진 답은 당연히 없을 것이다. 다만 사전에 일치도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하게 살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만 명백할 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장에서는 양자의 일치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살펴 보도록 한다. 이번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절에서는 국가별로 세법과 회계기준이 어느 정도 일치되어 있는지를 측정할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해볼 때 어느 정도나 세법과 회계기준이 일치되어 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제2절에서는 일치도가 높아지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장점의 근원인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 간의 상충관계에 대한 실증적 증거들을 검토한다. 이러한 실증적 증거들을 통해서 일치도가 높아지면서 실제로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를 어느 정도나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짐작해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일치도가 높아지면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39)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본다.

제2절에서는 일치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장점을 검토할 것이다. 일치도가 높아짐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세소득은 또 다른 당기순이익으로서 정보가치를 갖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일치도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가치가 상실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제3절에서는 세법과 회계기준 간 일치도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단점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갖는 추가적인 정보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만일 과세소득도 당기순이익과 유사하게 자본시장 참가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면 이는 세법이 기업회계기준과는 다른 원칙을 가지고 과세소득을 산출함으로써 과세소득이 당기순이익에는 없는 독특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일치도가 높아져서 세법과 회계기준이 유사하게 되면 자본시장에 전달되고 있던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의 전반적인 정보가치는 하락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제3절에서는 일치도가 당기순이익의 정보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일치도가 높아지면서 제기되는 가장 큰 단점 중의 하나는 회계기준에 세법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당기순이익의 원래 목적인 자본시장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이번 장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1. 세법과 회계기준 간 일치도의 국가별 실태

세법과 회계기준이 어느 정도 일치되어 있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측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치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일치도에 대한 측정치를 만들어야만 일치도의 차이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실증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서는 시기별로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를 측정하여 볼 수도 있지만 선행 연구들에서는 주로 국가별로

어느 정도 일치되어 있는가를 파악하여 보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서 일치도가 높고, 낮음으로 분류하기도 하며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초기의 논문들을 보면 주로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서 일치도가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를 분류하였다. 대표적인 연구는 Ali and Hwang (2001)의 연구로서 이들은 Alford et al.(1993)의 분류를 따라서 16개 국을 일치도가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로 분류하였는데 당초 Alford et al.(1993)의 분류는 연구자의 주관에 따른 것이다. 이들의 분류에 따르면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등이 일치도가 높은 국가이며 호주, 캐나다, 덴마크, 홍콩, 아일랜드, 네덜란드, 싱가포르, 영국, 미국 등은 일치도가 낮은 국가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주관적인 방법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좀 더 객관적인 방법으로 국가별 일치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 이러한 방법들에 의한 국가별 일치도 실태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항목별 점수화 방법

주관적으로 국가별 일치도를 결정하는 방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몇몇 연구들에서는 나름대로 세부 항목을 정하고 항목별 점수를 부여해서 합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서열화하여 국가별 일치도를 결정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일차적으로 일치도에 영향을 주는 기준 항목들을 정하고 항목에 대하여 부여하는 비중이나 점수를 결정한 후,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국가별로 부여한 총점 순서로 서열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대표적으로 Hung(2001)은 일치도를 결정하기 위한 몇 가지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그의 측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세무보고와 재무보고에 대한 일치된 추정치가 존재하는가?
- ② 이연법인세가 존재하지 않는가?
- ③ 법적 형식이 실질보다 우선되는가?
- ④ 추가가속상각이 허용되는가?
- ⑤ 감모상각기간이 세법에 따라서 결정되는가?
- ⑥ 리스 자본화가 세법에 따라서 결정되는가?

Hung(2001)은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 단 하나라도 예라는 답변이 있다면 그러한 국가는 일치도가 높은 국가로, 그렇지 않은 국가는 일치도가 낮은 국가로 구분하였다. 그의 구분에 따르면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가 일치도가 높은 국가였으며 호주, 캐나다, 덴마크, 홍콩,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영국, 미국 등은 일치도가 낮은 국가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앞선 Alford et al.(1993)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Young and Guenther(2003)는 Hung(2001)의 연구 결과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을 추가하고 일치도를 조사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일치도가 높은 국가에 속하였으며 이스라엘은 일치도가 낮은 국가로 분류되었다.

구자은(2011)은 Hung(2001)의 연구에 비하여 훨씬 심도 있게 대상 국가의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서 국가별 일치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구자은(2011)은 우선 세법에서 회계기준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지를 보았는데 과세소득을 산출할 때 회계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1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국가별 법인세신고서를 탐색한 후 과세소득 계산을 회계상 순자본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1점을 부여하고 매출총이익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세법과 회계기준의 가장 큰 차이를 불러올 수 있는 감가상각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고 결산조정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점을 부여하고 신고조정을

IV.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 일치에 따른 효익과 비용 157

허용하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손충당금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1점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였다. 이렇게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와 우리나라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3.5점으로 가장 일치도가 높은 국가로 분류되었으며 독일은 3점으로 뒤를 이었다. 미국은 모든 항목에서 0점을 받아서 가장 일치도가 낮은 국가로 분류되었으며 미국 다음으로 일치도가 낮은 국가는 총점이 1점에 불과한 캐나다였다.

이러한 방법은 비록 완전하게 객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결정하는 것에 비하면 보다 객관성을 띠고 있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어떤 항목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항목별로 어떻게 점수를 부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자의 주관에 개입하고 있다. 따라서 이 방법도 초기 연구와 같이 연구자의 주관을 완전하게 배제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2) 통계적 방법

Atwood et al.(2010)은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국가별로 일치도를 측정 한 후에 상이한 일치도별로 정보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 보았다. 그들 논문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별 일치도를 사후적인 개념으로 측정하고 이를 단순한 더미변수가 아닌 연속변수로 측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들은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일치도를 기업이 세전순이익(PTBI)하에서 과세소득(TI)을 다르게 보고할 수 있는 유연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A 국가에 위치한 기업이 세전순이익이 100원인데 과세소득을 90원에서부터 110원 사이로 결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B 국가에 위치한 기업은 세전순이익이 동일하게 100원이지만 과세소득은 95원에서 105원 사이로 결정할 수 있다면 일정한 세전순이익하에서의 과세소득 변동 $VAR(TI|PTBI)$ 는 A 국가가 더욱 크다고 말할 수 있으며 B 국가에 속한 기업은 A 국가에 속한 기업에 비

하여 세전 순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유연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경영자들은 투자자들에게 보고하는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려고 하면서 동시에 세금을 절감하려고 한다는 점을 가정한다면 보고된 TI 의 변동성은 TI 에 허용된 최대의 변동 폭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래서 결국 요구되는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일치도를 반영하게 된다. 보고된 과세소득인 TI 는 공개적으로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당기법인세비용 CTE 를 과세소득에 기초한 법인세채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PTBI$ 가 주어졌을 때, $VAR(TI|PTBI)$ 는 $PTBI$ 가 주어졌을 때의 당기법인세비용 CTE 의 분산인 $VAR(CTE|PTBI)$ 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PTBI$ 가 주어졌을 때 과세소득 TI 의 기댓값 $E(TI|PTBI)$ 도 $E(CTE|PTBI)$ 로 대체할 수 있다.

CTE 를 $PTBI$ 에 회귀시키면 $PTBI$ 가 주어졌을 때 CTE 의 기댓값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E(CTE|PTBI) = \theta_0 + \theta_1 PTBI$$

위 식에서 θ_1 은 $PTBI$ 에 대한 CTE 의 평균적인 수준을 보여준다.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도가 낮다면 경영자들은 과세소득보다 당기순이익을 조기에 인식하거나 미래에 인식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따른 양자의 차이가 나타나는 방향은 기업마다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은 발생액을 공격적으로 조정하여 이익을 과대계상하고자 할 것이며 다른 기업은 미래를 위하여 오히려 이익을 과소계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익조정은 미래시점에서는 다시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θ_1 은 이러한 일시적 차이의 평균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하지만 기업이 보고할 수 있는 TI 의 범위를 반영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TI 의 범위는 CTE 의 조건부 분산인

$VAR(CTE|PTBI)$ 이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건부 분산은 위식의 잔차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Var(e) = E[(CTE - \theta_0 - \theta_1 PTBI)^2] = VAR(CTE|PTBI)$$

CTE 의 조건부 분산인 $VAR(CTE|PTBI)$ 는 $PTBI$ 가 주어졌을 때 CTE 분산의 기댓값으로서 위 회귀식에서의 오차의 평균제곱근(Root Mean Squared Error, $RMSE$)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다. Atwood et al.(2010)은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통해서 $RMSE$ 를 추정하였다.

$$CTE_t = \theta_0 + \theta_1 PTBI_t + \theta_2 ForPTBI_t + \theta_3 DIV_t$$

위 식에서 CTE 는 당기법인세비용이며 $PTBI$ 는 세전 순이익이고 $ForPTBI$ 는 국외원천소득, DIV 는 배당금이다. 위의 회귀식에서 모형에서 설명되지 않은 나머지 잔차부분인 $SE(CTE|PTBI)$ 가 경영자가 과세소득과 무관하게 보고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의 크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Atwood et al.(2010)은 이러한 $RMSE$ 를 국가별로 계산한 후 순위를 매겼는데 $RMSE$ 가 클수록 일치도가 낮은 것이다.

구자은(2011)은 Atwood et al.(2010)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국가별 일치도를 다시 한 번 계산해보았다. 구자은(2011)은 표본기간을 1991~2010년까지 설정하여 1992~2005년간 표본기간을 설정한 Atwood et al.(2010)보다 긴 표본기간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IFRS$ 도입 등 최근 변화하는 회계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근 기간까지 표본기간에 포함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명목세율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여 Atwood et al.의 측정치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들이 측정한 국가별 일치도는 아래의 <표 IV-1>과 같다.

〈표 IV-1〉 국가별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독립 정도

국가코드	국가	RMSE ¹⁾	Adj R-sq	표본 수
AUS	호주	0.0334	0.0158	15,588
AUT	오스트리아	0.0141	0.0713	1,247
BEL	벨기에	0.0222	0.1211	1,542
CAN	캐나다	0.0215	0.0109	18,537
CHE	스위스	0.0148	0.0191	3,039
CHL	칠레	0.0138	0.0902	1,276
CZE	체코	0.0128	0.3557	208
DEU	독일	0.0305	0.1471	9,523
DNK	덴마크	0.0218	0.0954	1,878
ESP	스페인	0.0184	0.3350	1,925
EST	에스토니아	0.0269	0.7002	136
FIN	핀란드	0.0215	0.1349	1,757
FRA	프랑스	0.0292	0.0967	9,310
GBR	영국	0.0280	0.1365	23,231
GRC	그리스	0.0022	0.2011	340
HUN	헝가리	0.0085	0.4541	237
IRL	아일랜드	0.0151	0.1197	1,011
ISL	아이슬란드	0.0126	0.2612	55
ISR	이스라엘	0.0051	0.0451	376
ITA	이탈리아	0.0202	0.2393	2,989
JPN	일본	0.0149	0.4349	46,166
KOR	한국	0.0133	0.3506	6,216
LUX	룩셈부르크	0.0235	0.1937	304
MEX	멕시코	0.0181	0.3625	1,374
NLD	네덜란드	0.0272	0.0789	2,436
NOR	노르웨이	0.0310	0.0059	2,379
NZL	뉴질랜드	0.0296	0.0104	1,278
POL	폴란드	0.0201	0.2514	2,208
PRT	포르투갈	0.0127	0.2528	663
SVK	슬로바키아	0.001	0.7659	59

IV.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 일치에 따른 효익과 비용 161

〈표 IV-1〉의 계속

국가코드	국가	RMSE ¹⁾	Adj r-sq	표본 수
SVN	슬로베니아	0.0062	0.7187	178
SWE	스웨덴	0.0244	0.0946	4,307
TUR	터키	0.0307	0.5822	934
USA	미국	0.0339	0.0030	122,817

주: 1) 오차의 평균제곱근(Root Mean Squared Error)

자료: 구자은(2011) p. 77

위의 〈표 IV-1〉을 보면 우리나라의 *RMSE*는 0.133으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하며 미국 같은 경우에는 0.339로 높은 편이다. *RMSE*는 낮을 수록 일치도가 높은 것이므로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하여 세법과 회계 기준의 일치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twood et al.(2010)과 구자은(2011)의 연구에서 국가별 일치도를 서로 비교해 보면 아래의 〈표 IV-2〉와 같다.

〈표 IV-2〉 국가별 일치 정도에 대한 결과 비교

	Atwood et al.	구자은
국가별순위	1. 칠레	1. 슬로바키아
	2. 홍콩	2. 그리스
	3. 중국	3. 이스라엘
	4. 한국	4. 슬로베니아
	5. 일본	5. 헝가리
	6. 스위스	6. 아이슬란드
	7. 스페인	7. 포르투갈
	8. 프랑스	8. 체코
	9. 싱가포르	9. 한국
	10. 오스트리아	10. 칠레
	11. 대만	11. 오스트리아
	12. 네덜란드	12. 스위스
	13. 말레이시아	13. 일본
	14. 핀란드	14. 아일랜드

〈표 IV-2〉의 계속

	Atwood et al.	구자은	
국가별순위	15. 이탈리아	15. 멕시코	
	16. 영국	16. 스페인	
	17. 덴마크	17. 폴란드	
	18. 브라질	18. 이탈리아	
	19. 필리핀	19. 핀란드	
	20. 태국	20. 캐나다	
	21. 스웨덴	21. 덴마크	
	22. 호주	22. 벨기에	
	23. 뉴질랜드	23. 룩셈부르크	
	24. 노르웨이	24. 스웨덴	
	25. 멕시코	25. 에스토니아	
	26. 인도네시아	26. 네덜란드	
	27. 벨기에	27. 영국	
	28. 그리스	28. 프랑스	
	29. 인도	29. 뉴질랜드	
	30. 미국	30. 독일	
	31. 독일	31. 터키	
	32. 남아프리카	32. 노르웨이	
	33. 캐나다	33. 호주	
			34. 미국

자료: 구자은(2011) pp. 80~81

위의 〈표 IV-2〉를 보면 우리나라는 Atwood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33개국 중 4번째로 일치도가 높은 국가로 나타나 있으며 구자은(2011)의 연구에서는 34개국 중 9번째로 일치도가 높은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일치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 볼 수 있는데 다만 시기별로 보면 최근 들어 다른 국가와의 일치도 차이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미국은 대표적으로 일치도가 낮은 국가인데 Atwood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33개국 중 30위이며 구자은(2011)의 연구에서는 34개국 중 일치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적 방법은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일치도를 산출하는 것으로 가장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가별로 세법과 회계기준이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방법으로 평가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번 절에서는 세법과 회계기준의 국가별 일치도를 파악해 보았다. 일치도는 연구자의 주관이나 측정기준에 대한 질적 평가 및 통계적 방법 등을 이용하여 측정되고 있었는데 거의 모든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가장 일치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일치도가 가장 낮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미국은 일치도 측면에서 서로 상반된 경험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치도가 매우 높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단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며 미국은 일치도가 매우 낮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다.

2.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 일치의 효익

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일치도가 높아졌을 때 가장 큰 장점은 경영자가 이익조정과 조세회피를 별도로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익조정과 조세회피가 서로간의 제약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즉,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가 높다면 경영자가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는 과세소득의 증가를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경영자의 이익 조정으로 인하여 과세소득이 증가하고 다시 조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조정 행위에 수반되는 비용이다. 반대로 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일치도가 높다면 경영자가 조세회피를 위해서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면 재무보고 목적의 당기순이익도 동시에 감소하게 된다. 자본시장의 외부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되는 재무보고 목적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게 되면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거나 자본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경영자에 대한 보상이 감소할 수 있다. 이를 재무보고비용이라고 부

르는데 이러한 재무보고비용은 경영자의 조세회피 행위에 수반되는 비용이 된다. 이렇게 이익조정과 조세회피는 서로 상충적인 관련성을 갖는다.⁴⁰⁾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가 높아지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상충관계가 더욱 심화되며 이로부터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나 조세회피 행위는 억제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과연 이러한 개념적인 생각과 일치하게 실제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상충관계가 존재하는지는 실증적인 문제로서 많은 실증연구로 증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번 절에서는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의 상충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해보고 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일치도가 높아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가. 효익의 원천: 이익조정과 조세회피 행위의 상충관계

많은 연구자들과 실무자들은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일치도가 높아지면 조세회피와 이익조정 유인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Shaviro(2008)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당기순이익-과세소득 간 차이가 지속되고 기업의 보고 당기순이

40) 그런데 앞선 장에서 이익조정 유인과 조세회피 유인은 동시에 추구될 수 있음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익조정과 조세회피 유인 간에 상충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러한 논의에 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제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회계기준과 세법이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공통점이 많으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3장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이익조정 유인과 조세회피 유인이 동시에 추구된다는 점과 이번 절에서의 논의와 같이 양자가 상충관계에 있다는 것은 반드시 서로 상반되는 주장은 아니다. 즉, 일부분 상충관계가 있으면서 또 다른 부분에서는 양자의 동시 추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익이 과세소득을 초과하는 상황은 엔론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회계조작이나 조세회피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미국은 이제 동일한 측정치를 양쪽 목적으로 모두 사용하는 단일장부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중략) 이러한 유인문제는 양자를 일치시켜서 높은 당기순이익과 낮은 과세소득에 대한 요구를 서로 엇키게 만드는 매디소니안(Madisonian) 방법⁴¹⁾으로 해결할 수 있다.”(Shaviro, 2008, p. 423)

이러한 Shaviro의 주장은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일치도를 높여서 조세회피와 이익조정 유인 간에 상충관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익조정과 조세회피 행위의 상충관계는 일치도를 높이는 것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효익이다. 여기에서는 이익조정과 조세회피 행위의 상충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상충관계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대부분 연구들은 다양한 회계상황을 설정하고 상충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아래에서는 각 상황별로 상충관계의 존재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본다.

1) 후입선출법의 선택과 포기

회계기준과 세법에서는 모두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과 같은 다양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이 중에서 후입선출법은 자연스러운 실물흐름에 어긋나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조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경우,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가 낮아서 세무보고 목적과 재무보고 목적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분리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후입선출법

41) 매디소니안 방법은 미국의 제4대 대통령이었던 James Madison이 주창한 것으로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정치적 권력의 갈등관계를 이용하여 이들 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 경우에는 세무보고 목적과 재무보고 목적을 분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후입선출법의 경우 세법과 회계기준이 서로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후입선출법은 조세와 당기순이익의 상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한다.⁴²⁾

후입선출법을 이용한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된 조세와 당기순이익 간의 상충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논문들에서는 두 가지 질문에 관심을 갖는다. 첫째, 후입선출법 선택에 대한 정보가 자본시장에 제공될 때, 주가는 효율적으로 반응을 보일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반응을 보일 것인가? 만일 경영자들이 충분히 현명하다면 후입선출법을 선택한 기업들은 보고이익과 법인세의 현재가치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Ball, 1972; Sunder, 1973, 1975; Ricks, 1986).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기능적 고착 관점에서 보면 후입선출법을 선택한 기업들에 대해서 보고이익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주가 반응이 있을 것이다. 반대로 효율적 시장 관점에서 보면 투자자들은 장부상 이익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시할 것이며 후입선출법 선택에 따른 세금효과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할 것이기 때문에 후입선출법 선택에 대한 정보가 공표될 때 양(+)의 주가 반응이 있게 될 것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 동안 후입선출법 선택에 대한 주가반응에 대한 실증연구들의 결과는 결론이 확실하지 않으며 다소 모순되기도 한다. Lanen and Thompson(1988)은 후입선출법과 같이 자발적인 회계 정책 변경에 대한 주가반응 모형을 구축하였다. 그들은 만일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자발적인 회계변경을 예측하고 있다면 주가와 기업 특성(기대현금흐름)간의 관계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

42) IFRS는 후입선출법을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여전히 후입선출법을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인정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후입선출법을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선택하고 있는 기업들이 매우 적어서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였다. 그 이후에 Kang(1993)은 만일 선입선출법을 선택하고 있는 기업들이 투입원가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후입선출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후입선출법 선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주가 반응이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후입선출법을 선택한 것은 장기적인 투입원가 상승이라는 bad news에 직면한 기업이 최적화를 시도하는 것에 대한 신호라는 것이다. Hand(1993)는 Kang의 이론에 대해서 후입선출법 선택을 고려 중이라고 공표한 기업들 중에서 실제로 후입선출법을 선택한 기업과 선입선출법을 그대로 유지한 기업표본을 이용하여 검증을 시도하였다. Lanen and Thompson의 주장에 따라 후입선출법을 선택할 가능성을 통제한 후의 실증결과는 대체로 Kang의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후입선출법을 선택(선입선출법을 유지)함으로써 후입선출법 선택의 불확실성을 제거한 기업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된 시점에서 부정적인(긍정적인) 주가반응이 나타났다. 그래서 Kang과 Hand의 연구는 결론적으로 후입선출법 선택에 대해 부정적인 주가 반응이 관찰된 초기의 연구 결과를 설명해줄 수 있었다.

후입선출법 연구들의 두 번째 연구 질문은 경영자들은 기업이 현재와 미래의 세금지출의 현재가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후입선출법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보고이익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후입선출법을 회피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많은 연구들은 재고자산평가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조세가 일차적인 고려사항이라고 말한다(예를 들면 Dopuch and Pincus, 1988; Cushing and LeClere, 1992). 이러한 논문들에 대한 검토 논문인 Jenkins and Pincus(1998)에서는 후입선출법을 선택한 기업들은 조세절감에 대한 동기가 이익조정에 대한 동기보다 크다고 결론을 내린다.

몇몇 연구들에서는 후입선출법 기업들에서 재고 관리에 대한 조세와 비조세요인 간의 역할을 조사하였다. 만일 후입선출법을 사용하는

기업이 기본재고층을 청산하게 되면 보고이익은 증가하지만 과세소득 역시도 증가하므로 조세부담도 증가한다. 기업들은 연말에 높은 가격으로 재고자산을 구입함으로써 보고이익과 조세부담을 동시에 낮출 수 있다.⁴³⁾ Dhaliwal, Frankel and Trezevant(DFT, 1994)의 연구에서는 조세와 재무보고 요인이 모두 후입선출법 청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세율이 낮은 기업(이월결손금의 존재 여부로 측정)에서 재고청산 금액이 더욱 크고 보다 일반적이었고 부채비율이 높거나 음(-)의 이익 변동이 있었던 기업에서 보다 자주 발생하였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한계세율을 이월결손금 존재로 측정했던 Frankel and Trezevant(1994)에서도 조세부담은 후입선출법 채택기업에서 연말 재고자산 구입과 관련이 있었지만 재무보고 목적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Hunt, Moyer and Shevlin(HMS, 1996)은 조세가 후입선출법 기업의 재고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재고관리가 후입선출법 기업이 조세와 이익조정을 위하여 채택할 수 있는 많은 선택사항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해서 그들은 후입선출법 재고관리를 원가최소화 모형에서의 유동과 비유동 발생액에 포함시켰다(Beatty et al. 1995(b)의 모형에 기초하였다). 재무보고 목적하에서는 HMS의 결과가 DFT의 결과와 동일했지만 조세 목적하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민감도 분석을 한 결과, 이러한 차이는 HMS에서 연립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고 한계세율을 보다 정교하게 측정했기 때문에 생겼음을 알 수 있었다.

연립방정식 모형은 HMS 연구에서 세 가지 선택변수 간의 동시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각 모형에 포함되는 외생변수에

43) Bowen and Pfeiffer(1989)는 후입선출법 기업이 직면한 연말의 의사결정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그들은 커피 원두를 레스토랑에 공급하는 기업인 파머브라더스가 브라질 지역에서 심각한 한파가 있었던 직후인 1976~1977년 동안 겪었던 심각한 원료 가격 상승의 사례를 이용하고 있다.

IV.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 일치에 따른 효익과 비용 169

대한 가정을 필요로 한다. 방정식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각 회귀모형마다 최소한 1개씩의 서로 다른 외생변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변수들의 선정은 때로는 임의적인데 각각의 회귀모형에서 어떤 변수를 포함시키고 제외시키는가에 따라서 연립방정식 결과가 민감하게 달라진다.

HMS는 각 기업의 한계세율을 추정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방법을 이용하였다. 물론 이 방법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계세율 추정에 있어서 가장 우월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월결손금 더미변수를 사용한 연구와 시뮬레이션 방법을 이용한 연구 간에 결과가 다르다면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연구 결과에 보다 신뢰성을 주게 된다.

마지막으로 후입선출법을 포기한 기업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Johnson and Dhaliwal(1988)은 후입선출법 포기 의사결정에서 조세와 재무제표 영향 간의 상충관계를 연구하였다. 포기에 따른 조세부담 증가와 재무보고 비용의 감소와 일치하게 그들은 포기한 회사들이 부채비율이 높으며 운전자본계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고 이월결손금이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포기에 따라서 공시된 조세비용(평균적으로 780만달러)을 재무제표 변수에 회귀시켜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이 흥미를 끄는 것은 실제 조세비용과 재무제표변수 간의 상충관계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2개 기업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Sweeney(1994)는 재무보고상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조세비용 증가의 심각성 때문에 선입선출법으로 전환하지 못하였다 고 보고하였다.⁴⁴⁾

44) 또 다른 연구흐름 중 하나가 후입선출법 적립금의 가치관련성에 대한 것이다. 최초 연구들에서는 기업가치와 후입선출법 적립금 간의 양(+)의 관련성을 예측하였는데 그 이유는 후입선출법 적립금은 현행원가와 과거원가(선입선출법 원가-후입선출법 원가) 간의 차이이며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자산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Guenther and Trombley(1994), Jennings et al.(1996)은 후입선출법 적립금과 기업의 지분시장 가치 간에 음(-)의 관계를 예상하였다. 이들 저자들은 음(-)의 관련성을

전체적으로 보아서 기업들이 후입선출법을 선택하고, 후입선출법 하에서 재고를 청산하고, 후입선출법을 포기하는 의사결정에서 조세가 일차적인 고려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HMS의 연구에서 보여주었듯이 후입선출법 재고관리를 통해서 이익을 관리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는 조세부담은 재무보고 목적에 비하여 훨씬 중요성이 낮다는 것도 알 수 있다.

2) 경영자보상

미국에서 경영자보상은 조세와 재무보고 유인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 또 다른 영업비용이다. 경영자들에게 제공되는 스톡옵션은 종업원에게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는 적격옵션(Incentive stock option)과 종업원에게 세제상 혜택이 없는 비적격옵션(Non qualifying stock option)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반대가 된다. 즉, 적격옵션을 제공한 기업은 보상비용을 세금 목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지만 비적격옵션을 제공한 기업은 보상비용을 세금 목적상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옵션을 비용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재무보고 목적으로도 동일한 회계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금 목적과 재무보고 목적 간에 상충관계가 일어나게 된다.

설명하기 위하여 가격탄력성 이론을 개발하였다. 만일 후입선출법 적립금이 투자자들에게 미래 투입원가의 상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음(-)의 관련성은 투자자들은 투입원가의 상승에 대응하는 산출가격의 인상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선 두 연구에서는 모두 이러한 이론을 입증하였다. Dhaliwal et al.(2000)은 또 다른 설명을 한다. 그들은 선입선출법 재고에 후입선출법 적립금을 더하고 후입선출법의 세무조정을 통해서 세후로 조정된 후입선출법 적립금은 미래 후입선출법 청산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의 추정치임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그들은 투입원가 상승을 상쇄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통제하기 전과 후 모두에서 세금 조정 후 후입선출법 적립금이 지분의 시장가치와 음(-)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IV.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 일치에 따른 효익과 비용 171

몇몇 연구들에서 기업들이 적격옵션(ISO)과 비적격옵션(NQO)의 선택에서의 세금비용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였다.⁴⁵⁾ 총량적인 수준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적격옵션과 비적격옵션의 상대적 비중은 변화하여 왔는데 이는 특정 유형의 옵션에 대해 유리하게 세법이 변화하는 것과 일관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Hite and Long(1982)은 1969년의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최고세율이 낮아지고 난 후 기업들이 적격옵션에서 비적격옵션으로 전환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1986년의 세법개정은 적격옵션의 매력을 감소시켰는데 그 이유는 최고 개인소득세율이 최고 법인세율보다 낮아졌고 자본이득세율이 일반소득세율과 같아졌기 때문이다. Balsam et al.(1997)은 1986년 이후 비적격옵션의 비중이 적격옵션에 비하여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개별기업 차원에서 적격옵션과 비적격옵션의 이용을 법인세와 소득세율의 함수로 검토한 연구들에서는 그들의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Madeo and Omer(1994)는 1969년 세법개정 이후 순수한 조세목적에서 보자면 고세율 기업들이 적격옵션에서 비적격옵션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환하는 기업들은 세율이 낮았음을 보고하였다. Austin et al.(1998)은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추정한 기업의 한계세율이 1981~1984년간 옵션유형의 선택에 거의 영향이 없었는데 이는 옵션유형의 선택이 단순하게 경영진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목적에 부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좀 더 증거들을 확장시켜보면 적격옵션과 비적격옵션 간의 선택에 대한 조세에 역할에 대해서는 다소 혼재된 결과들을 볼 수 있는데, 어찌되었든 현재 상태의 지식만 가지고 결론을 내려 보면 지금까

45) 미국의 경우에는 적격옵션인 경우에는 세금목적상 기업에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는 반면에 비적격옵션인 경우에는 세금목적상 기업에 비용으로 공제된다. 이렇게 상반된 처리과정 때문에 옵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옵션을 발생하는 규모나 빈도수도 많지 않으면서 대부분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받는 적격옵션이기 때문에 연구가 거의 없다.

지의 증거들은 개별기업의 적격옵션과 비적격옵션 간의 선택에 있어서 조세가 그다지 중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모든 당사자들을 전부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하에서 Matsunaga, Shevlin and Shores(MSS 1992)는 보상에 따른 비용공제 효과와 거래비용으로 인하여 당기순이익이 낮아지는 재무보고비용 간에 상충관계가 있는 상황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적격옵션이 비적격옵션에 비하여 갖는 상대적인 세무상 이점을 감소시킨 1986년 세법개정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였다.

하나의 가능한 반응은 적격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이를 행사해서 행사 후 12개월 이내에 처분함으로써 자격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처분은 자동적으로 적격옵션을 비적격옵션으로 전환시킨다. 이러한 전환으로 인해서 개인에게는 일반소득이 발생하고 종업원과 회사 모두에게는 거래비용이 생기는데 회사에는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거래비용이 수반된다. 이러한 부작용은 회사가 보상비용을 공제받음으로써 상쇄된다.

MSS는 종업원들이 적격옵션과 비적격옵션 간에 무차별한 상태를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한계세율을 추정하여 회사가 볼 수 있는 순수한 세금효과를 계산하였다. 기업이 세금비용과 재무보고비용을 적절하게 고려한다는 가설과 일치하게 MSS는 재무보고비용이 낮은 기업일수록 이러한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전환으로 인해서 보고이익이 평균적으로 2.3% 감소하지만 60만달러의 세금효과를 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MSS는 비적격옵션으로의 전환에 따른 재무보고비용이나 세금효과를 추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대립가설을 채택하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의를 일으켰다. 비적격옵션으로 전환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전환을 가정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조세와 비조세 그리고 연구 결과에 있어서 많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전환을 가정한 계산에서 내재되어 있는 가정의 관

점에서 이러한 추론은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연금은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상충관계를 분석해볼 수 있는 또 다른 보상의 형태이다. 즉, 연금불입은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며 연금비용은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Francis and Reiter (1987)는 연금이 조세유인에 따라서 과다하게 불입되거나 재무보고비용에 따라서 과소하게 불입되는지를 검증하였다. 그들은 연금의 불입 수준이 한계세율에 따라서 증가하며 부채비율로 측정된 재무보고비용에 따라서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유사한 문제에 대해서 Thomas(1988)는 표본 선정과 수익성과 부채비율 변수를 포함시켜서 재무보고비용을 통제한 후 조세에게만 초점을 두었다. 그의 결과는 앞선 Francis and Reiter(1987)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Thomas(1989), Clinch and Shibano(1996)에서도 조세가 과잉 불입된 확정급여형 연금의 종료에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하였다. Thomas는 이월결손금 존재 여부로 측정된 조세동기보다는 현금수요가 더욱 큰 동기가 된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세금효과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보다 정교한 방법을 이용하여 Clinch and Shibano는 세금이 연금의 종료시점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두 연구 모두에서 재무보고비용은 연금 종료 의사결정에서 이차적인 동기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한 Mittelstaedt (1989)에서도 연금불입액을 감소시키거나 종료함으로써 생기는 연금 자산 전환에 있어서 재무보고 동기를 고려하지 않았다. 재무보고 동기를 고려하지 않은 논문들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누락변수의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증 증거들은 조세가 기업의 연금불입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한 보다 정교한 방법으로 연금종료의 세금효과를 계산한다면 연금종료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소득의 기간별 이전

세법개정에 따라 기업의 한계세율이 변화하게 되면 경영자들은 재무보고 목적과 세금 목적 간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예를 들어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세율이 인하될 것이 예정되면 소득을 차기 이후로 이전시키는 것이 세금 목적상 유리하지만 재무보고 목적으로는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불리해진다. 따라서 세법개정에 따른 세율 인하(혹은 인상)에 따른 소득 이전 현상을 보게 되면 조세비용과 재무보고비용 간의 상충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86년 대규모 세법개정이 있었는데 1986년 세법개정은 1986년에 통과되어서 1988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하였다. 예를 들어 1986년에 최고법인세율이 46%에서, 1987년에는 40%, 1988년에는 34%로 인하되었다. 세율이 낮아진다는 사전약속은 세무관리자들로 하여금 세율이 감소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세무계획을 수립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기업이 이익을 이연시킴으로써 세금을 절감하려는 의도를 갖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다. Scholes et al.(1992)은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이익을 이전시킨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은 재무보고비용이 미래로 이익을 이전시키는 것을 방해한다고 하였지만 그들의 연구설계에는 이러한 비용을 포착할 수 있는 측정치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Guenther(1994)는 Scholes et al.(1992)의 연구를 확장해서 재무보고비용을 포함시켰다. 그는 규모가 큰 기업이 보다 많이 이전시키지만 재무보고비용을 대리하고 있는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낮은 이익을 보고하고자 하는 성향이 작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세금 절감 목적의 이익 이전은 부채계약 위반 비용에 따라 조절된다. Lopez et al.(1998)은 Guenther(1994)의 연구를 확장하여 이전에 공격적인 재무보고(Wikie and Limberg, 1993의 연구에서처럼 세금보조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를 했던 기업들에게서 이익 이전이 집중적으로 일어났다고 보고하였다.

1986년 세법개정은 세율이 낮아지기 전에 이월결손금 소급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동기를 불러온다. Maydew(1997)는 재무보고비용을 부채비율로 측정하고 이월결손금 동기가 유발하는 이익 조정을 검토하였다. 그는 이월결손금 동기를 갖는 기업들이 26억달러를 영업이익 이전단계의 이익에서 소급되는 결손금으로 이전시켰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272억달러에 달하는 총이전소득과 비교하면 재무보고 비용의 제약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율 감소는 소득을 1986년에서 그 이후로 이전시키고자 하는 유인을 만들어 내는 반면에 1986년 세법개정으로 인한 최저한세 도입은 소득을 1986년 이전이나 1989년 이후로 이전시키려는 유인을 제공하였다.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 입장에서 보자면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하여 당기순이익이 과세소득의 구성요소가 되는데 이러한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 간의 직접적인 연결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교환비율을 측정할 수 있는 강력한 실험 상황을 만들어낸다.

몇몇 연구들에서 보고이익에 최저한세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Gramlich(1991)에서는 최저한세 도입이 기업으로 하여금 보고이익을 낮추도록 만든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기업들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1987년 소득을 1986년으로 이전시켰다고 보고하였다. 최저한세 적용기업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제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Boynton et al.(1992)은 이익 이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에서는 재무보고 비용변수를 누락시켰다. Dhaliwal and Wang(1992), Manzon(1992), Wang(1994) 등의 연구에서도 기업들이 1987년 소득을 1986년으로 이전시켰다는 Gramlich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4) 자본구조, 자산양도

Engel, Erickson and Maydew(EEM, 1999)에서는 신탁우선주(Trust Preferred Stock, TRUP)라고 불리는 특별한 증권을 분석하였는데 신탁우선주는 회계기준에서는 지분으로 간주되지만 세법에서는 부채로 간주되어 배당에 대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⁴⁶⁾ 그래서 기업들은 신탁우선주를 발행하고 그 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하여 재무상태를 개선하고자 할 수 있다. 이러한 신탁우선주는 조세비용과 재무보고비용 간의 상충관계에서 경영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의사결정의 대가로 지불한 조세비용 혹은 재무보고비용이 얼마인지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매우 독특한 실험 환경을 제공한다.

EEM은 신탁우선주를 이용하여 부채를 상환한 44개 기업을 조사하여 평균적으로 부채비율이 12.8%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였다. EEM은 부채비율 감소에 따른 비용의 최대와 최소를 추정하였다. 최소비용은 신탁우선주를 발행하는 비용인데 대략 1천만달러였다. 최대치는 우선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상환한 15개 신탁우선주 발행 기업을 이용하여 추정되었다. 그들은 우선주를 상환하지 않음으로써 평균적으로 4,300만달러에 달하는 세금효과를 포기하였다. 그래서 이들 기업들이 평균 부채비율을 12.8% 감소시켜 재무구조를 개선한 대가로 최소 1천만달러에서 4,300만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EEM의 연구는 비조세비용을 계량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며 향후 연구에 대해 의미하는 바가 크다. 기업들이 재무상태표를 개선하는 데 지불하고자 하는 최소와 최대 금액을 추정함으로써 EEM은 막연한 비조세비용을 구체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최적 자본구조를 설계함에 있어서 조세의 계량적인 척도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신탁우선주를 발행할지 여부 혹은 얼마의 자금을 조달할지 여부를 단지 외생변수로

46) 신탁우선주의 구조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설명한 바 있다.

간주함으로써 자기선택편의에 노출되어 있다.

Maydew, Schipper and Vincent(MSV, 1999)에서는 비과세 분할을 이용하여 회피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기업들이 세금 면에서 불리한 과세분할을 왜 선택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들은 재무보고동기와 현금에 대한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기업들이 비과세분할을 선택하지 못하고 과세되는 자산처분을 선택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유사하게 Alford and Berger(1998)는 자산처분에 대한 조세부담이 클수록 비과세분할을 선택하지만 재무보고비용은 분할의사결정에서의 조세의 역할을 조절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자산처분을 대상으로 상충관계를 관찰한 연구들이 있다. 대규모 자산처분에서는 막대한 이익이나 손실이 한꺼번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경영자가 조세비용과 재무보고비용 간의 상충관계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Bartov(1993)는 당기순이익과 조세유인이 자산처분의 시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Klassen(1997)은 또한 경영자가 소유한 기업들이 손실을 실현시킬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경영자 지분율이 높을수록 재무보고비용이 감소하며 그래서 기업들은 조세 감소에 더욱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다고 하였다.

5) 규제산업

최근 들어와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상충관계를 볼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상황이 바로 은행과 보험 산업이다. 이러한 규제산업은 상대적으로 생산기능은 단순하면서도 다른 기업에 비하여 광범위한 공시를 요구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을 비교하기에 좋은 환경이 된다. 즉, 규제조건으로 설정되는 자기자본비율이나 순이익비율 등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을 희생해야 한다.

Scholes, Wilson and Wolfson(SWW, 1990)은 조세비용, 이익요인과 규제자본과 같은 다른 비조세 요인들까지 포함하여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SWW 상황에서 은행은 미실현손실이 있는 증권을 처분하여 과세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조세 목적에서 손실을 실현시키면 보고이익이나 규제자본이 감소하게 된다. 반대로 미실현이익이 있는 증권을 처분하면 당기순이익이나 규제자본 압력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조세부담은 증가한다.

Collins, Shackelford and Wahlen(CSW, 1995) 그리고 Beatty, Chamberlin and Magliolo (BCM, 1995(a))는 SWW 연구를 확장하여 포트폴리오 관리는 단지 조세, 이익이나 규제자본을 관리하는 수단 중 하나라는 사실을 감안하였다. CSW에서는 은행 간의 이질성, 조세, 이익, 규제자본의 비정대성, 은행들 선택의 내생성 그리고 선택 내에서의 자기상관 등을 고려하는 모형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모든 차원을 단 하나의 추정치에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연구자는 여러 차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였다.

CSW는 모든 은행은 동질적이라는 SWW 가정을 완화하였다. 그들은 횡단면적으로 통합하기보다는 은행별로 특유한 목표를 포착할 수 있는 은행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들은 7개의 선택변수를 고려하였는데 이것들은 증권의 이득과 손실, 대손충당금, 대출수수료, 어음발행, 보통주, 우선주, 그리고 배당이다.

SWW, CSW, BCM은 서로 다른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세 연구 모두에서 재무보고와 규제비용은 은행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WW에서만 조세가 중요한 고려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CSW와 BCM에서 세금효과를 발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추가적 연구가 실시되었다. Collins, Geisler and Shackelford(CGS, 1997) 연구에서는 모든 은행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효과를 포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검정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생명보험산업과 같이 회사별로 세율이 다른 산업에서 동일한 연구를 반복 수행하였다. 물론 은행과 마찬가지로 과세소득에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일정한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과세소득에 대해서 생명보험업자들에게는 별도의 지분과세가 추가되므로 한계세율이 달라진다. 이렇게 강력한 상황에서 CGS는 조세가 투자포트폴리오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Beatty and Harris(1999)는 은행을 대상으로, Mikhail(1999)은 생명보험을 대상으로 이러한 연구들을 확장하여 세금, 이익, 규제的重要性이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간에 서로 다른지를 조사하였다. 두 연구 모두에서 세금은 상장기업보다는 비상장기업에서 훨씬 중요하였다고 보고되었다. 비상장기업과 상장기업은 세율 면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재무보고비용의 차이 때문인데 즉, 비상장기업은 재무보고비용이 덜 중요하기 때문에 최적 조세전략을 취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작다는 것이다.

Mikhail(1999)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이 최소한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고 하였다. 하나는 상장기업에서는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상장기업은 세무계획으로 이익이 감소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자본시장의 압력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설명을 구분하기 위하여 Mikhail은 상호생명보험업자들을 조사하였다. 신탁들은 소유권이 분산되어 있어서 대리인비용 면에서는 상장기업과 동일하지만 상장기업과 달리 자본시장의 압력은 받지 않는다. Mikhail은 상호보험업자들도 세금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상호보험업자들이 상장기업들처럼 세금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Mikhail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차이는 자본시장의 압력보다는 보상계약 때문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Mikhail 연구가 맞는가 여부는 신탁회사들이 상장기업과 동일한 대리인비용을 부담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더욱이 Mikhail 연구는 보험업자들이 이익과 세금을 관리하기 위해 여러 개의 선택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하면서도 그들이 조직선택에서 고려한 사항들을 모형에 담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선택편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구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세무 공격성의 차이를 깊이 있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간의 관찰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경쟁적인 설명들을 구분할 수 있는 보다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SWW 연구 방법은 이익조정이 없는 경우, 조세와 규제 동기를 서로 비교하는 것에도 이용할 수 있다. Adiel(1996)은 손해보험업자들의 재보험 의사결정에서 규제자본 동기가 세금 동기를 압도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Petroni and Shackelford(1995)는 손해보험업자들이 주 경계를 넘어서서 영업을 확장하면서 조직구조 결정에 세금과 규제 동기가 다 같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전반적으로 SWW(1990)의 초기 은행 연구들을 제외하면 규제산업에 소속된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의 실증 증거는 규제자본이나 채무보고 동기가 세금 동기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상장기업들이 보다 공격적으로 세무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기타

Keating and Zimmerman(2000)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조사하였다. 미국에서 감가상각비는 회계기준과 세법 간 상충관계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인데 회계기준에서는 감가상각 방법이나 내용연수를 회계담당자의 판단에 기초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법에서는 1981년 이후로 정해진 방법이 별도로 있다. 그들은 채무보고 목적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내용연수가 세법상 내용연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결과를 감가상각 자산의

최적 보유기간이 세법상 공제가능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즉, 재무보고가 세법상 감가상각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지만 조세가 장부상 감가상각비에 영향을 준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비록 세법과 회계기준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충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Keating and Zimmerman(1999)의 연구와 통한다. 세법에서 세법상 감가상각을 별도로 규정하기 전, 증거들을 보면 IRS 감사인들에게 감가상각비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재무보고를 위한 감가상각비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과 일치한다. 즉, 재무회계가 세무상 감가상각에 영향을 주었던 것인데 그 이후에는 그렇지 않았다.

Cloyd et al.(1996)도 또한 재무보고가 재무보고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들은 경영자들이 세무와 재무보고 선택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유인은 조세절감액과 비례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그들은 또한 상장기업들이 비상장기업에 비해서 양자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적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상장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세무계획에서 덜 공격적이며 그 이유는 자본시장의 압력이나 대리인비용과 같은 비조세비용이 크기 때문이라는 사실과 일치하는 것이다.

Guenther et al.(1997)는 세법상 선택이 재무보고에 영향을 준다는 또 다른 사례를 제공한다. 1986년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기업들은 발생주의를 강제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었다. 1986년 이전에는 기업들은 과세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다. 세법개정 이전에 현금주의를 적용하고 있었던 66개의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들은 발생주의가 강제 적용되기 이전에는 세무계획과 재무보고 간의 상충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발생주의가 강제 적용된 후에는 재무보고 목적으로 이익을 이연시키고 있었다. 즉, 세법과 회계기준이 일치됨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제 발생액이 달라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익을 이연

시킴으로써 그들 기업들은 보고이익이 낮아지기는 하지만 대신에 과세소득을 줄이고 세금을 절감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Mills(1998)는 당기순이익 수준이 IRS 감사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1982년부터 1992년 사이에 실제 세무신고 자료를 이용하여 IRS의 감사수정금액이 당기순이익이 과세소득을 초과하는 정도와 비례하고 있으며 상장기업들이 세무계획에 있어서 덜 공격적인데 이는 그들의 재무보고비용이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기업들이 비록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대가 없이 과세소득을 줄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들을 보면 세법이 기업의 재무보고 선택에 영향을 주고 기업들은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조세를 절감하고자 할 때에는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을 가급적 일치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들이 조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보고이익을 줄여야 한다면 세금효과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는 상반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이 서로 간에 일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세법이 재무보고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영자가 조세비용과 재무보고비용의 관련성을 감안하여 최종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양자의 상충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증적인 증거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익조정 유인과 조세회피 유인 간의 상충관계를 보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살펴보았던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이익조정과 조세회피 간에 상충관계가 존재한다는 실증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익조정과 조세회피 유인 간에 상충관계가 존재한다면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양 유인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⁴⁷⁾ 그렇지만 대부분 연구들이 이러한 상충관계의 존재만을 확인했

47) 이렇게 서로 단점 간의 충돌을 통해서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Madisonian Method라고 부를 수 있다(Shaviro, 2008).

을 뿐 실제로 일치도가 높아졌을 때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유인이 감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증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일치도가 높아지면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유인이 감소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살펴본다.

나. 효익에 대한 실증 증거

이익조정과 조세회피의 상충관계에 대한 실증 증거들이 상당히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구심은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를 높임으로써 이러한 상충관계를 강화했을 때, 우리의 바람처럼 실제로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행위가 감소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번 절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Chan et al.(2010)은 중국에서 시기별로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가 달라졌음에 주목하고 이를 이용하여 실제로 조세회피나 이익조정 행위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1983년부터 세법이 제정된 중국에서는 1998년까지는 세법이 회계기준을 완전하게 지배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대손충당금 설정, 감가상각 방법이나 내용연수, 잔존가치 등이 세법에 의해 정해진 대로 회계기준에서 이를 수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방의 영향으로 1998년부터 새로운 회계기준이 제정되고 여기에서는 세법과 독립적으로 경영자가 회계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받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1년 중국은 WTO에 가입하게 되며 이에 회계기준의 국제화에 더욱 노력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Chan et al.(2010)은 1997년까지를 세법과 회계기준이 일치된 시기, 그리고 1998~2000년까지를 세법과 회계기준이 부분적으로 일치된 시기, 그리고 2001년 이후를 세법과 완전하게 분리된 시기로 구분하였다.

Chan et al.(2010)은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에 따라서 조세회피

정도도 달라지며 여기에 덧붙여서 조세회피 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일치도가 높으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이 일치하는 방법으로 조세회피를 하게 되지만 일치도가 낮아지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이 불일치하는 방법으로 조세회피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일치도에 따라서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와 조세회피와의 관련성도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 모형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begin{aligned}
 (1) \text{ ADJ} &= \alpha_0 + \alpha_1 \text{BTD} + \alpha_2 \text{PARTIAL_DELINK} + \alpha_3 \text{DELINK} \\
 &+ \alpha_4 \text{BTD} \times \text{PARTIAL_DELINK} + \alpha_5 \text{BTD} \times \text{DELINK} \\
 &+ \alpha_6 \text{RIGHT} + \alpha_7 \text{BTD} \times \text{RIGHT} + \alpha_8 \text{OWNER} + \alpha_9 \text{AGE} + \alpha_{10} \text{LOSS} \\
 &+ \alpha_{11} \text{SIZE} + \alpha_{12} \text{B_SHARE} + \alpha_{13} \text{LEVERAGE} + \alpha_{14} \text{INUSDTRY}_k \\
 (2) \text{ BTD_ADJ} &= \beta_0 + \beta_1 \text{BTD} + \beta_2 \text{PARTIAL_DELINK} + \beta_3 \text{DELINK} \\
 &+ \beta_4 \text{BTD} \times \text{PARTIAL_DELINK} + \beta_5 \text{BTD} \times \text{DELINK} + \beta_6 \text{RIGHT} \\
 &+ \beta_7 \text{BTD} \times \text{RIGHT} + \beta_8 \text{OWNER} + \beta_9 \text{AGE} + \beta_{10} \text{LOSS} + \beta_{11} \text{SIZE} \\
 &+ \beta_{12} \text{B_SHARE} + \beta_{13} \text{LEVERAGE} + \beta_k \text{INUSDTRY}_k \\
 (3) \text{ BTC_ADJ} &= \gamma_0 + \gamma_1 \text{BTD} + \gamma_2 \text{PARTIAL_DELINK} + \gamma_3 \text{DELINK} \\
 &+ \gamma_4 \text{BTD} \times \text{PARTIAL_DELINK} + \gamma_5 \text{BTD} \times \text{DELINK} + \gamma_6 \text{RIGHT} \\
 &+ \gamma_7 \text{BTD} \times \text{RIGHT} + \gamma_7 \text{OWNER} + \gamma_8 \text{AGE} + \gamma_9 \text{LOSS} + \gamma_{10} \text{SIZE} \\
 &+ \gamma_{11} \text{B_SHARE} + \gamma_{12} \text{LEVERAGE} + \gamma_{13} \text{INUSDTRY}_k
 \end{aligned}$$

ADJ: 세무조사에 적발된 금액을 총매출로 나눈 값

BTD_ADJ: 세무조사 수정사항 중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이 일치하지 않는 항목의 금액을 총매출로 나눈 값

BTC_ADJ: 세무조사 수정사항 중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이 일치하는 항목의 금액을 총매출로 나눈 값

BTD: 세전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총매출로 나눈 값

PARTIAL_DELINK: 1998년 이전에 속한 표본 기업-연도는 1, 아니면 0

DELINK: 2001년 이후에 속한 표본 기업-연도는 1, 아니면 0

IV.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 일치에 따른 효익과 비용 185

RIGHT: 3년 이내 신주를 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1, 아니면 0

OWNER: 정부가 소유하는 지분율

AGE: 상장기간

LOSS: 손실이면 1, 아니면 0

SIZE: 총자산 장부가액의 자연로그 값

B_SHARE: class B 주식이 발행된 경우에는 1, 아니면 0

LEVERAGE: 부채 대비 자본 비율

이들은 중국 기업에서 실제로 세무조사를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1996~2003년간 2,491개 기업-연도를 표본으로 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우선 세무조사 수정사항(*ADJ*)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에서는 *PARTIAL_DELINK*, *DELINK*의 회귀계수는 모두 양(+)이면서 유의하였다. 이는 세무조사 수정사항의 크기는 세법과 회계기준 간 일치도(*PARTIAL_DELINK*, *DELINK*)가 낮아지면서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해석된다. 즉, 일치도가 낮아지면서 조세회피 행위가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동시에 불일치하는(disconforming) 조세회피(*BTD_ADJ*)를 종속변수로 삼은 모형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이 불일치하는 조세회피는 세법과 회계기준 간 일치도(*PARTIAL_DELINK*, *DELINK*)가 낮아지면서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일치하는(conforming) 조세회피(*BTC_ADJ*)를 종속변수로 하는 경우에는 세법과 회계기준 간 일치도(*PARTIAL_DELINK*, *DELINK*)의 계수는 유의한 값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세법과 회계기준 간 일치도가 일치하는 조세회피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로 정의되는 *BTD* 계수는 *ADJ*, *BTD_ADJ*가 종속변수인 모형에서는 모두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인다. 이는 *BTD*를 통해서 세무조사 조정금액이나 불일치하는 조세회피금액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정능력은 세법과 회계기준 간 일치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모두 *DELINK* 변수와의 상호작용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BTD* 계수의 조세회피에 대한 추정능력은 세법과 회계기준이 분리된 경우에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han et al.(2010)의 연구는 세법과 회계기준이 일치함으로써 조세회피가 감소할 수 있다는 추론을 실증 증거를 통해서 입증했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반면 중국이라는 특수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주로 조세회피 측면만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익조정 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반면 최근 구자은(2011)의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 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일치도가 조세회피 유인이나 이익조정 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검증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Chan et al.(2010) 연구와 차별화될 수 있으며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유리하다. 구자은(2011)의 연구에서는 세법과 회계이익의 일치 정도에 따른 긍정적 효과 중 경영자의 회계이익조정 감소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A_DA_t = \gamma_0 year + \gamma_1 TAC_t + \gamma_2 CON_t + \gamma_3 SIZE_t + \gamma_4 CF_t + \gamma_5 LEV_t \\ + \gamma_6 LINKTAX_t + \gamma_7 Comlaw + \gamma_t$$

A_DA: 재량적 발생액(DACC)의 절대값

TAC: 전기 총발생액(회계이익과 현금흐름액의 차이)

SIZE: 전기 총자산의 자연로그값

CF: 당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전기 자산총액

LEV: 부채총액/전기 자산총액

LINKTAX: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경우 1, 적용하지 않는 경우 0

Comlaw: 판례법인 경우 1, 판례법이 아닌 경우 0

IV.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 일치에 따른 효익과 비용 187

γ_t : 오차항

위 모형에서 종속변수는 경영자 이익조정의 정도를 나타내는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A_DA_t)이며, 주요 변수는 전기 회계이익의 발생액(TAC_t),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 정도(CON_t), 현금흐름(CF_t), 기업 규모($SIZE$), 연결회계 도입여부($linkTax$), 판례법 여부($Comlaw$)로 구성된다. 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일치도가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γ_2 의 부호를 확인해야 하는데 만약 음(-)의 관련성을 보인다면,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 정도가 높을수록 경영자의 재량적 이익조정의 절대값이 감소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구자은(2011)은 세법과 회계이익의 일치 정도에 따른 긍정적 효과 중 조세회피 감소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text{조세회피 측정치} = \delta_0 \text{year} + \delta_1 CON_t + \delta_2 CF_t + \delta_3 SIZE_t + \delta_4 LEV_t + \delta_5 Comlaw_t + \delta_6 LINKTAX_t + \delta_7 Srate_t + \delta_t$$

조세회피 측정치: 현금 유효법인세율($Cash ETR_t$), 비정상적인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Abnormal total BTD$), 법인세율의 차이($ETR Differential$)임

$Cash ETR_t$: 현금법인세 / 세전회계이익

$Abnormal total BTD$: BTD 중 총발생액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

$ETR Differential$: 명목세율 - $GAAP ETR$

δ_t : 오차항

나머지 통제변수는 위 식과 같음

위 모형에서의 종속변수는 조세회피 정도 감소를 나타내는 측정치로 현금법인세율($Cash ETR$), 비정상적인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Abnormal BTD$), 법인세율의 차이($ETR Differential$)이다. 독립변

수 중 주요변수는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 정도(CON_t), 현금흐름(CF_t), 기업규모($SIZE_t$), 연결회계 도입 여부($LINKTAX_t$), 부채비율(LEV_t), 판례법 여부($Comlaw$), 명목세율($SRATE_t$)로 구성된다.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일치도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δ_1 의 부호를 확인해야 한다.

종속변수가 유효법인세율인 경우에 만약 양(+)¹⁾의 계수를 보인다면,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일치 정도가 높을수록 유효법인세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만약 음(-)²⁾의 계수를 보인다면,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일치 정도가 낮을수록 유효법인세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 정도가 높을수록 유효법인세율이 높다는 의미는 세무이익은 증가하였다는 의미이면서 조세회피 수준이 감소하여 법인세부담액이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 정도의 계수가 양(+)³⁾의 계수를 나타내는 경우에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 정도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다.

종속변수가 비정상적인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Abnormal BTD*)인 경우에 만약 양(+)⁴⁾의 계수를 보인다면,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일치 정도가 높을수록 비정상적인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Abnormal BTD*)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음(-)⁵⁾의 계수를 보인다면,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일치 정도가 높을수록 비정상적인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Abnormal BTD*)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 정도가 증가할수록 비정상적인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Abnormal BTD*)가 크다는 의미는 세무이익에 대한 조정을 많이 했다는 의미로 조세회피가 증가했다고 해석되고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 정도가 높을수록 비정상적 *BTD*가 낮다는 의미는 세무이익에 대한 재량적 조정을 적게 했다는 의미로 조세회피가 감소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 정도의 계수가 음(-)⁶⁾의 계수를 나타내는 경우에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 정도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다.

IV.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 일치에 따른 효익과 비용 189

종속변수가 법인세율의 차이(*ETR Differential*)인 경우에 만약 양 (+)의 계수를 보인다면,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일치 정도가 높을수록 명목세율과 회계상 유효세율(*GAAP ETR*)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음(-)의 계수를 보인다면,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일치 정도가 높을수록 명목세율과 회계상 유효세율(*GAAP ETR*)의 차이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 정도가 높을수록 명목세율과 회계상 유효세율(*GAAP ETR*)의 차이가 크다는 의미는 법인세부담액을 감소시켰다는 의미이고, 명목세율과 회계상 유효세율(*GAAP ETR*)의 차이가 작다는 의미는 법인세부담액을 증가시켰다는 의미이다.

〈표 IV-3〉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가 이익조정유인에 미치는 영향

변수	예상부호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 모형
절편	+/-	0.35106(25.70)***
TAC_t	-	-0.00002(-2.22)**
CON_t	-	-0.25765(-19.41)***
$SIZE_t$	-	-0.02599(-39.56)***
CF_t	+	0.00000(5.54)***
LEV_t	+	0.00134(20.7)***
$LINKTAX_t$	+/-	0.13990(23.35)***
<i>Comlaw</i>	+	0.12600(16.00)***
$\Sigma YEAR$		포함
Adj. R^2		18.6
F-값		213.65***
표본 수		233,721

주: 1. 종속변수는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임

2. ***, **, *는 1%, 5% 및 10% 유의수준(양측검증)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3. 괄호()안은 t 값을 나타냄

4. 변수설명은 본문을 참조하십시오

자료: 구자은(2011) p. 169

〈표 IV-4〉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변수	예상부호	종속변수		
		CashETR	Abnormal BTD	ETR Differential
절편	+/-	-0.12669 (-20.25) ^{***}	-1.07255 (-26.56) ^{***}	0.299 (60.58) ^{***}
CON_t	+, -, -	0.11958 (29.67) ^{***}	-0.97195 (-25.11) ^{***}	-0.19419 (-42.47) ^{***}
CF_t	-, +, +	0.00000 (0.71)	0.38461 (221.93) ^{**}	-0.0000 (-1.04)
$SIZE_t$	+, -, -	0.01185 (53.05) ^{***}	0.17483 (92.62) ^{***}	-0.00828 (-32.61) ^{***}
$LINKTAX_t$	+/-	0.07012 (36.34) ^{***}	-0.10318 (-5.96) ^{***}	-0.08357 (-38.04) ^{***}
LEV_t	-, +, +	0.00000 (1.31)	-0.01884 (-126.76) ^{***}	-0.0000 (-1.31)
$Comlaw$	+/-	0.00098 (0.40) ^{***}	0.043 (1.86) [*]	-0.01023 (-3.78) ^{***}
$SRATE_t$	+, +/-, +/-	0.5816 (45.69) ^{***}	-	-
$\Sigma YEAR$		포함	포함	포함
Adj. R^2		13.63	23.13	8.65
F-값		1,077.15 ^{***}	3,367.90 ^{***}	674.38 ^{***}
표본 수		170,541	268,483	170,592

주: 1. ***, **, *는 1%, 5% 및 10% 유의수준(양측검증)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2. 괄호()안은 t 값을 나타냄

3. 변수 설명은 본문을 참조하십시오.

자료: 구자은(2011) p.173

이에 따라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 정도에 따라 법인세율의 차이가 음(-)의 계수를 나타내는 경우에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 정도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다. 〈표 IV-3〉와 〈표 IV-4〉는 실증연구 결과를 보여준다.

위 〈표 IV-3〉은 세법과 회계이익의 일치 정도에 따른 이익조정 정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IV-3〉은 세무이익과 회계

IV. 법인세법과 회계기준 일치에 따른 효익과 비용 191

이익의 일치 정도와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이 음(-)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1% 통제수준에서 유의한 -0.25765 (t 값 -19.41)의 계수를 보이고 있다.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 정도가 높아지면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이 적어진다는 의미는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경영자가 이익조정 행위를 줄이게 된다는 긍정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표 IV-4〉는 국가별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 정도에 따라 조세회피 감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IV-4〉는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 정도와 조세회피의 측정치와의 관련성을 실증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 정도 (CON_i)가 증가함에 따라 조세회피가 감소한다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 정도(CON_i)가 현금 유효법인세율 (*Cash ETR*), 비정상적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 (*Abnormal BTD*), 유효법인세율의 차이 (*ETR Differential*)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음(-), 음(-)의 관련성을 가져야 하며, 실증분석의 결과 각각 1% 통제수준에서 유의한 0.119 (t 값 29.55), -0.971 (t 값 -25.11), -0.194 (t 값 -42.47)의 계수를 보이고 있다.

구자은(2011)의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 간의 상충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그친 반면, 직접 상충관계를 통해서 이익조정행위나 조세회피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Chan et al.(2010)의 연구와는 달리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일치도를 측정하고 이의 효과를 보았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훨씬 용이하다. 그러나 구자은(2011)의 연구는 국가별 차이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국가별 다양한 특성의 차이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는다.

지금까지 일치도가 높아짐으로써 나타나는 직접적인 효과로 기대할 수 있는 조세회피와 이익조정 행위의 감소에 대한 실증적 증거들을 찾아보았다. 살펴본 두 연구 모두에서 일치도가 높아지면 조세회피 행위나 이익조정 행위가 감소했다는 실증 증거들이 제시되었다. 이로부터 일치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 일치의 비용

앞선 제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국가에서 세법과 회계기준은 대부분 일치하면서도 부분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산출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도 일정 부분은 동일하지만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다. 당기순이익의 일차적인 목표는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이 미래 기업성과를 평가하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과세소득의 일차적 목표는 기업의 조세채무를 결정하기 위한 과거 성과를 계산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은 어느 정도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산출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도 당기순이익과 유사하게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당기순이익도 일정 부분 기업의 조세채무를 보여줄 수 있는 측정치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은 서로가 갖지 못한 정보를 갖고 있으므로 상호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관계에 놓여 있다. 이러한 보완 및 대체효과는 과세당국보다는 자본시장에서 더욱 중요해지는데 그 이유는 과세소득은 조세채무를 결정하는 데 절대적인 유일한 측정치이므로 당기순이익이 과세소득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지만 자본시장에서 당기순이익은 수많은 정보 중의 하나로서 투자자들은 공시되거나 추정된 과세소득을 정보로 이용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과세소득은 당기순이익에 대한 보완 및 대체적인 측정치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장에서는 과세소득이 당기순이익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찾아보도록 한다. 과세소득의 정보가치가 크다면 이는 당기순이익이 담고 있지 못한 추가적인 정보가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세법과 회계기준이 각자 다른 기준으로 이익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소득의 정보가치는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사항이다.

가. 비용의 원천: 자본시장에 대한 정보로서 과세소득의 유용성

과세소득은 비록 자본시장의 참가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산출된 것은 아니지만 당기순이익과 함께 자본시장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당기순이익만의 정보가치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효과를 갖게 된다. 이러한 추가적인 정보효과가 생긴 것은 세법과 회계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정보가치는 상실된다. 이는 일치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가장 중요한 비용이 될 것이다.

정보가치는 미래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는 것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과세소득의 정보가치는 과세소득을 이용해서 미래 기업의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아래에서는 기업의 성과를 미래 이익, 미래 주가가격, 미래 신용등급의 변동 등으로 구분하여 과세소득의 미래 예측력의 존재에 대한 실증 증거를 찾아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세소득이 당기순이익에 비하여 측정의 신뢰성이 높다는 것에서 생기는 추가적인 가치창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미래 이익 예측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과세소득은 당기순이익이 갖지 못하는 유용한 정보를 자본시장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에 대한 보완가치 즉, 추가적인 정보효과를 가질 수 있다. 자본시장에서의 정보는 미래를 예측하는 데 중요하다. 따라서 과세소득이 정보가치를 가지려면 미래 기업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과세소득이 향후 기업의 이익을 예측할 수 있다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 증거가 있다.

Lev and Nissim(2004)은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의 크기가 이익성장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그들은 회계이익에 대한 추정과세소득 비율(TI/BI)을 이익품질의 측정치(그래서 발생액과 현금흐름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로 보았는데 여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경영자가 임의로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과대(과소)계상하게 되면 이익 성장률에 분모인 기초이익이 과대(과소)계상되게 된다. 또한 미래 현금흐름이 고정적인 데 비하여 미래 당기순이익은 감소(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당기순이익을 조기(이연)인식하기 위하여 경영자들은 재량적 발생액을 활용한다. 그러나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세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 세법에서는 경영자의 재량적 발생액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비록 경영자가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과대 혹은 과소 계상하더라도 과세소득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TI/BI 에 따라 당기순이익 성장률은 달라질 수 있다.

둘째, 과세소득도 경영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과세소득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은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방법과는 다르다. 회계상 당기순이익은 주로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조정되는 반면에 과세소득은 자산의 처분시점과 같이 거

IV.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 일치에 따른 효익과 비용 195

래의 수행시점 등을 통하여 조정하게 된다. 그리고 경영자들이 과세소득을 조정하는 목적은 특정시점의 과세소득을 최소화하기보다는 과세소득 유연화를 통해서 장기간의 조세채무를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당기 과세소득은 미래 과세소득에 대한 경영자의 추정치를 반영한다. 따라서 높은 과세소득은 미래의 과세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 이에 따라 회계상 당기순이익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TI/BI 에 따라서 회계상 당기순이익 성장률은 영향을 받는다.

셋째, 회계기준에서는 수익은 가급적 늦게 인식하고 비용은 가급적 조기에 인식하고자 한다. 이와 반대로 세법에서는 수익을 조기에 인식하며 비용은 늦게 인식하고자 하는 경향을 갖는다. 이에 따라서 기업들이 대개는 회계목적상 수익(비용)을 인식하기 전(인식한 후)에 세무목적상 수익(비용)을 인식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TI/BI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 높은 수익이나 적은 비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회계상 당기순이익 성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고성장 기업들은 충당부채와 같은 재량적 부채를 많이 계상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충당부채들은 세법상으로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성장기업들의 TI/BI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다.

Lev and Nissim(2004)은 TI/BI 와 이익성장성 간의 관련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대부분 현금흐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과세소득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대해서도 차별적인 정보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과세소득과 현금흐름의 가장 큰 차이는 발생액 부분으로서 경영자가 현금지출을 비용화하지 않고 자본화하거나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모두 과대계상할 수 있지만 과세소득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과세소득은 발생액을 계상하기 때문에 현금흐름 시점의 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현금흐름에 의존하는 성과는 경영자가 현금흐름의 수입이나 지출

시점을 조정함으로써 쉽게 조작할 수 있지만 과세소득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Lev and Nissim(2004)은 과세소득은 당기순이익과 현금흐름 모두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개념적인 주장대로 TI/BI 가 정보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Lev and Nissim(2004)은 TI/BI 변수를 구하고 이를 산업별 순위변수로 전환한 다음 다시 5분위로 구분한 R_TAX 변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과세소득의 추가적인 정보효과를 보기 위하여 이연법인세와 현금흐름에 대해서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R_DEF , R_CFO 를 구하였다. 그들은 1973년부터 2000년까지 28년간 40,732개의 기업-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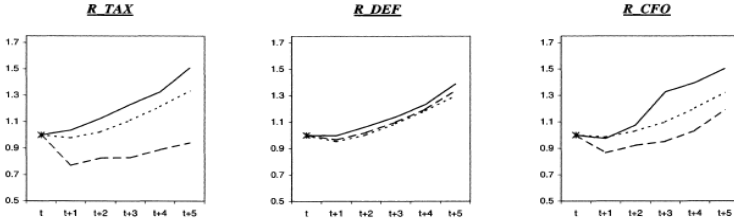
첫째, 과세소득, 이연법인세, 현금흐름의 이익성장성과의 관련성을 보기 위하여 R_TAX , R_DEF , R_CFO 변수를 상·중·하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연도별로 성장성과의 관련성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세 변수 모두 상·중·하 집단별로 이익성장성의 크기와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R_TAX 는 상·중·하 집단의 성장성 차이가 다른 변수집단들보다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머지 변수들에 비하여 정보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래의 [그림 IV-1]에서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SFAS No.109가 공포되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도 마찬가지이다.⁴⁸⁾

48) SFAS No.109는 이연법인세와 관련하여 종전 SFAS No.96을 대체하는 회계기준으로서 1992년 12월 12일에 발효되었다. 이는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함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게 된다. 이는 매우 중요한 회계기준 변화이므로 이 시기를 전후하여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때문에 Lev and Nissim (2004)은 이 시기를 구분하여 결과를 살펴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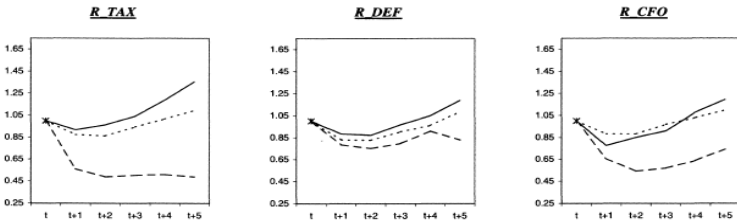
IV.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 일치에 따른 효익과 비용 197

[그림 IV-1] 과세소득과 현금흐름으로 순위화한 기업집단의 5년간의 이익성장률

Panel A: Pre-SFAS No. 109 (1973-1992)



Panel B: Post-SFAS No. 109 (1993-2000)



자료: Lev and Nissim(2004)

둘째, 이익성장성을 R_TAX , R_DEF , R_CFO 변수에 회귀시킨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R_TAX 와 R_CFO 는 모두 이익성장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R_DEF 는 오히려 음(-)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R_TAX 의 회귀계수와 유의수준이 R_CFO 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서 이익성장성과의 관련성이 R_TAX 가 R_CFO 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이익-주가비율(E/P)을 R_TAX , R_DEF , R_CFO 변수에 회귀시키고 통제변수들을 포함시킨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회귀분석의 목적은 R_TAX , R_DEF , R_CFO 변수와 이익성장성과의 관련성을 자본시장에서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분석결과는 시기별로 차이가 있었다. 즉, 이연법인세를 미래세율로 인식할 것을 규정한 SFAS No.109 이전에는 R_TAX 변수

는 주가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SFAS No.109 이후에는 주가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넷째, 1년 후의 주가수익률을 R_TAX , R_DEF , R_CFO 변수에 회귀시키고 통제변수들을 포함시킨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목적은 이들 설명변수와 이익성장성과의 관련성을 자본시장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이것이 차후의 주가수익률에 반영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자본시장이 충분히 과세소득과 이익성장성 간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분석 결과, SFAS No.109 공표 이전 시기에는 R_TAX 가 미래주가수익률과 관련성을 갖고 있었다. 이는 동일한 시기에 R_TAX 가 E/P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과 일맥상통한 결과로서 자본시장이 R_TAX 가 이익성장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가 차후에 반응을 보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에 SFAS No.109 공표 이후 시기에는 R_TAX 와 미래주가수익률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한 시기에는 자본시장이 R_TAX 의 정보효과를 완전하게 주가에 반영시켰다는 의미이다.

Lev and Nissim(2004)의 연구는 과세소득이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갖는 추가적인 정보효과를 인식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공헌이 있다. 그러나 Graham et al.(2011)은 이러한 Lev and Nissim(2004)의 연구는 흥미롭고도 영향력 있는 연구이기는 하지만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저자들은 기간별로 과세소득을 유연화하는 세무계획만을 고려했는데 이는 명백히 조세회피 중 하나의 유형에 불과하다. 둘째, 많은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의 결정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지 산업효과만을 통제했다. 그래서 이익품질의 다른 무언가가 TI/BI 의 관련성을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과세소득을 이용하여 기업의 미래 이익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Lev and Nissim(2004)는 과세소득

IV.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 일치에 따른 효익과 비용 199

을 세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지표를 개발하고 이 지표가 기업의 미래 이익성장성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결과의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며 연구방법상 문제점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이들의 주장을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과세소득을 이용하여 적절한 지표를 만든다면 이 지표가 기업의 미래 이익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

2) 미래 주식가격 예측

자본시장 참가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기업가치인데 이는 기업의 주식가치로 나타낸다. 만일 과세소득이 기업의 미래 주식가격을 예측할 수 있다면 자본시장 참가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로 인식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과연 과세소득을 이용하여 기업의 미래 주식가격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가치는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효과를 보이는지를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Hanlon et al.(2005)은 과세소득이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자본시장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들은 1983년부터 2001년 사이에 66,678개 기업-연도를 표본을 이용하여 당기순이익과 추정된 과세소득의 정보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정보효과는 이익이 주식가격이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포착하거나 요약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였다. 이들은 과세소득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소득을 재무제표로부터 추정하였다. 이렇게 과세소득을 추정함으로써 실제 과세소득에 비하여 추정오차가 존재하겠지만 자본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과세소득은 재무제표로부터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렇게 추정된 과세소득이 연구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재무제표에 나타난 당기법인세비용을 해당 기간의 법인세율로 나누어 과세소득을 구했는데 이는 미국 내 과세소득이 아닌 전 세계적인 과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연

구자들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의 과세소득을 구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였다. 그들은 16개월 동안의 장기적인 검증기간을 설정하고 시장조정수익률과 세전 당기순이익 및 추정과세소득 간의 관련성을 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시장조정수익률은 개별주가수익률에서 시장수익률을 차감한 것이며 16개월간의 수익률은 회계연도 기초에 시작하여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4개월까지 구하였다.

Hanlon et al.(2005)은 우선 당기순이익과 추정과세소득의 정보효과를 구하기 위하여 16개월간의 시장조정수익률을 연도별 당기순이익과 추정과세소득 증감에 회귀시켰다. 그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R_{jt} = a_0 + a_1\Delta PTBI_{jt} + e_{jt}$$

$$R_{jt} = b_0 + b_1\Delta TI_{jt} + e_{jt}$$

위 식에서 R_{jt} 는 16개월 동안의 시장조정수익률이며 $PTBI$ 는 세전 당기순이익이고 TI 는 추정된 과세소득이다. 각 회귀모형은 연도별로 추정된다. 우선 세전 당기순이익과 추정된 과세소득은 모두 주가수익률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였는데 설명력은 세전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는 평균 0.059였지만 추정과세소득은 연도별로 평균 0.032였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전체 기간의 절반 이상에서 세전 당기순이익의 설명력이 추정과세소득의 2배 가까이 높았으며 설명력 차이에 대해서 Young 검증을 실시한 결과, 1983~2001 기간 중 3기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적으로 당기순이익의 설명력이 추정과세소득의 설명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세전 당기순이익이 추정과세소득에 비하여 자본시장에 제공하는 정보가치가 크다.

Hanlon et al.(2005)은 당기순이익과 추정과세소득을 하나의 회귀모형에 집어넣어서 서로간의 증분정보 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IV.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 일치에 따른 효익과 비용 201

$$R_{jt} = c_0 + c_1\Delta PTBI_{jt} + c_2\Delta TI_{jt} + e_{jt}$$

회귀분석 결과 세전 당기순이익에 대한 연도별 평균 회귀계수값은 0.55인 데 비하여 추정과세소득은 0.28이었고 거의 모든 연도에 걸쳐서 두 변수의 계수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세전 당기순이익과 추정과세소득이 모두 제공될 때 주가수익률과 가장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추정과세소득이 세전 당기순이익 단독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비하여 추가적인 정보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Thomas and Zhang(2007)은 추정과세소득과 미래 시장수익률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면서 당기순이익을 통제하였다. 그들은 미래주가 수익률을 과세소득 및 당기순이익의 비기대 부분에 회귀시켰다(비기대는 현재 분기의 이익에서 4분기 전의 이익을 차감하여 구한다). 그들은 비기대 추정과세소득이 6개월 후의 주가수익률과 관련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는 재무제표 공표시점에서 시장이 추정과세소득에 대한 정보를 완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Thomas and Zhang(2007)은 이러한 이상 현상이 존재하는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보았다. (1) 비기대 법인세는 현재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지 않은 미래 당기순이익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2) 비기대 법인세는 미래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래 공표되는 다른 재무 정보에 포함된 정보를 포착하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두 가지 설명 모두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보여준다.

Weber(2009)는 Lev and Nissim(2004), Thomas and Zhang(2007)의 논문을 여러 가지로 확장하였다. 첫째, 그는 미래수익률과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 간의 관련성은 열악한 정보환경(추종하는 분석가 수로 측정)에 놓인 기업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둘째, 그는 분석가들의 예측을 조사하여 그들이 추정과세소득에 대한 정보를 완전하게 포착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가의 예측오차를 추

정과세소득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비율로 회귀시켰는데 예측오차가 법인세비용 변수와 유의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분석가들이 추정과세소득을 완전하게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⁴⁹⁾ 특히 그는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가 큰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예측치가 낙관적으로 편향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는 분석가들이 보이는 이러한 오류가 시장이 당기의 추정과세소득에 대한 정보를 즉각적이고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매매수익률을 예측오차와 법인세 변수로 회귀한 결과, 예측오차는 미래수익률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지만 법인세 변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러한 결과를 분석가들이 당기의 법인세 정보를 그들의 예측에 반영하는 데 실패함으로써(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시장이 법인세 정보를 완전하고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흥미롭기는 하지만 이러한 가설은 시장이 법인세 정보를 해석하거나 보고하는 데 분석가들에게 의존한다는 암묵적인 가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다(Graham et al. 2011).

Ayers et al.(2009)은 세무계획과 이익품질의 기업간 차이를 고려함으로써 Hanlon et al.(2005)을 확장하였다. 그들은 세무계획에 적극적인 기업일수록 과세소득이 기업의 경제적 활동을 나타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또한 이익조정에 적극적일수록 과세소득이 더욱 큰 정보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적극적인 세무계획 기업을 5년간에 걸친 누적 유효법인세율(산업별로 수정된)

49) 별도의 연구인 Chen et al.(2003)은 분석가들이 특정한 AFIT 규정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1993년에 법인세율이 34%에서 35%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 번의 이연법인세 수정을 요하는 것이다. 이것이 한 번의 수정만 요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분석가의 미래 예측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분석가들이 수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IV.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 일치에 따른 효익과 비용 203

이 가장 낮은 하위 20%에 속한 기업으로 정의하였으며 절대적인 비정상발생액이 가장 높은 상위 20% 기업을 이익품질이 낮은 기업으로 정의하였다.⁵⁰⁾ 그들은 수익률과 당기순이익 그리고 과세소득 간의 장기 관련성을 검증하였는데 이들 각각은 동기간으로 측정하였다. 각각의 회귀식으로부터 그들은 추정과세소득에 대한 회귀식의 설명력을 분자로 하고 당기순이익에 대한 회귀식의 설명력을 분모로 하는 비율을 구하였다. 그 다음 그들은 검증대상 기업의 두 집단(예를 들어 세무계획기업과 이익조정기업)의 비율을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였다. 예측대로 과세소득의 정보효과(당기순이익의 정보효과에 대한)는 세무계획기업에서 낮았고 이익조정기업에서 높았다.

Raedy(2009)에서 폭넓게 논의한 바대로 두 번째 가설(이익조정을 한 기업일수록 추정과세소득의 정보효과는 커진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경영자는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이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만 이익조정을 할 것이며 자본시장은 과세소득을 당기순이익의 또 다른(alternative) 측정치가 아닌 당기순이익을 대체하는(substitute) 측정치로 인식할 것이라는 전제를 하는 것이다. 이 두 번째 가설이 갖는 이러한 개념적 문제점과 일관되게 Ayers et al.(2009)의 이 가설에 대한 결과는 약하였다. 그러나 첫 번째 가설(추정과세소득의 정보효과는 세무계획기업일수록 약하다)은 잘 수행되었다. 추가적으로 Raedy(2009)는 첫째 가설에 대한 민감도분석(세무계획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른 추정과세소득의 정보효과)을 실시하여 Ayers et al.(2009)의 결과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Ayers et al.(2009)이 갖는 잠재적인 문제점 중 하나는 세무계획과 이익조정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세무계획기업(이익조정)에 대한 과세소득의 정보효과를 검증하면서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조정을 통제하지 않았다.⁵¹⁾

50) 재량적 발생액은 Dechow et al.(1995)에서와 같이 수정 Jones 모형으로 측정하였다.

노희천(2009)은 Hanlon et al.(2005)과 유사한 모형을 이용하여⁵²⁾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의 추가적인 정보효과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회계는 외부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을 지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과세소득에 비해 추가수익률에 대한 설명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과세소득은 당기순이익과 대등한 수준의 정보효과를 제공함을 알 수 있었다. 미국의 연구 결과와 달리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설명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노희천(2009)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의 상대적 차이가 대등하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당기순이익이 가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과세소득은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가정할 때, 이러한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과세소득을 이용하여 미래의 주식가격을 예측하고자 시도했던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대부분 연구들에서는 과세소득은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미래 주식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예측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과세소득의 정보가치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들에서는 당기순이익의 미래 주가에 대한 설명력이 과세소득의 설명력에 비하여 2배 가까이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는 양자의 설명력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우리나라와 미국의 자본시장이나 세법, 회계기준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51) Raedy(2009), Chen et al.(2007)은 세무계획과 이익조정 변수를 다 같이 회귀식에 포함시켜 이 문제를 다루었다. 두 연구 모두에서 Ayers et al.(2009)과 일치하는 세무계획이 공격적일수록 추정과세소득의 정보효과가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익조정이 과세소득의 정보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세 개의 논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52) 그러나 노희천(2009)은 현금흐름을 통제하였다는 점에서 Hanlon et al.(2005)의 모형을 개선하였다.

IV.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 일치에 따른 효익과 비용 205

이러한 논의를 확장하여 과세소득의 정보가치가 어떤 상황에서 커지는가를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 과세소득의 정보가치는 상대적으로 당기순이익의 정보가치가 작아지는 경우에 커지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예측을 반영하여 이익조정을 의심받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과세소득의 미래주가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3) 미래 신용등급의 변화 예측

자본시장에서는 주식가격 못지않게 기업의 신용등급도 중요한 정보이다. 이는 주로 기업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과세소득을 이용해서 기업의 신용등급의 미래 변동을 예측할 수 있다면 이는 과세소득이 자본시장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Ayers et al.(2010)은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에 따른 발행기업의 신용등급 변화를 보고자 하였다. 그들은 신용분석에서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 정보를 이용하는지 여부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기업들이 주로 부채발행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에 따라 기업의 신용등급이 자본구조 의사결정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되기 때문이며 신용등급의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엄청나게 크고 이는 주식시장에서의 주가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신용분석에서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 정보는 유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 이유는 첫째,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커짐에 따라 신용분석가들은 이를 이익품질이 하락하는 신호로 생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신용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물론 신용평가기관에서 재무제표의 품질을 판단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S&P와 같은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에서 사용하는 기준 중에는 자료의 신뢰성도 들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Hanlon(2005)이나 Palepu et al.(2005) 등에서 언급한 대로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가 이익의 품질과 관련이 있다면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는 신용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부외부채 조달이라고 알려져 있다.⁵³⁾ 따라서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가 크다는 것은 발행 기업에 부외부채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신용등급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yers et al.(2010)은 신용분석에서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 정보를 이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용등급 변화와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신용등급 변화는 매우 보수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검증 방법은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 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는지를 보는 데 있어서 매우 강력한 검증력을 갖는다. 당기순이익이 과세소득을 초과하는 정도가 커질수록(양의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 이익품질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부외부채의 존재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므로 이는 신용평가 기관에 부정적인 정보로 인식될 것이다. 반대로 과세소득이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음의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에는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Hanlon(2005)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도 이익지속성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역시도 부정적인 정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외부채의 존재 가능성이 하락한다는 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Ayers et al.(2010)은 음(-)의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예측을 하지 않았다.

Ayers et al.(2010)은 양(+)의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과 음(-)의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을 연도별로 순위변수로 전환하

53) 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장에서 살펴보았다. Mills and Newberry (2005)의 논문을 참고하라.

IV.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 일치에 따른 효익과 비용 207

고 이들 변수에 신용등급 변동을 회귀시켰다. 양(+)의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이 이익품질을 하락시키고 부외부채 존재 가능성을 높인다는 예측에 부합되게 양(+)의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과 신용등급하락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양(+)의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가 1/4분위에서 3/4분위로 증가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상승할 가능성은 6.4%에서 5.1%로 20.3% 하락하는 반면에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은 11.1%에서 13.7%로 23.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의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도 신용등급 하락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 보아서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이 부외부채 존재 가능성을 보여주기보다는 이익품질 하락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yers et al.(2010)은 추가적으로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과 신용등급 변동 간의 관련성이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의 원인에 따라서 달라지는가를 보고자 하였다. 이는 Ayers et al.(2009)에서 세무계획에 참여한 기업일수록 과세소득의 추가적 정보효과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에 기초한 것인데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은 이익품질의 하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이 적극적으로 세무계획에 참여한 결과일 수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신용등급하락과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 간의 관련성이 약해질 것으로 보았다. Ayers et al.(2009)과 유사하게 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하여 세무계획 참여 여부를 구분하였는데 세무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기업들의 경우에는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과 신용등급 하락 간의 관련성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들이 세무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이 이익품질 하락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채권자들에게는 미래 주가보다는 기업의 신용등급 변화가 중요하다. 따라서 과세소득이 당기순이익과 함께 정보 가치가 있다면 기업의

미래 신용등급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가 커질수록(작을수록) 기업의 미래 신용등급이 하락(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는 과세소득의 정보가치를 보여주는 또 다른 실증 증거이다.

4) 신뢰성

과세소득이 당기순이익에 비하여 추가적인 정보가치를 갖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과세소득을 산출하면서 경영자 재량권이 개입하는 것을 세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자의 재량권을 제한하면 측정의 신뢰성은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과세소득의 신뢰성이 높다면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가 커질수록 당기순이익의 신뢰성은 상대적으로 의심받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를 당기순이익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 찾아내는 실증 증거들은 과세소득이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갖는 상대적인 신뢰성 수준을 보여주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과세소득이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가치를 갖는 이유는 신뢰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 준다.

Hanlon(2005)은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가 당기순이익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이는 경영자가 임의로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과세소득은 상대적으로 그럴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Hanlon(2005)은 1994~2000년 사이의 14,106개의 기업-연도 표본을 이용하여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시적 차이를 3분위로 구분하고 당기순이익이 과세소득을 초과하는 정도가 가장 큰 집단(LPBTD)과 반대로 과세소득이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정도가 가장 큰 집단(LNBTD), 그리고 중간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가설은 'LNBTD, LPBTD 집단에서의 이익지속성이 상대

적으로 낮을 것이다' 인데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귀모형을 수립하였다.

$$PTBI_t + 1 = \gamma_0 + \gamma_1 LNBTD_t + \gamma_2 LPBTD_t + \gamma_3 PTBI_t + \gamma_4 PTBI_t \times LNBTD_t + \gamma_5 PTBI_t \times LPBTD_t$$

위 식에서 $PTBI_t$ 는 t 시점에서의 세전 당기순이익인데 이익지속성은 t 시점의 세전당기순이익과 $t+1$ 시점의 세전 당기순이익이 갖는 상관관계로 정의한다. 회귀분석 결과는 γ_3 의 계수값이 0.742, γ_4 , γ_5 의 계수값은 각각 -0.100, -0.212로 나타났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가 큰 경우에는 전체적인 세전 당기순이익의 지속성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첫 번째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두 번째로 Hanlon(2005)은 세전 당기순이익을 현금흐름과 발생액으로 구분한 후, 발생액의 지속성이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가를 보고자 하였다.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가 이익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이유가 경영자가 임의로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위험을 반영한 것이라면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에 따른 이익지속성의 감소는 주로 발생액 부분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회귀모형을 수립하였다.

$$PTBI_t + 1 = \gamma_0 + \gamma_1 LNBTD_t + \gamma_2 LPBTD_t + \gamma_3 PTCF_t + \gamma_4 PTCF_t \times LNBTD_t + \gamma_5 PTCF_t \times LPBTD_t + \gamma_6 PTACC_t \times LPBTD_t + \gamma_7 PTACC_t \times LPBTD_t$$

위 식에서 $PTCF$ 와 $PTACC$ 는 각각 현금흐름과 발생액을 의미한다. 회귀분석 결과, 발생액의 회귀계수인 γ_7 은 0.557이었으며 상호작용변수의 회귀계수인 γ_6 , γ_7 은 -0.114, -0.187이었다. 이런 결과는 큰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가 발생액의 지속성을 감소시켰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하나 의외의 결과는 발생액과 마찬가지로 현금흐름의 경우에도 γ_3 은 0.806, γ_4 는 -0.083, γ_5 는 -0.167의 값을 보여서 현금흐름 부분도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가 커짐에 따라 지속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Hanlon(2005)은 발생액뿐만 아니라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Hanlon(2005)의 연구를 확장한 Blaylock et al.(2010)은 공격적 세무보고로 인하여 극단적인 양(+)의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회계이익이 과세소득과 큰)가 나타난 경우에는 다른 이유에서 극단적인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가 나타난 경우보다 이익이나 발생액의 지속성이 커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역으로 이익의 상향조정으로 인하여 양(+)의 극단적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다른 이유에서 극단적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가 생긴 경우에 비하여 이익이나 발생액의 지속성이 떨어졌다.

Guenther(2011)의 논문에서는 Hanlon(2005)이 보여주었던 큰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와 지속성 간의 관련성이 기업들이 일시적 차이를 이용하여 회계이익을 부풀리거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나타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Guenther(2011)는 Hanlon의 결과를 유도하는 대부분의 관측치들은 역사가 짧고, 규모가 작으며, 높은 세전 수익률을 보이며 큰 일시적 항목을 갖는 기업들로부터 얻어진 것이며 큰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는 주로 이월결손금이나 평가충당금의 변동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Guenther(2011)의 논문은 새로운 것이며 아직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Hanlon(2005)과는 다른 방향에서 과세소득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있다. Mills and Newberry(2001)는 이익조정 유인이 클수록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는 커지게 되는데 이는 당기순이익이 조정

되지만 조세유인에 의하여 과세소득은 동일한 방향으로 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과세소득이 기업의 이익 조정을 보여주는 기준 측정치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Phillips et al.(2003)은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 간의 차이가 이익조정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바 있다.⁵⁴⁾ Phillips et al.(2003)의 연구 결과는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과세소득 차이가 클수록 당기순이익의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보면 과세소득은 상대적으로 이익조정の影響을 받지 않음으로써 이익조정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당기순이익을 대체할 수 있는 정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자본시장에서 과세소득이 갖는 정보가치를 보여주는 연구들을 탐색하여 보았다. 당기순이익은 자본시장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만들어진 핵심 정보이다. 그러나 과세소득은 자본시장을 염두에 두고 산출된 수치가 아니라 기업의 조세채무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보고 대상도 일반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아니라 과세당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소득은 당기순이익과 마찬가지로 정보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는 단순히 과세소득이 당기순이익과 유사한 방법으로 산출한 수치이며 결과로 당기순이익과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세법과 회계기준이 서로 다르며 서로 독립적인 관계에서 수치를 산출하기 때문에 과세소득에는 당기순이익에 없는 독특한 정보가 담기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과세소득이 추가적인 정보가치를 갖는 근원이다.

연구자들은 미래의 주가가격, 이익, 신용등급 변화 등을 과세소득이 예측할 수 있다는 실증 증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예측력의 근원은 과세소득이 당기순이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54) 이들의 연구에 대해서는 앞선 장에서 다루었다.

신뢰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실증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세법과 회계기준이 일치될 경우 자본시장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 가치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실될 것임을 암시한다. 이런 면에서 다음에서는 세법과 회계기준 일치에 따른 당기순이익의 정보 가치가 얼마나 손상될 것인가를 검토하기로 한다.

나. 비용에 대한 실증 증거

앞선 절에서는 과세소득이 독립적으로 존재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이 단독으로 제공하는 정보 가치를 초과하는 가치를 갖는 정보가 자본시장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일치도를 높여야 한다면 세법을 회계기준에 일치시키거나 아니면 회계기준을 세법에 일치시켜야 한다. 만일 세법을 회계기준에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일치도를 높이면 과세소득이 회계상 당기순이익에 대한 보완적 혹은 대체적 측정치로서 갖는 정보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반면에 회계기준을 세법에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일치도를 높인다면 당기순이익 자체의 정보 가치가 상실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일치도를 높이든지에 관계없이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일치도가 높아지면 자본시장에 제공되는 당기순이익 혹은 과세소득 정보의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또한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가 높아지면 세법이 회계기준 제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 본연의 목적인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이 훼손될 것이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은 상대적으로 품질이 하락하게 된다. 품질이 하락한 당기순이익은 정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부터는 일치도에 따른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의 정보 가치 손실에 대한 연구들을 횡단면 분석과 시기별 분석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일치도를 높임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확인해보

고자 한다.

1) 횡단면 분석

몇몇 연구들에서는 국가별 일치도를 측정하고 국가별로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당기순이익의 정보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Ali and Hwang(2001)은 16개국의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를 조사하여 일치도가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로 분류한 뒤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 간의 상관관계를 보았다. 연구 결과, 일치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이러한 결과는 강제로 일치도를 높게 되면 재무보고와 다른 목적하에 만들어진 세법 규정이 재무회계 기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한 세금절감 목적으로 이익을 과소계상하려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들의 연구 결과는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가 높아질수록 당기순이익의 정보가치가 손상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Guenther and Young(2000)도 국가별로 세법과 회계기준과의 일치도를 조사한 후 이러한 일치도에 따라서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경제적 활동을 반영하는 수준이 달라지는가를 보고자 하였다. 그들은 미국, 영국을 일치도가 낮은 국가로 구분하고 독일과 프랑스를 일치도가 높은 국가로 분류하였는데 독일과 프랑스에서 당기순이익이 경제적 활동을 반영하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앞선 Ali and Hwang(2000)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가 높아질수록 당기순이익의 정보가치가 손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의 연구에서는 일치도 외에 다양한 법적, 재무적 환경의 차이를 함께 포함시켰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전적으로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에 따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Atwood et al.(2010)은 국가별로 일치도를 측정한 후에 상이한 일치도별로 정보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들은 이러한 순위변수를 이용하여 일치도가 이익지속성 그리고 이익과 미래현금흐름 간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들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EARN_{t+1} = & \alpha_{year} + \alpha_1 EARN_t + \alpha_2 BTaxC_t + \alpha_3 EARN_t \times BTaxC_t + \\ & \alpha_4 LOSS_t + \alpha_5 EARN_t \times LOSS_t + \alpha_6 EVAR_t + \\ & \alpha_7 EARN_t \times EVAR_t + \alpha_8 SRATE_t + \alpha_9 SRATE_t \times EARN_t \end{aligned}$$

$$\begin{aligned} EARN_{t+1} = & \beta_{year} + \beta_1 EARN_t + \beta_2 BTaxC_t + \beta_3 EARN_t \times BTaxC_t + \\ & \beta_4 LOSS_t + \beta_5 EARN_t \times LOSS_t + \beta_6 EVAR_t + \\ & \beta_7 EARN_t \times EVAR_t + \beta_8 SRATE_t + \beta_9 SRATE_t \times EARN_t \end{aligned}$$

위 식에서 $EARN$ 은 특별항목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이며 $BTaxC$ 는 $RMSE$ 를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매긴 값인데 따라서 값이 클수록 일치도는 높은 것이다. $EVAR$ 는 $PTIB$ 의 표준편차를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매긴 값이며 $STRATE$ 는 법정세율이다.

기업별 분석에서 이익지속성에 대한 $EARN_t \times BTaxC_t$ 의 회귀계수 α_3 은 -0.19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였는데 이는 일치도가 높을수록 이익지속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EARN_t \times BTaxC_t$ 의 회귀계수 β_3 은 -0.201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여서 일치도가 높을수록 당기순이익과 미래현금흐름 간의 관련성이 약해진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구자은(2011)은 Atwood et al.(2010)의 일치도 측정 방법과 연구모형을 표본기간과 통제변수들을 확장하여 다시 한번 적용해보았다. 이익지속성을 종속변수로 삼은 모형에서 당기순이익과 일치도의 상호작용변수의 회귀계수는 -0.0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다. 이는 일치도가 높을수록 이익지속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회귀계수 자체는 Atwood et al.(2010)에 비하여 상당히 작다. 더욱 큰 반전은 미래 현금흐름인데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당기순이익과 일치도의 상호작용변수의 회귀계수는 0.01로서 비록 작았지만 유의한 양(+)의 값을 보여서 선행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가별 분석에서도 동일하다. 구자은(2011)은 Atwood et al.(2010)이 1992~2005년을 표본기간으로 설정한 반면 1991~2010년을 표본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두 연구의 결과에 있어서의 차이는 표본기간의 차이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05년 이후 세계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이 여러 국가에 도입되었음을 본다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결과의 차이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다.

2) 시기별 분석

위에서 살펴 본 연구들은 국가별로 일치도를 측정하고 일치도에 따른 이익품질이나 정보가치의 차이를 살펴 본 연구인 반면에 동일한 국가 내에서 시기별로 일치도가 다를 경우를 이용하여 일치도가 정보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Hanlon et al.(2008)의 연구는 동일한 국가에서 시기적으로 일치도가 변화한 상황에서 정보가치의 변동을 살펴본 연구이다. 이들은 당기순이익의 정보가치를 이익반응계수로 측정하기로 하고 일치도와 이익반응계수와의 관련성을 보고자 하였다. 이들은 우선 이익반응계수가 일치도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분석적으로 검토하였다. 당기순이익에 포함된 잡음이 이익반응계수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전제하에 보고된 당기순이익을 X_t , 잡음이나 편익이 개입되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x_t 로 정의하고 양자의 차이를 η_t 로 보면 η_t 는 무작위한 잡음과 고의적인 편익의 합인 $\eta_t = fx_t + e_t$ 인데 여기서 일치도가 증가함에 따라 보고이익을 감소시키려는 편익이 작용한다면 $f < 0$ 이고 잡

음인 e_t 는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σ_e 라고 가정한다. 이에 따라서 보고이익을 다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X_t = x_t + fx_t + e_t = (1+f)x_t + e_t$$

위 식에서 경제적 이익인 x_t 를 주식수익률인 R_t 로 대체하고 보고이익과 주식수익률 간의 회귀모형을 만들면 다음과 같다.

$$R_t = a + bX_t + \mu_t$$

여기에서 위 식의 회귀계수인 b 를 이익반응계수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는 $\text{Cov}(R_t, X_t) / \text{Var}(X_t)$ 가 된다. R_t, X_t 를 각각 대체하면 다음과 같이 b 를 나타낼 수 있다.

$$b = \text{Cov}(x_t, (1+f)x_t + e_t) / (\sigma_x^2(1+f)^2 + \sigma_e^2)$$

위 식에서 x_t, e_t 가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하면 위 식은 다음과 같이 보다 단순하게 정리될 수 있다.

$$b = (1+f)\text{Cov}(x_t, x_t) / ((1+f)^2\sigma_x^2 + \sigma_e^2) = (1+f)\sigma_x^2 / ((1+f)^2\sigma_x^2 + \sigma_e^2)$$

위 식은 이익반응계수인 b 가 잡음 e 와 편의 f 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일 잡음과 편의가 없다면 $f = 0, \sigma_e = 0$ 에서 $b = 1$ 이 된다. 그렇지만 잡음은 없지만 하향편의가 존재하여 $f < 0$ 이라면 $b = 1/(1+f)$ 이 되면서 b 는 상향조정된다. 편의는 없지만 잡음이 있다면 $b = \sigma_x^2 / (\sigma_x^2 + \sigma_e^2) < 1$ 이 되어서 이익반응계수가 작아진다. 위와 같은 모형은 물론 매우 단순하기는 하지만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

IV.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 일치에 따른 효익과 비용 217

가 이익반응계수에 미치는 두 가지 영향이 있는데 하나는 이익을 하향조정하려는 편의이고 다른 하나는 잡음이며 이 둘의 영향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포착할 수 있다.

회계기준에서 경영자에게 많은 재량권을 허용함으로써 경영자들은 이러한 재량권을 자신의 사적인 정보를 자본시장에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보고된 당기순이익에 내재된 잡음은 감소할 것이며 아울러 보고이익의 정보가치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경영자들이 재량권을 기회주의적으로 악용한다면 잡음이 증가하여 보고이익의 정보가치는 감소할 것이다. Dechow(1994)는 이익조정 위험에도 불구하고 보고된 순이익이 현금흐름보다 정보가치가 크다는 것을 이미 보여준 바 있다.

Hanlon et al.(2005)에서는 회계기준과 세법이 일치됨으로써 세법의 영향으로 인하여 보고이익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하향편의로 인하여 이익반응계수는 하락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주장들도 있는데 회계기준과 세법이 일치됨으로써 보고이익을 상향조정할 유인이 억제되고 이에 따라 편의가 없어진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이익반응계수는 증가한다. 따라서 회계기준과 세법의 일치에 따른 이익반응계수의 변동은 이론적으로 예측하기보다는 실증적인 문제로 귀결된다.

위와 같은 맥락에 따라서 Hanlon et al.(2008)은 회계기준과 세법의 일치도가 높아지면서 이익반응계수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들은 미국에서 1986년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현금주의를 적용하고 있던 기업들이 상당수 발생주의로 강제 전환된 상황에 주목하고 이러한 상황이 일치도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실험상황이라고 생각하였다. 즉, 현금주의를 적용받던 시기에는 현금유출입과 무관하게 발생액 조정을 통하여 당기순이익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은 채 과세소득을 조정할 수 있었지만 발생주의로 전환된 이후에는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을 독립적으로 조정하는 것

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그들은 발생주의로 전환된 기업들의 이익반응 계수 변동을 관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귀모형을 수립하였다.

$$R_t = \alpha + \beta_1 \text{CONVERTING} + \beta_2 \text{POST} + \beta_3 \Delta E_t + \beta_4 \text{CONVERTING} \times \Delta E_t + \beta_5 \text{POST} \times \Delta E_t + \beta_6 \text{CONVERTING} \times \text{POST} + \beta_7 \text{CONVERTING} \times \text{POST} \times \Delta E_t$$

위 식에서 *CONVERTING*은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한 기업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이고 *POST*는 1986년 세법개정 이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그리고 ΔE_t 는 직전연도와 당기의 경상이익 변동분이며 R_t 는 12개월 동안의 주식수익률을 의미한다. 위 식에서 관심변수는 β_7 로서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강제 전환된 기업이 세법개정 이후에 이익반응계수가 얼마나 변동하였는가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beta_7 = -1.740$ 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다. 따라서 발생주의 전환 기업들의 세법개정 이후, 이익반응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이는 곧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일치도가 증가하여 이익반응계수로 대리되는 당기순이익의 정보가치가 감소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일치도가 당기순이익의 정보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검증했던 연구들을 찾아보았다. 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일치도가 높아질수록 당기순이익의 정보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비교 대상이었던 과세소득의 추가적 정보가치가 감소할 것이며 동시에 회계기준이 세법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의 품질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에 기초한다. 지금까지 검토했던 연구들을 보면 이러한 예측을 입증하는 실증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다. 국가별로 일치도를 측정하고 측정된 일치도에 따라 당기순이익 품질을 측정한 연구들과 미국 내에서 일치도가 증가했던 기업들을 대상

으로 수행된 연구들은 일관되게 당기순이익의 품질이 하락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회계기준과 세법을 일치시키는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 중 하나는 자본시장에 전달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정보인 당기순이익의 정보가치가 하락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요약

이번 장에서는 회계기준과 세법을 일치시키는 것에 대한 효익과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번 장의 실증 증거들은 회계기준과 세법의 일치 여부에 대한 논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장은 우선 회계기준과 세법의 일치도에 대한 국가별 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제1절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일치도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 각국의 일치도 정도를 알아보았다. 일치도 측정에는 단순히 연구자의 주관에 의존하는 방법에서부터 기업 표본을 활용한 통계적 방법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법이 이용될 수 있는데 어느 방법을 이용하든지 우리나라는 일치도가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였고 미국은 가장 일치도가 낮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었다.

제2절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회계기준과 세법이 일치되는 경우의 효익과 비용을 검토하였다. 제2절에서는 효익을 다루었다. 효익의 핵심 원천은 이익조정과 조세회피 행위 간의 상충관계이다. 상충관계의 본질은 어느 한편의 희생 없이 다른 한편만을 일방적으로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익조정과 조세회피 행위 간 상충관계가 강할수록 경영자는 이익조정 혹은 조세회피 행위를 감소시키지 않고 다른 행위만을 추구할 수 없게 된다. 제2절에서는 상충이 존재하는 여러 상황에서 경영자가 실제로 상충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지를 보여주는 실증 증거들을 검토하였다. 후입선출법의 선택, 세법 변경에 따른 소득 이전 등 다양한 상황에서 경영자는 이익조정 혹은 조세회피 행위의 상충관계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충관계를 가장 극대화하는 것은 세법과 회계기준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일치도가 높을수록 상충관계는 강화된다. 이에 따라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가 높아지면 상충관계는 강화되고 경영자의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행위는 감소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제2절에서는 실제로 일치도가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중국은 일치도가 높았다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시기별로 조사한 결과, 중국 기업들의 조세회피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일치도와 조세회피는 양(+)의 관계를 보였다(Chan et al., 2010). 국가별로 서로 다른 일치도하에서 조세회피와 이익조정 행위를 관찰해 본 결과에 따르면 일치도가 높은 국가에서 조세회피 혹은 이익조정 행위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구자은, 2011). 이러한 결과는 당초 기대한 바와 같이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가 높아지면 조세회피나 이익조정 행위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⁵⁵⁾

제3절에서는 일치도를 높이는 것에 대한 비용을 살펴보았다. 비용이 발생하는 핵심 원천은 일치도가 높아지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이 갖고 있던 정보가치의 합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당기순이익은 자본시장에서 이용되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하며 가치가 큰 정보이다(Beaver, 1998). 그렇지만 과세소득은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가치를 갖고 있다는 증거들이 있다. 제3절의 첫 부분에서는 이러한 증거들을 검토하였다. 몇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과세소득은 미래 이익(Lev and Nissim, 2004), 미래 주가(Hanlon et al., 2005), 미래 신용등급의 변동(Ayers et al., 2009) 등을 예측함에 있어서 당기순이익에 대해 추가적인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55) 또한 지금까지 연구들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가 높아짐으로써 세무신고 시 동일한 장부에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을 산출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하여 납세협력비용이 낮아질 수 있는 효과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IV.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 일치에 따른 효익과 비용 221

과세소득이 당기순이익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가치를 갖는 이유는 세법과 회계기준이 달라서 세법에 따라 산출된 과세소득에는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지 않은 독특한 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법은 경영자의 재량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측정의 신뢰성만을 보자면 당기순이익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회계기준에서 경영자의 재량권 행사를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취약해진 당기순이익의 측정 신뢰성을 과세소득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Hanlon(2005)이 발견한 것처럼 과세소득이 당기순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반대의 경우보다 이익의 지속성이 높게 되는 것이다.

제3절의 후반부에서는 직접적으로 회계기준과 세법의 일치도가 높아지면 당기순이익의 품질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실증 증거를 검토하였다. 미국에서 세법에서 현금주의를 허용하던 기업들을 강제로 발생주의를 적용하는 것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일치도가 강제로 높아진 상황에서 이들 기업들에서는 이익반응계수가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었으며(Hanlon et al., 2008), 일치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현재 당기순이익을 통한 미래 당기순이익의 예측가능성 정도 혹은 미래 현금흐름과 현재 당기순이익의 관련성이 낮았다는 증거가 제시되기도 하였다(Atwood et al., 2010; 구자은, 2011).

이번 장에서는 이와 같이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일치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효익과 비용을 함께 검토하였다. 효익과 비용 모두 많은 실증 증거들을 통해서 그 존재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본다. 문제는 효익과 비용 중 어느 것이 더 큰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아직 없다. 아마도 효익과 비용 중 어느 것이 더 큰가는 정책당국의 판단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효익과 비용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번 장의 취지이다.

V. 미국에서의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 여부에 대한 논쟁과 정책적인 대응

앞선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은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가 가장 낮은 국가이다. 미국은 2000년대 들어와서 Enron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Enron이 가져다 준 교훈으로부터 단지 회계기준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세분야에서도 여러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Enron 사태로 인하여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를 보다 높여야 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직접적인 이유는 Enron이 회계상으로는 당기순이익을 보고하여 왔으면서도 사실상 세금을 적게 납부하여 왔다는 점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환경은 미국이 회계기준과 세법을 분리함으로써 Enron의 경영자들은 이익을 과대계상하면서도 오히려 조세를 회피하는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Enron 사태 이후 미국에서 벌어졌던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 논쟁을 조명하고 미국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정반대의 입장에서 또 다른 논쟁을 해야 할 시점에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일부 학자나 실무자들이 주장하는 세법과 회계기준이 일치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지내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처럼 회계기준과 세법을 분리하지는 주장이 언제나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미국에서의 논쟁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학자, 실무자, 정책담당자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국가에서 벌어지는 논쟁을 검토하는 것은 많은 교훈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번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제1절에서는 미국에서 현재 세법과 회계기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를 살펴본다. 제2절에서는 Enron 사태 이후 Desai 교수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된 세법과 회계기준 일치론의 내용과 근거를 살펴보도록 한다. 제3절에는 일치론에 대한 반론을 살펴본다. 제4절에는 이러한 논란 속에서 미국은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살펴보는데 주로 과세자료의 공시 측면에서의 여러 제도 개선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는 이번 장을 요약하고 결론을 내린다.

1.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

미국의 경우 세법과 회계기준 간 일치도가 가장 낮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즉, 미국의 경우에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회계기준과는 독립적으로 별도의 세법 규정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구하게 된다. 미국에서 기업회계기준과 과세소득의 관계를 규정한 내용을 보면 과세소득의 계산은 납세자가 장부기록으로 계산한 소득을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장부상 소득을 일단 수용하는 형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때 납세자가 유지하는 장부상 기록 방법은 반드시 회계기준에 기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판례에서는 납세자의 장부기록이 회계기준(GAAP)에 기초할 필요는 없으며, 재무부는 통일된 회계방식을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IRS도 명확하게 소득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주어진 방법을 평가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 방법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중시하고, 일반적인 회계기준(GAAP)을 사용해서 계산된 소득이 소득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납세자가 일반적인 회계기준으로 소득 계산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원도 IRS와 동일한 해석을 하여, 일반적인 회계기준(GAAP)으로 처리하는 것이 거래에 있어서 현재의 경제적인 진실성을 반영한 것은 아닌 경우에는 납세자가 적정한 추정의 근거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와 같이 회계와 세법이 완전하게 분리된 것은 우리나라나 독일과 같은 성문법 국가들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연방세법이 탄생되기 훨씬 이전부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발전시켜 왔는데 기인한다.⁵⁶⁾ 특히 1970년대 말 이른바 Thor Power 판례는 미국에서는 세법과 회계기준은 명백히 다른 것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 판례는 원고인 Thor Power가 IRS를 대상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되는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예상되는 대손에 대한 대손상각을 세법에서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무회계의 일차적 목적은 경영진, 주주들, 채권자들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회계담당자들의 주요 책무는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이 왜곡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반면에 법인세법의 일차적 목적은 국가의 재정 수입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와 책무에 따라 재무회계는 보수주의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는 당기순이익이나 순자산을 과대계상할 수 있는 오류가 아닌 과소 계상하는 오류는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재무부의 목표가 이런 목표와 명백하게 다르다는 관

56) 이우택(1997)에 따르면 미국에서 연방세법이 만들어진 것은 1909년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만들어 왔을 것이다.

점에서 볼 때 세법에서는 이러한 보수주의를 허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서로 상극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세법과 재무회계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Thor Power vs. Commissioner(439 U.S. 522 [1979])).

위 판결은 세법과 회계기준은 명백히 달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으로 미국에서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구자은(2011)은 미국에서의 세법과 회계기준의 관계를 개별 항목들을 검토함으로써 보여주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가상각비인데 미국은 강제상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강제상각방식이란 회계상 감가상각비는 독립적으로 세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강제로 감가상각비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대손충당금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으며 대손이 실제 확정된 시점에서 비용으로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⁵⁷⁾ 이러한 제도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에서 세법과 회계기준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2. 일치론에 대한 지지

앞에서 보았듯이 미국은 전통적으로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가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로서 회계기준과 세법은 거의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에서는 세법과 회계기준이 분리되어 있어서 조세회피나 이익조정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양자 간의 일치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7) 다만, 일부 예외는 있는데 은행업의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최기호 등, 2007).

우선 Desai(2005)는 세법과 회계기준이 서로 달라야 한다는 전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만일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의 기능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면 기업에서 회계이익을 위한 의사결정과 과세소득을 위한 의사결정은 서로 독립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많은 회계연구자들은 기업 경영자들이 회계와 세무 의사결정에서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실증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다.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은 그 자체로 유사해보일 수도 있고, 다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모두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의사결정의 산물인 것이다.

둘째, 정부와 주주의 목표가 서로 다른 것인가? 정부는 법인세율에 해당하는 만큼 기업 이익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사실상 소수주주에 해당한다(Desai et al., 2007). 따라서 세법은 세율 등을 통해서 기업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며 역으로 기업지배구조는 세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세율을 통한 정부의 청구권을 기업 세전 당기순이익에 대한 지분으로 이해한다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해서 주주와 정부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다.⁵⁸⁾

셋째, 지금과 같은 분리된 체제가 역사적으로 아무런 논쟁도 없이 당연하게 결정된 것인가? 법인세가 최초로 제정되던 시기로 돌아가 보면 지금과 같이 분리된 상태에 대해서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법인세를 최초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경제학자, 회계학자, 경영자 모두가 회계이익을 가지고 조세부담을 결정하자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법인세가 최초 도입될 때, 컬럼비아 대학의 교수였던 Robert Haig 교수는 새로운 법인세법하에서의 과세소득은 사실상 경제학자나 회계학자들이 말하는 진실한 당기순이익과 거의 같은 것이어야 한

58) Desai and Dharmapala(2005)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지배구조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회피에 대해서 주주들이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이와 같은 논리를 입증하는 것이다. 즉, 지배구조가 좋지 않은 기업에서는 주주와 정부가 조세회피에 대해서 동일한 입장을 갖는다는 것이다.

다고 말한 바 있다. 경영자들과 회계담당자들도 기업이익에 대해서 과세할 때 올바른 기준은 오직 회계이익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하였고 만일 이것이 서로 달라지면 이는 회계부서의 비용이 두 배가 되는 것이며 어떤 목표에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다(Robinson, 1911).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경영자들은 이중 보고에 대한 비용부담을 이유로 해서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하였다.

법인세를 도입한 동기를 역사적으로 검토해 보면 법인세 옹호론자들은 법인세를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도구로 보았고 이러한 통제는 기업 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았다. Robinson(1911)은 법인세를 단지 재정수입을 가져다주거나 공평성을 달성하는 능력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법인세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정부가 기업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법인세는 다양한 기업의 주주들이 기업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의 일부라는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소득 정보를 당기순이익과 분리하고 비밀스럽게 유지하는 것은 당초의 목표에 어긋나는 것이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경영자들은 이중 보고에 대한 부담 때문에 회계기준과 세법의 일치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두 개의 시스템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parallel universe)로 진화하였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졌다(Knott and Rosenfeld, 2003).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로 진화해버린 데에는 그 동안 손익의 귀속 시기나 귀속 위치 등에 대해서 회계 쪽에서는 상당히 발전을 거듭한 반면에 세법에서는 거의 정체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제인가부터는 과거 입장과는 달리 경영자와 회계담당자들은 세법과 회계기준을 일치시키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보고서를 두 번 작성하는 것에 비용이 상당히 들어간다는 것은 명백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자들이 분리된 체제를 찬성하고 있다는 것은 현 체

제를 유지하면서 과세당국과 자본시장에 별개의 순이익을 보고하는 것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공개된 자료만을 가지고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이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대부분 연차보고서에 실린 세무 관련 주식사항을 조사하는 것은 투자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회계전문가들에게조차 힘든 일이다. Hanlon(2003)은 몇 개 주요 기업들의 세무 관련 주석을 조사하였고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도 전혀 상반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록 세무보고 자료 중 일부는 최근 들어와 몇 차례 개선이 되었지만 그 내용은 비밀이며 단지 왜 기업에서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이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지만 할 뿐이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Desai(2005)는 반드시 세법과 회계기준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고정관념 때문에 미국에서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가 낮아졌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일치도가 낮음으로써 경영자가 당기순이익의 극대화과 과세소득의 최소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Desai(2005)는 경영자가 기회주의적으로 이익조정과 조세회피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의 신뢰성이 크게 낮아졌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개별적인 증거와 거시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가. 개별증거

Desai(2005)는 미국에서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가 낮음으로써 생긴 조세회피와 이익조정의 사례로서 3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Enron 사태인데 이는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이중장부체제와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자본시장에 대한 이익보고를

왜곡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 사례이다. 둘째는 Tyco 사건인데 공격적인 세무관리가 경영자로 하여금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Xerox 사건인데 이는 보고이익을 증가시키도록 가하는 압박으로 인하여 조세회피가 증가하게 된 사례이다.

1) 엔론(Enron)

Enron은 재무보고를 왜곡시킨 획기적인 사건으로 조명을 받아왔으며 Enron에서의 세무보고, 세무계획과 재무회계왜곡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Enron의 불투명성의 핵심은 재무상태표에 보고되지 않는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들이다. 이러한 활동들이 애당초 세무계획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고 Enron의 세무관리 본부에서 기획된 것이며 이는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일치도가 낮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1998년 이전, 일련의 기획된 거래들은 Enron의 세무계획부서의 업무였으며 최초 자금조달방법은 연방법인세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었다. Enron이 미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것임이 확실해지면서 이 거래들은 세무계획부서의 업무에서 분리되었으며 그때부터는 재무회계상 이점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조세최소화는 더 이상 목표가 아니었고 필요성도 없었지만 당기순 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괴리는 이러한 거래들을 이용하여 재무회계상 이점을 추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원천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미래 법인세를 감소시킬 수 있는 몇몇 대규모 거래들을 이용하여 현재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많은 사례 중 하나는 Project Teresa이다. 이 경우 Enron은 특수목적법인을 이용하여 사무 건물의 세무상 취득가액을 증가시키고 이렇게 취득가액이 증가되면 서 감가상각비가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1997년에 시작된 Project Teresa를 통해서 Enron은 2억 6,300만달

러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효과에 대한 시점이나 회계처리가 오히려 더 중요한 동기가 되기 시작했다. 이 거래의 결과로 세금은 7,600만달러만큼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회계기준에서 미래의 법인세비용 감소를 인정하면서 2억 2,600만달러의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게 되었다. 미래에 예상되는 조세상 이점이 없으면서도 이러한 거래들은 회계와 세무보고의 차이점에 따른 재무회계처리 때문에 수행되었다. 미국의회의 세무보고에 대한 합동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의도적으로 짜인 거래들을 이용해서 Enron은 비록 미래 법인세효과가 불분명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재무회계상 효과를 보고할 수 있었다”라고 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미래 세금납부의 시점이나 금액을 임의로 조정함으로써 즉각적인 회계이익을 만들어내는 수많은 사례들이 제시되어 있다.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가 재무보고의 의도적 왜곡을 만들어낸 방법들을 설명하는 것 외에도 Enron의 사례는 과세당국과 다른 자본제공자들의 감독이 서로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 Enron은 세무상으로는 부채이면서(이자비용 공제가 가능한) 회계상으로는 우선주로 취급받는 증권을 8억달러어치만큼 발행하였다. 이러한 증권은 월간이익우선주(Monthly Income Preferred Share : MIPS) 혹은 신탁우선주(Trust Preferred Stock: TRUP)⁵⁹⁾로 불리는데 과세당국은 이에 대해서 1997년과 1998년에 상세한 조사를 하였다. 이러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Enron은 그들의 동기가 세무와 회계상 비대칭적인 유리한 처리를 받기 위함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에서는 이러한 증권에 대해 부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용인해 줌으로써 이러한 증권을 자본으로 보도록 규정한 GAAP과 증권감독원(Security Exchange Commission; SEC) 결정을 무시하였고, 경영자들은 이러한 증권을 조

59) 이에 대해서는 앞선 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세와 회계의 서로 상충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Enron 사례에서는 또한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보고기준들이 실제의 경제적 건전성에 대해 완전히 서로 다른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V-1>에서는 Enron의 회계상 당기순이익, 세무보고 자료에서의 당기순이익, 그리고 과세소득을 비교한 것이다. 이를 보면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다. 첫째, 세 가지 유형의 이익들이 서로 완전히 무관하다는 것인데 세무상 결손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기도 한다. 둘째, 세무보고 자료의 당기순이익과 실제 회계상 당기순이익과의 차이(세무상 서로 연결되지 않는 많은 자회사들이 있음을 반영하는)를 보면 이들 두 숫자를 조정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세무상 결손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음을 볼 때, 이들 세무자료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었다면 기업의 실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Enron의 사례를 보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가 경영자가 이익을 왜곡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과세당국이 이용 가능한 정보를 자본시장에 제공하는 것이 매우 유용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V-1> 엔론의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1996~2000년)

	연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연결납세신고자료에 서의 당기순이익	연결납세신고자료에 서의 과세소득
1996	584	1,433	(310)
1997	105	961	(504)
1998	703	1,612	(753)
1999	893	3,112	(1,458)
2000	979	5,896	3,101

자료원: Desai(2005) p. 179

2) 타이코(Tyco)

Enron이 이익을 왜곡한 획기적 사건이었다면 Tyco는 경영자의 유용에 따른 부정행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Tyco 사례는 공격적인 조세회피전략이 주주와 일치하지 않는 경영자의 이익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Tyco는 1997년 버뮤다에 본부를 둔 ADT 보안 시스템을 매입하면서 역합병의 형태로 거래를 기획하였고 이 때문에 Tyco는 본점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전은 국외소득에 대한 미국 내 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진행되었지만 분석가들은 또한 미국에서 해외로 소득을 이전시키는 것도 이전기업들에게 효익을 가져다준다고 말한다. 1990년대 말을 통해서 Tyco의 재무제표나 전반적인 조세전략 차원에서 이러한 본점 이전의 핵심을 살펴볼 수 있다.

전체 매출에서 해외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5~40% 정도로 큰 변화가 없지만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초에는 10% 미만이었다가 1999, 2000, 2001년에 각각 82%, 52%, 77%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 외 소득이 급증한 시기는 거의 본점을 이전한 시기와 일치한다. 또한 이런 세전이익을 국외원천소득으로 이전시킨 것과 본점 이전이 거의 일치하면서 평균적인 국외세율은 크게 감소한다. 1990년대 초 Tyco의 평균 국외세율은 50%를 초과하였는데 이는 주로 고세율국가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본점 이전으로 인하여 1999년에 국외세율은 20% 미만으로 크게 감소한다. 보다 많은 소득이 해외소득으로 분류되고 동시에 국외세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Tyco의 총세율도 감소하였다. 2000년까지 Tyco의 평균세율은 20%에 못 미치는데 이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 낮은 편에 속한다.

Tyco는 조세회피를 통한 재무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두 가지 수단을 이용하였다. 1) 이익을 지역간 분배하기 위하여 내부적인 대출

망을 구성하였고, 2) 세전이익의 최종 목적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에 자회사 망을 구축하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버뮤다, 케이만 군도, 룩셈부르크 등이 조세피난처로 구분된다. Tyco의 지주회사는 실제 영업을 수행하는 자회사에서 생긴 이익을 내부 대출을 이용하여 Tyco Inetrnational Group(TIG)으로 부르는 룩셈부르크의 자회사로 보낸다. America 은행의 분석가 중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회사의 부채비율이 매우 높아서 이자부담이 크고 이는 세율이 높은 국가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킨다. 사실상 이러한 구조는 고세율 국가의 소득을 세금이 없는 국가로 이전시킨다.” 2001년에는 실제 영업을 하는 자회사의 영업이익의 10% 이상이 TIG에게 이자비용으로 지불되었고 2002년까지 영업활동을 하는 자회사의 이익을 TIG로 보내기 위하여 210억달러의 대출이 생겨났다.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Tyco에서의 조세피난처 활동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996년 본사이전 전까지는 조세피난처에 단 하나의 자회사만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1년에는 Tyco는 조세피난처에 무려 165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게 되었고 이들은 Tyco의 전체 자회사의 9.4%에 이른다. 내부대출과 조세피난처로 이익을 보내는 능력이 결합하여 공격적인 세무관리가 가능했는데 이를 통해서 평균세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었다.

본사이전과 조세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Tyco 경영자들의 부정행위와 어떤 관련을 갖는가? Tyco에서의 경영자들의 부정의 다양한 형태들을 보면 최고경영자인 Dennis Kozolwski와 재무담당자인 Mark Swartz에 의해 저질러진 공금 유용이 1997년말 본점 이전 후에 시작되어 1999년 후에 빠르게 진행되었고 2002년 그들이 떠날 때까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부정행위에는 대출프로그램의 남용, 승인되지 않은 보상, 회사자금의 개인적 유용,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을 감추기 위한 특수관계자 거래나 왜곡표시 등이 있다.

Tyco가 이용한 공격적인 세무관리 전략은 경영자로 하여금 세 가

지의 서로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유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첫째, 가장 명백한 것은 조세회피전략으로 인한 복잡성의 증가가 Swartz와 Kozolwski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Tyco 부정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Tyco 영업 활동의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Swartz와 Kozolwski가 이를 이용하여 거래들을 모호하게 만들고 다양한 거래들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에서 시작한 것임이 명백하다.

두 번째 연결 고리는 실제 조세채무가 얼마인지에 대한 모호성이 경영자들에게 그들의 유용을 감출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국외원천소득의 비중은 1998년과 2001년 사이에 38%에서 82%로, 다시 52%에서 77%로 변동하였는데 동 기간 중 매출 비중은 거의 변함이 없었다. 세전이익을 국외원천소득으로 이전시킴으로써 낮은 비용으로 세후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므로 실제 기업의 수익성이 얼마인지는 모호해졌으며 Swartz와 Kozolwski가 공금을 유용하면서도 이러한 행위가 영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출 수 있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예가 미국 내에서 부과된 세금을 보여주는 재무상태표 항목인 연방법인세 계정과목인데 여기에서 임원진들에게 지급된 4,100만달러의 보상을 숨겨놓았다.

조세회피와 경영진의 부정 간의 이전의 두 개의 연결고리는 어느 정도 간접적이지만 마지막 고리는 Swartz와 Kozolwski가 주주와 그들 간의 거래를 숨기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이용한 수단이다. 구체적으로 2001년에 Swartz와 Kozolwski는 1억달러가 넘는 주식을 처분하였다. 그들은 저지 군도와 바하마 같은 곳에 있는 Tyco 자회사에게 주식을 처분하였고 이러한 처분은 대단히 비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연말까지 그들의 처분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Tyco의 이익을 숨기기 위한 만든 Tyco의 역외 자회사들이 경영자들의 내부거래를 숨겨준 것이다.

조세최소화와 경영자 부정 간의 연결 고리는 Paramat과 같은 명성

이 높은 유럽의 회사가 몰락한 사건에서도 볼 수 있다. Paramat 사건에서 핵심적인 것은 조세피난처에 있는 수많은 자회사에서 존재한다고 했던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자산들이 실제로는 없었다는 것이다. 최초에는 로얄티나 이자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촉발된 것이지만 법정증언에 따르면 Paramat의 전직 재무담당자는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가 허술했기 때문에 영업손실을 숨기고 설립자 가족에게 자금이 새어나가는 것을 숨길 수 있었다고 한다. 만일 세법이 보다 효과적이었다면 경영자들의 유용행위는 상당한 제약을 받았을 것이다. Tyco와 마찬가지로 복잡하게 얽힌 Paramat의 자회사들이 회계감사인이나 규제당국이나 외부주주들이 회사 내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기업성과를 감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3) 제록스(Xerox)

Tyco와 Enron이 총체적인 부정으로 유명한 사건인 데 비하여 Xerox 사건은 보다 일반적인 이익조정과 조세최소화가 연결되는 사건이다. 2002년 4월 1일 Xerox는 수년간의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재공시하면서 1997년과 2000년 사이의 21억달러의 매출과 14억달러의 당기순이익을 제거해버렸다. 이러한 재공시는 차후 소송에서 중간이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재공시에 대한 상세한 분석에 따르면 경영진들은 리스와 관련된 다양한 거래들의 인식시기를 기회주의적으로 조정하였고 과세당국으로부터 받은 환급금에 대한 이익인식을 기회주의적으로 조정하였다. 이러한 왜곡표시와 함께 Xerox의 최고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스톡옵션의 행사를 통해서 앞당겼다. 이러한 거래의 지출은 동 기간 중 장기투자자들이 입은 투자손실에 반하는 것이었다. 회계조작과 스톡옵션 활동 간의 연결 고리는 보다 의도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Xerox의 경영자들이 이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인식시거 조절을 통한 이익조작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다. Bandler and Maremont(2001)는 Xerox가 Project Global을 통해서 Xerox의 전 세계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유효세율을 감소시킴으로써 보고이익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Xerox는 아일랜드의 종업원들을 통합하는 것과 같은 전 세계적인 영업 활동에 대한 실질적 변화를 주려고 했지만 대규모 절감은 지적재산권의 이전이나 리스 자산의 이전 등으로부터 창출되었다. 이와 함께 1998년 Xerox의 Project Global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Xerox는 1999년부터 2003년 사이에 34억달러의 이익을 아일랜드로 이전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 이익 중 14억달러는 미국으로부터, 7억달러는 영국에서, 13억달러는 나머지 유럽 국가에서 이전시킨 것이다.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궁극적인 목표는 2002년까지 유효세율을 3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계획은 보고이익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었다.

이렇게 공격적인 조세감소 전략과 이익을 부풀리는 동기를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어렵다. 그렇지만 Xerox가 이익계산서에서 보고한 유효세율은 1996년 36%에서 1997년에는 34%로 감소하였고 1998년에는 27%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다른 조작이 시작된 시기와 일치한다. 이러한 변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Xerox는 제대로 보고하였을 경우에 비하여 엄청나게 향상된 주당순이익을 보고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효세율의 감소는 세금부담이 적은 해외에서의 영업활동 수준을 증가시킨 것 때문이다. 그렇지만 2001년에 Project Global은 스스로 그 자신이 재앙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유효세율 감소에서 내재된 이익에 대한 공격적인 가정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회사의 조세부담을 오히려 증가시키게 되었는데 저세율 지역에서 이익 대신에 손실이 기록되면서 거의 이를 활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Xerox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유효세율을 감소시키려는 동기는 매우 일반적인 것이며 벤치마크하는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한계 상황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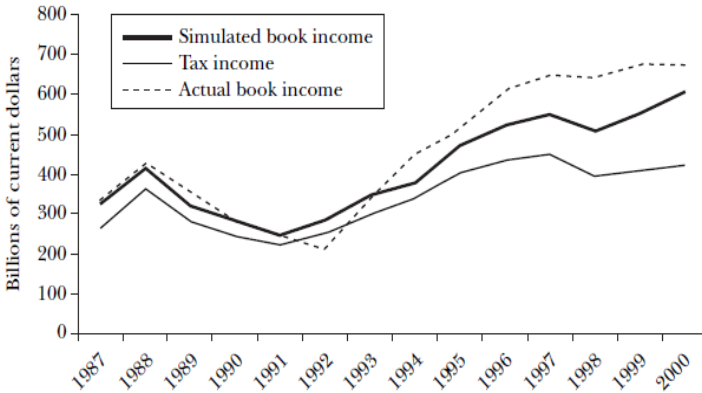
서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해 준다. CFO.com과 같은 웹사이트에서는 재무담당자들은 그들 회사의 성과를 동료 회사들과 비교하면서 4가지 기준을 사용하는데 이는 운전자본 관리, 최적 현금보유량, 원가 관리와 조세의 효율성이다. 조세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보다 일반적인 현상이다. Yin(2003)은 수작업으로 수집한 자료를 통해서 S&P 500기업들의 평균 세율이 1995년 28.9%에서 2000년에는 24.2%로 하락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이러한 세율 하락이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며 스톡옵션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해 주는 하나의 원인에 불과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GAO(2004)는 1995년에 미국의 대규모 기업 중 32.7%가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이 비율은 2000년에는 45.3%로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기업들에 있어서 세금납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임의적이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리고 자본시장에서 보고이익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면서 중요해지고 있다.

나. 일반적인 증거

1)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의 질적 저하

앞선 절에서는 미국과 같이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가 낮은 경우에 조세회피와 이익조정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몇몇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례들이 극단적인 예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보다 일반적인 현상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보다 거시적으로 조세회피와 이익조정이 만연된다는 사실을 일반적 증거로 보여줄 수 있다. Desai(2003)은 미국에서 조세회피와 이익조정이 증가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 V-1] 1987~2000년간 과세소득, 당기순이익 그리고 추정당기순이익의 변화



자료: Desai(2005) p. 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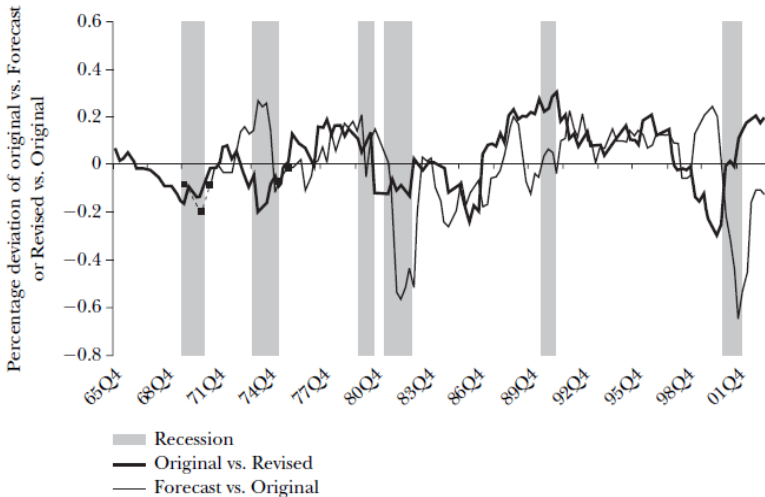
위의 [그림 V-1]에서는 1987년과 2000년 사이에 미국 기업 중 총자산규모 2억 5천만달러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당기순이익, 과세소득 그리고 가상당기순이익 간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간선이 가상당기순이익인데 이는 과세소득에서 초과감가상각비(excess depreciation), 해외재투자금액, 스톡옵션 행사금액 등을 조정한 것인데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 간 확인 가능한 차이를 조정한 금액을 알고자 한 것이다.

[그림 V-1]에서는 1987년과 2000년 사이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 간의 관련성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990년 중반까지는 추정 당기순이익이 실제 당기순이익을 잘 반영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 실제 당기순이익은 과세소득이나 추정 당기순이익과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다. 이 숫자들은 과세당국에 보고된 총액을 나타내지만 공개된 재무제표의 숫자들을 이용하면 개별기업 차원에서 비교가 가능하다. Desai(2003)에서는 이러한 비교 결과를 보여주는데,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회귀모형에서 당기순이익의 과세소득에

대한 설명력이 십년간 계속 감소해왔음을 알 수 있다. 즉,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은 한때는 유사했지만 지금은 상당히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만일 이익이 질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질적 저하는 기업이익의 예측 정확성이나 기업이익에 대한 최초 추정의 정확성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래의 [그림 V-2]는 미국의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BEA)에서 제공한 자료인데 1965년부터 2002년까지 이전 4개분기로부터 추정된 이익이 실제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예측과 최초 추정치 간의 차이는 시기별로 컸지만 그 차이는 통상적으로 이자율이나 불황과 같은 경기의 비정상적인 움직임과 관련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5년 동안에는 양자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커져 가고 있으며 전혀 예측불가능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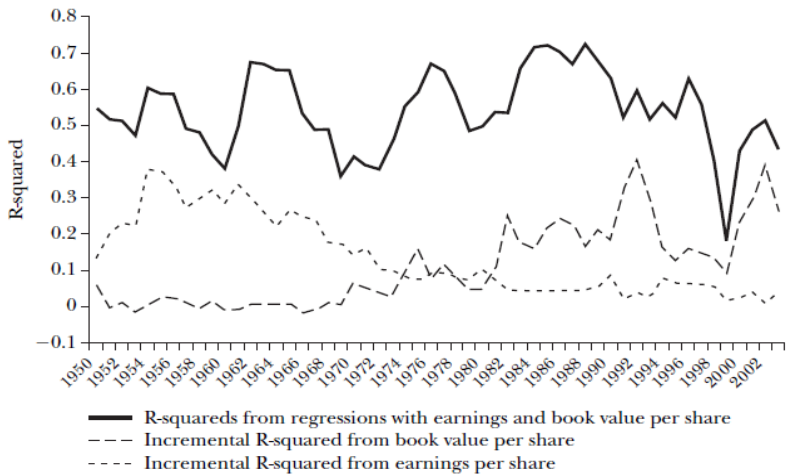
[그림 V-2] 1968~2001년간 기업 당기순이익에 대한 최초 추정의 정확성



자료: Desai(2005) p. 186

예측정확성에 덧붙여서 BEA 자체의 수정의 크기를 고려하는 것이 유용하다. 다시 한 번 보자면 수정금액의 절대크기는 1972년부터 1987년 사이에 계속 증가하였고 평균적으로 9.2%에 달하였는데 1988년부터는 경기변동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금액은 14.5%에 달하고 있다. 최초 추정치에 대한 수정금액의 크기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Petrick(2002)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BEA의 최초 추정은 자본시장에 대한 당기순이익에 기초하여 이루어지지만 그 이후는 과세소득 자료에 의하여 수정된다는 것이다. Himmelberg et al.(2004)에서는 국민총생산계정에서 또 다른 이익의 질적 저하를 보여주는 측정치를 보고하고 있다. 그들은 S&P 500 기업의 총이익(회계상 당기순이익)과 국민총생산과의 상관관계가 1950년부터 1980년대까지는 꾸준히 0.85와 0.95 사이에 있었는데 1990년대에 들어와 이들의 상관계수가 0.35에 머무른다는 것이다.

[그림 V-3] 1950~2002년간 주당 순이익과 장부가치의 가치관련성 변동



자료: Desai(2005) p. 187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이익의 관련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위 [그림 V-3]에서는 Collins et al.(1997)의 분석을 2002년까지 확장해본 것이다. [그림 V-3]의 굵은 선은 주가를 주당순이익과 주당 장부가치에 회귀시킨 모형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점선 두 개는 주당 순이익과 주당 장부가치 단독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그림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단지 최근에 설명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익의 관련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비록 주당장부가치의 관련성 증가가 이익의 관련성 하락을 상쇄하고는 있지만 주당순이익으로 측정할 때 이익흐름의 가치관련성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2) 질적 저하의 원인

Enron, Tyco, Xerox에 대한 개별 사례는 한 가지 유형의 이익보고에서의 왜곡 표시가 다른 유형의 이익보고를 왜곡 표시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교훈을 준다. 이익의 가치관련성이 하락한다는 증거들과 기업이이익을 예측함에 있어서 오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이이익의 신뢰성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한다. 경영진의 이익조정이나 부정은 기업 지배구조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반하여⁶⁰⁾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의 질적 저하가 있다는 것은 경영자들이 이익의 유형을 재량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되고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악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전보다는 이익이나 수익을 인식하는 시기와 범위에서의 차이가 갈수록 중요해지면서 이들을 임의로 분류하는 것이 쉬워지고 있다.

60) Desai and Dharmapala(2006, 2009)는 이러한 관점에서 지배구조가 열악할수록 조세회피 의심기업들의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익의 범위나 시기에 대한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이 이전보다 늘어난 것은 서비스기업들이 성장하고 재화의 거래의 성격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서비스기업들은 전형적으로 소비자들과 다년 계약을 맺는데 이러한 계약은 전통적으로 수익과 비용이 동시에 발생하는 일회성 거래와 거의 유사한 점이 없다. 대신에 서비스기업의 비용(무형자산의 생산과 관련된 비용)과 수익은 계약의 완성 시점과 특정 수익흐름과 비용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보다 일반적으로 보자면 점점 더 재화에는 각종 서비스들(예를 들면 리스)과 계약규정들(예를 들면 품질보증)이 첨부되어 가고 경영자들은 수익과 비용의 인식 시점에 대해서 주관적인 평가를 내려야만 한다.

장기계약의 비중이나 중요성이 증가하는 것 외에도 여러 국가와 지역에 걸친 글로벌 기업들의 활동 비중이 점차로 커져가고 있다. BEA의 분석에 의하면 미국의 지역에서 올리는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5년간 15%에서 25%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은 그들의 생산 과정을 전 세계로 분리해서 자회사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전 세계에 걸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진 재화와 서비스로부터 창출된 이윤을 다시 분배하는 것에는 경영자의 판단이 크게 개입한다. 물론 시기나 지역 간 이익 배분에 대한 원칙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경영자 재량권의 범위는 단순히 현물시장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국내 기업에 비하면 필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이익의 유형을 바꾸는 것에 따른 비용도 감소하고 있다. 금융공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계약에 따른 대가지급 방식을 시기별로 다르게 하는 것은 매우 쉬워졌다. 즉, 미래 수익과 비용을 현재의 수익과 비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용이해졌다는 것이다. Enron이 금융공학을 활용한 것을 보면 그들은 회사의 필요성에 따라서 혹은 청중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어떤 청구권을 부채로 표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분으로 표시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세법과 회계기

준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금융공학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더욱 용이해진다. 이러한 기술들은 글로벌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익을 최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정보기술을 통해서 서로 다른 가격으로 내부거래를 하고 예산상 혹은 재무보고 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기술의 변화가 가져온 영향 중 하나가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공격적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것인데 1990년대를 거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제조이익 중 조세피난처 지역(바하마, 바베이도스, 버뮤다, 케이만 군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앤틸러스)이 차지하는 비중은 십년간 2.8%에서 6.9%로 증가하였다. 조세피난처 지역을 홍콩, 아일랜드, 네덜란드, 파나마, 싱가포르 등으로 확대해 보면 1990년대 초에 이들 지역으로부터 온 제조이익 비중이 20.7%에서 2000년에는 46.8%로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raham and Tucker(2006), Desai et al.(2006) 연구에서 보여주는 증거들은 역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대규모 기업들로부터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흥미롭게도 대기업들은 그들의 연간 성과를 점점 더 자주 재공시하고 있다. GAO(2002)의 자료를 보면 기업들이 이익을 재공시하는 빈도를 알 수 있다. 상장기업들이 이익을 재공시하는 비중은 1997년 1.0%에서 2002년 3.2%로 증가하였다. 이를 1,000대 기업으로만 한정시킨다면 그 비율은 1.2%에서 7.0%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가능성일 뿐이지만 이익보고의 질적 저하는 그 핵심 원인이 일시적인 지배 환경의 실패보다는 대규모 기업에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추론에 바탕을 두고 Desai(2005)는 현재와 같이 지배구조에만 초점을 두는 것에서 경영자들이 이익의 시가나 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재량권이 얼마나 증가하고 기술의 변화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익보고의 성격을 바꾸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미국에서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일치도가 매우 낮고 그에 따른 이익조정과 조세회피로 인하여 당기순이익이나 과세소득의 신뢰성이 매우 낮아진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Desai(2005)는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분리된 체제를 일치된 체제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⁶¹⁾ 특히 그는 과세소득을 이익의 대한 회계의 정의에 기초하여 산출할 것을 제안한다. 이때의 장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회계기준과 세법을 일치시키게 되면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약간 수정해서 과세소득으로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과세 체계가 매우 단순해질 것이다. 일원화된 시스템하에서는 납세이행비용을 급격하게 낮추어 줄 수 있는데 특히 현재 추정 이행비용이 높은 상태에 있는 주요 기업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Slemrod and Blumenthal, 1996).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자본시장 참가자들과 과세당국에서는 동일한 이익보고서를 감시하게 되는데 현재에는 과세당국은 기업의 세무계획 부서의 고도의 능력과 풍부한 자원에 홀로 대항하고 있다가 자본시장 참가자들과 공동으로 대항하게 되는 셈이다.

둘째, 이런 체제의 또 다른 장점 중 하나는 이익을 부풀리고자 하는 경영자의 욕망과 세법을 자주 바꾸고자 하는 입법자들의 행위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런 체제하에서는 조세회피에도 강한 제동이 걸릴 수 있다. Weisbach(2002)가 말한 바와 같이 많은 절세수단들은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지 않는데 그 이유는 경영자들이 이에 대해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61) 단일한 시스템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한 분석적 논문은 거의 없다. 다만 제3장에서 본 바와 같이 일치도에 따른 이익품질 등을 조사했던 몇 연구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Hanlon et al.(2008), Atwood et al.(2010), 구자은(2011) 등이다.

3. 일치론에 대한 반박

Desai를 중심으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론에 대한 반박도 제기되고 있다.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 회계학자들은 세법과 회계기준을 일치시킬 경우에는 과세소득이 독립적으로 갖고 있던 정보가치가 사라지고 회계기준이 세법의 영향을 받게 되어서 당기순이익의 품질이 낮아질 것이라고 한다. McClelland and Mills(2007)는 Desai 교수와 같은 일치론자들이 주장하는 회계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안이 갖는 장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대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보고 시스템의 단일화

일치론자들은 당기순이익을 과세소득으로 이용한다면 법인납세자들은 과세목적의 별도 장부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은 법인납세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장부유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세법이나 과세상의 규제들이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법을 입법하는 것은 단지 세율이나 세액공제 등을 정해주기만 하면 되는 일이다.

그렇지만 일부 세법이나 세수관리는 여전히 필요하다. 만일 국내원천소득만을 과세소득으로 이용한다면 이전가격이나 해외 소득이전을 규제하는 세법이 필요할 것이며 다국적 기업이 당기순이익을 미국의 자회사로 이전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세법도 필요하게 된다. 국내외 원천소득 모두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세법의 필요성은 존재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합병이나 결손금 등에 대한 규정은 계속 필요하다.

과세소득으로 당기순이익을 이용함으로써 장부의 필요성은 없어지지만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다른 보고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은행이

나 보험과 같은 규제산업에서는 적절한 자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금자나 보험가입자를 보호하는 강제적인 법률하에서의 소득 계산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국가들이 동시에 세법을 바꾸지 않는 한 다국적 기업들은 여전히 다른 나라 정부의 과세당국을 위한 보고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당기순이익에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이 바뀌게 되면 국제 회계기준이나 다른 국가들과의 조세조약이나 GATT 같은 관세협정과 의 조화를 위하여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조정과정은 또 다른 관리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

나. 재무보고 시스템에 대한 투자의 활용

정부에서는 GAAP에 따라서 기업의 소득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엄청난 투자를 해 왔다. 미국의 Sarbanes-Oxley 법안은 기업소득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투자의 예이다. 비록 Enron이나 WorldCom 같은 기업들에서의 이익 과대계상에 대한 부실한 회계감사나 재무제표부정 등이 촉발한 것이기는 하지만 Sarbanes-Oxley 법안이나 공개법인회계감시위원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PCAOB) 등에서 회계감사를 변화시켰으며 결과로 보다 완전한 감사 증거들을 수집하도록 만들었다. 신뢰성의 증가는 반드시 이익의 과대계상만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며 이익의 과소계상도 어렵게 만든다.

투자자들에게 대해서 보다 많은 이익을 보고하고자 하는 유인은 세금을 적게 내고자 하는 동기와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충돌을 일으킨다. 그렇지만 규제당국에서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는 것을 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당기순이익의 과소계상에 대해서도 감시를 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Hanlon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만일 당기순이익을 과세소득에 일치시킬 경우, 당기순이익의 정보가치의 대략 50% 정도가 상실될 것이라는 것을 실증결과를 보여주었다. 물론 그들

은 과세소득이 당기순이익의 대응치로 사용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반대로 당기순이익을 과세소득의 대응치로 사용하더라도 유사한 위험은 존재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조세회피의 감소

회계기준과 세법의 일치되는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세무계획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비용이나 거래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들의 조세회피가 감소한다면 조세시스템에 대한 공평성 인식이 증가하는 간접효과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을 과세소득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조세회피가 실질적으로 감소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국적 기업들은 여전히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처리를 이용한 세무계획을 유용하게 이용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많은 기업들이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과세소득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는 기존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이용자였던 분석가들이나 채권자들에게 또 다른 비용을 유발시킬 것이다.

조세회피와 관련해서는 조세회피 수준 자체가 감소하기보다는 조세회피 방법이 달라질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보너스계약이나 부채계약 때문에 세무 목적으로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경향은 감소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과세소득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기업들의 유인이 당기순이익의 감소를 이끌게 될 것이다.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에 대한 우려가 이러한 행동을 억제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제약적인 계약이 없는 기업들은 기존의 당기순이익 외에 여유현금흐름(free cash flow)이나 다른 가상의 이익을 만들어내고 이를 분석가들이나 투자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할 것이다.

외국의 자본시장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법에 의해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이 일치된 국가의 경우에는 보고이익 수준이 낮다고 한다.

1980년대 독일에서는 분석가들이 보다 가치관련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가상의 이익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Harris et al., 1994). 당기순이익이나 장부가치가 낮아지는 것과 일관성 있게 독일의 주가 대 이익이나 주가 대 자산비율은 미국보다 높았다. 그러나 이렇게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이 서로 일치하는 국가에서의 당기순이익은 주가수익률을 설명하는 정보 가치가 미국보다는 많이 떨어졌다 (Ali and Hwang, 2000; Alford et al. 1993).

최근 유럽 내에서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비교한 연구를 보면 기업들이 비상장이거나 아니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도가 높은 국가에 속해 있을수록 당기순이익의 정보 가치가 낮다는 추가적인 실증 증거를 찾을 수 있다(Burgstahler et al., 2006). 일치도가 높은 국가에서 상장기업들은 정보 가치의 하락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본시장의 압력이 조세유인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음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치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당기순이익의 정보 가치가 낮았다.

실증 증거들을 보면 심지어 미국의 상장기업들도 당기순이익이 과세소득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조세유인에 따를 것이며 비상장기업들은 상장기업보다 훨씬 이러한 유인이 강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가 1986년 세계개혁으로 인하여 현금주의를 이용하던 일부 기업들이 강제로 발생주의로 전환되었을 때이다(Guenther et al., 1997). 세계 개혁 이전에 이들 기업들의 발생주의 당기순이익은 현금주의 과세소득보다 훨씬 높았지만 세계 개혁 이후에 이들 기업들이 과세소득에도 발생주의를 적용하도록 한 결과, 당기순이익률이 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요약하자면 일치도가 높은 국가들에서 실시된 연구들이나 미국 내에서의 제한된 실증 증거들을 보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을 강제적으로 일치시킬 경우, 가장 전형적인 상장기업들조차도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리고 일부 기업들은 그 특성상 이러

한 성향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들은 복잡한 금융상품들을 가지고 있고 손실충당부채에 대한 재량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반응을 더욱 크게 보일 것이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은 내국기업들보다 국내원천소득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주주들에게 보고되는 당기순이익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도 국내 과세소득만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이 더욱 클 것이다. 비상장 기업이나 소유가 집중된 기업들은 소유권이 분산된 기업들보다 이러한 성향을 더욱 크게 보일 것이다(Mills and Newberry, 2001). GAAP 목적의 연결범위 규정들을 이용하면 세법에서의 손실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라. 이익측정 원칙의 변화

재무회계는 과거 취득원가주의에서 점차로 공정가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정가치 변동을 이익이나 손실로 계상하고 있다. 공정가치 회계는 신뢰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목적적합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정가치 회계는 실현에 대한 세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과세당국에서는 가치평가는 재량권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지만 회계당국은 가치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납세자들의 가치평가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과세당국에서는 분명히 세수보호 차원에서 납세자의 가치평가에 대해 의심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무회계 원칙에 따른 당기순이익을 과세소득으로 이용하는 것은 정부수입에 대한 커다란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재무회계에서는 손실보다는 이익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더욱 엄격하다. 일반적으로 이익보다는 손실을 보다 조기에 인식하고자 하는 회계원칙을 이용해서 납세자들이 과세소득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향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마. 법인세율의 감소

투자에 대한 한계유효법인세율을 감소시키는 것은 성장에 도움이 된다. 과거의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었던 Alan Greenspan은 투자에 대한 한계세율이 낮을수록 법인세가 기업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는 정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법인세율인 35%보다는 27% 법인세율이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는 정도가 작다는 것이다.

1990년대 당기순이익이 과세소득을 크게 초과하고 있음을 보면 당기순이익을 과세소득으로 대체하면 세수의 감소 없이도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일부 사람들은 전 세계적인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을 이용하여 당기순이익을 과세소득으로 했을 때 세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도 현행 법인세율보다 세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과거 미국 국세청장이었던 Charles Rossotti는 의회 증언에서 세수 중립적인 법인세율에 대해 25%와 유사하거나 아니면 이보다 낮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Hanlon and Maydew(2009)는 상장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세수 중립적인 세율을 계산해 보았다. 그들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연이 없을 때 세율을 26.2%로 추정하였고 국내원천소득만을 과세하는 경우에는 27.4%로 추정하였다. Hanlon and Maydew는 행동적 측면이나 영원한 이월공제, 그리고 소급공제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는 등 너무 단순한 가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미국의 법인세율을 25%에서 28% 사이로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과 유사한 법인세율이 될 수 있고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cClelland and Mills(2007)의 추정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을 과세소득으로 하더라도 세수감소 없이 세율을 낮출 수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들은 Hanlon and Maydew(2009)의 추정에 비하

여 다양한 가정을 이용하였는데 예를 들어 가속상각을 이용한다든가 행동의 수정이라든가 손실 활용의 증대와 같은 점들을 감안하였으며, 이러한 점들은 모두 과세소득을 감소시킨다. 또한 당기순이익은 과세소득에 비하여 변동이 훨씬 심하다. 예를 들어 당기순이익이 존재하는 기업의 경우는 대부분 당기순이익이 과세소득을 초과하지만, 당기순손실이 존재하는 기업은 당기순이익보다 과세소득이 크다. 비록 당기순이익을 이용한 과세 시스템이 세수를 감소시키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변동성은 정치적으로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바. 재무보고의 투명성

당기순이익에 근거한 과세 시스템이 구축되면 유사한 기업들 간에 유효법인세율이 서로 달라졌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순한 국내 영업만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는 당기순이익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면 되기 때문에 유효법인세율은 법정세율과 동일해진다. 당기순이익에 과세함으로써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를 보고할 필요도 없어진다.

그렇지만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가 한꺼번에 없어진다면 이는 일시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현재의 과세 시스템에서 당기순이익 과세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첫 해에 크게 이익을 보는 기업과 손실을 보게 되는 기업이 생긴다. 정률법 적용으로 이연법인세 부채가 있던 기업은 더 이상 이연조세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이는 회계상으로 당기순이익을 추가적으로 보고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이연법인세 자산이 있던 기업은 미래 조세를 감소시킬 기회를 상실하게 되며 별도의 구제 조치가 없다면 이를 당기 추가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Poterba et al. 2011).

당기순이익 과세시스템에서 모든 조세혜택은 세액공제 형태로 주어질 것이다. 따라서 당기순이익 과세시스템에서 유효법인세율의 범

정세율이 다르다면 이는 오직 세액공제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왜 유효법인세율이 기업마다 달라지는 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세액공제가 투자자들에게는 이해하기 쉬울지는 모르지만 관리 측면에서는 손금산입이나 가속상각보다 단순하지는 않다. 세액공제는 또 다른 기록이나 계산을 요구하게 되므로 단순성의 이점을 잃어버리기 쉽다. 또한 연구들을 보면 세액공제는 투자를 유인하는데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4. 반박론에 대한 대응방안: 공시제도의 개선

현재 미국에서 회계기준은 FASB에서 제정하며 세법은 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다. Shaviro(2008)는 회계기준과 세법이 일치된다면 현재 분리되어 있는 제정권한도 어느 한쪽으로 일치되어야 할 것인데 FASB보다는 의회가 제정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 이유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결정하는 권한을 FASB와 같은 민간기구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정치인들은 절대적으로 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Shaviro(2008)은 만일 미국에서 의회가 이미 과세소득과 회계이익 모두를 통제하고 있다면 양 쪽 모두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단일 장부 시스템으로 명백하게 움직였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시나리오에서 회계이익은 과세소득과 반대 방향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였을 것인데 경영자들의 입장에서 많은 임의적인 우대조치들이 반영되었을 것이고 과세소득이 경제적 이익보다 작아지는 것처럼 회계이익도 경제적 이익보다 커졌을 것이다. 그래서 두 측정치가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정적 혹은 동적 관점에서 그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적으로 그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오류를 일으킨다면 두 시스템의 전반적인 오류는 감소할 수 있다. 동적으로 일치하는 주주들을 위해서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려는 목표와 그들 자신을 위

해 이익을 증가시키려는 목표 간에 충돌을 일으켜 매디소니안 방법에 의한 이점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의회가 여러 정치적 유인을 갖는 상황에서 매디소니안 방법이 원래의 장점을 보여줄지는 불분명하다. 의회는 회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정치적 의도를 개입시킬 것이며 이것은 당기순이익의 품질을 악화시킬 것이다.

독일과 같이 대표적인 단일장부국가들도 반드시 일치로부터 긍정적인 조세정책 효과를 얻지는 못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이러한 국가들은 회계이익의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부정적 효과가 미국보다 크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주식소유 형태가 분산되지 않고 은행과 같은 내부자들에 의해 대량으로 소유되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재무보고에 대한 의존도가 낮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들 국가들도 주식시장이 발전하면서 단일장부 방법에서 벗어나고 있다.

논의한 대로 의회가 회계기준 제정에 참여함으로써 생기는 사회적 비용이 매디소니안 방법이 가져다주는 효익보다 크다면 두 측정치 간 일치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현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이 최선인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제시되었지만 가장 활발한 논의를 거쳤으며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은 공시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공시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이라는 이들 두 가지 측정치가 서로간에 얼마나 다른지를 관중들에게 설명하는 정보 형태이다. 이는 다시 누구에게 보고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재무보고와 재무보고로 구분되는데 이미 재무보고 면에서 미국 재무부에서는 최근 보고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보고서를 보다 엄격하게 그리고 보다 유용하게 만들었다. 2004년, 재무부에서는 대규모 기업 납세자들에게 M-3 명세서를 보고하도록 했는데 이는 양 측정치가 어떻게 다른지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무보

고 면에서, 주식사항으로 보다 상세하게 매년 과세소득과 조세채무를 세부적으로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기업 과세소득에 접근하는 것이 보다 쉽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선 과세당국에 대해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고서인 M-3 양식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다음으로 는 재무보고 측면에서 기업의 과세자료를 공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알아보도록 한다.

가. 세무보고에서의 공시 방법의 개선

2004년 1월 28일 미국의 재무부와 IRS는 합동으로 기존의 세무보고 양식 M-1을 대체하는 새로운 세무보고 양식인 M-3의 초안을 발표하였다. M-3 양식은 총자산 규모가 천만달러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의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조정하는 양식이다. 새롭게 개발한 M-3 양식은 지난 40여 년간 사용되어 왔던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설명하는 기존 양식인 M-1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Boynton and Mills, 2004).

우선 기존의 M-1 양식에서는 비교의 출발점인 당기순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는 미국에서는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회사가 연결 대상이다. 그러나 미국의 세법에서는 8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연결납세를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비교하면서 출발점인 당기순이익이 연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인지 아니면 연결납세 대상인 자회사들의 당기순이익인지가 분명하지 않았던 것이다(Boynton et al., 2004). 또한 내부거래에 의한 배당금 수수료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보고되는 경우가 많았다(Boynton et al., 2004). 이런 상황에서 IRS는 M-1 양식을 이용하여 납세자의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대단히 어

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IRS가 새로운 양식을 개발하게 된 결정적 사건은 Enron이다. 2002년 7월, Wall Street Journal에서 Allan Murray는 상장기업들의 과세자료들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며칠 후 상원재무위원회의 상원의원인 Grasseley는 SEC와 재무부에 과세자료 공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였다. Canellos and Kleinbard(2002)는 즉각적으로 M-1 양식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는 학계에서도 반향을 일으킨다. Mills and Plesko(2003)는 현재 M-1 양식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지적하였고 이들의 지적에 대해 놀랍게도 IRS는 즉각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2003년 6월 IRS와 재무부가 합동으로 기존의 M-1 양식을 개선하는 팀을 구성한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2004년 7월 새로운 M-3 양식이 개발되었다.

새로 개발된 M-3 양식은 세 쪽에 이르며 90여 개 항목을 포함한다. 각각 항목은 네 칸으로 나뉘어져 당기순이익, 과세소득, 그리고 일시적 차이, 영구적 차이를 각각 기록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기록의 방대함을 감안하여 자산규모 천만달러 이상의 법인납세자에게만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2004년 12월 31일 이후 신고부터 작성하도록 하였다.

규제당국에서는 이러한 M-3 양식을 통해서 4가지 정도의 목표를 달성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Everett et al. 2007). 첫째, 거래의 투명성을 증가시킬 것이며 둘째, IRS가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며 셋째, 세부 항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게 함으로써 납세순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쉬워질 것이며 마지막으로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만을 선별하여 감사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감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납세자 입장에서 보자면 M-3 양식의 의무화는 또 다른 비용을 초래한다.

우선 M-3은 납세자에게 미래 조세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거래투명성의 증가는 공격적 세무계획을 추진하던 기업에는 직

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의 조세상 위치가 IRS에 직접 통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M-3 양식은 기업들의 세무계획으로부터 조세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며 투자자들에게는 세 후 요구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90여 개가 넘는 자세한 항목별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로 구분하여 기록하는 일 자체도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세무전문가 협회 이사인 Fred Murray는 M-3 양식에서 요구하는 대부분의 정보는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입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양식을 새롭게 또다시 작성하는 것은 상당히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McCafferty 2004). 이와 유사하게 KPMG의 세무분야 이사인 Erin Collins는 M-3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정말로 힘들고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일 것이라고 말한다(Collins, 2006). 결국 M-3 양식은 기업의 납세이행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Donohoe and McGill(2011)은 M-3 양식 개발과 관련된 사건일에 대한 주가반응을 조사하였다. 그들은 우선 M-3 양식의 의무화는 기업에는 추가적인 비용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주주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그 중에서 특히 조세회피가 의심되는 비재량적 영구적 차이가 큰 기업들에서 부정적 반응이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그들의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나. 재무보고에서의 공시 방법의 개선

대부분 국가에서 과세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도 개인과 법인의 과세자료는 국가기관이나 법원이 요구하지 않는 한 외부에 제공되지 않는다.⁶²⁾ 그런데 2002년부터 기업의 과세자료를 공시차

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찬·반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렇게 재무보고 면에서 과세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세무보고와 마찬가지로 Enron 사태가 촉발시켰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2년 7월 8일, 상원의원인 Grassley가 SEC와 재무부에 서한을 보내어 과세자료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것이 논의의 시작이었다. 세무 측면과 마찬가지로 재무보고 측면에서도 학계에서 체계적인 논의가 개시되었는데 Lenter et al.(2003)은 과세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과세자료 공개의 부작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를 하였다.

1) 과세자료 공개의 필요성

과세자료 공개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공시가 규제기관에 도움이 될 것이며, 자본시장의 기능을 개선시키고, 조세체계 개선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규제기관에 대한 도움

기업의 과세자료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이점 중 하나는 기업의 규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Grassley는 공개 서한에서 SEC가 기업 과세자료를 갖게 되면 이를 이용하여 기업의 지배구조를 감시하거나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지 않겠는가를 질의한 바 있다. 이

62) Lenter et al.(2003)을 보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한다. 즉, 1976년 이전에는 일반인들도 과세당국에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었으며 그런 경우 과세당국은 자료를 공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6년 당시 닉슨 대통령이 과세자료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이 일면서 분위기가 바뀌어서 과세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원칙이 수립된 것이다.

러한 주장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다. 첫 번째는 기업에 대한 감시가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열악한 기업지배구조가 열악한 성과를 낸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두 번째는 현재 SEC와 같은 규제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들이 부적절하며 이런 면에서 기업의 과세자료가 제공되면 기업을 규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당초 법인세가 미국에 도입될 때, 주된 목적이 재정수입 외에도 기업을 통제하기 위한 정보를 얻는 데 있었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생각해 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많은 정부 기관들이나 법원은 이미 IRS를 통해서 과세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을 볼 때 이러한 도움은 SEC와 같은 준정부기관에만 해당된다. 다만 SEC 등도 IRS가 아닌 기업에 직접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IRS로부터 직접 세무보고 자료를 제공받는 것에 비하여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를 비교해야 할 것이다.

나) 자본시장의 기능 향상

두 번째 주장은 기업 과세자료를 공시하게 되면 재무제표의 품질이 개선되고 이에 따라 자본시장의 기능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어떤 면에서는 SEC가 감시를 강화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본시장이 보호되고 이에 따라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선 SEC의 감시기능 강화의 논리와 유사하지만 보다 일반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과세자료 공시가 비록 SEC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투자자들이 손쉽게 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 양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세자료는 양도

방대하지만 그 내용도 복잡해서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해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좀 더 간결하게 개선된 양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M-3 양식 등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다) 조세회피의 감소

세 번째 주장은 기업의 과세자료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조세회피가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기업들이 명백한 조세회피의 결과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이렇게 꺼리는 이유는 첫째, 경영자들은 만일 기업의 조세채무가 매우 낮다는 것이 알려지면 일반 대중들의 반감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렇게 되면 기업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가 낮아질 수 있다. 기업들이 이미지를 좋게 보이기 위하여 많은 지출을 감수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⁶³⁾ 또한 조세회피가 의심된다는 것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단순히 대중들의 반감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규제가 강화된다든지 아니면 회사에게 불리한 법률이 제정될 수도 있다.⁶⁴⁾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의 움직임도 예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세자료가 공시되었는데 기업이 조세부담이 높다고 생각되면 주주들이 조세부담을 낮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주주들은 경쟁 기업의 조세부담과 비교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조세부담을 낮출 것을 요구하게 되

63) 예를 들어 2001년 미국 기업들은 90억달러에 이르는 기부금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 성인들의 79%는 훌륭한 시민정신을 발휘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볼 때, 대중들에 대한 좋은 이미지는 결과적으로 매출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물론 그 반대로 가능하다.

64) 예를 들어 미국 기업들이 조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역합병을 이용하여 본점을 해외로 이전하기 시작하자 대중들의 반감이 일어났고, 이에 미국정부는 Homeland Security Act를 제정해서 이를 금지하였다.

는데 이렇게 되면 기업 간에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끝없는 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이유는 그 효과를 분명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의 몇몇 연구들을 보면 대체로 그 효과를 긍정적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⁶⁵⁾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보다는 간접적인 것이다. 과세자료가 공시되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분석할 것이며 이에 따라 중요한 차이가 조세회피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찾아내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 자료는 과세당국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공격적인 세무계획을 수행하는 것을 꺼려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적극적으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분석하면 기업들의 절세수단 이용 여부를 밝힐 수도 있다.⁶⁶⁾ 반면에 현재 상태에서는 절세수단 거래를 이용했는지 여부는 세무 관련 주식이나 세무보고 자료에

65) Desai and Dhamapala(2009)는 비정상 BTD와 시장가치 대 장부가치로 측정된 기업가치와의 아무런 관련성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관련성에는 횡단면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기관투자가 지분에 따라 달라졌다. 기관투자가 지분이 높은 기업들은 양자 간에 높은 관련성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주주들이 조세회피에 부여하는 가치가 그들이 경영자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세회피 결과의 횡단면 차이를 지배구조로 설명하는 것과 일관성을 갖는다. Hanlon and Slemrod(2009)는 기업이 절세수단 거래에 참여했다는 뉴스에 대한 시장 반응을 보았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절세수단 이용에 대한 처음 뉴스에 대한 -1.04%의 부정적인 반응을 관찰하였다. 소비자 지향적인 산업에 속한 기업은 보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 크기는 또한 투자자들이 조세회피 정도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졌다. 조세회피를 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업에 대한 주가반응이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이었는데 저자들은 이를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Cloyd et al.(2003)은 조세피난처로 본점을 이전한 기업들이 조세를 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66)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Wilson(2009), Lisowsky(2010)는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이용하여 tax shelter 거래에 참여한 기업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

서 분리되어 공시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슈와 관련한 실증연구로서 Rice(1992)는 법인납세자들의 납세순응 여부를 조사해본 결과, 상장기업과 규제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납세순응도가 높았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과세자료의 공시가 납세순응을 증가시킬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라) 조세정책 개선에 대한 정치적 압력

네 번째 주장은 과세자료의 공시가 조세정책 개선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Hanlon(2003)은 재무제표에 제시된 과세정보들을 가지고는 기업의 정확한 조세채무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 만일 과세자료가 충분히 공시된다면 기업들의 정확한 조세채무를 알 수 있게 되고 이는 정부가 집행한 조세정책의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기업들 간의 조세부담의 공평성이 낮거나 기업들이 부적절하게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과세자료의 공시로부터 나타난다면 정치인들은 현재의 조세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압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과세자료의 공시는 이런 방식으로 조세정책이 대중들의 관심사를 보다 민감하게 반영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에 대한 역사적인 사례가 있는데 대규모 기업들이 조세를 거의 부담하지 않는다는 미국 납세자협회(Citizens for Tax Justice)의 공개자료 때문에 1986년 대규모의 세제개혁이 촉발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조세시스템이 공평한가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조세정책의 반응이 빨라지면 두 가지의 추가적인 효익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평성 인식이 높아져서 자발적으로 납세순응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2) 과세자료 공시의 부작용

과세자료 공시에 반대하는 측은 과세자료의 공시가 비밀 유지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원칙에 위배되며 자칫하면 정보의 혼란을 초래하거나 기업 활동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법적인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정부의 권한에 대한 우려이며 마지막으로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차례로 살펴보도록 한다.

가) 비밀유지 원칙의 위배

과세자료 공시에 반대하는 측은 과세자료의 공개는 비밀유지라는 세법의 핵심적인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한다. 이들은 비밀유지 원칙을 깨뜨리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한다. 첫째는 비밀유지 원칙이 깨지면서 오히려 납세순응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과세자료의 공개는 기업들로 하여금 적게 공개할수록 세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자신들이 과세당국에 제공하는 정보가 차후에 공개된다고 생각하면 기업들은 과세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기를 꺼려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IRS는 납세자들의 조세채무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기업들의 납세순응도가 떨어지게 된다.

두 번째 이유는 과세자료 공개는 영업상 비밀 등과 같이 중요한 정보들을 경쟁기업에 유출시킬 수 있다. 만일 과세자료 공개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가치 있는 독점적 정보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정보 유출로 인한 손실이 커지게 된다. 만일 과세자료 공개가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된다면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국가의 기업들이 과세자료가 공개되는 국가의 기업들의 정보를 획득하여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떤 방법을 이용하든지 과세자료를 공개하면서 기업의 비밀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는 불가능하다. 물론 과세자료 중 선별해서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자료를 공개하고 어떤 자료는 공개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나) 혼란의 초래

과세자료 공개를 반대하는 측은 과세자료의 공개가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해서 기업에 대한 왜곡된 판단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Grassley 상원의원의 질문에 대해 당시 재무장관인 O'Neil도 과세자료의 공개로 비전문가들의 잘못된 분석으로 인하여 기업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정보의 공개와 공개된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공시된 정보를 잘못 이용하거나 분석하는 일은 지금도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므로 이런 이유로 공시를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에서 모든 정보를 완전하게 공시하는 것은 언제나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시장효율성 가정에 따르면 시간이 흐르면 과세자료를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들이 일반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을 계속 효율적으로 유지하게 만든다.

다) 위험 가능성

과세자료의 공개는 불합리한 수색이나 압수를 금지하는 미국 헌법에 위배되는 것인가? 그러나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Flint vs. Stone*

Tracy Co. 사건에서 납세자의 이러한 주장을 기각하였다. 그 이후에 더 이상 알려진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후 판례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과세자료 공개가 아닌 법원이나 공무원을 위한 과세자료 제공이 납세자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첫 번째 유형은 과세자료를 정부에 제공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자기에겐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는다는(self incrimination)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가 여부인데 예를 들자면 자신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이득에 대한 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피고의 과세자료가 피고의 조세 외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이다.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U.S. vs. Sullivan 사례에서 납세자는 그의 과세자료가 그가 저지른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도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부가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위와 같은 두 개의 판례는 직접적으로 과세자료 공개에 대한 것이 아니지만 이들 판례로부터 과세자료 공개가 위헌은 아니라고 추측할 수 있다. 즉, 과세자료 공개는 공공의 권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행위이므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취지보다 우선하게 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1976년 이전에는 과세자료는 공적 기록이라는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의 공개가 위헌일 가능성이 매우 적다.

이렇게 과세자료의 공개가 위헌이 아니라면 향후 과세자료 공개에 반대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내용보다는 자료공개 자체가 현명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종종 등장하는 반대 논리는 지난 25년간 유지되어 왔던 IRS의 비밀유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인데 이 역시도 비밀유지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왜 어리석은 행위인지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라) 정부에 대한 과도한 정보의 집중

또 다른 반대 논리는 과세자료가 공개되면 현재도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SEC와 같은 기관이 지나치게 많은 자료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SEC는 현재도 기업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있는 경로를 갖고 있다. 이러한 반대 논리는 과세자료 공개의 피해를 보여주는 것이기보다는 과세자료 공개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의 가능성

기업 과세자료의 공개는 예측하지 않았던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비상장기업에는 과세자료 공개가 의무화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장기업들이 과세자료 공개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장 폐지를 선택할 수도 있다. 또한 주식회사 형태를 갖던 기업이 파트너십과 같이 과세자료 공개가 필요 없는 조직 형태로 변경할 수도 있으며, 과세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국가로 본점을 이전할 수도 있다.

또 다른 행태는 과세자료를 공개하는 대신 재무보고상의 공시를 줄임으로써 재무보고의 품질이 낮아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현재 조세채무와 기대 조세채무의 차이를 공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공시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기순이익의 변동성이 커져서 품질은 하락할 수 있다.

3) 논란에 대한 대응

지금까지 미국에서 Enron 사태 이후 제기되었던 과세자료의 공시 문제에 대한 찬·반 양론을 검토하였다. 그 이후 실제로 공시된 과세자료는 아직까지 없다. 즉, IRS의 비밀유지 원칙은 계속 유지되고 있

는 것이다. 그러나 과세자료 공시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일부는 기업공시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한 예가 법인세충당부채에 대한 공시 개선이다.

법인세충당부채는 최근 기준 제정자, 학자들 그리고 과세당국의 관심을 받고 있다. 기업이 세무보고에 있어서 불확실한 입장에 놓여 있을 때 과세당국이 세무감사를 실시하면 이 기업은 미래에 이런 입장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이런 가능한 미래 세금 납부에 대한 비용을 활동이 있었던 기간의 손익계산서에 기록하기 위하여 기업은 재무상태표에 부채를 인식하게 되는데 이는 세금충당금(tax cushion)이라고 부르며 미래에 납부할 수도 있는 세금을 추정하게 된다.

비록 법인세충당부채를 재무상태표에 다른 부채들 사이에 포함시키기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를 별도의 항목으로 보고하거나 공시하지는 않았다.⁶⁷⁾ 그래서 이 충당금은 연구자들(학문적 연구를 방해하는)이나, 과세당국(세무조사에서 잠재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세무상 입장을 고수하는 기업들을 적발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는) 혹은 다른 재무제표이용자들(이익조정의 유용성을 증가시키는)이 알 수 없었다. 그러나 2007년 이후부터 새로운 재무회계기준(FIN48)에서 기업들에 재무제표 주석으로 법인세충당부채의 잔액을 공시하도록 하였다.⁶⁸⁾ 이러한 공시는 왜 기업이 세무계획의 불확실성을 그들의 법인세비용 계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킨다.

67) FIN48 이전의 공시에 대해서는 Gleason and Mills(2002)를 참조하십시오.

68) 최소한 5명의 분석가들이 따르고 있는 100개의 대규모 기업을 조사하면서 Blouin et al.(2007)은 2006. 12. 31(FIN48이 적용되기 전 마지막 해)의 총 충당부채 잔액은 총자산의 1.8%였음을 보여주었다. 대부분 기업들은 2005년보다는 2006년에 충당부채를 변경하였는데 대부분 감소시켰으며 이는 기업들이 과거에는 충당부채를 과대계상하고 있었고 이를 FIN48 공시가 투자자들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반전시킨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FASB가 FIN48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IRS가 이를 이용하여 증대한 세무상 불확실성이 있는 기업들을 찾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공시를 이용하여 기업의 공격적 세무 계획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믿는다.⁶⁹⁾ 그러나 Frischmann et al.(2008)은 이러한 우려를 보여주지 못하였다.⁷⁰⁾ FIN48 통과와 관련된 사건일에서의 단기간 사건 연구를 수행한 결과 초안 공표일을 제외하고는 세무상 공격적인 기업이 보다 유의한 음(-)의 초과수익률을 보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FIN48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한 가지 가능한 설명으로는 일부에서는 FIN48 정보가 IRS에 새로운 정보를 주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IRS에 세무조사를 위한 로드맵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사실상 Frischmann et al.(2008)은 시장에서는 이미 IRS가 보다 우월한 충당금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과 일치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는 지속적인 IRS의 조사와 감시를 받는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특히 사실일지도 모른다.

비록 시장에서는 FIN48 요구사항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경영자들은 여전히 IRS가 FIN48에 대한 조사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Blouin et al.(2010)은 입법과 채택 사이에서 IRS와 화해한 건수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감소한 적립금 금액을 조사하였다. 그들은 IRS 결손이 높을수록 화해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입법 이전에 비하여 이 기간 동안 적립금을 더 많이 감소시켰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Robinson and Schmidt(2009)는 이전 FIN48 공시에 대한 연구보다 많은 대규모 표본(S&P 1500에 속한 643개 기업들)에 대해 FIN48 채

69) IRS가 이러한 공시를 이용하여 세금을 과소 납부한 기업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과 일치하게 2007년(FIN48이 채택된 연도)에 IRS의 Robert Adams는 FIN48이 이번 연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한 바 있다(Messier 2007).

70) Nichols(2008)도 포춘 500 기업의 첫해(2007) FIN48 공시를 분석한 결과 이와 유사한 결론에 이르렀다.

택 후에 보고된 공시들을 검토하였다. 그들은 세무상 공격적인 기업과 공시 품질은 역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⁷¹⁾ 하나의 주의사항은 그들의 분석은 2007년 제1분기에 포함된 공시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FIN48이 채택된 첫 분기). 그래서 기업이나 시장이 새롭고 복잡한 새 기준을 잘 이해하게 된 이후에도 이러한 행동 패턴이 지속될 것인가는 분명하지 않다.⁷²⁾

이러한 연구들을 보면 과세자료 공개에 대한 논의 이후 FASB가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즉, 그들은 IRS의 비밀유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으면서도 기업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예상 조세채무를 공개하도록 규제를 가한 것이다.

5. 요약

이번 장에서는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론에 대한 미국에서의 논쟁을 소개하고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본 것은 세법과 회계기준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상반된 상태에 있는 국가로서 이들의 논쟁과 대응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논쟁의 출발점은 Desai 교수를 중심으로 제기된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론이다. Desai(2005)는 2000년 이후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회계부정과 조세회피 사건들을 조명하면서 회계부정과 조세회피가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일견 상충적인 것으로 보이는 회계부정과 조세회피가 동시에 추구될 수 있는 것은 미국에서 세무보고

71) FIN48 보고에 따른 여러 가지 흥미로운 변형들에 대해서는 Robinson and Schmidt(2009, p.11)를 참조하시오.

72) FIN48 상황에서의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Gupta et al.(2009), Lisowsky (2010), Wilson(2009)을 참조하시오.

와 재무보고를 분리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일반적인 증거로서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회계상 당기순이익의 가치관련성이 하락하고 있으며 과세소득이나 당기순이익의 추정가능성이 하락하고 있다고 보았다. Desai 교수는 특히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 기업들의 경영자들이 이중보고의 비용부담을 이유로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를 주장해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를 반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이중보고라는 명백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분리된 상태가 기업에 이를 상쇄하는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이때의 가치라는 것이 바로 조세회피와 이익조정인 동시추구 가능성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그는 회계기준과 세법이 일치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말하고 극단적인 방안이지만 회계기준과 세법을 일치시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과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론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많은 회계학자들은 과세소득이 갖는 독특한 정보가 상실될 것이며 세법의 영향으로 당기순이익의 품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세법과 회계기준이 일치됨으로써 조세회피와 이익조정이 감소될 것이라는 주장도 결과적으로는 실증적인 문제일 뿐이며 실제로 양자를 일치시키면 경영자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조세회피와 이익조정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논쟁에 대한 대응은 간단하지 않다. 거시적으로 보자면 미국은 아직까지 회계와 세법이 분리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볼 때 몇 가지 중요한 대응 방안이 나타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새로운 재무보고 양식인 M-3의 개발이다. M-3은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이 왜 다른지를 체계적으로 보고하도록 만든 새로운 양식이다. 이는 Enron 사태 이후 학계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에 IRS와 재무부가 빠르게 대응한 결과이다. 또한 주목할 것은 기업 과세자료

의 공시에 대한 논쟁이다. 기업 과세자료를 공시하는 것은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련성을 유지하면서도 채택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는 많다. 그렇지만 진보는 계속 진행 중이다. 2007년 FASB는 FIN48을 제정했는데 이는 기업들이 현재의 조세채무와 기대하는 조세채무와의 차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 일부 경영자들의 반대 속에서도 추진되었고 이에 대한 시장반응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 여부에 대한 미국에서의 논란과 대응 방안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체계적으로 논란을 벌이고 이에 대해 정부나 과세당국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문제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학계나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상황이 정반대이므로 미국에서의 논란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막연한 환상을 갖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VI. 우리나라에서의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 여부 검토 및 법인세법 개정방향

이번 장은 본 보고서의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 여부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지금보다 일치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일치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한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IFRS가 도입되면 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일치도를 낮추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버린 느낌이다. 따라서 처음 의문에 대해서 사실상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를 낮추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일치도를 낮춘다는 것은 세법과 회계기준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세법과 회계기준의 분리는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을 각자 독립적으로 산출한다는 것인데, 일치도가 낮아질수록 세법과 회계기준을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 된다. 즉, 세법과 회계기준의 차이가 크어도 불구하고 현행처럼 과세소득을 당기순이익으로부터 조정하는 방식을 고수한다면 조정에 따른 비효율성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를 지금보다 낮추는 것으로 정해진다면 그 다음 과제는 어떤 방식으로 일치도를 낮추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일치도를 낮추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추진시기와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과세당국 입장에서의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한다. 회계기준과

세법의 일치는 회계기준 제정기관과 과세당국 입장에서 각각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IFRS가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으로 도입된 이상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회계기준의 제정 권한이 없다. 따라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과세당국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과세당국 입장에서 세법과 회계기준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이에 상응할 수 있도록 세법(주로 법인세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세법의 개정 내용을 정하기보다는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초점이 있다.

이번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번 장은 우리나라의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가 현재 어떤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를 위하여 제1절에서는 우리나라 세법의 규정과 세법에 내재되어 있는 원칙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 여부 및 구체적인 관계를 파악해보도록 할 것이다.

제2절과 제3절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세법과 회계기준의 관련성에 대해 어떤 주장들이 제기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이를 알아보는 이유는 세법과 회계기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최선인가를 정하기 위한 근거를 찾아보기 위함이다. 시기별로 구분하여 IFRS 도입 이전의 논쟁과 도입 이후의 논쟁으로 구분해 본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IFRS 도입은 회계기준의 제정 방식 자체를 바꾸어버린 획기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최선의 관계를 설정해보도록 할 것이다.

앞선 제3절에서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가 재설정되었다면 제4절에서는 이에 상응한 과세당국의 대응으로서 법인세법 개정방향에 대해서 검토한다. 이러한 제4절은 본 보고서의 최종 결론 성격을 갖는다.

마지막 제5절에서는 이번 장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도록 한다.

1. 세법과 회계기준의 관계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세법과 회계기준이 일치되어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이미 제4장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세법과 회계기준이 일치되어 있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재 세법과 회계기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가. 세법에서의 기업회계 존중원칙

우리나라가 세법과 회계기준이 상당히 일치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법인세법상의 규정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그 관행을 존중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제43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세법이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과 제1의 2항에서는 기업회계기준으로 K-IFRS와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국제 회계기준

1의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 처리 기준

2. (이하 생략)

기업회계 준중의 원칙은 국제기본법에서도 천명되어 있는데 「국제기본법」 제2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제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준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준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의 법조문을 보면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개념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준중의 원칙들이 세법과 회계기준을 상당히 일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결산조정의 원칙

이러한 법조항 외에도 우리나라가 회계기준과 세법이 강하게 일치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는 결산조정의 원칙이다. 결산조정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세법상 익금이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회계장부에 기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수익이나 비용은 세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인정되며 다만 세법에 특별히 정한 경우나 세법을 위배하는 경우에만 별도로 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회계에 의한 수익과 비용 중 법인세법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인정되면 이를 특별한 조정 없이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으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손금의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결산상 비용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보충적으로 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세무조정 시 손금이나 익금으로 신고 조정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기업회계에서는 당기 순이익을 결정함에 있어 수익실현의 원칙과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세법에서도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의 내용이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산조정 원칙이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결산조정 원칙은 우리나라의 과세소득 계산구조와 세무조정 과정에서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우선 과세소득 계산구조를 보자. 우리나라 법인세법이나 시행령 등에는 과세소득을 어떻게 산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법에 의한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에서 계산된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을 구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의 [그림 VI-1]은 우리나라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보여준다.

[그림 VI-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011. 2. 28. 개정)

(앞 쪽)

사업 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각 사업도 소득 계산	⑩ 결산서상당기순손익	01			
	소득 조정 액	⑪ 이익금산입	02		
		⑫ 손금산입	03		
		⑬ 차가감소득금액 (⑩+⑫-⑪)	04		
	⑭ 기부금한도초과액	05			
	⑮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54			
⑯ 각사업연도소득금액 (⑬+⑭-⑮)	06				
② 과 세표 준계 산	⑰ 각사업연도소득금액 (⑯=⑰)				
	⑱ 이월결손금	07			
	⑲ 비과세소득	08			
	⑳ 소득공제	09			
	㉑ 과세표준 (⑰-⑱-⑲-⑳)	10			
	㉒ 선박표준이익	55			
③ 산 출세 액계 산	㉓ 과세표준(㉑+㉒)	56			
	㉔ 세	11			
	㉕ 산출세액	12			
	㉖ 지점유보소득 (「법인세법」 제96조)	13			
	㉗ 세	14			
	㉘ 산출세액	15			
㉙ 합	계(㉓+㉘)	16			
④ 납 부 할 세 액 계 산	㉚ 산출세액(㉙ = ㉚)				
	㉛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17			
	㉜ 차감세액	18			
	㉝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19			
	㉞ 가산세액	20			
	㉟ 가감계(㉚-㉛+㉞)	21			
	기 한 내 납 부 세 액	㊱ 중간예납세액	22		
		㊲ 수시부과세액	23		
	기 납 부 세 액	㊳ 원천납부세액	24		
		㊴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25		
		㊵ 소	계	26	
		(㉞+㊱+㊲+㊳)			
	㊶ 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㊷ 합	계(㉛+㊵)	28		
⑤ 투 등 지 양 도 소 득 에 대 한 법 인 세 계 산	㉠ 감면분추가납부세액 차감납부할세액 ㉡ (㉠-㉡+㉢)	29			
	㉢	30			
	㉣ 양도	㉣ 등기자산	31		
	㉤ 차이	㉤ 미등기자산	32		
	㉥ 비과세소득 과세표준	㉥ (㉣+㉤-㉦)	33		
	㉦	34			
	㉧ 세	㉧	35		
	㉨ 산출세액	㉨	36		
	㉩ 감면세액	㉩	37		
	㉪ 차감세액	(㉨-㉩)	38		
㉫ 공제세액	㉫	39			
㉬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가산세 제외)	58				
㉭ 가산세액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40				
㉮ 가감계(㉨-㉩+㉭+㉮)	41				
㉯ 수시부과세액	42				
㉰ ()세액	43				
㉱ 계	(㉨+㉱)	44			
㉲ 차감납부할세액(㉨-㉱)	45				
⑥ 세 분 할 액 계 산	㉳ 차감납부할세액계 (㉲+㉳)	46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	57			
	㉵ 분납세액계산범위액 (㉳-㉴-㉶-㉷+㉸)	47			
	㉶ 현금납부	48			
	㉷ 물	49			
	㉸ 계	(㉶+㉷)	50		
	㉹ 현금납부	51			
차 납 세	㉺ 물	52			
	㉻ 계	(㉹+㉺) (㉻ = ㉳-㉶-㉷-㉸)	53		

또한 결산조정 원칙은 개별적인 손금이나 익금 항목의 규정에도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법인세법을 보면 손금과 익금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에 손금불산입이나 익금불산입 등을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형태는 법인이 일단 회계기준에 따라서 계상한 수익과 비용이 법인세법상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익금불산입이나 손금불산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세법상 손금과 익금으로 일단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포지티브 시스템

우리나라에서 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관계는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다. 김진표(1999)는 우리나라에서 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관계에 대해서 크게 4기간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 해방 이후 1974년까지를 세무회계의 선도시기로 구분한다. 이때는 기업회계 정보에 대한 수요의 미발달로 기업회계의 발전은 느리게 진행된 것에 비하여, 세무회계는 국가의 조세수입 확보라는 분명한 목적과 수요하에 일찍부터 발달하였다. 따라서 기업회계가 먼저 발달하고 이를 기초하여 세무회계의 발전을 이끌었던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세무회계가 기업회계를 선도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감가상각비나 퇴직급여충당금에 있어서 세법에 따라 계상한 손금을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들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공존 시기(1975년~1994년)이다. 이 시기에는 세법이 기업회계에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반대로 기업회계기준이 세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1976년에는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세무회계는 기업회계에 따라 외화채권·채무의 평가 방법을 개선하였고, 1984년에는 기업회계가 법인세법상의 특별상각을 수용하는 등 양 회계는 서로 보완·발전하였다.

제3기는 기업회계 우위의 시대(1995년~1998년)이다. 1994년 12월 22일에 개정된 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과 평가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세법규정과 차이는 경우에도 몇 가지 예외적인 사항만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이를 소위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이라고 부른다. 또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손익의 귀속시기 및 자산·부채의 평가 규정을 기업회계기준에 일치시키는 개정이 함께 이루어졌다.

제4기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공존 시기(1999년~현재)이다. 1998년 12월 28일 개정된 법인세법에서는 손익의 귀속시기 및 자산·부채의 평가 규정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의 우선 적용 규정을 폐지하여 세법에 규정된 사항은 모두 우선 적용하고,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만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는 1994년 이전의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으로 다시 전환되었다.

위와 같은 변천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는 포지티브 시스템이라고 정의된다. 이렇게 기업회계기준 우선 적용의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0조와 「법인세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업회계 존중규정은 세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보충적인 규정으로 환원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보충적 규정이다(정재연, 2001; 이만우 등, 2003), 그러나 실제로 세법에서는 과세표준의 결정에 필요한 대부분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 세법과 회계기준의 관계 정립 논의: IFRS 도입 이전

우리나라는 세법과 회계기준이 상당히 일치되어 있었던 관계로 대

부분 논의는 세법과 회계기준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크게 분류한다면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 여부에 대한 논쟁, 세법과 회계기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포지티브 시스템과 네거티브 시스템 간의 논쟁, 그리고 결산조정 원칙에 대한 논쟁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 논쟁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초기부터 세법이 기업회계보다 우위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점차로 기업회계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많은 학자들과 실무자들은 기업회계 기준에 대한 세법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을 일치시킬 것을 주장하게 된다. 사실상 기업회계기준에서 세법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기업회계와 세법을 분리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 같지만 이 시기에는 극단적인 분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기업회계기준의 입장에서 세법과 회계기준을 일치시킴으로써 기업회계의 정신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다.⁷³⁾

그러나 이러한 시기가 지나면서 점차로 시각이 바뀌어 세법과 회계기준이 과연 일치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 시작되었다. 이러한 의구심을 제기하기 시작했던 이우택(1997)은 세법과 회계기준이 일치되는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첫째, 세법과 회계기준은 목적이 다르다. 회계기준은 정보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보이용자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집단에 초점을 맞출 수는 없으며, 이에 따라 세부적인 규율보다는 전반적인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반면에 세법은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납세자의 오해의 소지

73)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연구로는 강남언(1993), 신찬수(1994), 이성주(1994) 등이 있다.

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가급적 세밀한 규정을 요한다. 이렇게 세법과 회계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양자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은 무리한 작업이 될 것이다.

둘째, 기업회계기준은 회계감사인이 따라야 할 행위 규범인데 비하여 세법은 과세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법적 규범이다. 본질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기업회계기준의 정신에 따라서 전문가인 회계감사인이 판단하도록 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은 주관적인 판단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법적 갈등의 소지를 주지 않기 위하여 최대한 자세한 규정을 요한다. 그리고 세법은 자의적 판단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회계기준과 세법이 근본적으로 일치되기 어려운 것임을 보여준다.

셋째, 우리나라 세법은 조세법률주의라는 대원칙에 입각해서 제정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기업회계기준을 바라보자면 기업회계기준은 너무나 큰 재량권을 경영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재량적 판단은 세법에서는 도저히 수용될 수 없다. 세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공법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법과 회계기준은 서로 일치되기 어렵다.

넷째,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짧다. 따라서 새로운 판단을 요하는 문제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 만일 세법과 회계기준을 무리하게 일치시킬 경우, 갈등이 불가피 요인이 많다. 미국과 같이 회계기준의 역사가 오래된 경우에는 이미 많은 문제들에 대한 경험이 누적되어 있으며 관행도 풍부하게 확립되어 있어 새로운 문제에 부딪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세법과 회계기준을 일치시키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위와 같은 이우택(1997)의 연구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 여부 논쟁은 세법과 회계기준을 분리하자는 주장으로 방

향이 바뀌기 시작한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점차로 국제화되면서 기업회계와 세법이 더 이상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나. 포지티브 시스템과 네거티브 시스템 간의 논쟁

세법이 일방적으로 기업회계를 인도하던 초기의 시기를 벗어나서 부터는 우리나라에서는 세법과 회계기준이 서로 간에 양립하는 시기를 맞는다. 그리고 1990년 이후에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세법의 영향은 사실상 거의 사라진다.⁷⁴⁾ 따라서 이제 회계기준과 세법을 일치시킬 것인가 여부는 세법이 회계기준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세법의 관점에서 보자면 처음에는 기업회계가 오히려 중심이 되는 네거티브 시스템에서 오늘날에는 세법이 중심이 되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변화하여 왔다. 이만우 등(2003)은 포지티브 시스템과 네거티브 시스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포지티브 시스템

현재의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조화 방안인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에서는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에 대해서도 세법에 규정된 내용이 우선 적용되고, 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포지티브 시스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74) 다만 기업회계에서 재량성을 인정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세법의 영향을 있다. 예를 들자면 감가상각 방법의 선택이나 내용연수의 결정 등에서는 기업회계기준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 방법이나 내용연수를 회계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는 경향을 갖는다.

첫째, 세무조정에 많은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둘째, 새롭게 발생하는 거래의 과세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법·명령·해석에 의한 세법의 대응이 지연되는 경우 애매한 상태로 있게 된다. 셋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대한법률(이하 외감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회사들은 세무조정 사항의 감소와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넷째, 세법에는 조세의 조기징수를 위한 규정이 많고, 조세의 조기징수는 결국 기업의 조세부담을 증가시켜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

현행의 포지티브 시스템하에서 이러한 단점을 줄이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법은 기업회계기준을 최대한 많이 수용하여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둘째, 결산조정 사항을 감소시켜 세무회계로 인한 기업회계 정보의 왜곡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기본적인 세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해야 하며 기본통칙이나 예규 등에서 기업회계기준과 다른 해석을 적용하는 것을 가급적 억제해야 한다.

2) 네거티브 시스템

앞서 보았듯이 1995년부터 1998년까지는 세법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네거티브 시스템에서는 세법에서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항으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하면, 계속적으로 적용해온 기업회계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네거티브 시스템이 현재의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변경된 것은 다음과 같은 점들 때문이었다.

첫째, 세법의 목적이 기업회계의 목적과 다름으로 인하여 세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둘째, 기업회계에서는 주관적인 판단을 많이 수용하기 때문에 공정한 과세가 어렵고, 구체적인 과세소득의 결정이

어렵다. 셋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無理하게 일치시키려고 하는 경우, 과세불평형·세수확보 문제 등으로 기업회계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불가피하여 건전한 기업회계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넷째, 우리나라는 기업회계가 매우 미발달하여 기업회계를 세무회계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여섯째, 세법을 기업회계 기준에 의존시킨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박이 가능하다.

첫째, 네거티브 시스템에서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일치 문제는 조세정책적인 차이를 제외한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의 평가 문제에 한정된다. 둘째, 기업회계에서도 구체적인 이익의 계산이 필요하므로, 기업회계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셋째, 네거티브 시스템에서는 세수확보 문제 등으로 기업회계에 대하여 조세당국이나 정부의 간섭이 불가피하여 건전한 기업회계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부정적인 문제 해결 방안만을 고려한 의견으로 판단된다. 넷째, 우리나라는 기업회계가 매우 미발달하여 기업회계를 세무회계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섯째, 기업회계기준은 외감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법규범이다. 따라서 외감법의 일부로서 외감법 대상 회사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 법규이다. 여섯째, 기업회계기준도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범이다. 따라서 손익의 귀속과 자산의 평가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존하는 것이 현행의 포지티브 시스템보다 조세법률주의에 더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만우 등(2003)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네거티브 시스템의 적용은 큰 문제가 없으며, 그 장점은 포지티브 시스템보다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다.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에 대한 논쟁

우리나라에서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를 규정짓는 핵심적인 원칙이 바로 결산조정 원칙이다. 결산조정 원칙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일치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산조정 원칙은 회계상 수익과 비용을 일단 세법에서 수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세무조정을 간편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장점은 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가 매우 적은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며 만일 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차이가 커진다면 결산조정 원칙은 오히려 독자적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비하여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결산조정 원칙에 상대적인 용어는 신고조정이다. 신고조정은 회계장부와 무관하게 세법에 따라서 익금과 손금을 계상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현재는 결산조정 원칙이 대부분 세법을 지배하고 있으며 신고조정은 대손금 등 일부 항목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렇게 지배적인 결산조정 원칙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IMF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회계기준이 급격하게 국제화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회계기준의 국제화는 상대적으로 세법 간의 괴리를 크게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 결산조정 원칙은 점차로 효율성을 상실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학계에서는 결산조정 원칙을 폐기하고 신고조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한다.

박정우와 손상욱(2001)은 결산조정 원칙이 갖는 문제점으로 세법이 회계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반대로 세법에서는 고유한 조세법률주의를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며 결산조정 원칙을 신고조정으로 바꿀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이준봉(2005)은 결산조정 원칙을 행정의 편의성을 위한 정책이며 이러한 정책에 따라 기업회계 고유의 목적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역시 결산조정 원칙을

폐기하고 신고조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최기호 등(2006)도 앞선 연구에 따라서 결산조정 원칙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신고조정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하며 세무 전문가 집단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주장에 많은 전문가들이 동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1) 결산조정의 문제점

감가상각비 등에 대해서 한도가 있는 결산조정에 의하여 사업연도 소득을 결정하는 것은 경영자 추정에 대한 검증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경영자의 추정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기업의 실질을 반영하면서도 경영자의 손금과대계상 혹은 조기 인식을 억제한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점은 그 의도와는 반대로 경영자가 손금을 미래이연시키고자 하는 동기를 억제할 수 없으며, 또한 기업의 실질과 괴리가 있는 한도를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실질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손금산입 한도를 도입함으로써 손금의 과대계상이나 조기 인식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손금을 이연시키는 조세회피는 방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계세율이 낮은 기업은 항상 손금을 미래로 이연시켜 한계세율이 높을 때, 세금효과를 보고자 하는 동기가 존재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시한이 짧은 편이어서 공제받지 못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가급적 손금산입을 억제하여 사업연도소득이 발생할 때 공제받고자 하는 동기가 존재한다. 또한 이월결손금이 없는 기업들도 법인세평준화 동기에 의하여 손금을 이연시키고자 하는 동기가 있을 수 있다. 법인세평준화란 가급적 납부하는 법인세를 매년 균등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를 의미하는데 이에 따르면 법인세납부세액이 갑자기 줄어든 기업들은

손금을 이연하여 법인세를 평준화시키고자 하는 동기가 있게 된다.

둘째, 법인세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손금산입 한도는 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만일 경영자가 기업의 내용을 진실하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에 반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손금산입 한도로 인하여 세무상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최기호 등(2006)은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세무 전문가, 대학교수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그들은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을 가장 대표적인 결산조정 항목으로 선정하고 문제점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대손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에서는 기업 실질과 괴리가 생긴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세무조정 과정이 복잡하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항목별 구분 없이 문항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기업 실질과 괴리가 있음을 전반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대손충당금이나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지나치게 한도를 축소하여 인정하게 되므로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대손충당금에 대해서는 세법상 1% 혹은 전기 대손률 정도만을 인정하고 있지만 상장기업만 보더라도 대손률이 이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에는 전체 퇴직금 추계액의 35%만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한도규정이 기업의 실질과 크게 괴리된다고 응답자들이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⁷⁵⁾

한편, 과세소득을 경영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는 단점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응답값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들이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그리

75) 2006년 당시 세법규정에 따른 것이다.

고 감가상각비를 경영자들이 과세소득 조정에 별로 이용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 경영자들이 손금을 과대계상하거나 조기 인식하고자 하는 동기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강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인다.

2) 결산조정 원칙의 개선 방법

최기호 등(2006)은 결산조정 원칙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감가상각비 등과 같이 한도가 있는 결산조정 항목들의 문제점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도가 기업의 실질과 차이가 있으며 이로부터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도를 폐지하고 완전한 결산조정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다.

완전한 결산조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경영자가 감가상각비 등에 대한 사적 정보를 진실하게 보고한다는 전제하에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결산조정은 경영자의 자의적 결산 내용을 과세소득에 반영하게 됨으로써 조세회피가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은 경영자가 재무보고 비용과 조세비용 간 상충관계를 감안하면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재무보고 비용과 조세비용 간 상충관계는 결산조정을 통해서 과세소득과 재무보고상 당기순이익을 일치시킨다면 경영자가 과세소득을 줄여서 조세비용을 감소시킬 때 역으로 재무보고상 당기순이익도 감소함으로써 재무보고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자는 무조건 조세를 최소화할 수는 없으며 재무보고 비용은 경영자의 조세회피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감가상각비 등에 대해서 결산조정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경영자가 재무보고 비용

간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과세소득을 결정하게 됨으로써 조세회피 동기를 상당부분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재무보고 비용은 주로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이 당기순이익 감소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이에 따라 기업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무보고 비용은 주로 상장기업들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기업들은 이러한 재무보고 비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영세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거의 재무보고 비용을 의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으로써 재무보고 비용이 조세회피 동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할 납세 의무자 중 극히 일부 기업만이 외부감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우려는 더욱 증가된다.

두 번째 방안은 강제신고조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강제신고조정으로 전환하게 되면 경영자의 결산과는 무관하게 세법에서 정한 손금만을 인정하게 된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경영자의 임의적인 과세소득조정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손금 인정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업의 실질과 과세소득 간에 괴리가 존재하게 된다는 단점이 존재하게 된다. 또한 재무보고 비용이 조세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을 억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세비용은 재무상 당기순이익을 임의로 증가시키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강제신고조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경영자의 결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소득이 독립적으로 결정됨으로써 경영자는 조세비용을 의식하지 않고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기업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제신고조정에서 나타나는 과세소득과 실질적인 당기순이익 간 차이는 일시적 차이로서 한도가 있는 결산조정보다는 시간 흐름에 따라 빨리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치명적인 단점으로

는 볼 수 없다. 한도가 존재하는 결산조정에서는 한도미달이 있는 후에 한도초과액이 나타나는 경우, 그 차이는 또 다시 한도미달이 나타나지 않는 한 조정되지 못하고 지속될 것이지만 강제신고조정하에서 한도미달 후에 나타나는 한도초과액은 서로 상계될 수 있으므로 일시적 차이가 보다 빨리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들이 조세비용을 무시하고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할 것이라는 우려도 어느 정도는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조세비용을 무시하고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할 경우에는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가 비정상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비정상적 차이는 외부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정보로 전달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과세소득을 완전하게 무시할 수는 없으며 어느 정도는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강제신고조정하에서도 당기순이익의 과대계상으로 인한 문제점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3. 세법과 회계기준의 관계 정립 논의: IFRS 도입 이후

세법과 회계기준의 관계 정립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가 국제 회계기준(IFRS)을 새로운 회계기준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한다. 이제 논의의 초점은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 IFRS를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에 맞추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우선 IFRS 규정이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준용 규정으로 적절한가를 판단해보아야 한다.

가. IFRS의 법인세법 준용규정으로서의 부적절성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회계기준 준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법인세법의 많은 부분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

법』 제43조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적인 규정 외에도 각 개별 규정 속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현재와 같이 법인세법이 기업회계기준인 K-IFRS의 규정을 계속적으로 준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IFRS의 특징을 분석하여 이러한 특징이 법인세법 준용규정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IFRS의 도입 목적⁷⁶⁾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고 있다.

“전 세계 자본시장의 참가자들과 다른 이용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유용하도록 고품질의 투명하고 비교 가능한 정보를 재무제표와 다른 재무보고에 담도록 요구하는, 고품질의 이해 가능하고 강제적이며 글로벌한 단일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IFRS의 주요 특징은 보면 다음과 같다.⁷⁷⁾

IFRS는 대다수 국가의 공동 작업을 통해 제정되는 기준: 국제 회계기준 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는 IFRS 제정 과정에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세계 각국의 회계기준 제정기구와 공동 작업을 하고 있다. 즉 IASB는 IFRS를 도입하거나 IFRS와 합치를 추진하는 국가의 회계기준 제정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IASB와 기타 회계기준 제정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 자본

76) Paragraph 6 of Preface to IFRS

77)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의 이해와 도입준비』,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2009, pp. 13~14

시장의 참여자 및 기타 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하여, 재무제표와 기타 재무보고에 있어 고품질, 투명성, 비교가능성을 갖춘 이해 가능하고 강제성 있는 단일의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고, 동 국제회계기준의 이용 및 엄격한 적용을 장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칙 중심의 기준체계(principle-based standards):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 제시보다는 회계 담당자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principle-based)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반면, US GAAP 등은 법률관계 및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과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rule-based)하고 있는데 기업의 활동이 복잡해짐에 따라 예측 가능한 모든 활동에 대해 세부적인 규칙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규칙의 자구적인 해석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우 규제 회피가 오히려 더욱 쉬워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회계기준 당국은 회계처리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원칙 및 근거를 제시하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IFRS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중심: IFRS는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하며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 모든 공시 서류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된다.

공정가치 평가(fair value accounting): IFRS의 핵심 내용은 자본시장의 투자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태 및 내재가치에 대한 의미 있는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IFRS는 금융자산·부채와 유·무형 자산 및 투자부동산에까지 공정가치 측정을 의무화하거나 또는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목적과 특징을 가진 IFRS가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법」 제43조 등의 규정과 같이 법인세법 준용규정으로 적합한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기업회계기준이 K-IFRS로 바뀐 상황에서 종전과 같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법인

세법상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현행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가 바람직한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IFRS의 특징과 이와 대비되는 세법의 측면을 비교하여 법인세법 준용규정으로서의 IFRS규정의 적절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1) 세법 제정 권한의 축소

우선 IFRS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 자본시장의 참가자들과 다른 이용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유용하도록 고품질의 투명하고 비교 가능한 정보를 재무제표와 다른 재무보고에 담도록 요구하는 고품질의 이해가능하고 강제적인 글로벌한 단일한 회계기준”이다. 즉, “세계적으로 통일된 수준 높은 회계기준”인 IFRS를 전 세계에 적용함으로써 동일한 회계기준에 의하여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IFRS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IFRS를 세무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결과적으로 해당 국가의 과세당국은 자국의 과세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 부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IFRS의 제정 및 적용 과정을 보면 세계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기준인 IFRS를 모든 국가에 적용하기 때문에, IFRS를 도입한 국가는 자국의 회계기준 제정권한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국마다 독특한 산업이나 특유의 사정을 세계 공통의 회계기준인 IFRS에 반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건설업 중 아파트예약매출에 대한 수익 인식이나 조선업의 위험회피회계 관련 규정 등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IFRS를 도입한 국가 중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IFRS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의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2005년부터 IFRS를 도입한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경우도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제외한 개별(별도) 재무제표에는 기존의 자

국 회계기준(이하 local GAAP)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자국의 회계기준 제정권한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연결 재무제표뿐만이 아니라 개별(별도) 재무제표에도 K-IFRS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제정 권한이 대단히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만일 우리나라 상황에 부적절한 회계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세계의 주요 국가가 합의하여 IFRS 규정으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K-IFRS에서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적절하지 않은 K-IFRS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세법과 회계 간의 관계를 지속한다면 부적절한 K-IFRS 규정이 계속적으로 법인세법에서 준용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형식적인 과세권한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인 과세권한은 축소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인 IFRS를 우리나라 법인세법 규정에 계속적으로 준용한다면 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세제당국의 과세규정 제정권한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비록 개별(별도) 재무제표에 자국의 회계기준인 local GAAP를 적용하더라도, 이미 IFRS를 도입한 많은 나라에서 해당 국가의 local GAAP를 IFRS에 맞게 변경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이 증가한다면 local GAAP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국가에서는 IFRS의 규정을 점차 세무상 목적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해당 국가의 과세규정 제정권한이 자연스럽게 축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이러한 과세권한의 축소는 각국의 사정에 맞는 조세정책을 펴야 하는 세제당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사정에 맞는 세제를 펼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 세제를 제정하고 적용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세계당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에 맞지 않는 IFRS를 법인세법의 준용규정으로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기본 개념에서의 IFRS와 세법 간의 부정합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 회계기준을 비중 있게 준용하여 왔던 것은 회계기준의 기본 개념과 세법의 기본 개념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IFRS의 기본 개념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회계기준의 기본 개념과도 다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IFRS에서 유지하고 있는 기본 개념이 세법에서 수용 가능한지의 여부를 파악하여, 법인세법의 준용 규정으로 그대로 유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고자 한다.

우선 IFRS와 세법의 목적을 살펴본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IFRS의 도입 목적⁷⁸⁾을 보면 주식시장 참여자, 즉 주식투자가에 보다 수준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업·국가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무 정보의 마련이 IFRS의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법의 경우 공평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기에, 주식투자자를 위한 정보 제공이 목적인 IFRS의 기본 목적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⁷⁹⁾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IFRS의 주 이용자는 주식투자자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IFRS는 세법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첫째, IFRS는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 중심의 관점을 갖고 있는 것

78) Paragraph 6 of Preface to IFRS.

79) 다만 이러한 목적에서의 차이는 종전의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간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상 차이로 인하여 IFRS의 부적절성을 논의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지만 IFRS에서는 과거의 회계기준보다 더 회계기준의 본질적인 정신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세법과의 차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으로 보인다. 즉, IFRS는 손익계산서는 과거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며 이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세법에서는 재무상태표는 단지 정확한 성과를 계산하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며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서를 중시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의 차이는 중요성 금액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IFRS에서는 손익에는 영향이 없어도 재무상태표에는 중요한 영향이 있다면 이를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세법에서는 오직 손익에 미치는 영향만이 중요할 뿐이다. 이러한 목적의 차이로 인하여 IFRS의 기본개념과 그 개념하에서 제공되는 여러 정보를 세무상의 목적으로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무상태표 중심인 IFRS 규정을 법인세법의 준용 규정으로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IFRS는 기본적으로 모든 자산·부채에 대하여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취득원가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세법의 관점에서 보면 IFRS가 도입되면서 공정가치를 사용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일 수 있을 것이다. IFRS에서 공정가치 평가를 중시하는 것은 정보의 신뢰성보다는 목적 적합성에 더욱더 큰 비중을 두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렇지만 세무당국의 관점에서 보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정보)가 중요한 것이며 IFRS에서 공정가치에 의한 자산평가는 세무상 관점에서는 미실현손익이기에, 현재 기업의 현금흐름과는 연결이 되지 않으며 납세자의 담세력을 제대로 나타내지는 못한다고 본다. 즉 IFRS의 기본 개념인 공정가치에 의한 자산평가를 세무상의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공정가치 개념을 근간으로 하는 IFRS의 규정을 취득원가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법인세법의 준용 규정으로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셋째, IFRS는 다른 회계기준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형식보다는 경

제적 실질을 중시하고 있는 데 반하여, 세법은 법의 테두리에 있기에 거래의 법적인 형식을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시하는 경향을 갖는다. 이에 따라 법적인 형식을 중요시하는 세법의 관점에서는 경제적 실질을 강조하는 IFRS를 세법의 기본 개념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가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면 상환우선주나 부채와 자본의 성격을 동시에 보유하는 신종 자본증권(hybrid security)들에 대해서 IFRS에서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증권을 부채나 자본으로 분류하지만, 세법은 그 법적인 형식에 따라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즉, 경제적 실질을 중요시하는 IFRS와 법적인 형식을 중요시하는 세법의 관점을 일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에, 계속적으로 법인세법의 준용 규정으로 IFRS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넷째, IFRS는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는 데 비하여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개별 기업에 대한 과세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라 개별(별도) 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고 있다. 물론 현행 법인세법에서도 2010년부터 연결납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는 IFRS의 연결재무제표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법인세법과 IFRS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연결 범위이며,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만 연결납세 대상이 되는데 이는 50%의 지분율과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IFRS와 법인세법은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해소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는 IFRS를 법인세법의 준용 규정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원칙중심 기준(principle based)과 규정중심 기준(rule based) 간의 부정합

IFRS는 기본적으로 원칙 중심의 기준 체계로서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회계 담당자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 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볼 때, IFRS는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원칙 및 근거를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원칙 중심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금융감독원, 2009).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모든 사항을 자세하게 규정하여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규정 중심의 기준이다(이상신, 2008).

이상신(2008)은 규정 중심인 법인세법에서 원칙 중심인 IFRS 규정을 계속 준용한다면 법률상 불확정 개념이 더욱 증가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서 불확정 개념이란 세법의 규정이 “정당한 사유”, “필요가 인정되는 때”, “현저한 손실” 등과 같이 다의적이고 불명확한 용어로 기술된 경우를 말한다. 만일 원칙 중심인 IFRS를 법인세법에서 계속 준용하여 법률상 불확정 개념이 증가한다면,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기업 간에 회계 처리가 달라질 가능성이 더욱 커져, 결과적으로 기업 간의 과세형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률상 불확정 개념으로 인하여 각종 애매한 세법 규정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IFRS를 도입한 국가들에서 나타난 바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에 IFRS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해석의 불확실성, 상충되는 해석들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주식 관련 평가, 퇴직연금,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의 연결 범위에 대한 것 등에 대하여 회계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한다.⁸⁰⁾

세법의 입장에서 IFRS의 대표적인 불확정 개념은 “공정가치”라는 표현이다(이상신, 2008). 즉 공정가치의 산정을 어떻게 얼마로 하여야 하는 것에 대하여 기업마다 서로 다른 금액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 기능통화의 도입과 관련하여 K-IFRS에서는 “영업활동이

80) 파이낸셜뉴스, 2008. 3. 9.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라고 정의하고 있는데,⁸¹⁾ 이러한 정의는 법인세법상 관점에서는 불확정 개념이기에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더욱더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세법상의 관점에서 많은 불확정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IFRS를 법인세법에서 계속 준용한다면, 세법상 불확정 개념은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법률상 관점에서 많은 불확정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IFRS의 규정을 법인세법에서 계속적으로 준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이원적 회계기준(two-tier system)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경우 K-IFRS 도입 이전에는 단일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모든 기업의 회계처리 기준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기준이었다. 그러나 K-IFRS를 도입한 이후에는 K-IFRS를 적용하지 않은 기업이 적용하여야 하는 일반기업 회계 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은 K-GAAP을 바탕으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다 단순하면서도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하여 제정한 것이다.⁸²⁾ 이에 따라 일반기업 회계 기준의 일부 내용은 IFRS와 유사하지만 일부 규정은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르고 있어 IFRS와는 차이를 보인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일반기업 회계 기준의 내용을 IASB에서 제정한 “소규모기업을 위한 국제 회계 기준(IFR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IFRS for SMEs)”과의 정합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개정할 예정이기는 하지만⁸³⁾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은 K-IFRS와 일반기업 회계 기준의

81) K-IFRS 제1021호 문단 8

82) 한국회계기준원, 『일반기업회계기준-제정계획』, 2009. 9. 29.

83) 금융감독원, 『IASB, IFRS for SMEs 발표』,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공인회계사』 2009년 8월호, p. 17에서 재인용), 2009. 7. 12.

이원적 체계(two-tier system)로 운영될 것이 확실하다.

이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이 K-IFRS와 일반기업 회계 기준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기업회계 측면에서는 적용대상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준에 의하여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 측면에서 과세소득의 출발인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의 계산이 각 기업이 적용하고 있는 회계기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져, 결과적으로 과세소득 계산의 출발점인 당기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과세소득이 달라져 기업간 과세형평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업회계기준이 K-IFRS와 일반기업 회계 기준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업간 과세형평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법인세법에서 회계기준의 규정을 계속적으로 준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5) IFRS의 계속적인 제·개정 가능성

이미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IFRS가 계속적으로 제·개정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계속적인 제·개정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현행 법인세법 체제하에서는 법인세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불확정성을 높일 수 있다.

IFRS는 국제적인 협의에 의하여 제정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지만 이미 적용되기 시작한 IFRS는 계속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IFRS가 계속 변화하게 되는 대표적인 원인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IFRS와 미국의 회계기준(US GAAP) 간의 합치성 및 호환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현행 IFRS가 계속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

다고 여겨진다. 미국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 재무회계 기준위원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FASB)를 중심으로 US GAAP과 IFRS의 합치 및 호환성 유지를 위한 여러 노력을 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7년 11월 미국 SEC는 미국에 상장된 외국 기업이 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US GAAP과의 차이조정 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2008년 8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자국 기업에 대한 IFRS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 계획에 따르면 상장 대기업은 2014년 12월 15일 이후, 상장 중기업은 2015년 12월 15일 이후, 상장 소기업은 2016년 12월 15일 이후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IFRS를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할 예정이었다. 2010년 2월에 미국 SEC는 IFRS 및 기준 합치에 대한 지지 성명서를 승인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단일의 고품질 회계기준이 미국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SEC의 지속적인 신뢰를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IFRS 도입 여부는 차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철저한 도입 준비를 위하여 도입 시기는 2015년 또는 2016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함으로써 IFRS 도입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⁸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미국의 IFRS 도입 일정에 계속 늦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미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IFRS 규정이 계속적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⁸⁵⁾ 또한 미국뿐만 아니라 이미 IFRS를 적용하는 세계 각국에서 현재의 IFRS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거나, 제정 기관인 IASB가 자체적으로 보다 합리적인 회계 처리를 위하여 기존의 IFRS 규정을 제·개정하려고 하기에, IFRS가 계속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둘째, 다음으로 보다 합리적인 회계 처리를 위하여 기존의 IFRS 규

84) 금융감독원, 『미국 SEC, 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성명서 승인』,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2010. 2. 26.

85)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IFRS 제·개정 프로젝트 최근 진행상황』, 2010. 3. 19, 참조

정이 계속적으로 제·개정될 가능성이 있다. IFRS는 동일한 기준을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기에, 실제 IFRS를 적용하는 각국의 입장에서 각국에 맞는 보다 합리적인 회계 처리나 보다 구체적인 지침의 제공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대손충당금에 대한 설정 기준 등에 대하여 계속적인 수정 요구가 있어, 현재 발생손실 모형(Incurred loss model)에서 종전의 기대손실 모형(Expected loss model)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공개 초안(Exposure draft)을 발표한 바 있다.⁸⁶⁾ 이외에도 실제 적용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추가 기준의 요구로 IFRS규정이 계속적으로 제·개정될 가능성이 있다.⁸⁷⁾ 이와 같이 현재의 IFRS가 계속적으로 제·개정될 가능성이 있어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K-IFRS가 계속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를 준용하고 있는 법인세법의 예측 가능성 및 앞에 언급한 불확정 개념이 높아지게 되므로, 현재와 같이 법인세법에서 회계기준의 내용을 준용하는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6) K-IFRS와 법인세법 간의 차이

법인세법에서 K-IFRS를 더 이상 준용하기가 어려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K-IFRS의 규정 가운데 법인세법에서 수용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많다는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가장 큰 내용의 차이는 공정가치에 의한 자산의 평가로 인한 미실현손익의 인식에 대한 것이다. 또한 기존의 규정 중심인 K-GAAP에 비하여 원칙 중심인 K-IFRS에서는 각 기업별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K-IFRS의 경우 실제 적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을 자세히 규정

86) 한국회계기준원, Supplement to ED, "Financial Instrument: Amortized cost and impairment,"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2011. 2.

87) 대표적인 예로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적용 기준 (매일경제신문, 『이현령비현령 'IFRS' 사실상 지배』, 2011. 6. 2.)이며, 이 이외 금융상품에 대한 규정의 제·개정 등에 대한 요구가 있음.

하는 대신 원칙을 제시하는 측면이 많다. 이에 따라 많은 규정이 숫자에 의한 규정(numeric)보다는 원칙에 대한 기술(verbal)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리스구분 기준이나 연결대상 판정기준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각 기업마다 회계처리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개별기업별로 추정하여 인식하는 기업회계상 금액도 법인세법에서는 수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⁸⁸⁾

나. 세법과 회계기준의 새로운 관계 정립

앞선 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IFRS는 더 이상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 준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도 회계기준과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은 우리나라처럼 IFRS를 도입한 국가들에는 공통적인 과제이다. 우선 IFRS 도입 이후 우리나라가 취해볼 수 있는 새로운 관계모형은 다음과 같다.

1) 의존형

의존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상 수치를 기업의 과세소득으로 하는 방법이다. 이는 완전히 회계기준과 세법을 일치시키는 다소 극단적인 방법이다.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회계기준의 변동에 따른 세법 개정이 필요 없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세법제정 권한을 포기하고, 세법과 회계원칙 간에 충돌 가능성이 커지는 등의 단점이 있게 된다. 또

88)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는 심태섭 외(2009), 심태섭 외(2010) 등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음.

한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비용이 적게 들고 재무제표 작성 시 이연 법인세 계산이 간단한 장점은 있으나, IFRS 도입 상황하에서 납세자의 납세액 변동 가능성이 커질 단점이 있다.

2) 독립형

독립형은 기업회계기준의 내용과 관련 없이, 오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만 해당 기업의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세법과 회계기준이 완전하게 분리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세법 제정권한을 유지할 수 있고, 경제 정책에 맞는 세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회계와 세법의 기본 원칙을 각각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비하여 세법이 복잡하여지며, 동일한 내용이 세법과 회계기준에 동시에 규정되며, 조세회피가 커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납세자의 입장에서 경영자의 목적에 따라 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세법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별도로 산출할 수 있으며, 영세기업의 경우 세법에 맞추어 회계이익을 작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비하여 세무상 별도의 기록(장부 등)을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등의 단점이 있게 된다.

3) 중도형

중도형은 회계기준에 의해 계산된 순이익을 과세소득의 근거로 하되 세법상의 규정과 회계기준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여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방식이며 현재의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형태이다. 이 모형은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의존 정도에 따라 실질적 의존형, 부분 의존형, 부분 독립형으로 세분될 수 있다. 세제당국의 입장에서 세법 제정권한을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으며, 동일한 내용을 세

법과 회계에 이중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세법이 복잡하여지며, 당기순이익 계산과정에서 기업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기업회계상 법인세법상 세제의 인정 여부가 보다 적극적인 세제를 피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별도 장부가 필요 없는 등과 같이 적용이 쉬운 장점이 있으나, 이익 극대화과 과세소득 최소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장점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모형 중 우리나라가 어떤 방안으로 관계 설정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보다 앞서 IFRS를 도입했던 EU 국가들의 경우를 참고해 볼 수 있다.

EU 국가의 경우에는 매우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프랑스와 독일은 의존형 관계를 취하고 있으며, 영국은 중도적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EU 국가는 아니지만 미국의 경우는 (부분) 독립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각 국가들이 취하는 형태가 달라지면 IFRS의 적용 형태에 따라 세법 측면에서 받는 영향에 차이가 있게 된다.

IFRS의 도입으로 세법 측면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는 “의존적 접근 방법” 혹은 “중도적 접근 방법”을 채택한 국가 중 개별 기업에 대하여도 IFRS를 채택한 경우(강제든 선택이든)였다. 이렇게 보자면 우리나라도 이미 개별 기업의 별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IFRS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기에, IFRS 도입에 따라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에 속할 것이다. 이러한 집단에 속하는 국가는 IFRS 도입이 과세소득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에, IFRS 도입에 따라 기존의 세법과 기업회계기준 간의 관계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국가로 볼 수 있다.

일부 EU 국가에서는 IFRS 도입을 전후로 세법과 기업회계기준 간의 관계를 변경한 국가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표적인 국가인 영국과 아일랜드는 종전에는 “독립적 접근 방법”을 취하였으나, IFRS 도입

후 “중도적 접근 방법”으로 변경하였다. 이 국가들은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세법 규정을 마련하는 데 수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하되었다고 보고된다. 이에 비하여 노르웨이의 경우는 “의존적 접근 방법”에서 “독립적 접근 방법”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이 IFRS를 2005년에 도입한 EU에서도 각국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IFRS 도입에 대응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IFRS는 기본 목적이나 내용 면에서 세법에서 수용하기 어려우며, 또한 그 규정이 계속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법인세법에서 기업회계기준을 계속적으로 준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 이에 장기적으로는 법인세법이 기업회계기준과 독립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IFRS 시대의 우리나라 회계기준과 세법의 가장 바람직한 관계로 판단된다. 이렇게 법인세법과 회계기준이 어느 정도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앞에 언급한 K-IFRS의 도입이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 간의 관계가 급격하게 변화할 경우, 세계 당국에서는 준비의 어려움, 납세자인 기업은 새로운 규정을 수용하는 어려움이 매우 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법인세법과 회계기준이 현재의 관계에 비하여 독립적인 관계를 더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변경에 따른 필요 시간과 비용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법인세법과 회계기준을 순차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4. 새로운 관계 정립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 방향

앞선 절에서 IFRS 도입이라는 획기적인 사건을 맞이하여 우리나라는 결국 법인세법과 회계기준을 분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회계기준과 세법을 분리해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계속해서 기업회계와 세법이 상당히 일치된 상태

에 있었다. 이런 배경에서 양자를 갑자기 분리할 경우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아직은 어떠한 예상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세법과 회계기준의 분리는 부분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심태섭 등(2011)은 각각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분리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렇게 기간별로 구분해서 법인세법을 어떤 방식으로 개정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단기 방안

단기적으로 추진하는 분리 방안은 시급하면서도 가장 단순한 작업이 된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세법과 회계기준을 분리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현행 법인세법의 규정 중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는 각종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세법과 회계기준을 단기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단기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기에 다른 방법보다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분리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대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과세소득의 계산 등 측면에서 보면 완벽한 세법과 회계기준의 분리 방안이 아니며, 세법이 현재보다 복잡해지는 등의 단점이 있다.

단기 방안에서 우선적으로 개정을 고려해야 할 부분은 현재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법인세법」 제43조이다. 현행 「법인세법」 제43조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은 기업회계기준 준용을 매우 강한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IFRS 도입과 함께 세법과 회계기준을 분리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 규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

에 대해서 심태섭 등(2011)은 우선 단기적으로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고 하는 강한 표현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한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어감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회계기준과 세법을 분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해서 이 규정을 당장 폐기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 이유는 세법과 회계기준이 분리된 상태에서 오랜 시일이 흘러야만 나뉠대로 완전성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전에 선불리 기업회계 존중의 규정을 폐기한다면 세법에 미처 규정되지 못한 많은 상황에서 납세자의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단기 방안을 추진하면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서 이런 규정들이 모두 개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단순히 기업회계기준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고, 보다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하는 부분도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정이 필요 없는 경우

비록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개정이 필요 없는 경우이다. IFRS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을 계속 준용할 수 있는 것은 현행 규정이 합리적이거나 아니면 단순히 법인세신고나 첨부서류 등에 관한 규정이거나 회계상 처리를 언급한 경우이다.

우선 기업회계기준을 계속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이다. 예를 들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서는 금융자산의 정의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단기매매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⁸⁹⁾ 이런 경우 만일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지 않는다면 금융자산의 정의를 세법에서 다시

89)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새롭게 금융자산을 정의하기보다는 기존 기업회계기준의 정의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규정은 비록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개정이 필요 없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정의와 같은 것들이 있다.

두 번째로는 단순히 법인세 신고를 위한 첨부 서류에 대한 규정들이다. 예를 들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24를 보면 동업 기업의 소득금액을 신고할 때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⁹⁰⁾ 이런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는 것은 사실상 첨부 서류의 명칭을 지정한 것으로서 회계기준과 세법을 분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장 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는 단순히 기업회계상 처리를 의미하는 규정들이 있다. 이는 법인세법이나 시행령이 아닌 기본 통칙에서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8을 보면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 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 증가 혹은 감소로 처리했을 때는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 혹은 손금으로 본다고 말하고 있다.⁹¹⁾ 이 때 기업회계기준을 언급한 것은 기업회계의 처리

90) 제100조의 24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법 제100조의 23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법 제100조의 23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91) 23-26...8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처리】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23-0...4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므로 세법과 회계기준의 분리에 따라서 굳이 시급하게 개정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단기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단기 방안은 글자 그대로 응급 처치에 불과하다. 단기 방안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는 오히려 세법만 복잡해져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단기 방안 외에 중·장기 혹은 장기적으로 세법을 체계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 중·장기 방안

여기에서는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을 분리하는 중·장기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방안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과세소득계산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요 항목에 대하여만 회계기준에 의한 손익계상 금액을 취소하고, 이외는 별도로 세법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손금을 추가로 반영하는 방식이다.⁹²⁾

이러한 분리 방안은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기에 기본적으로 현재의 과세소득 계산체계와 유사하다. 그러나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완전히 취소하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신고조정 방식으로 반영하기에 현재의 과세소득 체계와는 차이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방안은 앞에 언급한 단기적 방안보다는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을 분리하는 방안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 본 단기 방안은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이 분리되는 경우, 당장 문제가 되는 부분을 조망하고 이러한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영 제 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92) 이 방안은 현재 영국이나 호주에서의 감가상각비 적용방법을 이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었다.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을 분리한다고 전제한다면 단기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문제가 되는 항목들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 분리 방안에서는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을 분리한다는 전제하에 현재 결산조정에 따라서 기업회계와 세법이 연결되어 있는 주요 항목들에 대해 보다 중·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고 가장 효과적인 분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큰 틀에서 중·장기적 방안은 우선 현재의 결산조정을 신고조정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신고조정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세법이 기업회계기준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소득계산 체계를 갖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장기적 방안은 기업회계기준과 분리된 세법이 어떠한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세법을 가급적 그대로 유지하여 기업회계기준과 유사한 형태로 만드는 유지·종속형과 기업회계기준과 독립적으로 새롭게 세법 규정을 만드는 신설·독립형의 두 가지 방안으로 구분 가능하다. 각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지·종속형 분리 방안

이 방안은 세법이 비록 기업회계기준과 분리되었지만 가급적 현행 세법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행 세법이 결산조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방안은 기업회계기준에 종속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이 분리 방안은 변화에 따른 실무적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지만, 세법이 기업회계기준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세법 고유의 논리적 체계에 부적합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게 된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앞서 살펴본 단기적 대응 방안과 유사할 수 있기에, 과세당국의 판단에 따라서는 단기에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신설·독립형 분리 방안

이 방안은 기업회계기준과 분리시키면서 새롭게 제정하는 세법을 세법 고유의 원칙에 따라 새롭게 개편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기업회계기준과 완전하게 독립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세법 고유의 원칙에 충실하게 세법을 제정한다는 장점을 갖지만 현행 세법과 차이가 커진다면 변화에 따른 실무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게 된다.

신설·독립형 분리 방안에 적용할 수 있는 세법 고유의 원칙이란 기업회계기준에는 없거나 혹은 기업회계기준의 기본 정신과 다른 세법만의 독특한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을 최소화하면서 규정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첫 번째 세법고유의 원칙은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기준의 선택이나 자산·부채 평가 등에 무분별하게 경영자의 재량이 개입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이나 세법에서 모두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을 폭넓게 허용한다. 그 이유는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을 허용함으로써 경영자가 소유하고 있는 사적 정보가 자본시장에 최대한 전달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매출채권의 미래 대손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영자만이 알고 있다. 그런데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때, 경영자의 판단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면 적정한 대손충당금에 대한 정보를 자본시장에 전달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회계에서는 경영자의 재량이 개입함으로써 얻어지는 순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하여 세법에서는 과세소득 결정에 있어서 경영자의 재량을 최대한 억제한다. 즉, 세법은 자본시장에 대한 정보 전달보다는 과세소득 측정의 신뢰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은 세법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원칙이 된다.

두 번째 세법고유의 원칙은 세법을 가능한 한 단순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도 기업회계기준에는 없는 세법만의 고유한 원칙이다. 기업회계기준은 기장능력이 있고 회계담당자가 별도로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세법은 대규모 기업은 물론이지만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에 따라 세법 규정이 복잡해질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전문 인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들이 불리해질 수 있다.⁹³⁾ 또한 기업회계기준은 공인회계사와 같은 회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지만 세법은 회계나 세무에 지식이 없는 일반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세법 규정이 단순화되는 것은 필요하다.

위와 같은 두 가지 원칙은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며 상호 독립적이다. 이러한 세법고유의 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 지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자산·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가급적 취득원가를 유지하며 공정가치 반영을 배제한다. 자산·부채는 취득원가, 공정가치, 현재가치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 중에서 취득원가는 과거 시점에 확정된 원가로서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하다. 취득원가에 상대되는 것으로 공정가치, 현재가치 등은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되어야 한다. 또한 취득원가는 과거에 이미 발생한 거래에 기초하여 가액이 결정되므로 별도의 추정이 필요 없다. 따라서 취득원가로 자산·부채를 평가하는 것이 공정가치나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단순하다. 이에 따라 자산·부채의 평가는 가급적 취득원가로 하는 것을 세부 원칙으로 삼는다.

둘째, 자산·부채를 취득원가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한다면 이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도 관찰 가능한 확정시점에 귀속되어야 한다. 관

93) 물론 이들도 세무조정 대리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다.

찰 가능한 확정시점이라고 함은 현금수입이 확정되거나 지출이 확정된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현금이 유입되고 유출되는 시점과는 다르다. 이러한 세부 지침에 따라서 평가손익 등은 손금이나 익금에서 가급적 배제한다.

세 번째 지침으로는 단순화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한도계산 등의 산식을 보다 간단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세법고유의 원칙은 가급적 지켜야 하지만 사안별로 융통성을 가지고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두 가지 원칙이나 세부 지침 간에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어느 한 원칙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세법고유의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세부담을 증가시키거나 반대로 조세회피를 증가시킨다고 하는 경우에는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항목별 중·장기 방안의 적용

심태섭 등(2011)은 중·장기 방안을 적용해야 할 항목으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재고자산평가방법, 현재가치할인차금 등을 들고 있다. 이들 항목들을 선정한 이유는 이들 항목들은 현행 규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단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세법과 회계기준이 분리된 상태에서 현재 항목들을 개정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세법과 회계기준의 분리효과를 얻을 수 없으며 분리된 체제에 적합하지 않는 규정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개정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 이들 항목에 대한 중·장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감가상각비와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은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

가 많은 대표적 항목들이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법 규정에서는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하는 항목에 대해서 무조건 손금불산입하기보다는 일단 세법상 손금으로 수용하지만 한도를 두고 그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세법과 회계기준이 분리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조정하는 방식은 분리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규정을 세법과 회계기준 분리라는 큰 취지에 맞도록 개정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일단은 현재의 결산조정 원칙에서 신고조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감가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의 신고조정 전환은 IFRS 도입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주장이다(최기호 등, 2006). 다만 신고조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을 어떤 방식으로 개편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유지·종속형으로 개편하는 것은 기존의 세법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신설·독립형은 세법 고유의 원칙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감가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은 기업회계기준 규정을 세법에서 받아들인 형태이다. 따라서 세법과 회계기준의 분리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유지·종속 형태의 개정은 부적합하다. 따라서 신설·독립형으로 개정하되 세법 고유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감가상각비의 경우는 상각 방법이나 내용연수, 잔존가액 등을 최대한 단순한 형태로 만들고 대신에 정책적 목적을 반영하여 상각률을 다양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대손충당금의 경우에는 금융업 등 특수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폐지하고 대손확정 시에 손금으로 인정하는 방안으로 개정하는 것이 단순화 원칙과 재량권 최소화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⁹⁴⁾

94) 최기호 등(2007)은 대손충당금과 관련하여 현재와 같이 충당금을 인정하면서 충당금 설정율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개정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나) 재고자산평가 방법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재고자산평가 방법을 인정하면서 결산조정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경영자는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재무보고 비용과 조세비용 간의 상충관계를 고민할 것을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IFRS는 재고자산평가에 있어서 순실현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세법과 회계기준이 분리되면 재고자산평가에서도 더 이상 결산조정 원칙을 고수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재고자산평가에서도 결산조정 원칙은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계속성의 원칙을 대신하는 사전신고 제도 또한 폐지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재고자산평가 방법을 바꿀 수 없도록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 결산조정 원칙이 폐지되면 새로운 고민이 생기는데 그것은 후입선출법과 저가법의 인정 여부이다.

후입선출법은 이미 IFRS하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 세법에서 인정하게 되면 기업들은 재무보고 목적으로 선입선출법, 그리고 세무 목적으로는 후입선출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조세비용과 재무보고 비용의 상충관계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심태섭 등(2011)은 중·장기적으로 세법에서도 후입선출법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고민으로는 저가법의 인정 여부가 있다. 저가법은 순실현가치와 취득원가 중 낮은 가액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으로 회계상 보수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방법이다. 회계상 보수주의는 사실상 세법에는 맞지 않는다. 또한 세법과 회계기준이 분리된 상태에서 순실현가능가치를 구하려고 하면 세법 규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저가법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후입선출법이나 저가법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한 평가 방법만을 허용한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볼 때 재고자산평가에 있어서도 유지·중속형 개정보다는 신설·독립형 방안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세법과 회계기준의 분리를 고민하기 이전부터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세법에서 허용할 것인가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다. 특히 기업회계기준에서는 IFRS 도입 이전부터 현재가치 개념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에서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인정을 꺼려 왔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는 데 있어서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이 크게 개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인정한다면 세법이 그만큼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재량권 최소화 원칙과 단순화 원칙이라는 세법 고유의 원칙에 충실히 따라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현행 법인세법에서도 할부매출(『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이나 유형자산의 취득(『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등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결산조정 원칙을 내세운 것은 기업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단순화 원칙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회계기준과 세법의 분리를 고민하면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세법이 회계기준과 분리되어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할 경우, 만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재량권 최소화와 단순화라는 두 가지 큰 원칙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격적인 세무 계획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법 고유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도 조세

회피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면 융통성을 가지고 재고해 보아야 한다. 또한 세법에서 우려하고 있는 재량권의 문제도 유효이자율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신설·독립형이 아닌 유지·종속형의 개정 방안이 된다.

다. 장기 방안: 세법과 회계기준의 완전 분리

장기 방안은 당초 취지대로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세법과 회계기준이 완전 분리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세법의 과세소득 계산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완전 분리된 상황에 가장 적합한 구조로 개편하는 작업이 된다.

여기에서는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을 완전 분리하는 경우 세무 장부를 별도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⁹⁵⁾ 이는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세무장부와 회계장부를 일원화했던 것에 비하여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우선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이 분리되는 경우, 가장 효율적인 세법의 체계가 무엇인가를 찾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현행 세법의 규정을 보완하는 단기적 수준의 방안보다는 세법의 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단일장부(one book)와 별도장부(two book) 시스템

통상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한 후 별도의 계산체계 없이 가감하여(세무조정) 과세소득을 결정하는 방식을 단일

95) 다만 여기서 검토하고자 하는 별도 장부를 유지하는 방안은 개념적인 것이며 물리적으로 별도의 장부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와는 다른 것이다.

장부 체계(one book system)라고 부르며 이에 비하여 세법과 회계기준이 완전히 분리되어 세법이 별도의 계산 체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장부 체계(two book system)라고 부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선 현재와 같이 단일장부 체계와 완전 분리된 방식인 별도장부 체계를 비교한 후, 완전 분리될 경우 갖추어야 할 세법의 체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물론 이 때 별도장부 체계라고 함은 개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 물리적으로 장부 조직을 이원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검토한 분리 방안은 기업회계기준에서 산출된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필요한 세무 조정을 통하여 세법상의 과세소득을 산출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단일장부 체계(one book system)에 입각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하나의 장부 기록을 바탕으로 기업회계와 세법의 소득을 산출한다는 의미에서 단일장부 체계로 불리는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법을 보면 이러한 체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하도록 규정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체계하에서의 세법에서는 익금과 손금을 간략하게 정의한 후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 규정을 통해서 과세소득 산출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자산, 부채 평가에 대한 규정이 단순화되어 있어서 주로 손익 중심의 규정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산, 부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세한 규정보다는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일시적 차이를 유보로 정의하고 이를 통하여 자산, 부채의 결산상 장부가액과 세무상 장부가액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형태이다.

이러한 세법의 구성 내용은 세법과 회계기준을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큰 충격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효율성 면에서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세법이 독자적인 규정을 통해서 기업회계기준에 의존하지 않고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방안인 별도장부 체계(two book system)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회계와 세법에서 이익을 산출하기 위하여 각각 독립적인 장부 기록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별도장부 체제로 보는 것이다.

별도장부 체계하에서는 익금과 손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정교한 정의가 필요하다. 자산, 부채에 대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별도로 정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자산, 부채의 평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별도장부 체제와 단일장부 체제의 우열을 비교하는 것은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에 달려 있다. 만일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기업회계를 중심으로 차이점만 조정하는 단일장부 체제가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차이가 크다면 양자를 분리하여 별도장부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그런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IFRS 도입으로 인하여 기업회계와 세법 간의 차이는 계속 커질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별도장부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 될 것이다.

2) 소득의 정의

소득은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하여 산출된다. 이는 회계상 당기순이익이나 세법상 과세소득 모두가 동일하다. 다만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수익을 익금으로, 비용을 손금으로 부르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또한 소득은 순자산의 변동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즉, 순자산 변동에서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변동을 차감하면 소득을 산출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로 세법상 과세소득과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세법상 과세소득⁹⁶⁾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즉, 익금에

96)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연도소득이라고 부른다. 여기에서는 이미 과세소득이라는 명칭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기에 그대로 과세소득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서 손금을 공제하거나 아니면 순자산변동에서 자본금 변동과 이익잉여금 변동을 제외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양자는 동일하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text{TaxIncome} = \text{TaxRev} - \text{TaxExp} = \Delta\text{TaxNetAsset} - \Delta\text{TaxCapRet}$$

TaxIncome: 사업연도소득

TaxRev: 익금

TaxExp: 손금

$\Delta\text{TaxNetAsset}$: 세무상 순자산 변동

$\Delta\text{TaxCapRet}$: 세무상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변동

다음으로 회계상 당기순이익도 과세소득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다. 즉,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하거나 아니면 재무상태표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순자산 변동에서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변동을 공제하여 구할 수 있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text{AccIncome} = \text{AccRev} - \text{AccExp} = \Delta\text{AccNetAsset} - \Delta\text{AccCapRet}$$

AccIncome: 회계상 당기순이익

AccRev: 회계상 수익

AccExp: 회계상 비용

$\Delta\text{AccNetAsset}$: 회계상 순자산 변동

$\Delta\text{AccCapRet}$: 회계상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변동

위 두 식을 볼 때 만일 세법과 회계기준이 동일하다면 위 두 식은 완전하게 동일해진다. 그러나 실제로 세법과 회계기준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위 두 식은 서로 차이가 있게 된다. 단일장부와 별도장부 체계는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방식에서 서로 간에 차이를 보인다.

3) 단일장부 체제에서의 세법 기술 방법

단일장부 체제에서는 회계 장부를 기초로 과세소득을 산출하고자 한다. 즉, 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이에 익금과 손금을 가감하는 세무조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과세소득을 산출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나라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3호 서식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명세서를 보면 명확하다.

단일장부 체제에서의 세법 기술 방식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선 앞서 제시했던 식을 기초로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 간의 차이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TaxIncome} - \text{AccIncome} &= (\text{TaxRev} - \text{AccRev}) - (\text{TaxExp} - \text{AccExp}) \\ &\quad \text{익금산입 및 불산입 손금산입 및 불산입} \\ &= (\Delta\text{TaxNetAsset} - \Delta\text{AccNetAsset}) - (\Delta\text{TaxCapRet} - \\ &\quad \Delta\text{AccCapRet}) \\ &\quad \text{일시적 차이(유보) 영구적 차이(사외유출 및 기타)} \end{aligned}$$

위 식을 보면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 간의 차이를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설명한다면 익금산입 및 불산입 항목과 손금산입 및 불산입 항목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재무상태표 중심으로 설명한다면 순자산변동의 차이와 자본변동의 차이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순자산변동의 차이는 순자산 보유 기간 동안에만 존속되는 것이므로 일시적 차이가 된다. 그리고 자본변동의 차이는 영구적 차이로 구분된다.

단일장부 체제에서는 위와 같이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 간의 차이를 분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세법의 설명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법을 보면 사업연도소득과 회계상 당기순이익 간의 차이를 익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그리고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으로 구

분하고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다시 소득처분 과정을 통해서 유보와 기타, 사외유출 등으로 유형 구분을 하여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소득처분은 사업연도소득과 회계상 당기순이익 간의 차이를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소득처분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순자산변동은 누적 개념이므로 차기로 이월된다. 만일 전기에 발생한 순자산변동이 차기로 이월되지 않는다면 정확한 순자산변동을 알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과세소득을 산출할 수 없다. 따라서 소득처분을 통해서 유보로 지정함으로써 차기 세무조정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영구적 차이 부분에서 생기는 사외유출의 경우에는 유출 상대방이 누군가에 따라서 추가적인 과세가 필요하게 된다. 예를 들어 유출 상대방이 종업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 주주인 경우에는 배당, 제3자인 경우에는 기타소득 등으로 추가과세를 할 수 있도록 소득처분을 내린다. 따라서 사외유출 처분의 경우는 법인의 과세소득과는 무관하다.

4) 별도장부 체계에서의 세법 기술 방법

별도장부 체계에서는 별도의 세무 장부를 기초로 과세소득을 산출한다. 따라서 이 체계에서는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연도소득을 산출하는 것이다. 별도장부 체계하에서의 과세소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begin{aligned} \text{과세소득} &= \text{익금} - \text{손금} \\ &= \text{자산} \cdot \text{부채 증가(감소)} + \text{자본금과 잉여금 감소(증가)} \end{aligned}$$

위 식은 앞서의 과세소득의 정의를 다시 한 번 옮긴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외형상 별도장부 체계는 단일장부 체계에 비하여 과세소득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단순하다. 이에 따라 세법의 기술 방법도 바뀌게 될 것이다. 별도장부 체계하에서 세법 규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익금과 손금의 범위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현행 단일장부 체계에서는 익금과 손금은 기본적으로 회계상의 수익과 비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별도장부 체계에서는 회계 기준과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상의 수익과 비용을 수용할 수 없으며 별도로 익금과 손금에 대한 세법상의 정의가 필요해진다. 예를 들어 현행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보자.⁹⁷⁾ 여기에는 세금과 공과금 중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항목들만 나열되고 있을 뿐이며 세금과 공과금은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이 규정은 일단 법인이 세금과 공과금으로 계상하고 난 후, 사후적으로 그 계정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 조항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

97)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과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酒稅)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2010. 12. 30. 개정)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 19 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가장 전형적인 단일장부 체계에서의 기술 방법이다. 그러나 별도장부체제로 전환된다면 세금과 공과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장 큰 개념의 전환은 익금과 손금보다는 순자산변동에 대한 기술이다. 현행 법인세법은 순자산변동에 있어서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차이만을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이를 관리함으로써 순자산변동이 연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그에 비하여 별도장부체제로 전환되면 세법에서 자체적으로 순자산변동을 총액으로 관리해야 한다.⁹⁸⁾ 이에 따라 세무상 재무상태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세무보고 과정이 될 것이다.

셋째, 자본금변동에 있어서는 현행 법인세법에서 이를 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소득구분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등으로 처분하여 왔다. 사실상 이 부분은 법인세법에서의 필요성보다는 소득세의 추가과세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별도장부 체제로 전환되더라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별도장부 체제하에서 세법규정 체계의 핵심 내용은 익금과 손금 그리고 자산·부채의 평가가 될 것이다. 다만 개별 익금과 손금 항목을 직접적으로 별도 규정할 것인가 아니면 자산·부채의 평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규정할 것인가는 기술의 편의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세무상 장부가액을 자산·부채의 평가 규정을 통해서 직접 규정할 것인가 아니면 익금과 손금 항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규정할 것인가도 기술의 편의성에 따라 달라진다. 이 때 기술의 편의성은 세법의 이해 가능성과 단순성 및 명료성을 의미한다. 즉, 어느 방향으로 접근하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쪽이 이해 가능성 그리고 단순성 및 명료성이 높은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는

98) 이는 미국세법에서의 Basis 개념과 유사하게 될 것이다.

것이다.

5) 별도장부 체제로의 전환

현재의 단일장부 체제에서 별도장부 체제로 전환하는 경우, 중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될 것이다.

첫째, 익금과 손금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면서 체계적인 범위 설정이 필요하며 지금보다 상세한 규정이 별도로 요구된다. 현재 익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⁹⁹⁾ 손금에 대해서는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¹⁰⁰⁾ 우선 익금에 대해서는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손금에 대해서는 자본과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과 같은 단일장부 체계하에서는 이렇게 단순한 정의만 가지고 충분한데, 그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회계상 수익과 비용을 그대로 수용한 상태에서 세법에서는 단지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만을 규정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별도장부 체계로 전환된 경우에는 모든 익금이나 손금 항목을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모든 경우를 대비하여 익금과 손금 규정을 만든다는 것을 불가능하며

99)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00) 제19조 【손금의 범위】

-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2010. 12. 30.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이에 따라 좀 더 정교하게 포괄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K-IFRS 기준서 제1018호에 있는 수익에 대한 규정을 보면 총 38개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수익의 성격에 대한 규정만 보더라도 28개 문단에 이른다. 현재 「법인세법」 제15조에서는 익금의 성격을 단 한 줄의 문장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볼 때, 향후 이 부분에서 법인세법의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자산·부채 평가, 손익귀속 시기에 대해서도 현재보다는 상세한 규정이 필요하다. 자산·부채 평가, 손익의 귀속 시기는 서로 맞물려 있는 규정이다. 이 규정들은 앞선 익금과 손금의 정의와도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현행 법인세 규정은 별도장부 체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좀 더 포괄적이면서 치밀한 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앞선 익금과 손금 규정과 동일하다.

셋째, 현행 단일장부 체제에서는 회계장부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소득처분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처분은 유보와 사외유출, 기타로 구분하고 사외유출은 다시 상여, 배당, 기타소득 그리고 기타 사외유출로 구분한다. 그렇지만 별도장부 체제에서는 세무상 자산·부채의 변동과 자본 및 이익잉여금 변동의 개념으로 소득처분을 재규정해야 한다. 가장 크게 달라져야 할 것은 유보 처분이다.

유보는 현재 회계상 순자산과 세무상 순자산 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차이가 증가 혹은 감소하면 이 금액만큼 과세소득에 대해서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현재와 같은 방법의 장점은 세무상 순자산을 별도로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세무상 순자산은 회계상 순자산에 유보 금액을 가감하여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별도장부 체제하에서는 회계상 순자산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유보의 개념은 필요 없어진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세무상 순자산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별도장부 체제라는 용어가 가져올 수 있는 혼란에 대한 것이다. 별도장부 체제란 개념적으로 세법과 기업

회계가 별도의 장부 기록에 기초하여 이익을 계산한다는 것이므로 실제로 기업이 두 개의 장부를 유지·관리해야 하는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세법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와 관련 없이 법인은 기존 방식을 적용하여 과세소득을 구할 수도 있다.¹⁰¹⁾ 따라서 기업들은 기존 경리 시스템에 따라서 단일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두 개의 장부를 산출하여 이를 유지·관리하는 경우와 현재와 같이 단일한 장부만을 유지·관리하면서 세법과 회계이익의 차이를 조정하는 경우 중에서 선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별도장부 체계에서의 장부 기록 관리·유지에 따른 납세자의 추가 비용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학자나 실무자들은 별도장부 체계로 전환되면 재무보고와 세무보고로 보고체계가 중복됨으로 인하여 관리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장부 체계가 물리적으로 두 개의 장부를 유지·관리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단지 개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물론 초기에 전산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정착 비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이후 경상적인 유지 비용은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완전 분리되면서 제시한 방안에 따라 세법이 개정된다면 큰 비용 없이 별도장부 체제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완전 분리된다면 지금보다 익금과 손금 및 자산·부채 평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별도장부체제로 전환하면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소득처분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소득처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충분히 별도장부 체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01) 물론 효율성의 문제는 있을 것이다.

6) 공시

앞선 제5장에서 세법과 회계기준 일치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안을 살펴본 바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세법과 회계기준이 분리된 상태이므로 오히려 양자를 일치시키자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양자의 일치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한 것은 아니며 대신에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대한 기업 스스로의 설명을 강하게 요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대응 방식은 IFRS 도입을 계기로 회계기준과 세법을 분리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안겨 준다.

미국이 세법과 회계기준을 일치시키고자 고민했던 이유는 미국 기업들이 회계기준과 세법이 분리된 상황을 이용하여 조세회피와 이익조정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일치도를 손쉽게 높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택한 것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자료양식 중 M-3 양식을 새로이 개발하여 이전보다 체계적으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설명하도록 요구하였으며 FASB에서는 FIN48을 제정하여 공격적인 조세회피를 하는 기업들에게 과세당국에 보고한 조세채무와 기대조세채무의 차이를 불확실한 세금효과(Uncertain Tax Benefit: UTB)로 공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는 경영자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한다. 즉, 공격적인 조세회피나 이익조정으로 인하여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이에 대해 세무당국이나 투자자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심리적 으로 경영자들이 공격적인 재무보고나 세무보고를 할 수 없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는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즉, 세법과 회계기준이 분리되면 분명하게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는 지금보다 커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자들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공격적인 재무보고와 세무보고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미국 기업의 경영자들처럼 양자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회계와 세법을 분리함으로써 조세회피와 이익조정이 만연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가) 세무보고 측면에서의 공시

이러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대처하는 방안도 미국의 사례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이 체계적으로 공시되지 않고 있다. 세무보고 측면에서 보자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의 총량적인 차이는 별지신고서식 제3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나타나게 되어 있으며 세부 항목은 별지 제15호 서식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의 총 차이도 중요하지만 세부 항목의 구성도 매우 중요하다. 즉, 이를 분석함으로써 양자의 차이가 단순히 세법과 회계기준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조세회피나 이익조정 유인으로 인한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그림 VI-2]는 별지 제15호 서식인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보여준다.

위 [그림 VI-2]를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보면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대한 원인을 찾기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위 양식은 사전에 전혀 정해진 것이 없이 납세자가 스스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분해하여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의 구성 항목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나 이익조정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기업간 비교가 필수적인데 어떤 표준화된 양식 없이 기업 스스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이용해서는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분석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미국에서 기존의 M-1 양식을 M-3 양식으로 대신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M-1 양식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납세자간 비교를 할 수 없었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 미국의 M-1 양식보다도 더욱 단순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음을 볼 때 더욱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인다.¹⁰²⁾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미국이 M-3 양식을 개발한 과정을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학계와 실무계와 합동으로 팀을 구성하고 이들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양식을 개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과제가 된다. 새로운 양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부터 정상적인 차이의 구성 항목들을 도출하고 이들을 양식에 구분하도록 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차이가 나타나도록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의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주도하고 협력을 유도할 당사자는 과세당국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2002년 Grassley의 공개

102) 물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작성 목적은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처분 내역을 알고자 하는 것이다.

서한 이후 2003년 학계에서 다양한 심포지엄을 통해서 학자나 실무자들의 견해가 발표되었으며 이에 반응하여 IRS가 팀을 구성해서 M-3 양식의 공개 초안을 발표한 것이 2004년 7월이었다. 이는 대단히 발빠른 대처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도 이러한 미국의 대응 방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나) 재무보고 측면에서의 공시

미국에서의 논의를 보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공시하는 것은 세무당국에게 뿐만 아니라 재무보고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Lenter et al.(2003)의 연구를 보면 미국에서는 과세자료 자체를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영자들은 조세회피나 이익조정이 투자자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한다. 이러한 행위는 외부투자자들에게 기업 성과에 대한 신뢰성을 하락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적절한 형식을 갖추어 외부에 공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미국의 경우도 완전하게 양자의 차이를 공시하지는 않고 있으나 FIN48 제정을 통해서 공격적 세무 계획으로 인한 조세절감액 부분을 UTB 계정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우발채무의 공시라는 기업회계기준상의 원칙을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Enron 사태 이후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따라 공격적 세무 계획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투자자들에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응 방안을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감사보고서상 주석으로 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의 내역을 공시하도록 한다. 이연법인세는 일시적 차이에 의하여 계상되는 것이

므로 영구적 차이 부분은 공시에서 누락되게 된다. 또한 일시적 차이 부분에 대한 공시도 체계적이지 못하여 사실상 비교 가능성이 거의 없다. 아래 [그림 VI-3]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 주석에 있는 이연법인세 구성항목에 대한 공시 내역이다. 이를 보면 두 회사 간에 이연법인세 구성항목에 대한 비교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공시 내역도 회계전문가조차도 분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단순하고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공시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Ⅵ-1] 감사보고서 주식사항의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 간의
차이 공시 내역

패널A: 삼성전자

계정과목	누적일시적차이			이연법인세자산(부채)		
	기초잔액	증감액	기말잔액	기초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증감액	기말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조세제한특례 제한법상준비금	(644,811)	626,665	(18,146)	(156,044)	152,062	(8,992)
토지재평가	(4,202,889)	218,216	(3,984,173)	(924,525)	48,007	(876,518)
종속회사, 관계 회사 및 조인트벤 처 투자	(5,219,639)	(118,431)	(5,338,070)	(1,082,851)	-	(1,082,851)
감가상각누계액 등	43,228	(16,736)	26,492	9,549	(3,680)	5,869
자본화 차입금 이자	(48,766)	1,854	(41,912)	(9,810)	549	(9,261)
미수수익	(39,558)	(104,491)	(144,049)	(9,573)	(25,287)	(34,860)
충당부채 (기술사용료 등)	3,128,687	(167,878)	2,955,809	751,526	(47,124)	704,402
환율조정계정	17,128	(964)	16,164	3,811	(234)	3,577
외화평가조정	71,881	(103,780)	(32,399)	17,274	(25,115)	(7,841)
투자자산손상	34,295	10,944	45,239	7,545	2,408	9,953
기타	154,288	288,470	392,758	33,078	59,929	93,007
소 계	(6,706,156)	588,869	(6,122,287)	(1,810,020)	161,505	(1,148,515)
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						
세액공제이월액	1,067,401	208,870	1,276,771	1,008,497	247,136	1,250,633
자본에 직접 가감하 는 이연법인세						
매도가능금융자 산평가이익 등	(855,153)	(1,153,740)	(2,008,898)	(186,848)	(244,191)	(431,039)
				합 계		(328,921)

자료: 삼성전자 제42기(2010. 1. 1~2010. 12. 31) 감사보고서 주식28 중 일부를
발췌함.

패널B: LG전자

(당기)

(단위: 백만원)

구분	기초잔액	당기손익 반영	자본반영	기말잔액
일시적차이 구분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20,161)	1,202	-	(118,959)
유형자산	4,365	343	-	4,708
매도가능금융자산	(10,027)	-	1,229	(8,798)
충당부채	51	(248)	259	62
기타금융부채	2,192	(290)	-	1,902
기타	(5,977)	(6,454)	-	(12,431)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129,557)	(5,447)	1,488	(133,516)

자료: LG전자 제49기(2010. 1. 1~2010. 12. 31) 감사보고서 주석21 중 일부를 발췌함.

만일 재무보고 측면에서의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법과 회계기준의 분리로 인한 비용이 효익을 초과할 수 있다. 즉, 기업들은 재무보고 비용과 조세비용 간 상충관계에서 벗어나서 과도한 세무계획과 공격적인 재무보고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체계적으로 공시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결정이 간단한 것은 아니다. Lenter et al.(2003)의 연구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기업의 과세 자료가 일부라도 공개된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영업상의 비밀이 유출될 수도 있으며 기업의 중요한 전략이 경쟁 기업에 유출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에서 언제나 최선은 완전한 공시라는 교훈을 보다 염두에 둔다면 장기적으로 기업의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지금보다는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형태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

5. 요약

이번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세법과 회계기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 그리고 재설정된 관계를 전제로 법인세법의 개정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우선 논의의 출발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세법과 회계기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우선 세법에서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확고하게 천명하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결산조정 원칙이 세법에 잠재되어 있다. 결산조정 원칙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세법과 회계기준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과 같은 관계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은 아니다. 시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는 변화하여 왔으며 결과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는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에 대한 논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IFRS 도입 이전에는 주로 포지티브 혹은 네거티브 형태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나 결산조정 혹은 신고조정 간의 논쟁이 있었다. 대체로 모든 주장은 현 상태보다는 세법과 회계기준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IFRS 도입 이후에는 모든 상황은 바뀐다. IFRS 도입 결정으로 인하여 이제 회계기준에서의 변화는 우리나라에서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IFRS가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규정으로 적용되는 것이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그 다음 일인데, 검토 결과 IFRS는 법인세법의 준용 규정으로 부적합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따라서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 정립에 대한 논쟁은 IFRS 도입으로 인하여

세법과 회계기준을 어떻게 분리시켜야 할 것인가로 옮겨가게 되었다.

세법과 회계기준을 분리시켜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실무를 지배해 오던 법인세법을 급격하게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번 장에서는 시기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분리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단기, 중·장기, 장기로 나누어 각각 분리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차례로 분리가 추진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독자적으로 과세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형태로 개편되게 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공시의 문제를 다루었다.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세무보고와 재무보고 측면에서 공시하는 것은 세법과 회계기준 분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미국의 경우, Enron 사태 이후 세법과 회계기준 분리의 단점을 지적하고 양자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강했지만 이제는 세법과 회계기준을 일치시키는 극단적 방법이 아닌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충분히 공시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미국의 사례를 교훈으로 하여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과세당국에 그리고 자본시장참가자들에 체계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VII. 맺음말

1. 연구 결과의 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IFRS 도입 이후 우리나라의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재설정할 것인가를 알아보았으며 둘째, 새롭게 재설정된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에서 법인세법을 어떤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생각해보았다. 법인세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는지에 대해 미시적으로 알아보기보다는 보다 거시적인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과제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추진 전략을 제안하였다.

제2장에서는 세법과 회계기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경제적 이익이라는 가상의 개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치하면서도 구체적인 목적이나 보고단위 면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세법과 회계기준이 각각 만들어 내는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의 차이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경영자가 의도적으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양자의 차이는 세법과 회계기준의 차이로 100%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실제로 양자의 차이에는 경영자의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의도가 개입한다. 경영자가 조세회피나 이익조정을 하는 경우에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더욱 커지게 된다. 제3장에서 경영자의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유인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다. 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하였는데 미국은 대체로 당기순이익이 과세소득을 초과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과세소득이 당기순이익을 초과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이나 조세회피 유인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증 증거를 찾아보고 이를 제시하였다. 크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거의 모든 연구에서 이들 유인은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세법과 회계기준 일치에 대한 효익과 비용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일치도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효익의 원천은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상충관계이다. 즉, 경영자는 당기순이익을 조정하면서 과세소득 증가로 인한 조세비용을 우려하며 반대로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면서 당기순이익 감소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을 우려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요인은 서로 상쇄하는 효과를 보이게 되는 이것을 조세비용과 재무보고비용 간의 상충관계라고 부른다. 우선 여러 특수한 상황에서 경영자가 이러한 상충관계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내리는지를 확인해보았다. 대부분 상황에서 경영자는 상충관계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는 일치도가 경영자의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실증 증거를 찾아보았는데 일단 일치도가 높아지면서 이익조정 혹은 조세회피 행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일치도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정보가치의 손실이다. 과세소득은 당기순이익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가치를 갖는데 이는 세법이 회계기준과는 다른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측정하고자 하면서 생긴 부산물이다. 몇몇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과세소득이 당기순이익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치가 있으며 이 정보가치는 당기순이익의 신뢰성이 낮을수록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일치도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정보가치는 줄어들게 된다.

또한 일치도가 높아지면 세법과 회계기준은 서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에 따라 각자 갖고 있는 고유의 목적을 실천하는 데 장애를 받게 된다. 어찌 보면 이러한 영향의 부작용은 회계기준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일치도가 높아지면 당기순이익의 품질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는 이런 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대체로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제5장에서는 세법과 회계기준의 관계 설정에 대한 미국에서의 논란을 소개하고 미국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Desai 교수의 세법과 회계기준 일치론 주장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는 1990년대부터 만연되기 시작한 이익조정과 조세회피의 원인이 세법과 회계기준이 분리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양자의 일치를 주장하고 있었다. 반대로 일치론 주장에 대한 반론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란 속에서 미국은 어떤 대응 방안을 강구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대응 방안의 핵심은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이를 과세당국과 자본시장 참가자들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한 논의를 IFRS 도입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명백하게 우리나라가 나아가 할 방향은 회계와 세법을 분리하는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회계와 세법이 분리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앞으로 법인세법을 어떤 방식으로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장을 담았는데 일시적인 개정보다는 단기, 중·장기, 장기로 구분한 단계적 추진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회계와 세법이 분리되었을 경우의 가장 바람직한 법인세법의 모습에 대해서 토의하였다. 또한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완전하게 공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 주장으로 담았다.

2. 연구의 공헌

우선 본 연구는 현재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관계당국에 하나의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FRS 도입 이후, 우리나라는 회계기준 제정권이 없어진 상태이다. 따라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정책 담당자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은 법인세법이 유일하다. 이러한 점에서 세법을 관장하는 당국자들은 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에게 큰 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많은 연구들은 실무자뿐만 아니라 세무회계 연구자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세무와 회계학계에 대해서도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설정이 대단히 흥미로운 연구 과제가 될 수 있으며 수많은 연구 주제들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남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조정에 대한 소고」, 『상장협』, 제28호, 춘계, 1993, pp. 102~115
- 구자은, 「세법과 회계기준 일치 정도의 측정과 효과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의 이해와 도입준비』,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2008.
- 금융감독원, 「IASB, IFRS for SMEs 발표자료」,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2009, (『공인회계사』 2009년 8월호.)
- 권성수,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조화」, 한국회계연구원 KAI Forum 발표자료, 2002.
- 김진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 『공인회계사』, 1999. 12.
- 노희천, 「세무이익의 정보효과-주가관련성과 이익예측력을 이용한 실증연구」, 『세무학연구』, 제26권, 제1호, 2009, pp. 33~69.
- 박정우·손상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 관계정립에 관한 연구 : 결산확정주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제2권, 제1호, 2001, pp. 53~91.
- 신현걸, 「상장법인의 세무조정 현황 실증분석」, 『세무학연구』, 제18권, 제3호, 2002, pp. 169~193.
- 신찬수,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 해소를 위한 제언」, 『상장협』, 제29호, 춘계, 1994, pp. 124~155
- 심태섭 외,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에 따른 세법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9.
- 심태섭 외, 『IFRS 도입에 따른 주요국의 세법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조세연구원, 2010.
- 심태섭 · 최기호 · 김경미, 『세법 · 회계간 관계 재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조세재정연구소, 2011.
- 이만우 · 정석우 · 정규언, 『회계관련법규의 조화방안 : 상법, 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을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제4권, 제1호, 2003.
- 이상신, 『국제회계기준 도입 · 적용의 법적 쟁점』, 『세무와회계저널』, 제9권, 제4호, 2008, pp. 171~193
- 이성주, 『세법과의 조화를 위한 기업회계기준 조정방안』, 『상장협』, 제30호, 추계, 1994, pp. 89~103
- 이우택,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일치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회계학연구』, 제22권, 제2호, 1997, pp. 129~162
- 이준봉, 『기업회계와 세법의 조화방안』, 『조세법연구』, 제11권, 제1호, 2005, pp. 26~60
- 정운오 · 고종권 · 김갑순 · 노희천, 『세무조정자료의 분석을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 『회계학연구』, 제31권, 제4호, 2006, pp. 203~238
- 정재연,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조화방안에 관한 연구』, 『회계와감사연구』, 제37호
- 최기호 · 윤상수 · 정규언, 『결산조정항목의 강제신고조정 전환에 대한 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제연구위원회 연구보고서, 2006.
- 최기호 · 최원석 · 정지선, 『충당금 과세제도 개편방안 연구』, 한국세무학회, 2007.
- 한국조세연구원, 『세제개혁보고서』, 미발간 연구보고서, 2004.

Adiel, R., "Reinsurance and the Management of Regulatory Ratios and Taxes in the Property Casualty Insurance Industr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22, 1996, pp. 207~

240.

- Alford, A, Jones, J, Leftwich, R and Zmijewski, M, "The Relative Informativeness of Accounting Disclosures in Different Countri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31 Supplement, 1993, pp. 183~223
- Alford, A. and P. Berger, "The Role of Taxes, Financial Reporting, and Other Market Imperfections in Structuring Divisive Reorganizations," Working paper, Wharton School,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PA, 1998.
- Ali, A and Hwang, L. S, "Country-Specific Factors Related to Financial Reporting and the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Data,"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38, no. 1, 2000, pp. 1~21
- Atwood, T. J., Drake, M. S and Myers, L. A., "Book-tax Conformity, earnings persistence and the association between earnings and future cash flow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50, 2010, pp. 111~125
- Austin, J., J. Gaver and K. Gaver, "The Choice of Incentive Stock Options vs. Nonqualified Options: A Marginal Tax Rate Perspectiv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vol. 20, no. 2, 1998, pp. 1~21
- Ayers, B., X. Jiang and S. Laplante, "Taxable Income as a Performance Measure: The Effects of Tax Planning and Earnings Quality,"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vol. 26, no. 1, 2009, pp. 15~54
- Ayers, B., S. Laplante and S. McGuire, "Credit Rankings and Taxes: The Effect of Book/Tax Differences on Ratings Change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vol. 27, 2010,

- pp. 359~402
- Badertscher, B., J. Phillips, M. Pincus, and S. Rego, "Earnings Management Strategies: To Conform or Not to Conform," *The Accounting Review*, vol. 84, no. 1, 2009, pp. 63~98
- Ball, R., "Changes in accounting techniques and stock pric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10, Supplement, 1972, pp. 1~38
- Bandler, J. and M. Maremont. "How a Xerox Plan to Reduce Taxes and Boost Profit Backfired," *Wall Street Journal*, 2001, April 17, p. C1, Desai(2005)에서 재인용
- Bankman, J., "The New Market in Corporate Tax Shelters," *Tax Notes*, vol. 83, 1999, pp. 1775~1794
- _____, "The Tax Shelter Battle," In: Aaron, H., Slemrod, J. (Eds.), *Crises and Tax administration*, B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2003, (Graham and Tucker, 1996.에서 재인용)
- Balsam, S., R. Halperin and H. Mozes, "Tax Costs and Nontax Benefits: the Case of Incentive Stock Options,"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vol. 19, No. 2, 1997, pp. 19~37
- Bartov, E., "The Timing of Asset Sales and Earnings Manipulation," *The Accounting Review*, vol. 68, no. 4, 1993, pp. 840~855
- Basu, S., "The Conservatism Principle and the Asymmetric Timeliness of Earning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24, 1997, pp. 3~37
- Beatty, A., P. Berger and J. Magliolo, "Motives for Forming Research & Development Financing Organization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19, 1995(a), pp. 411~442

- Beatty, A., S. Chamberlain and J. Magliolo, "Managing Financial Reports of Commercial Banks: the Influence of Tax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33, no. 2, 1995(b), pp. 231~261
- Beatty, A. and D. Harris, "The Effects of Taxes, Agency Costs and Information Asymmetry on Earnings Management: A Comparison of Public and Private Firms,"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vol. 4, 1999, pp. 299~326
- Beaver, W., *Financial Reporting: An Accounting Revolution*, Prentice-Hall, 1998.
- Blaylock, B., T. Shevlin and R. Wilson, "Tax Avoidance, Large Positive Book-Tax Differences, and Earnings Persistence," University of Washington working paper, 2010.
- Blouin, J., C. Gleason, L. Mills and S. Sikes, "What Can We Learn About Uncertain Tax Benefits from FIN 48?," *National Tax Journal*, vol. 60, no. 3, 2007, pp. 521~535
- Blouin, J., C. Gleason, L. Mills and S. Sikes, "Pre-Emptying Disclosure? Firms' Decisions Prior to FIN48." *The Accounting Review*, vol. 85, no. 3, 2010, pp. 791~815
- Bowen, R. and G. Pfeiffer, "The Year-End LIFO Purchase Decision: The Case of Farmer Brothers Company," *The Accounting Review*, vol. 64, 1989, pp. 152~171
- Boynton, C., P. Dobbins and G. Plesko, "Earnings Management and the 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30, Supplement, 1992, pp. 131~153
- Boynton, C., P. DeFilippes, P. Lisowsky and L. Mills, "Consolidation Anomalies in Form 1120 Corporate Tax Return Data," *Tax Notes*, 2004. 7. 26, pp. 405~407

- Boynton, C. and L. Mills, "The Evolving Schedule M - 3: A New Era of Corporate Show and Tell?," *National Tax Journal*, vol. 57, no. 3, 2004, pp. 757~772
- Boynton, C., P. De Filippes and E. Legel, "A First Look at 2005 Schedule M-3 Corporate Reporting," *Tax Notes*, 2008. 11. 3, pp. 563~595
- Burgstahler, D. and I. Dichev, "Earnings Management to Avoid Earnings Decrease and Loss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24, 1997, pp. 99~126
- Burgstahler, D., L. Hail and C. Leuz, "The Importance of Reporting Incentives: Earnings Management in European Private and Public Firms," *The Accounting Review*, vol. 51, no. 3, 2006, pp. 983~1016
- Canellos, P. and E. Kleinbard, "Disclosing Book - Tax Differences," *Tax Notes*, 2002. 8. 12, p. 999
- Chan, K., K. Lin and P. Mo, "Will a Departure From Tax-Based Accounting Encourage Tax Noncompliance? Archival Evidence from a Transition Econom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50, 2010, pp. 58~73
- Chen, K., M. Danielson and M. Schoderbek, "Analysts' Interpretation of Transitory Earnings Components: Evidence from Forecast Revisions after Disclosure of the 1993 Deferred Tax Adjustment," *Journal of Accounting, Auditing, and Finance*, vol. 18, no. 3, 2003, pp. 333~353
- Clinch, G. and T. Shibano, "Differential Tax Benefits and the Pension Reversion Decision,"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21, 1996, pp. 69~106
- Cloyd, B., "The Effect of Financial Accounting Conformity on

- Recommendation of Tax Preparer,"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vol. 17, no. 2, 1995, pp. 50~70
- Cloyd, B., J. Pratt and T. Stock, "The Use of Financial Accounting Choice to Support Aggressive Tax Positions: Public and Private Firm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34, no.1, 1996, pp. 23~43
- Cloyd, B., L. Mills and C. Weaver, "Firm Valuation Effects of the Expatriation of U.S. Corporations to Tax-Haven Countries,"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vol. 25, Supplement, 2003, pp. 87~109
- Collins, J., D. Shackelford and J. Wahlen, "Bank Differences in the Coordination of Regulatory Capital, Earnings and Tax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33, no. 2, 1995, pp. 263~291
- Collins, D., E. Maydew and I. Weiss, "The Value-Relevance of Earnings and Book Values over the Past Forty Year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24, 1997, pp. 39~67
- Collins, J., G. Geisler and D. Shackelford, "The Effect of Taxes, Regulation, Earnings, and Organizational Form on Life Insurers' Investment Portfolio Realization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24, 1997, pp. 337~361
- Collins, E., "Schedule M-3 Reporting Requirements," Presentation at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Midyear Meeting, 2006. 2. 24. (Donohoe & McGill(2011)에서 재인용)
- Cushing, B. and LeClere, M., "Evidence on the Determinants of Inventory Accounting Policy Choice," *The Accounting Review*, vol. 67, no. 2, 1992, pp. 355~366

- DeAngelo, H., L. DeAngelo and D. Skinner, "Accounting Choice in Troubled Compani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17, 1994, pp. 113~143
- Dechow, P., "Accounting Earnings and Cash Flows as Measures of Performance: the Role of Accounting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18, 1994, pp. 3~42
- Dechow, P., R. Sloan and A. Sweeney,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vol. 70, no. 2, 1995, pp. 193~225
- Desai, M., "The Divergence between Book and Tax Income, in Tax Policy and the Economy," J. M. Poterba, ed. Cambridge, Mass., MIT Press, 2003, pp. 169~206
- Desai, M., "The Degradation of Reported Corporate Profit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9, no. 4, 2005, pp. 171~192
- Desai, M., "Reform Alternatives for the Corporate Tax. Testimony before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Ways and Means," Subcommittee on Select Revenue Measures, Corporate Tax Reform public hearing, Washington DC, 2006, 5. 9.
- Desai, M. and D. Dharmapala,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Powered Incentiv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79, 2006, pp. 145~179
- Desai, M. and D. Dharmapala, "Corporate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91, pp. 537~546
- Desai, M., C. Foley and J. Hines Jr., "The Demand for Tax Haven Operation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90, 2006, pp. 513~531

- Desai, M., I. Dyck, I. and L. Zingales, "Theft and Tax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84, 2007, pp. 591~623
- Dhaliwal, D., G. Salamon and E. Smith, "The Effect of Owner versus Management Control on the Choice of Accounting Method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4, 1982, pp. 41~53
- Dhaliwal, D. and S. Wang, "The Effect of Book Income Adjustment in the 1986 Alternative Minimum Tax on Corporate Financial Report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15, 1992, pp. 7~26
- Dhaliwal, D., M. Frankel and R. Trezevant, "The taxable and book income motivations for a LIFO layer liquidation,"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32, no. 2, 1994, pp. 278~289
- Dhaliwal, D., R. Trezevant and M. Wilkins, "Tests of a Deferred Tax Explanation of the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the LIFO Reserve and Firm Value,"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vol. 17, no. 1, 2000, pp. 41~59
- Donohoe, M. and G. McGill, "The Effects of Increased Book-Tax Difference Tax Return Disclosures on Firm Valuation and Behavior,"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vol. 33, no. 2, 2011, pp. 35~65
- Dopuch, N. and Pincus, M., "Evidence on the Choice of Inventory Accounting Methods: LIFO versus FIFO,"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26, no. 1, 1988, pp. 28~59
- Engel, E., M. Erickson and E. Maydew, "Debt-Equity Hybrid Securiti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37, no. 2, pp. 249~274
- Erickson, M., M. Hanlon and E. Maydew, "How Much Will Firms

- Pay for Earnings That Do Not Exist? Evidence of Taxes Paid on Allegedly Fraudulent Earnings,” *The Accounting Review*, vol. 79, no. 2, 2004, pp. 387~408
- Everett, J., C. Hennig and W. Raabe, “The Schedule M-3 compliance maze: Unanswered questions,” *Tax Notes*, 2007. 3. 19, pp. 1103~1128
- Francis, J. and S. Reiter, “Determinants of corporate pension funding strategy,” *Journal of Accounting and Research*, vol. 25, no. 1, 1987, pp. 35~59
- Frank, M., M. L. J. Lynch and S. O. Rego, “Tax Reporting Aggressiveness and Its Relation to Aggressive Financial Reporting,” *The Accounting Review*, vol. 84, no. 2, 2009, pp. 467~496
- Frankel, M. and R. Trezevant, “The Year-End LIFO Inventory Purchasing Decision: an Empirical Test,” *The Accounting Review*, vol. 69, no. 2, 1994, pp. 382~398
- Frischmann, P., T. Shevlin and R. Wilson, “Economic Consequences of Increasing the Conformity in Accounting for Uncertain Tax Benefit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46, 2008, pp. 261~278
- Gaver, J., K. Gaver and J. Austin, 1995, “Additional Evidence on Bonus Plans and Income Managemen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19, 1995, pp. 3~28
- General Accounting Office (GAO), “Financial Statement Restatements: Trends, Market Impacts, Regulatory Responses, and Remaining Challenges.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2.
- General Accounting Office, “Comparison of Reported Tax Liabilities

- of Foreign and US-Controlled Corporations 1996~2000," GAO-04-358.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4.
- Gleason, C. and L. Mills, "Materiality and Contingent Tax Liability Reporting," *The Accounting Review*, vol. 77, no. 2, 2002, pp. 317~342
- Graham, J., J. Raedy and D. Shackelford, "Research in Accounting for Income Taxes," Working Paper, 2011.
- Graham, J. and A. Tucker, "Tax Shelters and Corporate Debt Policy,"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81, 2006, pp. 563~594
- Gramlich, J., "The Effect of the Alternative Minimum Tax Book Income Adjustment on Accrual Decisions,"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vol. 13, no. 1, 1991, pp. 36~56
- Guenther, D., "Earnings Management in Response to Corporate Tax Rate Changes: Evidence from the 1986 Tax Reform Act," *The Accounting Review*, vol. 69, no. 1, 1994, pp. 230~243
- Guenther, D., "What Do We Learn from Large Book-Tax Differences?" University of Oregon working paper, 2011.
- Guenther, D. and M. Trombley, "The "LIFO Reserve" and the Value of the Firm: Theory and Evidence,"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vol. 10, no. 2, 1994, pp. 433~452
- Guenther, D., E. Maydew and S. Nutter, "Financial Reporting, Tax Costs, and Book - Tax Conform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23, 1997, pp. 225~248
- Guedhami, O. and J. Pittman, "The Importance of IRS Monitoring to Debt Pricing in Private Firms," *Journal of Financial*

- Economics*, vol. 90, 2008, pp. 38~58
- Gupta, S., L. Mills and E. Towery, "Did FIN 48 Arrest the Trend in Multistate Tax Avoidance?" Michigan State University working paper, 2009.
- Hand, J., "Resolving LIFO Uncertainty: a Theoretical and Empirical Reexamination of 1974 - 75 LIFO Adoptions and Non adoption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31, no. 1, 1993, pp. 21~49
- Hanlon, M., "What Can We Infer About a Firm's Taxable Income from its Financial Statements?," *National Tax Journal*, vol. 56, no. 4, 2003, pp. 831~863
- Hanlon, M., "The Persistence and Pricing of Earnings, Accruals, and Cash Flows When Firms Have Large Book-Tax Differences," *The Accounting Review*, vol. 80, no. 1, 2005, pp. 137~166
- Hanlon, M. and T. Shevlin, "Book-tax conformity for corporate income: an introduction to the issues," *Tax Policy and the Economy*, vol. 19, 2005, pp. 101~134
- Hanlon, M., S. Laplante and T. Shevlin, "Evidence for the Possible Information Loss of Conforming Book Income and Taxable Incom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48, 2005, pp. 407~442
- Hanlon, M., E. Maydew and T. Shevlin, "An Unintended Consequence of Book-Tax conformity: A Loss of Earnings Informativenes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46, 2008, pp. 294~311
- Hanlon, M. and E. Maydew, "Book-tax Conformity: Implications for Multinational Firms," *National Tax Journal*, vol. 62, no. 1, 2009, pp. 127~153

- Hanlon, M. and J. Slemrod, "What Does Tax Aggressiveness Signal? Evidence from Stock Price Reactions to News about Tax Shelter Involve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93, 2009, pp. 126~141
- Hanlon, M. and S. Heitzman, "A Review of Tax Research,"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50, 2010, pp. 127~178
- Harris, T., M. Lang and H. Moller, "The Value Relevance of German Accounting Measures: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32, no. 2, 1994, pp. 187~209
- Healy, P., "The Effect of Bonus Schemes on Accounting Decision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7, 1985, pp. 85~107
- Heltzer, W., "Conservatism and Book-Tax Differences,"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2006.
- Himmelberg, C., J. Mahoney, A. Bang and B. Chernoff, "Recent Revisions to Corporate Profits: What We Know and When We Knew It," *Current Issues in Economics and Finance*, vol. 10 no. 3, 2004, pp. 1~7
- Hite, G. and M. Long, "Taxes and Executive Stock Option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4, 1982, pp. 3~14
- Holthausen, R., D. Larcker and R. Sloan, "Annual Bonus Schemes and the Manipulation of Earning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19, 1995, pp. 29~74
- Hung, M., "Accounting standards and value relevance of financial statements: An international analysi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30, 2001, pp. 401~420
- Hunt, A., S. Moyer and T. Shevlin, "Managing Interacting

- Accounting Measures to Meet Multiple Objectives: A Study of LIFO Firm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21, 1996, pp. 339~374
- Jenkins, N. and M. Pincus, “LIFO versus FIFO: Updating What We Have Learned,” Working paper, University of Iowa, Iowa City, IA, 1998.
- Jennings, R., P. Simko and R. Thompson, “Does LIFO Inventory Accounting Improve the Income Statement at the Expense of the Balance Sheet?,”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34, no. 1, 1996, pp. 85~109
- Jones, J., “Earnings Management during Import Relief Investigation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29, no. 2, 1991, pp. 193~228
- Johnson, W. and D. Dhaliwal, “LIFO Abandonment,”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26, no. 2, 1988, pp. 236~272
- Kang, S.,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Stock Price Effects of LIFO Tax Benefit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31, no. 1, 1993, pp. 50~61
- Keating, S. and J. Zimmerman, “Depreciation Policy Changes: Tax, Earnings Management, and Investment Opportunity Incentiv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28, 1999, pp. 359~389
- Keating, S. and J. Zimmerman, “Asset Lives for Financial Reporting Purposes: Capital Budgeting, Tax and Discretionary Factors,” Working paper, University of Rochester, Rochester, NY, 2000.
- Klassen, K., “The Impact of Inside Ownership Concentration on the Trade-off between Financial and Tax Reporting,” *The Accounting Review*, vol. 72, no. 3, 1997, pp. 455~474

- Knott, A. and J. Rosenfeld, "Book and Tax: A Selective Exploration of Two Parallel Universes," *Tax Notes*, 2003. 5. 19. pp. 865~899
- Lanen, W. and Thompson, R., "Stock Price Reactions as Surrogates for the Net Cash Flow Effects of Corporate Policy Decision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10, 1988, pp. 311~334
- Lenter, D., D. Shackelford and J. Slemrod, "Public Disclosure of Corporate Tax Return Information: Accounting, Economics and Legal Perspectives," *National Tax Journal*, vol. 56, no. 4, 2003, pp. 803~830
- Lev, B. and D. Nissim, "Taxable Income, Future Earnings, and Equity Values," *The Accounting Review*, vol. 79, no. 4, 2004, pp. 1039~1074
- Lisowsky, P., "Seeking Shelter: Empirically Modeling Tax Shelters Using Financial Statement Information," *The Accounting Review*, vol. 85, no. 5, 2010, pp. 1693~1720
- Lopez, T., P. Regier and T. Lee, "Identifying Tax-induced Earnings Management around TRA 86 as a Function of Prior Tax-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vol. 20, no. 2, 1998, pp. 37~56
- Madeo, S. and T. Omer, "The Effect of Taxes on Switching Stock Option Plans: Evidence from the Tax Reform Act of 1969,"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vol. 16, no. 2, 1994, pp. 24~42
- Manzon, G., "Earnings Management of Firms Subject to the Alternative Minimum Tax,"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vol. 14, no. 2, 1992, pp. 88~111

- Manzon, G. and G. Plesko, "The Relation Between Financial and Tax Reporting Measures of Income," *Tax Law Review*, vol. 55, 2002, pp. 175~214
- Matsunaga, S., T. Shevlin and D. Shores, "Disqualifying Dispositions of Incentive Stock Options: Tax Benefits versus Financial Reporting Cost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30 Supplement, 1992, pp. 37~76
- Maydew, E., "Tax-Induced Earnings Management by Firms with Net Operating Loss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35, no. 1, 1997, pp. 83~96
- Maydew, E., K. Schipper and L. Vincent, "The Impact of Taxes on the Choice of Divestiture Method,"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28, 1999, pp. 117~150
- McCafferty, J. "Matched Sets: A Proposal to Synchronize Accounting and Tax Reporting," *CFO Magazine*, 2004. 4. 8.
- McClelland, J. and L. Mills, "Weighing Benefits and Risks of Taxing Book Income," *Tax Notes*, 2007, 2. 19, pp. 779~787
- Messier, S., "New Tax Rules for Small Business," *The Tax Adviser*, 2007. 10. 1, Graham et al.(2011)에서 재인용
- Mikhail, M., "Coordination of Earnings, Regulatory Capital and Taxes in Private and Public Companies," Working Paper,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999.
- Mills, L., "Book-Tax Difference and Internal Revenue Service Adjustment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36, no. 2, 1998, pp. 343~356
- Mills, L., K. Newberry and W. Trautman, "Trends in Book-Tax Income and Balance Sheet Differences," *Tax Notes*, 2002. 8. 19, pp. 1109~1124

- Mills, L. and K. Newberry, "The Influence of Tax and Nontax Costs on Book-Tax Reporting Differences: Public and Private Firms,"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vol. 23, no. 1, 2001, pp. 1-19
- Mills, L. and G. Plesko, "Bridging the Gap: A Proposal for More Informative Reconciling of Book and Tax Income," *National Tax Journal*, vol. 56, no. 4, 2003, pp. 865~893
- Mittelstaedt, F., "An Empirical Analysis of Factors Underlying the Decision to Remove Excess Assets from Overfunded Pension Plan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11, 1989, pp. 369~418
- Nichols, N., "One Year Later: An Analysis of FIN 48 Disclosures in 2007 Forms 10-K," *Tax Notes*, vol. 121, no. 5, 2008.
- Outsley, E. and G. McGill, "Did Enron Pay Taxes? Using Accounting Information to Decipher Tax Status," *Tax Notes*, 2002. 8. 19, pp. 1125~1136
- Petrick, K., "Corporate Profits: Profits Before Tax, Profits Tax Liability, and Dividends,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Methodology Paper Series, 2002.
- Petroni, K. and D. Shackelford, "Taxation, Regulation, and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Property-Casualty Insurer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20, 1995, pp. 229~253
- Phillips, J., M. Pincus and S. Rego, "Earnings Management: New Evidence Based on Deferred Tax Expense," *The Accounting Review*, vol. 78, no. 2, 2003, pp. 491~521
- Plesko, G., "Corporate Tax Avoidance and the Properties of

- Corporate Earnings,” *National Tax Journal*, vol. 57, no. 3, 2004, pp. 729~737
- Pollert, W. and E. Glickman, “Synthetic Leases Under Fire,” *Strategic Finance*, vol. 84, no. 4, 2002. 10, pp. 33~35
- Poterba, J. M., N. S. Rao and J. K. Seidman, 2011, “Deferred Tax Positions and Incentives for Corporate Behavior around Corporate Tax Changes,” *National Tax Journal*, vol. 64, no. 1, pp. 27~58
- Raedy, J. S., J. Seidman and D. A. Shackelford, “Is There Information Content in the Tax Footnote?,” Working Paper, 2011.
- Raedy, J., “Discussion of “Taxable income as a performance measure:” the effects of tax planning and earnings quality,”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vol. 26, no. 1, 2009, pp. 55~63.
- Rice, E., “The Corporation Tax Gap: Evidence on Tax Compliance by Small Corporations,” *Why People Pay Taxes*, edited by Slemrod, pp. 125~161
- Ricks, W., “Firm Size Effects and the Association between Excess Returns and LIFO Tax Saving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24, no. 1, 1986, pp. 206~216
- Robinson, M., “The Federal Corporation Tax,”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 1911, pp. 691~723, Desai(2005)에서 재인용
- Robinson, L., and A. Schmidt, “Firm and Investor Responses to Uncertain Tax Benefit Disclosure Requirements,” Dartmouth University working paper, 2009.
- Scholes, M., M. Wolfson, M. Erickson, E. Maydew and T. Shevlin, “Taxes and Business Strategy: A Planning Approach,”

Prentice-Hall, 2008.

- Scholes, M., P. Wilson and M. Wolfson, "Tax Planning, Regulatory Capital Planning, and Financial Reporting Strategy for Commercial Banks," *Review of Financial Studies*, vol. 3, no. 4, 1990, pp. 625~650
- Scholes, M., P. Wilson and M. Wolfson, "Firms' Responses to Anticipated Reductions in Tax Rates: the Tax Reform Act of 1986,"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30 Supplement, 1992, pp. 161~191
- Seidman, J., "Interpreting the Book-Tax Income Gap as Earnings Management or Tax Sheltering," Working Paper, McCombs Research Paper Series No. ACC-02-10, 2010.
- Shackelford, D., J.I Slemrod and J. Sallee, "A Unifying Model of How the Tax System and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Affect Corporate Behavior," NBER Working Paper, no. 12873, 2007.
- Shaviro, D., "Internalization of Income Measures and the U.S. Book-Tax Relationship," *National Tax Journal*, vol. 62, no. 1, 2009, pp. 155~167
- Shaviro, D., "The Optimal Relationship Between Taxable Income and Financial Accounting Income: Analysis and a Proposal," *Georgetown Law Journal*, vol. 97, 2008, pp. 423~484
- Shevlin, T., "Taxes and Off-Balance-Sheet Financing: Research and Development Limited Partnerships," *The Accounting Review*, vol. 62, 1987, pp. 480~509
- Shevlin, T., "The Future of Tax Research: From an Accounting Professor's Perspectiv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vol. 29, no. 2, 2007, pp. 87~93

- Skinner, D., "The Investment Opportunity Set and Accounting Procedure Choic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16, 1993, pp. 407~445
- Slemrod, J. and M. Blumenthal, "The Income Tax Compliance Cost of Big Business," *Public Finance Quarterly*, vol. 24, no. 4, 1996, pp. 411~438
- Sunder, S., "Relationship between Accounting Changes and Stock Prices: Problems of Measurement and Some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11, Supplement, 1973, pp. 1~45
- Sunder, S., "Stock Price and Risk Related to Accounting Changes in Inventory Valuation," *The Accounting Review*, vol. 50, no. 2, 1975, pp. 305~316
- Sweeney, A., "Debt-Covenant Violations and Managers' Accounting Respons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17, 1994, pp. 281~308
- Thomas, J., "Corporate Taxes and Defined Benefit Pension Plan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10, 1988, pp. 199~237
- Thomas, J., "Why Do Firms Terminate Their Overfunded Pension Plan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11, 1989, pp. 361~398
- Thomas, J. and F. Zhang, "Tax Income Momentum," Yale University working paper, 2007.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The Problem of Corporate Tax Shelters: Discussion, Analysis and Legislative Proposals," Washington, D.C., 1999. (Hanlon and Shevlin(2005)에서 재인용)

- Wang, S.,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Reporting Practices and the 1986 Alternative Minimum Tax," *The Accounting Review*, vol. 69, no. 3, 1994, pp. 495~506
- Watts, R., and J. Zimmerman, *Positive Account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86.
- Weber, D., "Do Analysts and Investors Fully Appreciate the Implications of Book-Tax Differences for Future Earning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vol. 26, no. 4, 2009, pp. 1175~1206
- Weisbach, D., "Ten Truths About Tax Shelters," *Tax Law Review*, vol. 55, no. 2, pp. 215~253
- Wilkie, P. and S. Limberg, "Measuring Explicit Tax (Dis)advantage for Corporate Taxpayers: An Alternative to Average Effective Tax Rates,"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vol. 15, no. 1, 1993, pp. 46~71
- Wilson, R., "An Examination of Corporate Tax Shelter Participants," *The Accounting Review*, vol. 84, no. 3, 2009, pp. 969~999
- Yin, G., "How Much Tax Do Large Public Corporations Pay?: Estimating the Effective Tax Rates of the S&P 500," *Virginia Law Review*, vol. 89, 2003. 12.
- Young, D and Guenther, D. A., "Financial Reporting Environments and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41, no. 3, 2003, pp. 553~579

<국문요약>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의 일치 여부 검토와 법인세법 개정방향

최기호

본 연구에서는 우선 IFRS 도입 이후 우리나라의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재설정할 것인가를 알아보았으며 둘째, 새롭게 재설정된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에서 법인세법을 어떤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생각해 보았다. 법인세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는지에 대해 미시적으로 알아보기보다는 보다 거시적인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과제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추진 전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양자를 얼마나 일치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일치도가 높아지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상충관계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경영자는 당기순이익을 조정하면서 과세소득 증가로 인한 조세비용을 우려하며 반대로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면서 당기순이익 감소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을 우려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요인은 서로 상쇄하는 효과를 보이게 되는 이것을 조세비용과 재무보고비용 간의 상충관계라고 부른다. 이러한 상충관계하에서는 개념적으로 일치도가 높아지면서 경영자의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일치도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정보가치의 손실이다. 과세소득은 당기순이익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가치를 갖는데 이는 세법이 회계기준과는 다른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측정하고자 하

면서 생긴 부산물이다. 몇몇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과세소득이 당기순이익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가치가 있으며 이 정보 가치는 당기순이익의 신뢰성이 낮을수록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일치도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정보 가치는 줄어들게 된다.

미국은 세법과 회계기준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인데 최근 들어 세법과 회계기준 간 관계정립에 대한 논란을 겪었다. Desai(2005)는 1990년대부터 만연되기 시작한 이익조정과 조세회피의 원인이 세법과 회계기준 분리라고 주장하면서 양자의 일치를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반대로 일치론 주장에 대한 반론도 상당한데 이러한 논란 속에서 미국이 취한 대응 방안의 핵심은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이를 과세당국과 자본시장 참가자들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세법과 회계기준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전 세계적으로 일치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IFRS가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으로 채택되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IFRS의 특성상 더 이상 회계기준과 세법의 밀접한 관련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어려워졌으며, 우리나라가 나가야 할 방향은 어쩔 수 없이 회계와 세법을 분리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분리 방안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일시적인 개정보다는 단기, 중·장기, 장기로 구분한 단계적 추진 전략이 비교적 합리적인 것이다. 또한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세법과 회계기준이 분리되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완전하게 공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현재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관계 당국에 하나의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Abstract>

The Debate on the Book-Tax Conformity and Its Implications for Corporate Income Tax Law in Korea

Kiho Choi

In this study, I try to suggest how to build the relationship between GAAP and tax law in Korea after introducing IFRS. And I also try to suggest how to reform tax law under the new relationship. My suggestions are based on long term and macro framework.

To build the relationship between GAAP and tax law is to choose the degree of book-tax conformity. The book-tax conformity strengthen book-tax income trade-off. Under book-tax income trade-off, manager who want to increase book income should worry to increase taxable income and manger who want to minimize taxable income should worry to decrease book income and firm value. So, conceptually, it is difficult to manipulate book and taxable income under high book-tax conformity and we can have benefits from it.

But information loss is the disadvantage of high book-tax conformity. Taxable income has incremental information value on book income, because tax law measures income by different rule from GAAP. Some empirical research showed taxable income had additional value on book income and the value increased as lower the reliability of book income. So, the conformity between GAAP

and tax law reduce the value of taxable income.

U.S is one of the countries in which book-tax conformity is the lowest. But, after Enron accounting scandal, there have been so many debates on relationship between GAAP and tax law. Desai(2005) said that the separation between GAAP and tax law was one of the reasons of accounting scandal and tax avoidance in U.S. after 1990. And he insisted that the book-tax conformity should be increased. But many academicians and practitioners refuted his opinion. Based on this debate, U.S. IRS and Treasury developed the schedule M-3 and SEC promulgated FIN48. The main idea of these actions was to require public companies to explain their book-tax differences and disclose them to capital markets.

On the contrary to the case of U.S., GAAP and tax law are closely related with each other in Korea. Recently, IFRS was accepted as GAAP for public firms in Korea. After introducing IFRS, it is very difficult to maintain the high book-tax conformity in Korea. So, I think GAAP and tax law should be separated with each other. If the separation were completed in a short time, there would be huge confusion in Korea because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that have high book-tax conformit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more systematic approach for the separation by preparing a short-, middle-, and long-term plan respectively.

I expect that this study give useful guideline for tax and accounting policy maker who are concerned in the book-tax conformity in Korea. And I also expect that many Korean academicians start to research on this topic from now.

〈著者略歷〉

최기호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석·박사

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의 일치 여부
검토와 법인세법 개정방향

2012년 6월 23일 인쇄

2012년 6월 29일 발행

저 자 최기호

발행인 조원동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가락동 79-6)

전화 :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삼신인쇄

인 쇄

© 한국조세연구원 2012

ISBN : 978-89-8191-587-2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11,000원